

Territory and Seas

영토해양연구

Vol. 6 Winter 201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례

특별기고

조세영 | 동북아 영토마찰의 성찰과 교훈 4

특집주제_1905년 국제사회와 독도

박배근 | 무주지 선점의 요건에 관한 1905년 전후의 학설 34

김관원 | 1905년 독도편입 주장의 허구성에 관한 고찰 66

연구논문

홍성근 | 라포르트(E. Laporte)의 울릉도 조사 보고서와 1899년 울릉도 현황 100

조운수 | 1965년 한일어업협상의 정치과정 138

심현용 | 조선시대 울릉도 수도정책(搜討政策)에 대한 고고학적 시·공간 검토 162

이성환 | 센카쿠 영유권 분쟁에 관한 일본 대학생의 의식조사 208

기획이슈

<역사현장에세이>

김재한 | 인접국 갈등과 협력의 기승전결(하) 242

<인물탐방>

양태진 | 조선 정부의 영토관할정책 전환에 대한 고찰 266

<사료해제>

유미림 | 1882년 고종의 밀지와 울릉도 잠행 274

서평논문

이성환 | 독도에 대한 일본의 '무주지 선점론'은 성립하는가 284

영토·해양 일지

영토·해양 일지 298

『영토해양연구』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316



동북아 영토마찰의 성찰과 교훈

조세영 동서대학교 특임교수(전 외교통상부 동북아국장)

I. 머리말

한일관계가 사상 최악이라고 걱정들이 많다. 필자가 30년간의 외교관 생활을 돌이켜보더라도 그런 것 같다. 특히 일본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요즘이 가장 차가운 시기가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든다.

흔히 한일관계를 가리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초반에는 양호하다가 후반에는 급전직하로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의 흐름을 보면 단순히 악순환이 반복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물론 좋지 않은 의미에서의-양상이 추가되고 있다고 하겠다.

전두환 대통령 이래 모든 대통령이 임기 중에 일본을 한 차례 ‘국빈방문’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결국 국빈방문을 하지 못했다(이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국빈’이라는 형식에 그다지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빈방문을 ‘못했다’라기보다는 ‘안했다’는 표현이 정확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아직은 임기 중의 한일관계가 어떤 성적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8개월이 지나도록 일본과 정상회담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은 새로운 기록으로 추가될 것이다.

한일관계가 왜 이렇게 된 것일까? 현재의 상황은 그저 종래의 갈등이 반

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잠복되어 있던 근본모순(영토, 역사인식 문제 등)이 모두 표면화되는 느낌이다. 소위 1965년체제라는 ‘한일관계 1.0’이 한계에 봉착했는데 새로운 버전 2.0은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하겠다. 말하자면 ‘한일관계 2.0’을 모색하는 진통기라 해도 좋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증요법(對症療法)으로 서둘러 마찰을 봉합한다고 해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근본모순이 어느 정도 해소(해결이 아님)되지 않는 한 그러한 성과는 금방 잊혀지고 마찰은 다시 불거질 것이다.

한일관계의 교착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하루속히 정상회담을 열어 개선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양측에서 잇따르고 있다.¹ 그러나 정상회담은 개인이 만나듯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2011년 12월 18일 교토 한일정상회담의 교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당시에도 독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정상이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위안부 문제로 그렇게 얼굴 붉히고 정면충돌할 거라면 정상회담은 하지 않는 편이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정상회담 개최 여부보다 대일외교의 큰 그림과 한일관계 2.0을 고민하는 게 더 시급한 과제다.

이 글에서는 한일관계의 근본모순 가운데 영토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동북아의 세 가지 대표적 영토문제인 남쿠릴(북방영토), 센카쿠(다오위다오), 독도를 종합적으로 성찰해봄으로써, 독도 문제에 대한 대처방향에 몇 가지 교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이하 島嶼의 명칭은 실효지배국이 사용 중인 명칭을 사용한다).

1 사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에게 바란다”, 《경향신문》, 2013. 10. 8; 사실 “首相と会ってみては”, 《朝日新聞》, 2013. 10. 7; 사실 “日韓關係を放置したままでいいのか”, 《日本經濟新聞》, 2013. 10. 12

2 정재정, 2013, 「한일관계의 위기와 극복을 향한 오디세이」, 『영토해양연구』 여름호, 동북아역사재단, 18쪽

『영토해양연구』 2013년 여름호 특별기고에서 정재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한일 간에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견해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영토문제’ 또는 ‘영토분쟁’에 일부러 따옴표를 쳤다고 설명하고 있다.² 공직에 있으면서 각종 문서 작성시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영토’, ‘문제’, ‘분쟁’과 같

은 용어의 사용을 의식적으로 피하고, 단순히 '독도' 또는 '독도이슈'와 같은 궁여지책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필자로서는 정체정 교수의 고민에 신선한 공명(共鳴)을 느꼈다.

정부로서는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공직을 떠난 입장에서 필자는 독도에 대해서 굳이 영토문제라는 표현을 사용해보고자 한다. 그것이 객관적 현상을 인식하는데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왜 독도를 영토문제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었는지, 여기에도 함의(含意)와 시사점이 있다고 본다.

II. 일본 교과서 문제에 대한 대응방식

필자가 외교부에 처음 들어간 1980년대만 해도 독도 문제는 일본 담당 동북아1과의 말단직원이 담당하던 업무였다. 한일 간에 독도 문제가 큰 현안으로 부각되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독도 문제가 최종요사안의 하나가 되어 경험 많은 고참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 되었다.

독도 문제의 비중이 커지면서 일본 교과서 문제의 양상도 변하기 시작했다. 본래 역사인식의 문제가 중심이었던 교과서 문제는 어느새 독도 문제가 그 중심을 차지한 양상이 되어버렸다. 이에 따른 부작용 가운데 하나는, 교과서 문제를 역사인식 문제로서 제기했을 때는 일본 내에서도 공감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영토문제로서 제기하게 되면서 그러한 공감대를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일본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포함되면 한국의 여론은 즉각 강력한 반발을 보인다. 독도 문제가 포함되는 것을 막지 못한 정부의 외교적 무능을 질타한다. 독도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표현의 수위를 낮추는 외교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그 결과 교과서 검정 발표나 해설서 발표가 다가오면 한국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일본 정부나 정계 요로에 대

해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 협조를 부탁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린다.

이러한 사전협조 부탁 방식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일본 측이 독도 관련 내용을 교과서에서 삭제하거나 완화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거꾸로 관련 내용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독도를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우월적 지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영토를 지배하고 있는 쪽에서 상대국에 대해 교과서에 관련 내용을 기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은 대단히 균색한 일이다. 러시아가 남쿠릴 문제를, 중국이 센카쿠 문제를 교과서에 기술하지 말아달라고 일본 측에 대해 사전협조를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셋째, 일본 측에 외교적 카드를 제공하는 결과가 된다. 협조를 부탁하는 마당에 당연히 이쪽에서도 언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고 반대급부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³ 넷째, 사전협조 부탁이 연례행사화될 부담이 있다.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는 초·중·고등학교별로 거의 매년 반복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일본 정부는 2010년판 방위백서 발표를 7월 말에서 9월로 연기한 사례가 있다.⁴ 이것을 두고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을 통해 일본 정부의 대응을 다음과 같은 요지로 비난했다.⁵

(일본)정부가 7.30으로 예정되어 있던 2010년판 방위백서의 발표를 9월로 (갑자기) 연기했다. 연기의 이유를 천안함 침몰사건 등 새롭게 추가할 내용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이다. 이미 1만 4천

부 인쇄까지 마친 백서의 발표를 연기한 이유로는 불충분하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진짜 이유는 한국 측에 대한 '배려'(따옴표 필자)라고 한다. 방위백서는 매년 다케시마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하고 있다. 금년 8.29는 일한 병합조약 발효 100년이기 때문에 반일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다고 한다. 정부는 예정대로 담담하게 백서를 발표했어야 한다. 발표 직전에 이례적으로 연기하

3 가령 일본 측이 독도 지질조사를 자제토록 요청해온다면 이를 무시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 《동아일보》, 2010. 5. 18 기사 참조 (日외상, "한국, 독도 지질조사 자제해 달라")

4 《국민일보》, 2011. 3. 29

5 사설 "禍根を残す政府の事なかれ主義", 《讀賣新聞》, 2010. 7. 29

고 군색한 설명을 함으로써 오히려 다케시마 문제가 주목을 끌게 되었고 일한관계에도 역효과가 아니었는가. 간 (나오토) 정권의 판단실수다. 마에하라 국토교통상과 나가시마 방위정무관이 지난주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측의 '일부 관계자'(따옴표 필자)로부터 방위백서의 발표가 연기되도록 '배려'(따옴표 필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밑줄 필자) 그 보고를 받은 간 총리와 센 고쿠 관방장관이 연기를 결정했다고 한다.

한국 측의 '일부 관계자'는 한일관계를 잘 관리해보겠다는 충정에서 방위백서의 발표를 연기하자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인쇄까지 마친 상태에서 발표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연기해달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무리한 '부탁'이고, 상대방이 보기에는 한국이 '배려를 요청'하는 것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적어도 당당한 요구가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더욱 큰 문제는 국내에서는 조야를 막론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부당한 도발이라고 규탄하고 있는데, 한편으론 정권의 실력자가 독도 관련 내용의 삭제도 아니고 그저 발표시점의 연기를 부탁했다는 데 있다. 그 결과 독도를 지배하고 있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 배려를 요청한다는 인상을 주고, 일본 내에서 죄 없는 친한파 정치인이 사설을 통해 비난이나 받는 사태가 되어버렸다.⁶

III. 실효적 지배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중이라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요체다. 어떠한 역사적·지리적·법적 논쟁보다도 실효적 지배라는 사실이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힘이다. 한국이 독도를 60년 이상이나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가더라도 이기기가 어려울지 모른다는 초조함이 일본 내에 존재할 정도다. 또한 법학계에 '사실의

⁶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일본에 대해 발표연기를 제의하거나, 일본의 발표연기 제의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발표를 연기한 부담을 일본과 나누어 가지게 되는 동시에, 추후 발표된 내용에 자칫 한국도 동의했다고 해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규범력'이라는 개념이 있어 실제 재판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실효적 지배를 현실적으로 무시하기 어렵다고 한다.

한국이 독도에 시설물을 건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해 일본이 항의하는 것은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묵인했다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반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이 일본의 주장이나 행동에 일일이 반박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리한 법적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중이므로 굳이 반박하지 않아도 묵인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그만큼 실효적 지배의 힘은 강력한 것이다.

'실효적 지배'라는 표현은 언론을 통해 상당히 확산되어 있지만, 사실은 일종의 자기모순을 내포한 용어다. '실효적' 지배란 뭔가 그 '지배' 자체에 부족함이 있어서 굳이 실효적이라는 수식어를 추가했다는 인상을 준다. 영유권 문제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문제제기가 있는 경우에 흔히 실효적 지배라는 표현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 거제도나 완도에 대해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 않는다. 한국은 지배하고 있고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한다'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어폐가 있다. 현재의 지배 또는 실효적 지배가 완전하지 못해서 이를 강화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마치 '원을 더 둥글게 만들겠다'고 하면 지금 있는 원이 찌그러져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되는 것처럼. 그렇다면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표현이 모범답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이미 국내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관행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기에 이 글에서도 실효적 지배라는 표현을 사용하겠지만, 앞으로 실효적 지배나 이를 강화한다는 표현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⁷

⁷ '실효적 지배' 용어에 관한 내용은 외교부 재직 중 동료들과의 토론을 기초로 한 것이다. 한편, 박준호 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도 실효적 지배가 바람직하지 않은 용어라고 지적했으며(《한국경제》, 2005. 7. 19), 외교부 독도법률자문관으로 근무 경험이 있는 정재민 판사도 실효적 지배라는 용어의 폐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주권시현(display of sovereignty)'이라는 용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동아일보》, 2011. 5. 9 인터뷰 기사).

IV. 유소작위(有所作爲)

앞서 언급한 대로 사전협조 부탁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우월적 지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선언적인 것들로 제한된다. 반면 한국은 실제적 행동이 가능하다. 일본이 '말'로써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한국은 행동으로 영토주권의 적극적 행사를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관련 법령의 제정, 시설물의 건설, 고위인사의 방문 등이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일본 측이 더 이상의 공세를 전개하지 못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

물론 '말 대 말'로 응수하는 정도로 자제함으로써 저강도 공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영토주권의 적극적 행사를 통해 상대방의 언행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하는 방법이 균색하게 사전협조를 요청하는 방식보다 훨씬 정당하고도 바람직할 것이다. 필요할 때는 필요한 행동을 취한다, '유소작위'의 발상이다.

국제법에는 어느 시점 이후에 취해진 조치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 행동들은 실제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국제판례에서 결정적 기일에 대한 해석에 변화가 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일본 측에도 실효적 지배 강화 조치를 중시하는 주장이 존재하는 만큼, 한국이 실제적 행동의 옵션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일본에서는 센카쿠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978년 4월 센카쿠 주변 영해에 중국 어선단이 출현하여 일본 경비함의 퇴거명령을 거부하고 조업을 계속했다. 당시 하야시 슈조(林修三) 전 내각법제국장관은 언론기고를 통해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일본은 이를 상대할 필요가 없으며, 센카쿠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항로표지, 기상표지, 국기계양대 등 일본의 실효적 지배 의사를 표시하는 유형적(有形的) 시설을 조속히 건설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⁸

도쿄리는 지자체 차원에서 센카쿠 매입을 주장하여 국유화 조치의 도화에 불을 댕긴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전 도쿄도지사는 최근에도 센카쿠에 어선정박장이나 등대를 건설해서 중국의 반응을 떠보아야 한다고 공세적 주장을 되풀이했다.⁹ 최근 밝혀지기 시작한 센카쿠 국유화 조치의 전말에 따르면 이시하라는 2012년 8월 19일 노다 총리와의 면담에서 "센카쿠에 자위대를 배치하라고는 않았지만, 최소한 어선정박장이나 무선 중계기지를 세워달라. 가능하면 등대나 유인 기상관측소도 세워달라"고 하면서 실효지배 강화 조치의 언질을 받아내려고 했다.¹⁰ 노다는 이시하라에게 어선정박장은 절대 안 된다고 거절했지만, 면담 이후 센카쿠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되었다. 이에 관해 노다는 "어선정박장을 레벨10이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했던 것은 레벨1 정도의 방안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당시 정부관계자들에 따르면 노다가 생각했던 조치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등대의 발광부(發光部)를 LED로 교체하는 것이었다.¹¹

거꾸로 한국의 실제적 행동에 대해 일본 측은 민감하고도 복잡한 반응을 보인다. 일본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한국은 실효지배 강화를 향해 착착 움직이고 있다는 초조함을 드러내면서, 독도의 시설물 건설을 방치하면 한국의 불법점거를 용인해주는 결과가 되어버린다고 지적한다.¹² 2006년 7월 한국이 독도 주변에서 해류조사를 실시하자 일본도 독자적인 해양과

학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공으로 나왔다. 결국 (일본의 강공이 주효하여) 양국이 합동으로 방사능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한국 측 단독 조사에 의해) 기성사실(既成事實)이 축적되는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¹³ 한국의 실제적 행동이 일본의 입지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반증에 다름 아니다.

한편, 남쿠릴에서는 러시아의 실효적 지배의 정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일본의 반응은 더욱 복잡하다. 남쿠릴은 4개 섬의 전체면적이 약 5,000km²로 독도의

8 林修三, 1978. 5. 10, "尖閣諸島交渉の必要なし", 《産経新聞》

9 《日本經濟新聞》, 2013. 9. 11

10 "檢證. 尖閣國有化(3)", 《日本經濟新聞》電子版, 2013. 3. 27

11 "檢證. 尖閣國有化(4)", 《日本經濟新聞》電子版, 2013. 3. 28

12 《東京新聞》, 2011. 3. 11

13 사설 "韓國の調査に対抗措置を", 《産経新聞》, 2010. 4. 20

2,600배이고 1만 명에 가까운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쿠나시리·에토로후에는 3,500명 규모의 군부대가 주둔중이고 대함·대공 미사일 배치계획도 발표되었다. 러시아의 실효지배 강화 조치에 대해 일본은 불법점거의 기성 사실화(既成事實化)에 그때마다 항의하고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나가야 한다¹⁴고 목소리를 높일 뿐, 이렇다 할 대항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일본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영토문제의 존재를 인정하고 일본과 협상 중이기 때문에 일일이 대항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러시아의 실제적 행동이 ‘불법지배의 고정화가 진전되는’¹⁵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일본의 고민이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2010년 11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남쿠릴을 전격 방문했다. 일본은 커다란 충격에 빠졌고 간 나오토 총리는 ‘용서하기 어려운 폭거’라고 규탄했지만, 주러시아 대사 일시귀국 조치 이외에는 눈에 띄는 대항조치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일본 내부에 쓸데없이 러시아를 자극해서 강경한 반응을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는 일종의 자성론이 나온다.¹⁶⁻¹⁷ 러시아의 경우는 실제적 행동을 통해 어느 정도 일본에 대한 억지력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V. 과유불급(過猶不及)

독도에 대한 ‘조용한 외교’만큼 한국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용어도 드물 것이다. 자칫 정부의 언행이 ‘무대응’으로 비치는 경우에는 여론의 비판이 매섭기 그지없다. 지난날 일본은 자신들이 센카쿠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뭐라고 하든 무시하고 조용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독도를 조용히 관리하는 것이 득책이라고 한국에 훈수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이 센카쿠를 국유화하고 여기에 중

국이 반발해서 견잡을 수 없이 마찰이 고조되고 있는 오늘날 다시 그런 훈수를 두기는 그들도 머쓱해졌을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앞서 말했듯이, 실효적 지배란 압도적으로 우월한 지위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실제적 행동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큰 위력을 동반하므로 잘 조절해서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하다. ‘과유불급’의 분별력이다.

우선 첫 번째로 주의할 것은 원인제공의 순서다. 무릇 국가 간의 외교적 공방에는 원인제공의 순서가 중요하다. 남북관계나 북한 핵문제를 보더라도 지금 공이 누구 쪽에 있느냐 하는 것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힘겨루기의 중심일 경우가 많다. 물론 서로가 공은 상대방 쪽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보통이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남쿠릴 전격 방문은 일본 측에 매우 큰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일본이 그럴 만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분석이 일본 내에서조차 상당히 존재한다. 2006년부터 2009년 11월까지 러시아 측이 영토교섭 진전을 위한 시그널을 계속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은 2009년 5월 아소 타로(麻生太郎) 총리가 국회에서 러시아가 남쿠릴을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11월에도 러시아가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명기한 정부답변서를 각의(閣議) 결정했으며, 7월에는 ‘북방영토문제해결 촉진특별법’을 개정하여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새로이 추가한 것이 러시아를 자극하여 대통령 방문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¹⁸ 또한 마에하라 세이지 국토교통상이 2009년 9월 취임 이래 러시아의 ‘불법점거’를 반복하여 강조한 것이 대통령 방문의 원인의 하나가 되었음에 틀림없다고 하면서, 일본이 ‘불법점거’라는 말로 싸움을 거니까 러시아도 (대통령 방문은) ‘국내시찰일 뿐이다’라고 강렬하게 되받아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¹⁹

심지어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방문을, 영토문제에서 양보하지 않고 있는 일본을 흔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일축할 것인가 아니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신호로 받아들일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하면서, 공은

14 사실 “ミサイルまで配置するか”, 《産経新聞》, 2011. 3. 3

15 사실 “不法占拠の固定化許すな”, 《産経新聞》, 2011. 2. 8

16 “対立断ち切り対話に戻れ”, 《朝日新聞》, 2011. 2. 9 사실은 고위레벨의 정치대화도 끊어진 가운데 일본 정부로서는 러시아 요인들의 북방영토 방문을 중지시킬 대책이 없으며, 양국 간의 불신이 깊어가는 가운데 (일본 측의) 강경발언은 쓸데없이 러시아 측을 반발하게 만들고 영토교섭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17 “交渉の成果無にするのか”, 《朝日新聞》, 2010. 11. 2 사실은 일본이 (러시아의) ‘불법점거’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 러시아 측의 강경반응을 초래한 측면이 있으며, 러시아를 상대로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올바른 소리만 되풀이해서는 관계의 진전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18 東郷和彦 前外務省條約局長 인터뷰, 2011. 2. 9, 《朝日新聞》

19 若宮啓文, 2010. 11. 10, “正論ですめば苦勞はいらぬ”, 《朝日新聞》

일본 쪽에 있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다.²⁰ 양국의 공방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한 외국인인은 일본이 아무리 자기주장을 계속해도 러시아와의 마찰이 영원히 계속될 뿐이라고 하면서, 극단적인 말이지만 존엄 있는 주권국으로서 체면을 잃지 않고 (남쿠릴을) 포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²¹

한국 대통령의 독도 방문도 그 결과로 일본에서 위와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정도로 사전에 치밀한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분명히 일본 측이 원인제공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하에서 방문을 단행하고, 일본 내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며, 따라서 향후 일본이 지나친 언행을 삼가게 되고, 제3국인이 보더라도 일본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카드로 맞받아치고, 일본 여론의 한국에 대한 시각이 싸늘하게 식어간 것을 보면 낙차가 너무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VI. 비례의 원칙

실제적 행동으로 상대방에 대한 역지력을 발휘하기 위해 중요한 또 하나의 요건은 비례의 원칙이다. 상대방의 원인제공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한 행동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자칫 더 큰 맞대응을 초래하거나 거꾸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센카쿠 문제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서로 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대응과 맞대응이 점점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²² 중국은 일본에게 국유화 조치 취소를 요구하며 정상회담 개최를 거부²³하는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 배

경은 어떤 것일까.

일본은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郎] 외무성 사무차관-장즈쥘[張志軍] 외교부 부부장 채널을 비롯한 모든 루트를 동원하여, 이시하라 도쿄도지사가 매입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정부가 국유화하여 평온하게 관리하려는

것으로서, 현상의 '변경'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이라고 중국 측에 사전설명을 했다고 한다.²⁴ 그러나 시진핑[習近平] 신지도부 출범을 앞두고 권력투쟁이 정점에 달했던 상황에서 중국 측에 일본에 대한 유연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지 모른다.²⁵

도쿄라는 지자체 차원의 센카쿠 매입보다 정부에 의한 국유화가 훨씬 더 엄중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마치 센카쿠 영해를 중국 어선이 침범한 것과 중국 정부의 해양감시선이 침범한 것이 일본 입장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해석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이 국유화의 목적이라고 잘 설명하면 중국도 이해해 주리라고 판단했던 것일까.²⁶ 사실은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국유화를 밀어붙인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닐까. 당시 노다 정권의 중심에서 센카쿠제도 문제에 깊이 관여했던 나가시마 아키히사 전 총리보좌관은 미국의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로부터 국유화할 경우 중국의 격렬한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받았지만, 중국이 반발한다고 해서 국유화를 포기하는 선택지는 없었다고 회고했다.²⁷

이러한 과정에서도 수면 하에서는 상대방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도록 대응조치의 수준을 조절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이시

인터넷 언론의 당수토론에 출연하여 중국이 센카쿠 문제에 관하여 (일본이) 어떤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폭로했고(《讀賣新聞》, 2013. 6. 29), 얼마 후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이 6월 중순에 일본 정부에 대해 정상회담 개최의 조건으로 ① 일본이 영토문제의 존재를 인정하고 ② 양국이 센카쿠 문제를 유보하는 것을 요구했으나 일본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讀賣新聞》, 2013. 7. 2).

24 “檢證, 尖閣國有化(2)”, 《日本經濟新聞》電子版, 2013. 3. 26

25 그 밖에도 국유화 조치 열을 전인 2012년 8월 31일 아마구치 쓰요시[山口] 외무부 대신(副大臣)이 노다 총리 특사로 방중하여 다이빙권[戴秉國] 국무위원을 면담했을 때 (국유화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안겨준 것이 중국 측의 태도를 격화시킨 배경의 하나라는 분석이 있다(“檢證, 尖閣國有化(4)”, 《日本經濟新聞》電子版, 2013. 3. 28).

26 2012년 9월 센카쿠 국유화 조치의 10년 전인 2002년 4월에 일본 정부는 영토관리 강화 차원에서 민간인 소유의 센카쿠제도를 연간 2,256만 엔에 입찰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대해 중국은 일본 정부의 행위는 불법이고 무효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毎日新聞》, 2003. 1. 3·1. 7).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국가의 입찰'보다 격화된 형태인 '국유화' 조치에 대해 중국이 격렬하게 반발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27 長島昭久 前総理補佐官 인터뷰, 2013. 9. 8, 《日本經濟新聞》電子版

20 池田元博, 2011. 3. 6, “Gゼロ時代の対口外交”, 《日本經濟新聞》

21 Ronald Dore(런던대학 정치경제학원 명예 교수), 2011. 2. 20, “日口の病根を除く機会に”, 《東京新聞》, Dore 교수는 체면을 잃지 않고 포기하는 방법으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거론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일본이 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 국제법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하면서, 비록 패소하더라도 일본은 평화로운 법적 질서 구축에 공헌한 나라로 바뀔 것이고 어업 등의 실질적 이익을 지키기도 수월해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22 일본은 2008년 12월 중국 국가해양국의 해양감시선이 처음으로 센카쿠 영해를 침범한 것이 시작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2010년 9월 센카쿠 영해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 어선 선장을 일본이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한 후 재판에 회부하려 한 것과 2012년 9월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 조치가 시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3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013. 6. 28

하라 도쿄도지사는 센카쿠를 매입하여 어선정박장을 건설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대해 노다 총리는 어선정박장 건설은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한다고 보고, 센카쿠 국유화에 더하여 등대 발광부(發光部)를 LED로 교체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려 했다. 그러나 LED 교체조차도 중국을 자극한다고 본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상과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부총리가 노다를 설득하여 국유화 조치만 취하는 선에서 자제하도록 했다고 한다.²⁸

VII. 행동의 대가

한쪽의 대응조치가 상대방으로부터 훨씬 강력한 맞대응을 초래한 대표적 사례를 또 다른 센카쿠 문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0년 9월 7일 일본은 센카쿠 영해에서 불법조업 단속에 선체충돌 등으로 저항하며 도주하던 중국 어선 선장을 공무집행방해 용의로 체포했다. 선장의 신병은 9월 9일 관할 나하 지방검찰청으로 송검되었고, 이러한 경우 오랜 관행은 일본의 사법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벌금 부과 후 추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8년 12월 중국 해양감시선의 센카쿠 영해 최초 침범 이후 중국 측의 적극적 해양권의 주장 동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일본 정부는 9월 19일 극히 이례적으로 선장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조치를 단행했다.

구속기간 연장은 사법절차에 회부하겠다는 명확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되었고, 이를 지켜보던 중국 정부는 즉각 보복조치에 나섰다. 대표적인 것이 회토류의 대일수출 정지였고 그 밖에도 일본과의 각종 공식회담 중지, 민간교류 중지 등이 잇따랐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놀라움을 안겨준 것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일본 기업 후지타상사의 일본인 직원 4명을 군사시설 촬영 등의 혐의로 체포한 조치였다.

충격에 빠진 일본 정부는 9월 23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결국 사법절차 회부를 단념하기로 결정했다.

²⁸ “檢證、尖閣國有化(4)”, 《日本經濟新聞》電子版, 2013. 3. 28

9월 24일 나하 지검 차석검사가 처분보류 결정을 발표하고 선장을 중국으로 강제퇴거 조치했다. 나하 지검은 기자회견에서 선장에게 ‘계획성이 없었고, [...] 일본 국민에 대한 영향과 향후 일중관계를 고려하여’ 처분보류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압력에 밀려서 당초 결정을 번복한 정권 상층부에 대한 불만 표시 차원에서 법무성 지휘부가 기자회견 발표문에 외교적 측면을 고려하여 처분보류 결정을 내렸다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삽입했다고 한다. 당시 간 총리, 센고쿠 관방장관 등은 어디까지나 검찰이 국내법에 따라 판단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검찰에 대해 처분보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자인하고 있다.²⁹

그 밖에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 조치에 대해서 중국은 정부 선박의 센카쿠 수역 내 시위행동 상시화(常時化)로 맞대응하고 있다. 중국 국가해양국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국유화 조치 이후 1년 동안 중국 해양감시선이 센카쿠 영해 순찰을 59회 실시했고 영해 내에 최장 28시간 36분 머물렀으며 해안으로부터 최대 0.28해리(518m)까지 접근했다고 한다.³⁰

한편, 상대방의 맞대응으로 인해 구체적인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실제적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남쿠릴에 관한 몇 가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다.

²⁹ 당시 오카다 외상과 마에하라 국토교통상은 사법절차를 통해 분명히 매듭을 짓자고 주장했으나, 센고쿠 관방장관이 정치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오노 법무성 사무차관에게 그러한 요망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産經新聞》, 2013. 9. 24; 외무성 간부에 따르면 당시 간 총리가 중국의 압력에 맥없이 무너져서 선장 석방을 지시했고,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이 처분보류로 석방한다는 법논리 구성을 했다고 한다. 《産經新聞》, 2013. 9. 26

³⁰ 《연합뉴스》, 2013. 9. 10

³¹ 《조선일보》, 2001. 10. 12

³² 《경향신문》, 2001. 6. 21; 《세계일보》, 2001. 6. 22; 《조선일보》, 2001. 8. 2

2000년 12월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남쿠릴 수역을 포함한 러시아 측 EEZ 수역 내 어획쿼터 및 조업척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자, 2001년 초 일본은 한국에 대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쿠릴 수역에서의 조업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한국이 요청을 수용하지 않자 일본은 러시아와의 물밑 협상을 통해 러시아가 2002년부터 남쿠릴 수역에서 한국을 비롯한 제3국에 조업허가를 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³¹ 이에 더하여 일본은 한국 측의 비협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일본의 산리쿠 수역(동북지방 및 북해도의 태평양 쪽 수역)에서 한국의 쫓치 조업에 대한 불허 조치를 취했다.³²

이처럼 일본이 구체적인 불이익을 안겨주는 조치로 맞대응해오며 따라, 2001년 말 한국은 어쩔 수 없이 향후 남쿠릴 수역에서 조업하지 않기로 일본 측에 약속하는 조건으로 산리쿠 수역의 쾅치 조업 불허 조치를 취소시킬 수 있었다.³³

이와 대비되는 사례도 있다. 2011년 2월 한국과 중국의 기업이 남쿠릴에서 러시아와 공동사업에 참여할 것이라는 보도³⁴가 나오자 일본은 한국 정부에 대해 남쿠릴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했다.³⁵ 일본으로서는 제3국 기업이 러시아의 행정권에 복속하는 형태로 현지에서 활동하는 것이 러시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시켜준다는 측면에서 반갑지 않은 일이지만, 민간기업의 상업활동인 만큼 당사자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이외에 대응할 수단이 거의 없다. 외국기업이 아닌 일본 국내기업 중에도 정부 입장에 반하여 남쿠릴 내의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마땅한 규제수단이 없으며 기껏해야 지방언론에 비판 기사를 게재하는 등의 형태로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정도라고 한다.³⁶

정당한 이유와 실제 이익이 있는 경우이고 불이익의 우려도 별로 없다면, 아무리 러·일 양국 사이에 영유권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외국기업이 러시아의 실효적 지배에 따르는 형태로 현지에 진출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당해 외국기업이 일본과도 거래가 있는 경우라면 혹시라도 불이익의 우려는 없는지 남쿠릴 진출에 앞서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자. 2011년 5월 24일 국회 독도특위 강창일 위원장 등 야당의원 3명이 남쿠릴의 쿠나시리 섬을 방문했다. 일본은 즉각 한국 정부에 항의했고, 한국은 개인적 차원의 방문으로 정부방침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³⁷ 일본 언론들은 비우호적 행위라고 하면서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한국 국민이나 정치인이 러시아의 비자를 취득해서 러시아가 지배 중인 남쿠릴을 방문하는 것은 자유며 아무런 문제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민간인도 아닌 독도특위 소속 국회의원이 국제회의나 행사참석과 같은

33 《朝日新聞》, 2001. 12. 29; 《세계일보》, 2001. 12. 29

34 《연합뉴스》, 2011. 2. 16

35 《한국일보》, 2011. 2. 18

36 필자가 일본 정부 관계자로부터 청취한 내용

37 《한국일보》, 2011. 5. 26

분명한 명분도 없이 그저 양국이 분쟁 중인 땅을 현지시찰해보겠다는 행동은 경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한 불이익도 없지만 특별한 이익도 없는 일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만 있고 아무런 이익이 없는 일이다. 일본에게 한국에 대한 가슴속의 응어리만 하나 더 만들어준 셈이다.

한국 국회의원들의 방문을 러시아는 이 섬이 자국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기록 축적용으로 썼을 뿐, 외부로 홍보하지 않는 현명함을 발휘했고, 일본과 센카쿠로 영토분쟁 중인 중국은 국영 TV가 보도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인다. 반면, 한국에선 외교부의 담당 부서 직원만이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했을 뿐,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한 채 묻혀버렸다고 따끔하게 지적한 한 언론인의 칼럼이 돋보였다.³⁸

VIII. 현명한 홍보

독도 문제에 관한 현명한 홍보란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국제적으로 독도에 분쟁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다. 국제적 홍보전은 영유권에 도전하는 쪽과 영유권을 지키는 쪽이 완전히 그 의미가 다르다. 지키는 쪽은 홍보를 통해서 아무리 많은 외국인들의 지지를 확보하더라도 그것으로 영유권 문제가 결착되지는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도전하는 쪽은 외국인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저 한일 간에 분쟁이 있구나 하는 인식만 갖게하면 그것만으로도 성공이다.

예를 들어 《뉴욕타임스》 광고,³⁹ 타임스스퀘어 전광판 광고,⁴⁰ 뉴욕 한인세탁인협회 비닐포장지 광고,⁴¹ 뉴욕 관광버스 전광판 광고,⁴² LA 고속도로 빌보드 광고⁴³

38 이하원, 2011. 6. 11, "쿠릴 열도의 한국 국회의원", 《조선일보》

39 'Dokdo is Korean Territory'(2005. 7), 'Do you Know?'(2008. 7) 등

40 'Stop Island Theft'(2008. 7), 'Dokdo, this is part of Korea; Visit Dokdo, the beautiful island of Korea'(2010. 3)

41 세탁용 비닐포장지 25만 장에 'DOKDO ISLAND IS KOREAN TERRITORY' 광고를 인쇄하여 3천여 개 한인 세탁소에 배포

42 뉴욕 한인관광업체가 자사 버스 2대에 'Dokdo located in the East Sea is a part of Korean territory' LED 광고판 부착 운행 (2009. 4)

43 한국 교민이 'Dokdo Island Belongs to KOREA' 광고 게시 (2010. 1)

등이 있었지만, 이를 본 외국인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생각 해볼 필요가 있다.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보다는, 뭘지 모르지만 분쟁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2008년 《뉴욕타임스》 독도 광고를 본 미국 의회도서관 사서가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Liancourt Rock’으로 지명 변경을 추진하려 했다고 한다.⁴⁴ 그리고 세탁용 비닐포장지 광고는 《뉴욕타임스》에 “On City’s Plastic Bags, an Old and Distant Dispute”라는 기사(2009. 3. 21)와 일본총영사관 홍보관의 “The Disputed Islands”라는 투고(2009. 4. 8)로 연결되었다.

광고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홍보도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들에게 공연히 분쟁지역의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나 홍보활동에 대해 이를 반박하는 차원의 홍보는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한일 양측의 홍보 공방을 지켜보는 외국인은 결국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독도에 관한 현명한 홍보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외국의 저명한 학자들이나 관련 연구기관과 학교 등에 대한 지원, 자료 제공 등이 바람직한 홍보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범위 내에서 라고 하더라도 정말 독도 영유권 강화에 도움이 되는 홍보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은 홍보를 가려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국제적 홍보활동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독도 문제처럼 우리가 지키는 이슈 보다는 역사인식이나 동해 표기처럼 우리가 도전하는 이슈일 것이다.⁴⁵ 타임스퀘어와 LA 고속도로 입간판 광고의 내용을 독도가 아닌 ‘일본해는 동해다’로 바꾸는 것⁴⁶이나, 《월스트리트저널》에 독일과 일본의 역사인식 비교 광고(2013. 8, ‘Making Peace with History’), 《뉴욕타임스》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광고(2012. 3, ‘Do You Hear?’)는 그런 점에서 효과적인 홍보라고 하겠다.

44 김동석 뉴욕·뉴저지 한인유권자센터 소장 인터뷰, 2010. 2. 11, “美 신문에 독도 광고 내는 일 재고해야”, 《조선일보》

45 외교부에서 독도법률자문관으로 근무했던 정재민 판사는 인터뷰에서 영토를 점유한 나라가 전 세계를 상대로 홍보에 나선 경우는 찾기 어려우며, 영토문제는 여론이 아닌 국제법 논리에 따른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2013. 8. 12

46 정우상, 2010. 4. 15, “독도 대신 동해를 써넣자”, 《조선일보》

이 경우에도 국제사회에서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설득력을 발휘하는 홍보를 하도록 주의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 외국 언론인은 기고를 통해 한국이 국제적인 논쟁의 장에서 효과적으로 주장을 펼치려면 한국식 화법만 고집해선 안 되며, 자신이 생각하는 ‘진실’만을 매번 강요하는 것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충고하면서, 《뉴욕타임스》의 동해 표기 광고가 이미지나 카피 모두 시선을 끌기 어려운 작품이었고, 반크(VANK)는 영어권 사람들에게 ‘웡크(wank)’라는 비속어를 떠올리게 하므로 그 이름과 발음만으로도 종종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의 국제 홍보활동이 해외의 시각은 무시한 채 오로지 한국인들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⁴⁷

흥미로운 현상은 남쿠릴 문제 이외에는 그다지 제3국 홍보를 하지 않던 일본이 최근 독도, 센카쿠 마찰이 고조되면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점이다. 2013년 7월 ‘영토·주권의 내외발신에 관한 유식자(有識者) 간담회’가 제3국에 대해 영토문제에 관한 일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고,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조만간 해외홍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11개 언어로 일본의 입장을 호소함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국제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로 했다.⁴⁸ 또한 일본 정부는 2014년도 예산안에 영토보전 대책비를 10억 엔으로 대폭 증액하여 계상하기로 했다.⁴⁹ 이는 센카쿠 국유화 조치 이후 중국의 적극적 해상 시위활동과 국제 홍보활동에 자극을 받은 대항조치의 성격이 농후하지만,⁵⁰ 영토문제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중국과의 국제 홍보경쟁에 뛰어들게 됨에 따라 국제사회에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부작용도 어느 정도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⁵¹

47 Andrew Salmon, 2009. 5. 28, “조롱받는다. 코리아 홍보”, 《조선일보》

48 《日本經濟新聞》, 2013. 10. 13

49 《産經新聞》, 2013. 8. 28

50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해양정책·영토문제담당장은 센카쿠에 영토문제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한편으로 중국이 세계를 향하여 사실과 다른 발신을 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 발신량도 중국이 많고 일본이 밀린다고 하면서, 영토문제에 관한 대외 홍보, 특히 영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讀賣新聞》, 2013. 5. 8

51 《요미우리신문》은 사실을 통해 일본이 센카쿠제도 관련 홍보전에 뒤처진 것은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며,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중국과 같은 레벨에서 서서 공방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그러한 방침은 견지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정보발신 측면에서 팔짱을 끼

IX. 독도 문제의 다중적 성격-종합적 구상력(構想力)의 필요성

독도 문제란 과연 어떤 문제인가. 독도 문제는 영토문제인가? 일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민간 차원에서는 영토문제로 보고 연구하고 논의할 수 있겠지만,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 독도 문제는 영토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 정부의 주관적 인식과는 달리 국제사회의 시각에서는 이미 독도 문제는 영토문제로 비쳐지고 있다. 한국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사실상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영토문제로서 국가 간의 일반적인 해결 방식은 무력을 통해 결착짓거나, 협상을 통해 타협하거나, 또는 현상유지 상태로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다.

독도 문제는 역사문제인가? 한국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본은 다르다. 한국은 독도가 일제에 의한 불법 식민지 지배와 주권 침탈의 첫 번째 희생이며 상징이라고 생각한다. 국제사회에 이러한 독도의 역사성을 홍보하면 어느 정도 공감과 이해를 확보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으로 독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정말 바람직하게도 장차 일본이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진정한 반성과 배상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으로 독도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독도 문제는 국제법문제인가? 독도에 영유권 분쟁이 존재한다면 국제법이 중요할 것이고,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제법적 측면의 중요성은 저하될 것이다. 영토문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일도 없다는 한국에서는 독도 문제에서 국제법적 측면의 중요성을 가볍게 보는 풍조가 있다. 그러나 무력충돌이 발생하여 유엔 안보리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처럼, 한국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국제법적 역량을 배가하는 데 지금보다 몇 배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⁵² 그러

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중 양국은 다양한 언어로 국제여론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일본도 전략적이고 본격적인 해외홍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讀賣新聞》, 2013. 7. 6

한 맥락에서라면 독도 문제는 국제법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간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무력의 사용을 배제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원칙이기도 할 뿐더러, 가까운 우방국 사이에는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하다. 그렇다면 결국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거나 현상대로 관리하는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에도 국제법이 그나마 유일하게 객관성을 담보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영유권 분쟁의 해결은-또는 영유권 강화도 마찬가지로-국제홍보나 역사논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제법적 논리와 설득력이 가장 주효한 무기일 수밖에 없다. 물론 국제법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는 실효적 지배다.

독도 문제는 정치외교문제인가? 그렇다, 대단히 높은 수준의 정치외교문제다. 독도 문제는 민감하고도 복잡하며, 영토문제, 역사문제, 국제법문제라는 다중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다가, 일본의 패전처리라는 차원에서 남쿠릴 문제, 센카쿠 문제와도 깊이 연동되어 있는 문제다. 어느 한 측면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며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정치외교 문제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독도 문제에 대한 현명한 관리와 대처를 위해서는 고차원적인 정치외교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종합적 구상력'이 필요하다. 특히 국민여론이라는 중요한 요소를 고려한다면 국내정치적 측면까지도 종합적으로 담아내는

구상력이 필요하다. 여론에 영합하는 포퓰리즘과 근시안적인 대중요법으로 반응해서는 헤어날 수 없는 늪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갈 뿐이다. 필요한 것은 해야 한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은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유소작위하되 과유불급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가 자신감과 용기와 각오를 가지고 정면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안심시키는 자세가 관건이다.

52 박춘호 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은 승소 확률이 100%가 아닌 한 자기 수중에 있는 영토를 가지고 재판소를 찾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국내법 체계에서도 재판의 결과는 예단하기 어려운데, 국제규범은 국내법에 비하면 훨씬 영성하고, 특히 영토분쟁에 관해서는 성문규범이 전무하며 판례에서 나온 원칙이 몇 가지 있을 뿐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국정브리핑》, 2005. 3. 2. 옳은 지적이다. 그러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는 사태는 극력 방지하되, 어디까지나 만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국제법적 역량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X. 컨트롤 타워

국내정치 측면까지도 고려한 종합적 구상력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외교 부를 비롯한 정부 내 관련부처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의사결정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현재 편제상으로는 국무총리실에 설치되어 있는 독도영토 관리대책단이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고도의 정치외교적 판단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행정적인 조율 기능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은 청와대의 입장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국무총리실이 아닌 청와대 차원에서 종합적 구상력을 발휘할 컨트롤 타워 기능을 담당해주어야 한다.

특별히 청와대 내에 독도 문제 대책반이나 T/F를 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 종합적 구상력이란 단지 독도 문제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외교안보를 비롯하여 중요한 국정 어젠다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 조직이 이상적으로 설계되었다면, 예를 들어 NSC와 같은 '상설' 조직이 중심이 되어서 독도 문제 관련부처는 물론, 청와대 내에서도 외교안보 이외에 정부, 홍보 비서실까지 함께 참여하여 대책을 협의·결정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로 분리되어 있는 체제로는 아무래도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내부적으로 검증해보고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XI. 맺음말

이 원고를 마무리하면서 신선한 신문기사 제목이 눈에 띄었다. “일본은 노리지만 …… 우리는 누린다”. 경상북도가 독도 알리기 전략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일본의 분쟁화 기도에 영유권 주장으로 맞서는 대신, 콘서트, 패션쇼, 차전놀이 등 문화예술·체육행사를 벌인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제사

회를 대상으로 ‘독도는 우리 땅’임을 알리는 광고나 우표 발행 등을 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라고 하면서, 지난 5월 열린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 경기’에 참여한 미국 선수가 “독도의 아름다움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하는 대목이 ABC, CBS, NBC 등 미국의 지상파 방송에서 방영되고 있다는 것이다.⁵³

상대는 노리지만 우리는 누린다. 얼마나 여유 있고 자신감 있는 태도인가. 그리고 굳이 한국 국민의 입으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외치기보다는 외국인이 ‘독도가 아름답다’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세련된 방식인가.

한편, 위의 기사가 나간 다음 날인 10월 23일 일본 정부가 독도, 센카쿠 등에 관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 인테넷에 올렸다. 이 글의 8항에서 소개한 홍보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한국 언론에서 일본의 도발을 비판하는 기사와 사실이 잇달았다. 정부에 더욱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는 의견에서부터 일본의 또 다른 도발을 부추기기보다는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다.⁵⁴

그간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 축적해온 실제적 행동은 결코 부족할 수준이 아니다. 독도 경비대 상주, 독도 천연기념물 지정(198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1997), 독도 접안시설 준공(1997), 독도 기념우표 발행(2003), 독도 입도 허가제 철폐(2005), 28개 독도 영토관리사업 수립(2008)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일본도 외무성 홈페이지 개편, 외교청서와 망위백서 기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영토문제 전담조직 신설, 국제홍보 강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선언적 행동에 불과할 뿐 실제적 행동으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훼손시킬 수는 없는 것들이다.

일본의 집요한 도발에 분노하는 국민감정은 당연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며, 동시에 국민도 정부의 전략적 대응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⁵⁵에 필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일

53 《중앙일보》, 2013. 10. 22

54 사설 “외교부, 그런 물렁한 자세로 독도 지켜내겠나”, 《세계일보》, 2013. 10. 24; 사설 “일년 365일 하루하루가 항상 독도의 날”, 《한국일보》, 2013. 10. 25

55 사설 “독도문제 대응원칙 확실히 해야”, 《한국일보》, 2005. 3. 11

본의 동영상 유포에는 따끔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보다 한발 앞서 한국이 독도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한 만큼 또 다른 홍보조치로 맞대응할 필요는 없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제적 행동으로 대응하면 된다. 언론에서 예시했듯이 방파제나 입도지원센터 확충도 있고⁵⁶ 추진 중이던 외교일정을 취소하거나 재조정하는 방법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10월 25일 당초 비공개 예정이었던 독도 방어훈련을 전격 공개하는 방법으로 대응조치를 취했다. 매우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

어떤 대응조치가 적절하고 효과적일지, 원인제공의 순서나 비례의 원칙 등에 비추어 혹시라도 더 큰 불이익은 없을지,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게 될지, 독도 문제의 다중적 성격을 고려한 종합적 구상력을 가지고 정부 내의 컨트롤 타워에서 치밀하게 분석하고 판단해 나가야 한다.

지금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 문제로 대응과 맞대응의 수렁에 빠져 있다. 동북아지역에서의 세력전이(勢力轉移) 현상의 당사자인 두 나라가 혹시라도 불의의 충돌을 빚지는 않을지, 그로 인해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악영향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국제사회가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결코 역외자일 수 없는 한국으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 스스로를 경계할 부분이다. 이것이 종합적 구상력을 가진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이유다.

56 앞의 사설, 《한국일보》, 2013. 10. 25

국문 초록

한일관계가 사상 최악이라는 우려가 많다. 지금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잠복해 있던 한일관계의 근본모순(영토와 역사인식 문제 등)이 일거에 표면화되고 있어서, 65년 이래의 한일관계 1.0을 대체하는 한일관계 2.0을 모색하는 진통기라 하겠다. 한일 간 대표적 마찰사안인 독도 문제는 센카쿠, 남쿠릴 등 동북아 영토마찰의 맥락에서 살펴볼 때 유용한 교훈을 도출할 수 있다. 교과서 문제는 그 중심이 역사인식 문제에서 독도 문제로 옮겨져 버렸다. 국내 여론의 압력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 교과서에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협조'를 요청하는 패턴으로 대응했다. 일본이 관련내용을 삭제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한국이 실질적으로 지배중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일본 측에 외교적 카드를 만들어주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사전협조' 요청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신 일본의 도발에 대해 한국이 실제적 행동으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본이 더 이상의 공세를 전개하지 못하도록 억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필요할 때는 필요한 행동을 취한다는 유소작위(有所作爲)의 발상이다. 다만,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듯이 이러한 실제적 행동은 지나침이 없이 적절한 수준이 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대방이 분명히 빌미를 제공했다는 모양새가 되도록 하는 '원인제공의 순서'와, 상대방의 행동에 비해 지나치게 과한 대응이 되지 않도록 하는 '비례의 원칙'에 주의하고, 자칫 상대방으로부터 훨씬 강력한 맞대응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행동의 대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국제홍보는 도전하는 쪽에 비해 지키는 쪽에는 별로 유리할 게 없으므로,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독도 문제는 영토문제, 역사문제, 국제법문제, 정치외교문제로서 다중적 성격을 갖는 만큼, '종합적 구상력(構想力)'이 긴요하며, 유소작위와 과유불급의 균형을 맞추고, 적절한 수준의 홍보와 국내여론 대책 등 국내정치적 측면까지 모두 고려하여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

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제어〉

한일관계, 독도, 센카쿠, 다오위다오, 남쿠릴, 북방영토, 영토문제, 실효적 지배, 교과서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센카쿠 국유화, 메드베데프 대통령 남쿠릴 방문,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독도 홍보

ABSTRACT

Territorial Conflicts in Northeast Asia and Its Lessons

Cho, Seiyong
Professor, Dongseo University

Concerns are mounting that Korea-Japan relations is at its worst. Fundamental issues between the two countries which have remained dormant since ties were normalized in 1965, including territorial and historical issues, are now resurfacing concurrently. The relationship is consequently going through a painful period in search of its next stage after remaining in the previous stage since 1965. Other territorial conflicts in Northeast Asia, such as those over Senkaku Islands and Southern Kuril Islands, may provide useful lessons for the Dokdo issue, which is a major cause of dis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The focus of the textbook controversy has shifted from a matter of differing perceptions over history to Dokdo. Due to public pressure,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dealing with the issue of Dokdo by making “cooperation requests” to Japan beforehand in order to prevent descriptions of Dokdo from being included in Japanese textbooks. Such a pattern is not advisable because Japan is not likely to remove descriptions related to Dokdo from its textbooks. It could also provide diplomatic opportunities for Japan while undermining Korea’s superior position of retaining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Instead, Korea should take actual measures to reinforce such control and deter Japan from raising provocations over Dokdo. Actions must be taken when necessary. Only, they must be carefully taken to a degree that does not go overboard since too much is as bad as too little. Attention should be paid as to which side provides the cause of conflict so that the opposing party

clearly becomes the provider. Attention should also be paid to observing ‘proportionality’ so that reponses are not excessive compared to the opposing party’s actions. The price of each action must be considered as well in order not to suffer from unexpectedly stronger counteractions. Decisions must be made wisely so as to minimize the side-effect of Dokdo being recognized as a territory of dispute, because in the realm of international public relations, the challenger is never much at an advantage compared to the defender. The Dokdo issue is multiplex, involving areas of territory, history, international law, politics, and diplomacy. It is therefore vital to ‘plan comprehensively,’ which means taking appropriate actions when necessary and simultaneously maintaining an adequate level of public relations not only internationally, but locally as well in order to take public opinions into account. To do so, the Blue House should serve as a strong control tower in addressing the Dokdo issue.

Keywords

Korea-Japan relations, Dokdo, Senkaku Islands, Diaoyudao Islands, Southern Kuril Islands, Northern territory, Effective control, Textbook issues,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Nationalization of Senkaku Islands, Russian President Medvedev’s visit to Southern Kuril Islands, Korean President Lee’s visit to Dokdo, Public relations on Dokdo

참고문헌

[한국어 문헌]

정재정, 2013, 「한일관계의 위기와 극복을 향한 오디세이」, 『영토해양연구』 여름호, 동북아역사재단

김동석(뉴욕·뉴저지 한인유권자센터 소장 인터뷰), 2010. 2. 11, “美 신문에 독도 광고 내는 일 재고해야”, 《조선일보》

이하원, 2011. 6. 11, “쿠릴 열도의 한국 국회의원”, 《조선일보》

정우상, 2010. 4. 15, “독도 대신 동해를 써넣자”, 《조선일보》

Andrew Salmon, 2009. 5. 28, “조롱받는 코리아 홍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2001. 6. 21; 2013. 10. 8

《국민일보》, 2011. 3. 29

《국정브리핑》, 2005. 3. 2

《동아일보》, 2010. 5. 18; 2011. 5. 9

《세계일보》, 2001. 6. 22·12. 29; 2013. 10. 24

《연합뉴스》, 2011. 2. 16; 2013. 9. 10

《조선일보》, 2001. 8. 2·10. 12; 2013. 8. 12

《중앙일보》, 2013. 10. 22

《한국경제》, 2005. 7. 19

《한국일보》, 2005. 3. 11; 2011. 2. 18·5. 26; 2013. 10. 25

[일본어 문헌]

林修三, 1978. 5. 10, “尖閣諸島交渉の必要なし”, 《産経新聞》

若宮啓文, 2010. 11. 10, “正論ですめば苦勞はいらぬ”, 《朝日新聞》

池田元博, 2011. 3. 6, “Gゼロ時代の対口外交”, 《日本経済新聞》

Ronald Dore(런던대학 정치경제학원 명예교수), 2011. 2. 20, “日口の病根を除く機会に”, 《東京新聞》

《讀賣新聞》, 2010. 7. 29; 2013. 5. 8·6. 29·7. 2·7. 6

《東京新聞》, 2011. 3. 11

《毎日新聞》, 2003. 1. 3·1. 7

《産経新聞》, 2010. 4. 20; 2011. 2. 8·3. 3; 2013. 8. 28·9. 26

《日本経済新聞》, 2013. 9. 11·10. 12·10. 13

《日本経済新聞》電子版, 2013. 3. 26·3. 27·3. 28·9. 8

《朝日新聞》, 2001. 12. 29; 2010. 11. 2; 2011. 2. 9; 2013. 10. 7





1905년 국제사회와 독도

- 박배근 | 무주지 선정의 요건에 관한 1905년 전후의 학설
- 김관원 | 1905년 독도편입 주장의 허구성에 관한 고찰

무주지 선점의 요건에 관한 1905년 전후의 학설

박배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머리말

잘 아는 바와 같이 일본은 1905년 1월 28일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다는 각의 결정을 하였으며, 다음 달 15일에 내무대신이 시마네(島根)현에 대하여 독도 편입의 취지를 관내에 고시하도록 훈령을 보냈다. 이에 따라 시마네현은 같은 달 22일에 이른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독도 편입 사실을 고시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주권 주장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 일본 외무성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독도 관련 설명은 “이 각의 결정에 의하여 우리나라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하였습니다.”라고 하고 있다.¹ 외무성의 설명이 “다케시마를 영유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하였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쉽게 추정된다. 일본 정부로서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고유영토를 “무주지”로서 선점한다는 모순을 피하기 위하여 “영유의사를 재확인”하였다는 식으로 독도 편입조치

¹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g_hennyu.html, 2013년 9월 30일 방문.

와 독도에 대한 고유영토 주장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이 1905년에 독도를 “편입” 조치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공문서를 보면 일본은 분명히 독도를 “무주지”로서 “선점”한다는 법적 형식을 취하였다. 한국보다 앞서 국제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국제법적 지식을 습득한 일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섬을 무주지로 “선점”함으로써 일본 영토로 편입하는 조치를 취한 적이 있고, 독도에 대한 편입 조치 역시 그 예외가 아니다.² 그런 의미에서 일본 외무성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영유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라는 표현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로서는 “독도를 무주지로 확인하여 선점한 행위”의 법적 의미를 “영유의사의 재확인”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1905년 1월 28일의 각의 결정의 내용을 보면 명백히 무주지 선점의 논리를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의 영토 ‘편입’의 출원이 있어서 검토가 진행되었으며 독도를 ‘일본 소속’으로 한다는 등의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각의 결정을 “영유의사의 재확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일본이 독도의 ‘선점’을 독도에 대한 영역권원으로 내세운다면, 당연히 그것이 국제법상의 ‘선점’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 문제는 시제법의 원칙에 따라 일본의 독도 ‘편입’ 조치가 있었던 1905년 시점의 실정국제법에 따라 답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당시의 실정국제법은 선점의 요건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일본의 독도 ‘편입’이 당시의 실정국제법이 요구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다. 국제법상 유효한 선점 행위의 요건에 관한 당시의 실정국제법이란 관습국제법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선점의 요건에 관한 당시의 관습국제법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습국제법의 확인은 이론상으로는 국가의 법적 확신과 국가 실행의 조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실제로 관습국제법의 적용이 문제되는 국제법적 사안에서 국가의 법적 확신에 관한 조사나 국가 실행의 검증이 이루어지는 일은 잘 없다. 저명한 국제법학자의 저술이나 국제적인 판결

² 이 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으로 허영란, 2003, 「명치기 일본의 영토 경계 확정과 독도-도서 편입 사례와 “죽도 편입”의 비교」, 『서울국제법연구』 제9권 2호, 1~32쪽 참조.

등을 관습국제법 인식의 자료로 사용하여 관습국제법의 존재 증명과 내용 확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³ 독도 문제도 예외가 아니어서, 한일 양국 간에 독도의 선점 요건에 관한 논란이 있는 경우에도 선점의 요건에 관한 당시의 실정국제법을 확인하지는 요구는 보이지 않는다. 선점의 대상이 무주지일 것, 영유의사를 가지고 선점할 것, 선점 대상 토지를 실효적으로 지배할 것 등을 당시의 실정국제법상의 선점의 요건으로 인정하고, 일본의 독도 '편입'조치가 이런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따지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언제나 문제는 1905년의 시점에 독도가 '무주지'였는지의 여부로 돌아가게 된다. 선점 요건에 관한 당시의 관습국제법의 내용에 관하여 한일 양국 간에 유일하게 견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는 관련 국가에 대한 '통고'가 선점의 요건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 역시 당시의 실정국제법을 확인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은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이 글은 일본의 '독도' 편입의 국제법상의 효력 여부는 당연히 1905년 당시의 선점 요건에 관한 실정국제법의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이 문제에 관한 당시의 영향력 있는 국제법적 저작들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선점의 요건에 관한 당시의 실정국제법규칙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며, 특히 한일 양국 간에 의견의 대립을 보이고 있는 '통고의 요건성'에 관한 당시 국제법학자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선점의 요건에 관한 당시의 실정국제법의 내용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1905년을 전후한 시점에 있었던 무주지 선점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실제로 선점의 요건에 관한 관습국제법규칙으로 기능하고 있었던 규범의 내용을 실증적으로 밝혀야 한다. 여기서는 그런 실증적인 검증의 전 단계로서, 적어도 우수한 국제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선점의 요건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는지를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³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大沼保昭, 2005, 『國際法』, 東信堂, 90쪽

II. 국제법학자의 저술과 실정국제법의 관계

이 글은 19세기 말을 전후한 시기의 우수한 국제법학자들의 저작 속에 선점의 요건이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당시 선점의 요건에 관하여 우수한 국제법학자들은 실정국제법규칙의 내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같다.

말할 것도 없이 국제법학자들이 '실정국제법규칙'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 그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그들의 저술 속에 서술한 내용이 실제의 실정국제법규칙이라는 보장은 없다. 국제법학자들의 실정국제법규칙에 관한 인식이 순전히 관념상의 것으로서 사실적 조사와 같은 실증적 검증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경우에 그들이 말하는 또는 그들의 저술 속에 서술한 이른바 '실정국제법규칙'은 실제로 국가들 사이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정국제법규칙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정국제법규칙'에 관한 이들 우수한 국제법학자들의 저술이 중요한 것은 국제법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 역시 이들 학자들의 저술을 권위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제재판에서 특정한 국제법규칙의 존재여부나 효력이 다투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요한 국제법학자가 자신의 저서 속에서 '실정국제법규칙'으로 제시해놓은 것을 국가가 검증해보는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는 우수한 국제법학자의 저술 속에 실정국제법규칙으로 제시되어 있는 규범들을 그대로 실정국제법으로 받아들여서 국제법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독도 문제에 관하여 선점의 요건에 관한 실정국제법규칙을 적용하는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1905년 당시의 영향력 있는 국제법학자들이 선점의 요건에 관한 실정국제법규칙의 내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권위 있는 학자의 저술에 서술되어 있는 관습국제법의 내용이 일반 관행과 법적 확신에 관한 조사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하면, 국가나 국제재판기관이 단순히 학자의 저술에 근거하여 관습국제법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내

용을 인식하여 법적 주장을 위하여 원용하고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관습국제법의 존재와 내용을 서술한 저작들이 실은 관습국제법의 성립요건에 관한 아무런 조사 없이 단지 저자의 인상이나 생각, 또는 다른 국제법학자의 저작에 근거를 두고 서술된 것이라면 그것이 실정국제법으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는 없다. 그것은 현실세계의 실정국제법이 아니라 학자의 학설이나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국제법학자의 서술에 근거하여 관습국제법을 원용하고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그것이 현실세계의 실정국제법이 아닐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학자의 저작 속에 서술되어 있는 관습국제법규칙이 실정국제법의 존재와 내용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만 유의한다면, 학자들의 저술은 일정한 시기의 관습국제법규칙의 존재와 그 내용을 인식하기 위한 유용한 자료로서 쓰일 수 있으며, 적어도 관습국제법규칙에 관한 학자와 국가의 일반적인 인식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일본의 독도 ‘편입’조치는 1905년에 있었지만, 선점의 요건에 관한 당시의 실정국제법규칙의 내용, 그리고 그에 대한 국제법학자들의 인식을 확인하여 위하여 검토되어야 하는 저작들의 내용은 반드시 1905년부터 수년 전후의 것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관습국제법규칙이 그렇듯이 선점의 요건에 관한 관습국제법규칙 역시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형성되는 것이며 1905년에 존재하였던 규칙은 1905년 이후에도 상당기간 변화 없이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은 1905년이라는 시점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이 컸던 서양과 일본의 저서들을 폭넓게 살펴보고자 한다.

III. 무주지 선점에 관한 19세기 전후 서양의 주요 저작의 내용

1. 19세기 초반과 중반의 저작

19세기 초반의 저작 중에서 가장 먼저 검토할 것은 19세기 전반기의 독일 국제법학을 대표하였던 클뤼버(Johann Ludwig Klüber)의 책이다. 1819년에 프랑스어로 처음 출판된 그의 국제법 저서 *Droit des gens moderne de l'Europe*은 그의 사후에도 계속해서 편집되어 출판되고 독일어, 러시아어, 그리스어로도 번역된 명저다.⁴ 이 책의 1821년 독일어 판에서 클뤼버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국가는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는 물건(무주물, *res nullius*)을 선점(occupation) 또는 점유(Bemächtigung)에 의하여 취득한다. [...] 법적인 선점에는 그 물건이 배타적인 점유에 적합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귀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 국가가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국가가 그에 대하여 실제의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다른 국가를 배제하고 그 물건을 자신의 물리적 권력 하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마지막 요소는, 국가의 법적인 힘의 표현의 산물을 국가로부터 박탈하는 일 없이, 국가로부터 그 물건을 더 이상 탈취할 수 없게 되는 방식으로 국가의 권력이 그 물건에 대하여 작용함으로써 실현된다.⁵

클뤼버는 유럽 국가들 사이의 국가소유권(Recht des Staatseigentums)을 설명하는 곳에서, 선점을 특별히 영역권원으로 설명하지 않고 물건 일반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과 유지라는 문맥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 클뤼버가 말하는

물건 일반에 적용되는 선점의 요건이 영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은 물론이다. 왜냐하면 영토 역시 국가의 입장에서는 물건의 한 종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클뤼버에 따르면 선점의 요건은 ① 선점의 대상이

⁴ (일본)國際法學會 編, 2005, 『國際關係法辭典』(제2판), 三省堂, 197~198쪽

⁵ Johann Ludwig Klüber, 1821, *Europäisches Völkerrecht*, J. G. Gotta'schen Buchhandlung, SS. 198~199

배타적 점유에 적합한 성질을 가진 물건일 것, ② 무주물일 것, ③ 소유의 의사로 점유할 것, ④ 물건을 실제로 점유할 것 등이다. 특히 네 번째 요건은 “다른 국가를 배제하고 그 물건을 자신의 물리적 권력 하에 두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물건이 그 국가로부터 탈취될 수 있는 가능성의 소멸을 요건 실현의 구체적 내용으로 들고 있다. 선점의 요건에 관한 클뤼버의 설명에는 고전적인 선점 요건으로서의 무주물, 영유의사, 실효적 지배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클뤼버의 이러한 설명은 1874년의 프랑스어 제2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⁶

클뤼버와 비슷한 시기의 독일 국제법학을 대표하는 학자의 한 사람이었던 헤프터(August Wilhelm Heffter)는 1844년에 *Das Europäische Völkerrecht der Gegenwart* (『현대 유럽국제법』)을 출판하였다. 이 책은 “실증주의 국제법관에 입각하여 유럽 문명국가들의 국제관습을 법적으로 정리하고 이론적으로 통일적인 체계화를 시도한 명저로서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되었다”고 일컬어지며, 프랑스, 그리스, 폴란드어로 번역되었을 뿐 아니라 일본어로도 번역되어 동양에도 소개되었다.⁷ 이 책의 1855년판에서 그는 선점의 요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I. [...] 선점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이미 다른 국가가 완전한 점유를 취득하지 않은 토지와 도서에 대해서만 주로 적용되는 것이다.
- II. 모든 선점은 무주물을 지속적으로 자신의 고유한 지배하에 두고자 하는 특정 의도를 필요로 한다. 어떠한 소유권도 자신의 지각과 의지에 반하여 획득되는 일은 없다.
- III. 또한 그것에 의하여 지속적인 소유의 의사가 표시되고, 배타적인 지배를 행사하려는 태세가 그것과 결부되는 그러한 실제의 점유(Besitzergreifung)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이 일단 발생하면, 일시적일 뿐이며 과도적인 것으로 밝혀진 지배의 중단은 이미 획득된 소유권을 다시 폐지하지 않는다. 그에 비하여, 말에 지나지 않는 선

⁶ J. L. Klüber, revu, annoté et complété par M. A. Ott, 1874, *Droit des gens moderne de l'Europe*, 2^e édition, Guillaumin et C^{ie}, Libraires, p. 175

⁷ (일본)國際法學會 編, 2005, 앞의 책, 785쪽

언과 처음에 의도했던 소유를 일시적이고 생명력 없이 표시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예전의 국가 실행은 그러한 종류의 방법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지만, 사실이 그에 반하고, 그러한 의도를 의심스러운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⁸

헤프터도 클뤼버와 마찬가지로 선점을 특별히 영역권원으로 설명하지 않고 국가재산이라고 하는 물건의 취득이라는 문맥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선점의 요건은 세 가지다. 첫째는 무주물이어야 한다. 헤프터는 이를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떤 사람의 배타적 지배에도 놓여 있지 않은” 물건이라고 표현한다. 둘째는 소유와 영유의 의사다. 셋째는 실제의 점유(wirkliche Besitzergreifung)다. 헤프터는 말로만 하는 선언이나 실효적이지 못한 표시는 실제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단, 일단 실제의 점유가 확립되면 일시적이고 과도적인 지배의 중단에 의하여 소유권이 폐지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이고 있다. 헤프터의 설명도 선점의 요건을 무주물, 영유의 의사, 실효적인 점유 세 가지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선점의 요건에 관한 고전적인 의견과 다르지 않다.

⁸ August Wilhelm Heffter, 1855, *Das Europäische Völkerrecht der Gegenwart*, Dritte Ausgabe, Verlag von E. H. Schroeber, SS. 130~132

⁹ 휘튼의 생애에 관한 한국어 소개로는 김효전, 2000, 『근대한국의 국가사상-국권회복과 민권수호』, 철학과현실사, 422~423쪽 참조.

¹⁰ (일본)國際法學會 編, 2005, 앞의 책, 790쪽

¹¹ (일본)國際法學會 編, 2005, 위의 책, 790쪽

¹² 이 점에 관해서는 김용구, 1997, 『세계관총들의 국제정치학』, 나남, 125~134쪽; 김용구, 2001, 『세계관총들과 한말외교사, 1866~1882』, 문학과지성사, 253~261쪽 참조.

휘튼(Henry Wheaton, 1785~1848)⁹은 “19세기의 미국을 대표하는 국제법학자”¹⁰로 평가되는 사람으로서 그의 저서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는 1836년에 초판이 출판된 이래 1944년까지 약 1세기에 걸쳐 편집되고 출판되었으며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번역되었다.¹¹ 이 책은 19세기를 통하여 가장 영향력 있었던 국제법 개설서라고 할 수 있으며, 마틴(William Alexander Parsons Martin, 1827~1916)이 이 책을 『萬國公法』이라는 이름으로 번역함으로써 동아시아에 서양 국제법이 소개되게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¹²

1855년에 출판된 휘튼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에는 영역권 원으로서의 선점에 관한 체계적인 설명이 없고 선점의 요건도 서술되어 있지 않다. 이 책에서 휘튼은 국가의 영토와 재산에 대한 국가의 배타적 권리를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서술 속에서 '선점(occupancy)'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을 뿐이다.¹³ 이 occupancy도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영역권원으로서의 선점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occupation과는 다른 용어로서, '선점'으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점유'로도 번역될 수 있다.

휘튼과 더불어 19세기 미국 국제법학회를 대표하는 권위 있는 국제법학자로 울지(Theodore Dwight Woolsey, 1801~1889)를 들 수 있다. 그의 책은 중국에서 『公法便覽』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어 출판되었고 1873년에 미쓰쿠리 린쇼(箕作麟祥)에 의하여 일본에서도 『國際法 一名萬國公法』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다.¹⁴

울지는 1860년에 초판이 출판된 그의 저서에서 선점을 정복, 할양과 더불어 국가영역 취득의 태양(態樣)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그 요건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¹⁵ 울지는 1891년에 출판된 저서 속에서는, 발견은 영역취득의 권원으로 불충분하며 이익을 수반하는 점유(beneficial occupation)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모피무역소, 어업기지 또는 농업 정착 등을 그러한 "이익을 수반하는 점유"의 예로 제시하고 있다.¹⁶

스위스 취리히 태생의 블룬첼리(Johann Caspar Bluntschli, 1808~1881)도 휘튼과 더불어 19세기를 대표하는 국제법학자의 한 사람이다. 그가 저술한 국제법 책은 중국에서 『公法會通』으로 번역되어¹⁷ 동아시아에서의 국제법 지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¹⁸ 1868년에 간행된 저서에서 그는 선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무주지에 대한 영토고권은 특정 국가권력의 선점에 의하여 획득된다. 점유를 하겠다는 단순한 의사만으로는

13 Henry Wheaton, 1855,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6th ed., Little Brown and Company, p. 217

14 울지의 생애와 저작 등에 관해서는 김효전, 2000, 앞의 책, 439~461쪽 참조.

15 Theodore D. Woolsey, 1860,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 James Monroe and Company, p. 118

16 Theodore Dwight Woolsey, 1891,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 sixth edition, revised and enlarged by Theodore Salisbury Woolsey, Charles Scribner's Sons, p. 67

17 번역의 경위와 내용에 관해서는 김효전, 2000, 앞의 책, 464~482쪽 참조.

18 김효전, 2000, 위의 책, 476쪽

무주지에 대한 영토고권을 획득하는 데 충분치 않으며, 그러한 의사의 상징적인 또는 명시적인 宣明, 단순한 일시적 점령 또한 그러하다.¹⁹

그러나 발견은 과학적인 행위에 불과하며 정치적인 행위는 아니므로 국가권력의 기초를 제공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오히려 공적이고 법적인 선점은 무주지에 대하여 영구적으로 국가로서 통치를 하겠다는 의사와 결합된, 질서와 보호를 부여하는 국가권력의 사실적 행사 속에 존재한다. 국가의 계약 양 등과 같은 통치의 상징은 이러한 의도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는 있지만 실제의 국가통치의 결여를 대체할 수는 없다.²⁰

블룬첼리는 선점이 무주지에 대한 영토주권의 취득 원인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선점의 요건을 무주지에 대하여 영구적으로 국가로서 통치를 하겠다는 의사(animus)와, 질서와 보호를 부여하는 국가권력의 사실적 행사(corpus)로 설명하고 있다. 선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한 발견, 통치의 상징 등은 선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블룬첼리가 제시하는 선점의 요건은 ① 무주지(국가에 소속되지 않은 토지), ② 영유의사, ③ 국가권력의 사실적 행사가 된다. 선점의 고전적인 요건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저작

19세기 초와 중반에 출간된 저술 속에 나타난 선점의 요건에 관한 설명은 연속성을 가지고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영향력 있는 국제법 저술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말의 저술 중 처음으로 소개할 것은 홀(William Edward Hall, 1835~1894)의 책이다. 그는 전형적인 국제법학

자라기보다 재야의 국제법학자로 평가되는 사람으로서 역사, 미술, 언어, 식물, 군사 등의 다방면에 관심을 나타낸 바 있다. 국제법학자로서는 1880년에 집필한 *A Treatise on International Law*가 균형이 잡히고

19 J. C. Bluntschli, 1868, *Das moderne Völkerrecht der civilisierten Staaten*, C. H. Beck'schen Buchhandlung, S. 164

20 Ibid., S. 165

간결하며 양식이 넘치는 완전한 저작으로서 19세기 후반 영국의 최고의 국제법개론서로 꼽힌다.²¹ 이 책은 1888년에 미야케 쓰네노리(三宅恒徳)가 『호씨 국제법 권상(浩氏 國際法 卷上)』으로 번역하여 일본에서 출판하였으며, 1899년에는 다치 사쿠타로(立作太郎, 1874~1943)가 『호루씨국제법(ホール氏國際法)』으로 번역하여 출판하였다.²² 또 그의 저서는 호조 겐마(北條元馬)와 구마 가이 나오타(熊谷直太)의 역보(譯補)라는 형태로 『국제공법(國際公法)』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서 출판된 일도 있다.²³ 선점의 요건에 관한 홀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어떤 국가가 문명국 또는 반문명국에 의하여 專有되지 않은(unappropriated) 토지와 관련하여 실제의 점유에 상당하는 행동을 취하고, 동시에 점유한 영토를 계속해서 보유하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국가는 다른 국가들-이들 다른 국가들은 점유의 사실이 수반되는 재산취득의사를 소유권의 충분한 근거로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에 대항하는 권리를 획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하여 획득된 권원은 선점에 의한 권원(title by occupation)이라고 불리는데, 그것은 오로지 專有의 사실에만 근거한 것으로서 엄격히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의 시작과 더불어 존재하게 되며, 선점에 의한 권원이 시효에 의한 권원과 융합될 만큼 오랜 기간 동안 선점된 영토가 보유되지 아니하는 한, 실효적 지배가 계속되는 동안에만 존속한다. 그러므로 완전한 형태의 선점은 특정 영토가 재산으로서 소유되었다는(seized as property) 선언에 상당하는 행위를 전제하며, 거주 또는 그 영토로부터의 지속적인 생산물의 취득에 의한 추후의 계속적인 사용을 전제한다.²⁴

홀은 선점의 대상이 “문명국 또는 반문명국에 의하여 전유(專有)되지 않은(unappropriated) 토지”여야 하며, 선점은 “엄격히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의 시작과 더불어 존재”하고, “점유한 영토를 계속해서 보유하려

21 (일본)國際法學會 編, 2005, 앞의 책, 812쪽; 김효전, 2000, 앞의 책, 486~487쪽

22 김효전, 2000, 위의 책, 487~488쪽

23 1899, 東京: 博文館

24 William Edward Hall, 1890, *A Treatise on International Law*, 3rd ed., Henry Frowde, MacMillan and Co., pp. 104~105

는 의사”가 표시되어야 한다고 설명함으로써 무주지, 실효적 지배, 영유의 의사 세 가지가 선점의 요건을 밝히고 있다. 이 점에서 홀의 설명은 전통적인 선점의 요건에 관한 설명과 다르지 않다. 홀은 특별히 점유 사실의 통고가 선점의 요건이 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선점의 요건으로서의 영유 의사와 관련하여, “점유한 영토를 계속해서 보유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고 완전한 형태의 선점에는 “특정 영토가 재산으로서 소유되었다는 선언에 상당하는 행위”가 전제된다고 하여, 적어도 영유 의사가 공시되어야 한다는 점은 선점의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홀은 특히 통고를 유효한 선점의 요건으로 규정하였던 1885년 베를린의정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선언²⁵이 아프리카의 해안에만 적용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프랑스와 러시아 대표는 이러한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공식적인 유보를 주의 깊게 표명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토를 선점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 국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이 선언의 일자에 세계의 선점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대부분의 연안 공간에 적용되는 합의는 일반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규칙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²⁶

이러한 서술은, 베를린의정서 체결 이후 통고를 유효한 선점의 요건으로 하는 관습국제법이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홀과 마찬가지로 그의 저서가 일본어로 번역되었던 19세기 말의 주요한 국제법학자로 웨스트레이크(John Westlake, 1828~1913)를 들 수 있다. 그는 19세기 후반의 영국을 대표하는 국제법학자로서 1888년부터 1908년까지 케임브리지 대학의 국제법 교수를 지냈다. 1894년에 출판된 *Chapters on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는 국제공법에 관한 그의

25 다른 당사국에 대한 통고와 권한 있는 당국의 설치(establishment of authority)를 선점의 요건으로 규정한 베를린의정서의 선언을 의미함.

26 William Edward Hall, 1890, p. 117

대표작으로서 일본에서는 후카이 에이고보[深井英五補]가 번역하여 1901년에 『국제법요론(國際法要論)』이라는 서명으로 출판된 바 있다.²⁷ 그는 ‘발견’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선점에 의하여 완성되어야 하는 이른바 원시적 권원을 부여할 수 있을 뿐”²⁸이라고 하면서 선점의 요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논의되어온 상세한 문제들 중에서 첫 번째 문제는, 어떠한 조건하에서 예전의 발견이, 또는 지금의 선점의 시작이 영토주권에 대한 원시적 권원을 부여하는가, 다시 말해 선점의 권리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선점을 완성할 권리, 그리고 다른 문명국이나 그 국민이 시간적인 틈을 타서 행한 정착을 복종시키거나 축출할 권리를 부여하는가라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원시적 권원을 주장하는 국가가 자신의 또는 그 국민에 의한 발견 또는 선점으로부터 충분한 이익을 획득하려는 자신의 의사를 알리려 한다는 것, 또는 적어도 그 상황 속에서 그러한 의사에 관하여 어떠한 합리적인 의문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원시적 권원을 주장할 의도를 가진 국가들은 언제나 처음부터 자신의 의사를 알리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스톡홀름의 말을 빌리면, “처음으로 권원이 확립된다고 하는 신발견 영역(countries)에서는 통상적으로 점유의 행동이 취하여지며 그러한 사실의 통고로서 선포된다. 여기서 통고란 일반적 의미의 알림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베를린회의 일반의정서 제34조에 사용된, 다른 국가에게 대한 명시적 통보라는 특별한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²⁹

웨스트레이크는 발견되거나 선점된 영토에 다른 국가의 국민이 정착(settlement)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심을 두었다. 그래서 그는 주로 사람이 거주 가능한 토지, 더 구체적으로는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 쟁탈의 장이었던 아프리카를 상정하고 발견과 선점을 설명하였으며 그 때문에 항상 1885년의 베를린의정서의 조문을 참조하는 모습

27 (일본)國際法學會 編, 2005, 앞의 책, 61쪽

28 John Westlake, 1894, *Chapters on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The University Press, p. 158

29 Ibid., pp. 160~161

을 보이고 있다. 주목할 것은 그가 발견과 선점의 통고(notification)를 영역권원 성립의 중요한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통고는 (원시적) 권원을 주장할 의사 또는 의도를 일반적으로 알리는 것을 의미하며, 베를린 의정서 제3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특정한 국가에게 통보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의 저서가 일본에 소개된 사람으로서 특히 고찰하여야 할 국제법학자 중의 한 사람으로 로렌스(T. J. Lawrence)가 있다. 그의 생애와 활동에 관하여 소개한 문헌을 찾기는 힘들지만, 저서의 표지에 소개된 약력에 따르면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 Girton College 학장(Rector)을 지냈고, 케임브리지 대학 Dowsing College에서도 강의하였다. 또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서도 강의한 경력이 있고, 영국 왕립해군대학(Royal Naval College)에서 해사법을 강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가 국제법학술원(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의 준회원 겸 정회원을 지낸 것으로도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건대 당대의 주요한 국제법학자로 인정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⁰ 그의 저서 중 *A Handbook of Public International Law*는 케임브리지에서 그의 강의를 들었던 무쓰 히로키치[陸奥廣吉]가 『국제공법적요 완(國際公法摘要完)』이라는 서명으로 번역하여 1896년에 일본에서 출판한 바 있다.³¹ 로렌스의 책을 특히 검토하는 이유는 통고가 선점의 요건이 되는지에 관한 특기할 만한 서술이 있기 때문이다. 그의 저서가 당시의 주요한 국제법 저작을 참고하여 집필된 것이라는 점³²을 생각하면, 그의 저서는 선점과 관련된 통고의 요건성에 관

한 당시의 이론 상황을 파악하는 데 참조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로렌스는 우선 선점의 요건으로서 대상 토지가 무주지일 것, 영유의 의사(병합)와 실효적 지배(정착)가 있을 것을 들고 있다.³³ 그는 정착을 실효적 지배로 이해하고 선점된 토지에 문명적인 주민이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주민이 거주하기 어렵거나 주민의 거주가 불가능한 토지의 선점을 상정하지

30 그의 저서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의 1895년판과 1910년의 표지에 기록된 바에 의한.

31 陸奥廣吉, 1896, 『國際公法摘要完』, 丸善株式會社

32 T. J. Lawrence, 1895,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MacMillan and Co., p. viii

33 Ibid., pp. 146~147

않는 것이다.

선점의 요건에 관한 그의 설명 중에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통고의 요건에 관한 것이다. 이에 관한 그의 서술은 다음과 같다.

모든 유럽의 열강과 미국이 서명한, 1885년 서아프리카 회의의 최종의정서에 구현되어 있는 합의는 동일한 영토에 대한 상충하는 주장들로부터 발생하는 곤란을 제거하게 될 조항들을 담고 있다. 각 서명국들은 장래에 아프리카 연안의 일정한 크기의 육지를 선점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곳에서 보호국의 지위를 가지게 될 때마다 다른 국가들에 대하여 공식적인 통고를 보낼 의무를 스스로에게 지웠다. 이러한 규칙은 이미 여러 경우에 실행되어왔으며 모든 국가들이 이 규칙을 채택하고 선점되지 아니한 육지를 장래에 취득하는 경우에 이 규칙을 확대할 것이 요망된다.³⁴

그는 베를린회의의 최종의정서(일반의정서)에 규정된 통고의 의무가 장래의 모든 육지 취득에 일반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주지 선점에 관한 19세기 전후 서양의 주요 저작을 소개하면서 빠뜨려서는 안 될 마지막 사람으로 오펜하임(Lassa Francis Lawrence Oppenheim, 1858~1919)이 있다. 그의 국제법학은 이론적인 깊이가 얕고, 국가의 의사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점, 그리고 개인의 권리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체제에 속하지 않는 인민의 권리뿐만 아니라 도덕, 정책, 정치에 관한 대부분의 고려를 국제법학에서 배제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순진한 실증주의라고 평가되기도 한다.³⁵ 그러나 그가 영국의 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국제법을 가르치면서 강의 교재로 편찬하였던 책 *International Law - A Treatise*³⁶는 국제법에서 영어로 된 가장 영향력 있는 교과서로 평가될 만큼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으며, 오늘날까지 다른 국제법학자들에 의하여 증보되어 출판

³⁴ Ibid., p. 154

³⁵ Benedict Kingsbury, 2002, "Legal Positivism as Normative Politics: International Society, Balance of Power and Lassa Oppenheim's Positive International Law," 13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p. 402

³⁶ (일본)國際法學會 編, 2005, 앞의 책, 100~101쪽. 오펜하임의 생애와 그의 국제법학 방법론 등에 관한 소개로는 M. Schmoeckel, 2000, "The Internationalist as a Scientist and Herald: Lassa Oppenheim," 11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pp. 699~712가 있다.

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³⁷ 또 그의 국제법학은 홀의 국제법학과 더불어 일본의 다치 사쿠타로의 국제법론의 모델이 된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다.³⁸

선점에 대한 정의에서 오펜하임은 먼저 "국가가 의도적으로 주권을 획득한다는 점, 점유의 시기에 대상 영토가 다른 국가의 주권 하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³⁹ 이는 선점의 요건과 관련하여 이해하면, 영유의 의사와 무주지라고 하는 두 가지 요건을 정의에서 밝힌 것이다. 오펜하임은 선점의 대상이 무주지에 한정된다는 것을 설명한 다음, 또 다른 선점의 요건으로서 지배(corpus)와 영유의사(animus)가 충족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날, 취득하는 국가의 이름으로 그리고 취득하는 국가를 위하여 당해 영토를 점유하고 당해 영토에 대한 지배를 확립함으로써 선점이 완수되고 하는 규칙에 관해서는 이론과 실행이 동의하는 바다. 그렇게 하여 완수된 선점은 진정한 선점으로서, "의제적인" 선점과 대조되는 의미에서 "실효적인" 선점이라고 불린다. 점유와 지배는 실효적인 선점을 구성하는 두 개의 필수적인 사실들이다.

(1) 영토는 선점을 행하는 국가에 의하여 실제로 점유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각 국가가 당해 영토에 대한 주권을 취득할 의사로서(animus) 그것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다는 것(corpus)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은, 그 영토가 점유되었으며 점유자는 그것을 계속해서 자신의 주

권 하에 두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선명(宣明)하는 일정한 공식적 행위가 수반되는, 그 영토에 대한 정착(settlement)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필요한 공식적 행위는 통상적으로 포고의 출판이나 국기의 게양에 의하여 수행된다. 그러나 그 영토에 국기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정착이 남겨지지 않는 한, 그러한 공식적 행위 자체는 의제적인 선점을 구성할 뿐이다. [...]

³⁷ Robert Jennings and Arthur Watts, 2008,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volume 1, Peace*, 9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³⁸ 김효전, 2000, 앞의 책, 488쪽, 주 185

³⁹ L. Oppenheim, 1905, *International Law - A Treatise, Vol. I, Peace*, Longmans, Green, and Co., pp. 275~276

(2) 위에서 말한 방식으로 어떤 영토를 점유하고 난 이후에, 점유자는 그 영토가 새로운 점유자에 의하여 실제로 통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정한 종류의 지배를 그곳에 확립하여야 한다. 만약 점유 행위 이후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점유자가 통치 기능을 행사하는 어떤 책임 있는 당국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그 영토에는 사실상 어떤 국가의 주권도 행사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적인 선점은 존재하지 않는다.⁴⁰

그에 따르면 영유권은 포고의 출판이나 국기의 게양과 같은 공식적인 행위에 의하여 선명된다. 그리고 지배를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오펜하임은 정착(settlement)과 특히 통치 기능을 행사하는 책임있는 당국의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펜하임에 따르면 선점된 영토에 정착이 없거나 실제의 통치를 보여주는 지배 행위가 없으면 그러한 선점은 의제적 선점으로서 “실효적” 선점이 될 수 없다. 오펜하임의 이러한 설명은 ‘정착’을 선점의 요건으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로렌스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오펜하임은 선점의 요건으로 통고가 요구되는지에 관해서도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른 국가에 대한 선점의 통고를 선점의 유효성의 필수 조건으로 하는 국제법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모든 장래의 선점에 관하여, 1884~1885년에 베를린 콩고 회의에 출석한 모든 국가들은 이 회의의 일반의정서 제34조로써 선점은 서로 통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그러한 통고는 지금은 아프리카에서의 유효한 선점의 조건이 되어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규칙이 관습법에 의하여 또는 조약에 의하여 아프리카에서의 선점으로부터 모든 다른 곳에서의 선점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⁴¹

오펜하임의 서술은 통고를 선점의 요건으로 요구하는 국제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

40 Ibid., pp. 276~277

41 Ibid., pp. 278~279

다는 점에서 당시의 많은 국제법학자가 유효한 선점의 요건으로서 통고가 필요한지에 관하여 서술을 누락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오펜하임은 통고가 선점의 요건이 아니라고 명언하면서도 동시에 통고의 요건성에 관한 장래의 전망으로서, 베를린회의 일반의정서에 의하여 아프리카에서의 선점의 유효 요건으로 규정된 통고가 관습법이나 조약에 의하여 다른 곳에서의 선점에도 요구될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고 쓰고 있다. 이러한 오펜하임의 전망이 맞았다면 베를린회의 일반의정서 체결로부터 20년이나 지나서 이루어진 일본의 독도 편입조치에는 통고가 유효한 선점의 요건으로 관습국제법화되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IV. 무주지 선점에 관한 19세기 전후 일본의 주요 저작의 내용

1905년에 독도를 영토로 ‘편입’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이므로, 이 시기를 전후한 일본의 대표적인 국제법학자들의 개설서 속에 선점의 요건이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당시의 일본 국제법학자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그들이 독도 ‘편입’과 관련한 국제법적 문제에 관하여 일본의 정책결정자와 집행자에게 미쳤을 영향을 추정해보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시간 순으로 선점의 요건에 관한 일본의 대표적인 국제법학자들의 서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키야마 마사노스케(秋山雅之助, 1866~1937)가 있다. 그는 도쿄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에서 하토야마 가즈오(鳩山和夫)로부터 국제법을 배우고

1890년에 일본 외무성(外務省)에 들어가 참사관(參事官)을 지냈으며 육군 총사령관의 참모를 지낸 경력도 있다.⁴² 육군성(陸軍省) 참사관 시절에는 한국의 피보호국화와 관련하여 피보호국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보고서(秋山陸軍省參事官調査ノ被保護國地位ニ關スル報告書)를 작성한 일도 있다.⁴³ 이 글에서 소개하는 아리가 나가

42 一又正雄, 1973, 『日本の國際法學を築いた人々』, 日本國際問題研究所, 34·39쪽; 박배근, 2009, 『시제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병합관련 ‘조약’의 효력』, 『국제법학 회논총』 제54권 제2호, 105쪽

43 海野福壽, 2000, 『韓國併合史の研究』, 岩波書店, 152쪽

오[有賀長雄]나 다치 사쿠타로에 비하여 국제법학자로서의 영향력은 떨어지지만,⁴⁴ 이미 1893년에 『국제공법(國際公法)』이라는 개설서를 저술하였고, 1902년과 1903년에는 평시국제법과 전시국제법에 관한 저작을 발표하였으며 일본 국제법학회지인 『국제법잡지(國際法雜誌)』에도 19차례에 걸쳐 논고를 게재하는 등⁴⁵ 활발한 저술활동을 펼친 바 있다.

아키야마 마사노스케의 경우 1894년의 저서에서는 선점에 관한 설명이 자세하지 않다. 당시 일반적으로 거론되던 선점의 요건으로서 무주지, 점유, 영유의사의 표시 등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또 ‘선점’에 해당하는 용어도 ‘점유’로 쓰고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일본의 선점 사례를 들고 있다는 것이다.⁴⁶

그러나 약 10년 뒤의 1903년의 저서에서는 선점에 관하여 매우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아키야마 마사노스케는 당시의 서양의 국제법 개설서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선점을 자세히 서술하면서, 일본의 선점 사례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의 구체적인 여러 선점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⁴⁷ 특히 선점의 요건으로서 통고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설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즉, 아키야마 마사노스케는 무주지에 대한 영유의사의 표시에 관해서는 일정한 형식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뒤, 1885년 베를린의정서를 근거로 영유의사의 통고가 필요하다고 보는 학설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아키야마 마사노스케는, 베를린의정서는 당사국 이외의 국가에는 구속력이 없으며, 당사국 사이에서도 아프리카의 해안 지역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적용상의 제한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선점에는 통고를 요한다고 하는 학설을 논박하고 있다. 또 1888년 9월 로잔에서 개최된 국제법학술원의 결의에서 통고를 선점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그것이 하나의 학설일 뿐이며 국제법상 통고의 의무가 확립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베를린의정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관하여 프랑스와 영국이 선점의 통고를 한

44 일례로, 일본의 國際法學會가 편찬한 『國際關係法辭典』에 아리가와 다치는 별개의 항목으로 생애와 업적 등이 소개되어 있지만, 아키야마는 그렇지 못하다.

45 (일본)國際法學會 編, 앞의 책 (주 6), 895쪽

46 秋山雅之介, 1893, 『國際公法 完』, 東京專門學校, 42~43쪽

47 秋山雅之介, 1903, 『國際公法』, 和弘法律學校, 書肆明法堂, 214~215쪽

국가 실행은 국제법상의 통고 의무의 이행이 아니라 “임의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쓰고 있다.⁴⁸

구라치 데쓰키치[倉知鐵吉, 1871~1944]는 일본 외무성의 정무국장 시절에 한국 ‘병합’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1913년에는 외무성의 외무차관의 지위에 올랐다. 다카하시 사쿠에이[高橋作衛], 아리가와 나가오 등과 더불어 일본 국제법학회지의 창간시 잡지위원을 지냈으며⁴⁹ 동 잡지에 11차례에 걸쳐 논고를 게재하고 있다.⁵⁰

구라치 데쓰키치는 자신의 저서에서 4페이지에 걸쳐 선점을 영역권원으로 설명하고 있다.⁵¹ 그 내용은 위에서 살펴본 서양의 저작들과 다르지 않다. 특히 구라치 데쓰키치는 아프리카에서의 선점에 관한 1885년 베를린회의의 선언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나, 일본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여 상론하지는 않고 있다.⁵²

다치 사쿠타로는 도쿄제국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에 유학하여 외교사 등을 공부한 사람이다. 유학 중에 도쿄제국대학 법과대학의 조교수로 임명되어 처음에는 외교사를 가르쳤으나 곧 국제법 강좌를 담당하여 정년에 이르기까지 국제법을 강의하였다. 그가 이른 시기에 홀의 저서를 번역하였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다치 사쿠타로는 일본 외무성의 실질적인 국제법고문으로 정부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기본적으로는 학자로서의 자세를 관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일본의 정통 국제법을 대표하는

학자로 인정되고 있다. 그는 1930년과 1931년에 국제법 체계서로서 각각 『평시국제법론(平時國際法論)』과 『전시국제법론(戰時國際法論)』을 썼다.⁵³ 그러나 강의록 형태의 체계서는 이들 저서가 출간되기 전에도 등사본의 형태로 1913년부터 여러 종류가 사용되고 있었다.

선점의 요건에 관한 다치 사쿠타로의 설명도 당시의 일반적인 학설과 다르지 않다. 다치 사쿠타로 역시 무주지, 영유의사의 표시, 실제의 지배를 선점의 요건

48 秋山雅之介, 1903, 위의 책, 219~221쪽

49 又一正雄, 1973, 앞의 책, 131~132쪽; 박배근, 2009, 앞의 글, 106쪽

50 (일본)國際法學會 編, 2005, 앞의 책, 904쪽

51 倉知鐵吉, 1899, 『國際公法』, 日本法律學校, 85~88쪽

52 倉知鐵吉, 1899, 위의 책, 87쪽

53 (일본)國際法學會 編, 2005, 앞의 책, 591쪽; 박배근, 2009, 앞의 글, 108~109쪽

으로 들고 있다.⁵⁴ 다치 사쿠타로도 선점과 관련하여 1885년의 베를린의정서를 언급하고 있다. 그는 이 의정서에서 선점의 통지가 선점에 관한 요건으로 규정되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이 선점에 관한 일반국제법상의 요건인지 아니면 베를린의정서 당사국에게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특별한 요건인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다치 사쿠타로는 베를린의정서 이후에는 “선점의 경우에는 통지가 실행되도록 되었다”고 사실을 기술할 뿐이다.⁵⁵ 이 점은 아키야마 마사노스케의 서술과 매우 대조적이다.

V. 맺음말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는 조치를 취한 시기에, 관습국제법상 선점의 요건으로 요구되던 것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당시 서양의 주요한 국제법적 저작과 일본의 대표적인 국제법 개설서를 통하여 살펴본 결론은 다음과 같다.

당시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우수한 국제법학자의 저작들과 일본의 대표적인 국제법 개설서는 거의 모두가 국제법상 유효한 선점의 요건으로, ① 선점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무주지일 것, ② 선점 대상 토지를 영유할 국가의사가 존재하고 그것이 공시될 것, ③ 선점 대상 토지에 대한 실효적인 점유 또는 지배가 있을 것의 세 가지를 거론하고 있다. 이 중 ‘무주지’ 요건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에 큰 차이나 쟁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영유의사의 공시와 실효적 지배에 관한 설명은 논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당시의 서양 국제법학자들은 영유의사의 존재를 선점의 요건으로 설명하면서도 특별히 그 공시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클뤼버, 휘튼, 울지 등). 그러나 영유의사의 공시를 유효한 선점의 요건

으로 요구하는 견해도 많았다. 헤프터의 경우는 “실제의 점유”에 의하여 “지속적인 소유의 의사가 표시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한 “소유의 의사”의 표시를 선점의 요건으로 보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블룬첼리는 무주지에 대한 점유의 의사만으로는 영토고권이 취득되지 않고 영토고권 취득의사의 상징적 또는 명시적 선명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홀은 “점유한 영토를 계속해서 보유하려는 의사의 표시”를 선점의 요건으로 보며 “특정 영토가 재산으로서 소유되었다는 선언에 상당하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웨스트레이크도 영유의사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며 또 알리는 것이 통상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아키야마 마사노스케와 다치 사쿠타로는 영유의사의 공시를 선점의 요건으로 보고 있다.

영유의사의 공시가 선점의 요건인지에 관하여 이와 같이 학설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무주지의 선점에 있어 국가는 단지 영유의사를 가지고 실효적 지배를 하면 족한 것인지, 아니면 영유의사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공시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검토한 학설만을 근거로 판단하면, 더 많은 국제법학자들이 영유의사의 공시까지를 선점의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일본의 학설 상황을 보면 선점에 관하여 가장 자세한 고찰을 하고 있는 아키야마 마사노스케와, 일본 내에서 당대 최고의 국제법학자라고 할 다치 사쿠타로 두 사람 모두가 영유의사의 공시를 선점의 요건으로 보고 있다. 또 여러 서양 국제법학자들은 실효적 점유 자체도 영유의사를 공시하는 한 방법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사실들과, 공시되지 아니한 의사는 객관적으로 파악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의 국제법은 단순한 영유의사 외에, 영유의사의 공시까지도 선점의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유의사의 공시 방법으로 예시되는 것으로는 국기의 게양(블룬첼리, 로렌스, 오펜하임, 아키야마, 다치), 포고의 출판(오펜하임), 포고문 또는 선언서의 낭독(로렌스, 아키야마), 영유의사의 선포(다치) 기타 선점 대상 토지에서 공공연하게 행한 중앙정부의 의식(로렌스) 등이 있다. 아키야마 마사노스케도 영유의사의

54 立作太郎, 1913, 『平時國際公法上』, 大正二年度東京帝國大學講義 謄寫版, 186~187쪽

55 立作太郎, 1913, 위의 책, 187쪽

공시 형식은 일정하지 않으며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영유의사의 표시가 있으면 된다고 설명한다.

영유의사의 공시와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그러한 영유지사 또는 선점의 사실이 다른 국가들에게 통고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거의 빠짐없이 언급되는 것이 1885년의 베를린의정서 제 34조상의 통고 의무다. 홀은 베를린의정서상의 통고 의무는 의정서 당사국 사이에 한정되는 의무며, 그 적용 대상도 아프리카의 해안에 한정되어 있어서, 일반국제법상의 선점 요건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학자들도 선점과 관련하여 영유지사 또는 선점의 사실이 통고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앞으로의 국제법 발전에 통고를 선점의 요건으로 한 베를린의정서 제34조의 규정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웨스트레이크는 영유의사는 통고에 의하여 선포된다고 하면서, 그러한 통고는 “일반적 의미의 알림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베를린의정서 제34조상의 명시적 통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로렌스의 경우는, 그가 통고를 선점의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공식적인 병합 행위를 영유의사의 통고로 보았다. 그리고 베를린의정서상의 통고 의무를 소개한 뒤 그것이 이미 여러 경우에 실행되었고 또 장래에도 실행될 것이 요망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오펜하임은 영유의사의 공시는 선점의 요건으로 보지만, 선점의 통고는 실정국제법상 선점의 요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오펜하임은 베를린의정서상의 통고 의무는 아프리카에서의 선점의 요건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오펜하임도 통고가 선점의 요건으로서 관습국제법화할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

베를린의정서상의 통고 의무가 일반국제법상의 선점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가장 자세히 논하고 있는 것은 아키야마 마사노스케며 이 점에서 그는 다른 국제법학자들과 확연히 구별되고 있다. 아키야마 마사노스케는 베를린의정서 제34조의 통고 의무가 조약의 당사국만을 구속하고 지리적으로도 아프리카의 해안에만 한정되어 적용된다는 것을 논거로 삼고 있다. 그

는 통고를 유효한 선점의 요건으로 보는 학설에도 언급하면서 그것을 비판하고 있다. 이 점에서도 아키야마의 태도는 특별하다. 구라치 데쓰키치는 선점과 관련된 통고 의무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지 않으며, 이 문제에 관한 다치 사쿠타로의 설명은 베를린의정서 체결 이후에는 통고가 사실상 행하여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기술(description)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다치 사쿠타로가 통고를 선점의 요건으로 이해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상의 검토에 의하면 통고가 선점의 요건인지에 관해서는 학설이 분열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 문제에 관한 실정국제법규칙의 확인은 국가의 법적 확신과 국가실행에 관한 실증적인 검증을 요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실효적 점유 또는 지배의 요건에 관한 여러 국제법학자들의 설명도 각각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당시의 국제법학자들은 원시적 권원으로서의 발견과 관련지어서 실효적 지배를 이해하고 있다. 즉, 발견만으로는 완전한 권원이 성립하지 않고 영유지사 또는 영유의사의 공시를 수반하는 실효적 지배에 의하여 비로소 발견은 완전한 권원으로 바뀌며 선점의 요건은 충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실효적 지배를 설명함에 있어 국제법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상정하고 있던 선점 대상 토지는 사람이 거주 가능한 상당한 넓이의 육지였다. 특히 서양 국제법학자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이른바 ‘야만인’이 거주하는 아프리카의 토지 등을 상정하고 설명하는 일이 많았다. 국제법학자들이 거론하는 구체적인 실효적 점유 또는 실효적 지배의 태양(態樣)은 이런 맥락에서 제시된 것들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독도와 같은 무인 소도에 대한 실효적 점유에도 그대로 타당할 수 없다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당시의 국제법학자들이 예시한 실효적 점유 또는 실효적 지배로는 실제의 지배(헤프터), 장기간의 방해받지 않는 점유(휘튼), 모피무역소, 어업기지 또는 농업 정착과 같은 수혜적인 점유(울지), 질서와 보호를 부여하는 국가권력의 사실적 행사(블룬첼리), 공적 권력의 수립(블룬첼리), 명백한 정착으로서의 문명적인 지배와 문명화된 주민의 거주(로렌스), 실

제의 점유와 통치 및 지배의 확립(오펜하임), 토지에 대한 이민이나 군대의 주둔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보호 방위하고 부단히 사용하는 사실상의 점유나 국권의 수립(구라치, 아키야마, 다치) 등이 있다.

학설의 검토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독도에 대한 선점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독도가 무주지일 것, ② 독도에 대한 영유의사가 존재하고 그것이 공시될 것, ③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점유 또는 지배가 있을 것의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 요건은 그 자체가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투는 논점이므로 이러한 요건의 충족 여부가 바로 독도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본으로서는 독도의 무주지성에 관하여 스스로가 모순이 되는 주장, 즉 고유 영토인 동시에 무주지라고 하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 비판되어 마땅하다.

두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영유의사의 공시로서 선점의 통고가 유효한 선점의 요건인지에 관해서는 학설이 일정하지가 않다. 그러므로 한국에 대한 통고의 결여를 선점과 관련된 일본의 국제법위반으로 볼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실정국제법규칙의 검증이 필요하다. 다만, 관보에 게재되지 않고 내부 열람용으로 작성된 지방 행정관청의 고시로써 독도 영유의사가 충분히 공시되었다고 하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당시의 국제법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일본은 공시행위로서 각국이 실행한 것이나 학설이 거론한 공시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독도에 관하여 한 바가 없다.

실효적 지배에 관하여 보면, 나카이 요자브로가 독도에서 어로행위를 한 것을 추인한 것만으로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실효적 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그 이후의 독도 관련 조치로서, 토지대장 등록, 독도에서의 어업 면허 또는 독도 주변에서의 강치어업 금지, 독도 주변구역에 대한 금어구 설치 등은, 독도가 절해에 위치한 무인의 바위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효적 지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일본의 독도 편입의 유효성과 관련된 핵심 쟁점은 독도의 무주지성 여부에 있으므로, 이러한 쟁점

에 대한 판단 여하에 따라서 실효적 지배의 충족 여부는 독도의 영유 귀속에 아무런 효과를 가질 수 없고, 독도가 한국 영토로서 1905년에 무주지가 아닌 경우에는 실효적 지배에 해당하는 조치가 한국의 독도 영유권 침해 행위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다.

국문 초록

일본은 1905년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조치가 국제법상의 선점으로서 유효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는 시제법의 원칙에 따라 당시의 실정국제법규칙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1905년 당시의 선점의 요건에 관한 관습국제법규칙은 법적 확신이나 국가 실행에 관한 실증적인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문제다. 그러나 19세기 전후의 영향력 있는 국제법학자들의 저술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러한 규칙이 확인될 수 있으며, 또 이 문제에 관한 당시의 국제법학자들의 저술은 적어도 선점의 요건에 관한 당시의 국제법적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서양과 일본에서 발간된 유력한 국제법학자의 저술을 살펴보면, 국제법상 유효한 선점의 요건으로는 ① 선점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무주지일 것, ② 선점 대상 토지를 영유할 국가의사가 존재하고 그것이 공시될 것, ③ 선점 대상 토지에 대한 실효적인 점유 또는 지배가 있을 것의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중에서 '무주지' 요건이나 영유의사의 요건에 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견해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영유의사의 공시가 선점의 요건인지에 관해서는 학설이 나뉘지만, 다수 학설은 영유의사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영유의사가 다른 국가들에게 통고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점에 관해서도 학설은 나뉜다. 그러나 통고가 선점의 요건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에도 무주지 선점의 경우에는 통고가 바람직하다는 것, 앞으로 국제법은 통고를 선점의 요건으로 삼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하거나 그렇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독도 문제를 이러한 학설들에 비추어보면, 일본의 독도 '편입'조치의 효력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1905년의 시점에 독도가 무주지였는지의 여부다. 다음으로 한국에 대한 통고의 결여를 선점과 관련된 일본의 국제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실정국제법 규칙의 검증이 필요하다. 다만, 관보에 게재되지 않고 내부 열람용으로 작성된 지방 행정관청의 고시로써 독도 영유의사가 충분히 공시되었다고 하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당시의 국제법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일본은 공시행위로서 각국이 실행한 것이나 학설이 거론한 공시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독도에 관하여 한 바가 없다.

〈주제어〉

독도, 선점, 무주지, 영유의사, 실효적 지배, 독도 편입 조치, 시마네현 고시

ABSTRACT

Theori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Occupation of *Terra Nullius* around the Year 1905

Park, Paekeun
Professor, School of Law,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1905, Japan 'incorporated' Dokdo as part of its territory. Whether this so-called incorporation fulfilled conditions that validate occupation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is a matter that should be determined, under the principle of intertemporal law, by positive rules of international law which were effective at that time.

Ascertaining the rule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the requirements for effective occupation of *terra nullius* in 1905 should be done through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legal certainties and state practices. However, such an investigation might be done in an indirect way of examining writings from around the nineteenth century authored by authoritative experts in international law in the sense that those writings convey the requirements of occupation recognized by international law at that time.

Upon reviewing theories of occupation that appeared in texts published by prominent scholars of international law between th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y, three major conditions were commonly enumerated as requirements of effective occupation: that the territory targeted for occupation should not belong to any state (*terra nullius*); that a state should have the intention to act as sovereign (*animus occupandi*) and officially announce its intention; that the state should have effective control or possession over the target territory.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scholars in defining the requirements of *terra nullius* and *animus occupandi*. On officially announcing *animus occupandi*, theories are divided, although a majority of them include the official announcement of *animus occupandi* as a necessary prerequisite. What was particularly controversial was whether the intention to acquire a land should be notified to other states, on which theories were also divided. Nevertheless, even scholars who denied official notification as a prerequisite of effective occupation would emphasize that for acquiring *terra nullius*, it is not only advisable, but suggested that such notification should be recognized by international law as a requirement in the future or anticipated that it would become so.

Seen in light of such theories, the core of judging the validity of Japan's

occupation of Dokdo lies in whether Dokdo was in fact *terra nullius* or not in 1905. The next point of argument would be whether the absence of Japan's notification to Korea of its occupation over Dokdo can be seen as a breach of international law. This calls for further verification of positive rules of international law through empirical research of state practices and *opinio juris*. In terms of international law at that time, it seems difficult to justify the validity of the Japanese government's claim that Shimane Prefecture's Notice No. 40 issued in 1905, circulated only among the prefecture's officials and not published in the Japanese Official Gazette, qualifies as a sufficient official announcement by a local administrative agency. At any rate, Japan has not taken any action that may be considered an official announcement of its intention to occupy Dokdo that corresponds to those taken by other states in similar cases or to those mentioned in theories of occupation.

Keywords

Dokdo, Occupation, *terra nullius*, Intention to act as sovereign, *animus occupandi*, Effective control, Incorporation of Dokdo, Notice of Shimane Prefecture

참고문헌

- 김용구, 1997, 『세계관충돌의 국제정치학』, 나남
- 김용구, 2001, 『세계관충돌과 한말외교사, 1866~1882』, 문학과지성사
- 김효전, 2000, 『근대 한국의 국가사상-국권회복과 민권수호』, 철학과현실사
- 박배근, 2009, 「시제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병합관련 '조약'의 효력」, 『국제법학회논총』 제54권 제2호
- 허영란, 2003, 「명치기 일본의 영토 경계 확정과 독도-도서 편입 사례와 “죽도 편입”의 비교」, 『서울국제법연구』 제9권 2호
- (일본)國際法學會 編, 2005, 『國際關係法辭典』(제2판), 三省堂
- 大沼保昭, 2005, 『國際法』, 東信堂
- 立作太郎, 1913, 『平時國際公法 上』, 大正二年度東京帝國大學講義 謄寫版
- 陸奥廣吉, 1896, 『國際公法摘要 完』, 丸善株式會社
- 一又正雄, 1973, 『日本の國際法學を築いた人々』, 日本國際問題研究所
- 倉知鉄吉, 1899, 『國際公法』, 日本法律學校
- 秋山雅之介, 1893, 『國際公法 完』, 東京專門學校
- 秋山雅之介, 1903, 『國際公法』, 和仏法律學校, 書肆明法堂
- 海野福寿, 2000, 『韓國併合史の研究』, 岩波書店
- Bluntschli, J. C., 1868, *Das moderne Völkerrecht der civilisierten Staaten*, C. H. Beck'schen Buchhandlung
- Hall, William Edward, 1890, *A Treatise on International Law*, 3rd Ed., Henry Frowde, MacMillan and Co.
- Heffter, August Wilhelm, 1855, *Das Europäische Völkerrecht der Gegenwart*, Dritte Ausgabe, Verlag von E. H. Schroeber
- Klüber, Johann Ludwig, 1821, *Europäisches Völkerrecht*, J. G. Gotta'schen Buchhandlung
- Klüber, J. L., revu, annoté et complété par M. A. Ott, 1874, *Droit des gens moderne de l'Europe*, 2^e édition, Guillaumin et C^{ie}, Libraires
- Lawrence, T. J., 1895,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MacMillan and Co.

- Oppenheim, L., 1905, *International Law - A Treaties, Vol. I, Peace*, Longmans, Green, and Co.
- Westlake, John, 1894, *Chapters on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The University Press
- Wheaton, Henry, 1855,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6th ed., Little Brown and Company
- Woolsey, Theodore D., 1860,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 James Monroe and Company
- Woolsey, Theodore Dwight, 1891,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 sixth edition, revised and enlarged by Theodore Salisbury Woolsey, Charles Scribner's Sons
- Kingsbury, Benedict, 2002, “Legal Positivism as Normative Politics: International Society, Balance of Power and Lassa Oppenheim's Positive International Law,” 13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Schmoeckel, M., 2000, “The Internationalist as a Scientist and Herald: Lassa Oppenheim,” 11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g_hennyu.html, 2013년 9월 30일 방문

1905년 독도편입 주장의 허구성에 관한 고찰

: 일본의 정부견해와 연구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김관원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I. 머리말

일본은 1905년 1월 28일 각의에서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竹島]를 타국이 점령했다고 인정할 만한 흔적이 없으므로 일본의 소속으로 한다'고 결정했다. 국제법을 근거로 독도를 무주지로 간주하고 '다케시마'라는 이름을 붙여 일본령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무주지선점의 법리에 따라 영토편입을 했음에도, 일본 정부는 패전 후 줄곧 '일본의 고유영토인 다케시마'에 대해 영유의사를 '재확인'했다고 한다. 즉 독도는 한국의 영토도 무주지도 아닌, 역사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일본 정부의 공식견해다.

한국 정부도 독도에 대해 '한국의 고유영토'라고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즉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견해와 1905년 영토편입의 형식이었던 '무주지선점'을 부정해 왔다. 그래서 한일 양국은 1950~1960년대에 서로 상대국에 대해 역사적으로 독도를 소유한 적이 없으며, 자국이야말로 역사적인 측면에서 독도의 진정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사료를 제시하며 네 차례에 걸

쳐 견해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최근에 와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는 일본 정부의 견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연구자가 늘고 있다. 1905년 영토편입은 독도를 무주지로 간주하고 선점의 법리에 따라 일본령으로 했다고 하는 그룹이 있다.¹ 이들이 주장하는 무주지선점론은 지금 일본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일본 정부의 고유영토론을 비판하는 무주지선점론자들의 논리는 한국의 독도 고유영토론을 받쳐주는 논리 구성에 어느 정도 기여는 했으나, 새로 부각된 자료를 통해 일본 정부의 고유영토론이 안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를 거듭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어찌 됐든 이것은 한국의 독도 고유영토론을

강화시켜,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고유영토론은 물론 무주지선점론에 대응할 경우 일정 부분 참고할 만한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² 그러나 독도는 한국과 일본 중 그 어느 쪽의 영토며, 한일 양국의 공동 통치 지역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제3국의 영토도 아니며 귀속 미정의 무주지도 아니다.³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이지, 무주지선점론자들이 말하는 무주지가 아니다.

그리고 '독도 문제'를 영토 문제가 아니라 역사 문제로 인식하고,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한반도를 탈취하는 과정에서 영토편입이라는 형태를 빌려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먼저 침탈했다고 하는 연구도 있다.⁴

이 글에서는 '독도 문제'의 최대 쟁점인 1905년 독도 영토편입이 역사적 사실에 합당했는가에 초점을 맞춰 논한다.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는 물론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의 고유영토이므로 일본의 영유의사 재확인 및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국제법상 선점의 요건에 합치하는가 아닌가의 문제보다는 독도가 선점의 대상이었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어야 한다. 그렇

1 주요 연구자로는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나카노 데쓰야[中野徹也],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 등이 있다.

2 시모조는 동북아역사재단이 나이트, 이케우치의 연구를 일본 측의 주장을 논파한 것으로 인정하고 재단의 '총서'에 수록했다고 하고 있으나, 동 재단은 결코 이들 연구가 일본 측의 주장을 논파했다고 보고 있지 않다. 시모조의 주장은 다음 참조. 下條正男, 2008, 「韓国人研究者との出会いで痛感した『竹島問題の不毛』, 『正論』(2월호), 272쪽

3 太寿堂鼎, 1966, 「竹島紛争」, 『國際法外交雜誌』, 64(4·5), 119쪽; 무라세도 1905년 독도 편입은 영유의사를 재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시기가 결정적 기일일 경우, 한국 측은 1905년 이전의 시기에 독도가 한국령이었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村瀬信也, 2012, 「『領土めぐる視角と國際司法裁判所』, 『外交』, Vol. 16, 117쪽

4 주요 연구자로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 호리 가즈오[堀和生], 나이트 세이추[内藤正中], 히로세 요시오[広瀬善男], 이토 나리히코[伊藤成彦] 등이 있다.

지 않으면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은 일정 부분 퇴색될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의 대부분이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 시기인 1905년까지의 역사적 사실에 있으므로, 이 시기까지의 사료를 기초로 하고 있는 일본의 정부견해와 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해, 일본 내에서 주장되고 있는 고유영토론 및 무주지선점론의 허구성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II. 1950~1960년대 일본의 정부견해와 연구동향

1. 1950~1960년대 정부견해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독립된 후, 독도와 관련해서 한일 간에 수많은 응수가 있었다. 특히 1953년 7월 13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일본정부견해'를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1962년 7월 13일까지 4회에 걸쳐 한일 양국 정부는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견해를 담은 문서를 주고받았다. 교환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보완을 위한 중복 부분이 많아지는 것을 볼 때, 양측 모두 상세한 자료와 고증을 통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이 1905년 독도 편입까지의 사료 중 어느 것을 활용해 한국 측에 대응했는지 당시의 일본 정부견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⁵

1) 일본정부견해 1 (1953. 7. 13)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 또는 이소타케시마(磯竹島)로, 오늘날의 다케시마를 마쓰시마(松島)로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네덜란드인 시볼트가 1840년에 발간한 '일본도(日本圖)'에서 울릉도를 마쓰시마로 잘못 표기해, 그 후 유럽에서 발간한 지도에서는 울릉도를 마쓰시마로 하게 됐으며, 이것이

5 네 차례에 걸친 일본 정부견해에 대한 개관을 위해 일본 국회도서관에 근무하면서 독도 연구를 해온 쓰카모토의 '자료'를 재인용해 활용했다.塚本孝, 2002, 「竹島領有權をめぐる日韓兩國政府の見解」, 『レファレンス』 617号, 49~63쪽. 자세한 한일 양국의 견해와 왕복문서는 신용하 편저, 2000, 『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 제3권 및 2001, 『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 제4권 과 외무부, 1977, 『독도관계자료집(1)』 참조 바란다.

일본에 영향을 미쳐 울릉도가 마쓰시마로 됐다. 17세기 말 일본 막부가 일본의 출어를 금지했으나, 그 다케시마는 울릉도였지 오늘날의 다케시마가 아니다. 오늘날의 다케시마는 양국 간 문제가 된 적이 없다. 또한 오늘날의 다케시마는 오래전부터 마쓰시마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일부로 여겨왔다는 것은 고문헌, 고지도 등을 통해서도 확실히 알 수 있다.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라는 사실은 국제법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근대국제법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일한병합 전인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島根県) 고시 제40호로 시마네현에 다케시마를 편입해 국가의 영유의사를 표시하고 유효하게 경영해 영토권을 확립했으며, 그 후 어떤 나라도 일본 귀속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2) 일본정부견해 2 (1954. 2. 10)

근대국제법상 영토취득의 요건은 국가로서의 영유의사, 그 의사의 공시, 적당한 지배권력의 확립이다. 그러나 개국이전의 일본에는 국제법의 적용이 없으므로 당시에는 실제로 일본에서 일본의 영토로 생각하고 일본의 영토로서 취급, 타국이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영유하는 데는 충분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다케시마는 17세기 오야(大谷), 무라카와(村川) 두 집안이 울릉도에 도항할 때 다케시마는 항상 기항지로서 이용됐으며, 동 섬에서 어업활동도 했다.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紀)』와 오야가(家)의 문서, 지도로는 이케다가(池田家)의 '죽도도(竹島圖)',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 등에서 알 수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다케시마를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이를 이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 『세종실록』의 우산도, 『동국여지승람』의 삼봉도는 다케시마가 아니며, 『숙종실록』의 안용복에 관한 기술은 허위가 많고 조선 정부가 죄인으로 취급했으므로 안용복에 관한 한국 정부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 울릉군수 심홍택이 1906년 '본방에 소속하는 섬 독도'라고 하는 보고서도 정확한 원문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의견을 낼 수가 없다.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가 다케시마를 조선의 영토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도근현지(烏根縣誌)』의 ‘조선영토라고 생각하고’ 라는 기사는 편찬자의 오해에서 비롯됐다. 또 1933년 일본 해군성이 편찬한 『조선연안수로지(朝鮮沿岸水路誌)』가 다케시마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보고 있으나, 수로지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편찬된 것으로서 섬의 귀속과는 관계가 없다. 동 수로지의 ‘울릉도로부터 건너온 사람’은 울릉도 주민이 아니라 일본인과 일본인에게 고용된 조선인이라고 생각된다.

근대국제법에 따라 필요한 영토취득의 요건에 대해서는 1905년 다케시마 영토편입에 관한 각의결정에 의해 국가의 영유의사를 확인하고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국가의 영유의사 표시는 당시 일본이 선점할 경우 관행적으로 행해진 고시방법으로서 국제법상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시마네현 지사의 시찰(1905년 8월), 현(縣) 부장 등의 조사(1906년 3월), 관유지로서의 토지대장 기재(1905년 5월) 등은 적당한 지배권력이 확립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1904년 8월의 일한협약은 일러전쟁 상황에서 한국의 영토보전을 위해 필요에 따라 군 전력상 필요한 지점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을 정한 것으로 다케시마 영토편입 조치와는 어떠한 관계도 없다.

3) 일본정부견해 3 (1956. 9. 20)

원래 다케시마 영유의 정당성을 결정하기 위한 매우 기본적인 문제는 누가 다케시마에 대해 먼저 정확한 지식을 갖고 영토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경영해왔나 등 국제법상 필요한 영토취득 요건을 충족시켰나에 달려있다.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우산도와 울릉도가 별개의 섬이라는 주장에는 많은 의문이 있어 우산도가 다케시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면, 조선이 울릉도에 대해 공도정책을 펴 실질적으로 방기한 결과, 일본인의 왕래가 늘어 임진왜란 중인 1593년부터 100여 년간 울릉도를 독점적으로 경영했다. 이때 다케시마는 정박장이나 전복 등의 어채지로서 이용됐다. 『은주시청합기』도 마쓰시마(독도)와 다케시마(울릉도)를 일본의 서북부 한계로 보고 있다.

당시 조선국 정부와 일본국과의 사이에 문제가 된 것은 울릉도로서 일본

막부가 1696년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울릉도에 대해서다. 따라서 마쓰시마(독도)의 경우에는 도해금지 조치와 관계가 없으므로 사람들이 일본 영토로 생각했다는 것은 당연하다. 예를 들어 『죽도도설(竹島圖說)』(1751~1763)에서는 ‘은기국송도(隱岐國松島)’, 『장생죽도기(長生竹島記)』(1801)에서는 마쓰시마(독도)를 놓고 ‘일본 서해의 끝’이라고 하고 있다. 1837년 울릉도 밀무역사건에서 하치에몬(八右衛門)이 진술한 판결문을 보더라도 울릉도에 대한 도해금지 조치 이후에도 다케시마에 도항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속중실록』의 안용복에 대한 기사, 즉 일본 어민으로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지켰다는 내용은 일본의 기록과 비교·대조해 보면 사실이 아니며 일반인인 안용복의 언동은 한국이 다케시마 영유를 주장하는 근거로 인정할 수 없다. 조선의 수도관이 울릉도에 정기적으로 파견된 것은 소위 공도정책을 시작함과 동시에 실시된 것이 아니라, 다케시마(울릉도)도해금지령이 내려진 이후다. 울릉도에 파견된 조선의 수도관은 다케시마(독도)와는 관계가 없다.

다케시마는 마쓰시마라는 이름으로 옛날부터 일본인에게 알려져, 일본 영토의 일부로 생각하고 일본인에 의해 이용돼 왔으나, 1905년 정식으로 시마네현에 편입조치됐다. 한국은 독도(다케시마)는 한국영토로서 결코 국제법에 따른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나, 다케시마가 이전에 한국령의 일부였다고 볼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일본은 1887년경부터 강제압박과 전복을 채취했으며, 190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시했으나, 이때에도 한국은 동 도를 점거하거나 이에 행정권이 미친 적이 없었으며, 일본 어민의 활동에 대해 항의한 적도 없다.

4) 일본정부견해 4 (1962. 7. 13)

국제법상 어떤 지역이 이전부터 한 국가의 고유영토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그 국가가 문제의 지역에 대해 어떻게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경영해왔는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돼 있는데, 일본은 옛날부터 다케시마에 대해 정확한 식견을 갖고 있었으며, 이를 일본 영토로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경

영해왔다.

조선의 고문헌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면 조선이 다케시마를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울릉도와 우산도가 별개의 섬인지 같은 섬인지 알 수 없으며, 우산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없어 우산도가 다케시마인지 입증할 수 없다. 『증보문헌비고』의 “우산은 바로 왜인들이 말하는 마쓰시마(독도)다”라는 기술은 일본 측에서 ‘마쓰시마’로 이름을 붙여 경영하고 있었던 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고문헌에 나타난 우산도를 그 마쓰시마에 적용했을 뿐이며,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고문헌에 기술된 우산도가 다케시마라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될 수 없다. 일본이 다케시마를 인지하고 경영하기에 앞서 조선이 동 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조선의 고문헌 중에 존재하지 않으며, 하물며 다케시마에 대한 실효적 경영을 했다는 형적은 없다. 안용복 관련 『숙종실록』 등의 기록은 국경을 넘은 범인이 귀국 후 조사를 받던 중에 말한 것이며, 안용복과 관련된 일본의 자료와 대조해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때 그 진술은 허위가 많다.

1877년경 일본인이 울릉도를 마쓰시마라고 하면서 울릉도를 개척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제출한 신청서를 심의한 외무성 다나베(田辺) 공신국장이 ‘마쓰시마(독도)는 사실 조선의 울릉도에 속하는 우산’이므로 개척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런 한국의 주장은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기록 중의 한 구절만을 인용한 것이다. 여기에서의 마쓰시마는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마쓰시마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나베 국장은 이 마쓰시마가 울릉도에 속하는 우산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나, 혹시 정말로 그렇다면 개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을 뿐이다. 와타나베(渡辺) 기록국장은 마쓰시마가 울릉도와 별개의 섬이라면 일본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마쓰시마개척원에 대한 심의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메이지 초기에도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서 인식하고 논의를 했다는 것이다.

시마네현 고시는 일본이 근대국가로서 옛날부터 일본의 영토인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의사를 재확인하고 다케시마를 일본의 근대 행정구분 안에

편입한 사실을 공시한 것이다. 일청전쟁 이후에 벌어진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행위의 일환이 아니며, 또 1904년 일한협약에 따른 외교고문의 임명은 다케시마 편입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국이 시마네현 고시보다 먼저 다케시마를 유효하게 경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동도의 편입은 침략행위가 아니다.

2. 1950~1960년대 연구동향

1950~1960년대 일본의 독도 연구는 일본 정부의 견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50년대의 연구는 한국의 평화선 선포에 대해 분개하는 마음으로 집필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심지어 17세기 후반의 울릉도장계의 결과에 대해 “원래 일본의 판도였으나 조그만 섬 때문에 인교(隣交)가 단절되는 것은 좋지 않으므로 조선에 환부(還付)했다”⁶거나 “원래 일본영토인 울릉도를 막부가 통치를 조선에 위임했는데 조선 소속이 되고 말았다”⁷고 하는 등 아쉬워하는 대목도 있다. 1960년대는 그때까지 한국과 일본이 주고받은

양국 정부의 견해를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당시 일본 정부의 견해를 세우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이 시기의 연구에서 연구자 간 차이점을 찾는다면 1905년 독도 영토편입의 성격에 관한 것이다. 하나는 오래전부터 일본의 영토인 독도를 근대국제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 정식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어떤 나라의 영토도 아닌 무주지를 정당하게 선점했다는 것 등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눌 수 있다. 후자인 무주지선점론을 주장하는 연구자는 마쓰쿠마 기요시(松隈清) 등 비교적 소수고,⁸ 다이주도 가나에(太寿堂鼎)를 비롯한 다수는 전자인 고유영토론을 취하고 있다.⁹

6 田村幸策, 1954, 「竹島問題の回顧と法理」, 『政治経済』 7(11), 12쪽

7 速水保孝, 1954, 「竹島(1)」, 『地方自治』(通号 74), 40쪽

8 松隈清, 1962, 「国際法より見た李ライン問題と竹島の帰属」, 『八幡大学論集』 12(2), 107~108쪽; 田村洋幸, 1963, 「竹島問題に関する一考察」, 『商学論叢』 第5号, 208쪽; 植田捷雄, 1965, 「竹島の帰属をめぐる日韓紛争」, 『一橋論叢』 第54卷 第1号, 31쪽

9 秋岡武次郎, 1950, 「日本海西南の松島と竹島」, 『社会地理』(通号 27), 7~10쪽; 高村信吉, 1953, 「竹島をめぐる日韓の冷戦」, 『人物往来』 2(10), 85~89쪽; 速水保孝, 1954, 앞의 글, 30~65쪽; 森田芳夫, 1961, 「竹島領有をめぐる日韓兩國の歴史上の見解」, 『外務省調査月報』 2(5), 23~35쪽; 皆川洗, 1965, 「竹島紛争とそ

우선 일본의 고유영토론 혹은 이에 가까운 주장, 그리고 무주지선점론을 주장한 연구자 순으로 주요 논문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키오카 다케지로[秋岡武次郎]는 고지도 분석과 관련해서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의 논리에 많은 영향을 줬으며, 영토편입은 일본 정부에 의해 일본령으로서 재 확인했다고 했으며,¹⁰ 다카무라 노부요시[高村信吉]와 하야미 야스타카[速水保孝]는 정식으로 편입한 것이라고 했다.¹¹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는 한일 간 세 차례 주고받은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견해 중 역사적 근거의 견해를 정리했으며, 편입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주장인 고유영토론을 따랐다.¹²

미나가와 다케시[皆川洗]는 한일 양국 정부가 교환한 견해를 분석하고 독도문제의 특징은 무주지의 주권 취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즉 일본이 독도를 편입한 시기에 독도가 무주지였나 어떤가가 쟁점이 된 것이 아니라, 그때보다 훨씬 이전부터 자국이야말로 평온하게 영유해왔다고 주장했다.¹³ 일본 측에는 1905년 독도를 정식으로 편입하고 그 후의 국가기능의 발현(입법권, 지방적 행정권)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므로, 한국은 1905년 일본의 영토편입 이전에 실효적 점유에 바탕을 둔 권원으로 대체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면서, 일본은 17세기 초 독도를 발견하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원시적 권원을 갖게 됐으며, 이것은 1905년 공식적인 영토편입에 의해 확정적 권원으로 대체됐다고 했다.¹⁴

다이주도[太寿堂]는 독도는 1881년 이후 1906년까지 한국인에게 알려졌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우산도 또는 안용복이 말한 자산도가 독도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독도'라는 명칭과 연결되지 않아 양자 간에는 확실히 단절됐으며, 시마네현 부장 등이 독도를 조사하고 울릉도에 들러 울릉군수 심홍택과 면회, 일본령에 정식으로 편입된 독도에 시찰했다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제법의 견지에서 독도는 귀속 미정의 무주지가 아니라 일본 영토 아니면 한국(조선)의 영토라고 하면서 일본의 고유영토론을 주장했다.¹⁵

의解決手続-日韓條約の批判的檢討」, 『法律時報』 37(10), 38~44쪽; 太寿堂鼎, 1966, 앞의 글, 105~136쪽

10 秋岡武次郎, 1950, 위의 글, 10쪽

11 高村信吉, 1953, 앞의 글, 88쪽; 速水保孝, 1954, 앞의 글, 31쪽

12 森田芳夫, 1961, 앞의 글, 27쪽

13 皆川洗, 1965, 앞의 글, 38쪽

14 皆川洗, 1965, 위의 글, 40쪽

가와카미[川上]는 당시 외무성 관료로 1950~1960년대 한국과의 독도 논쟁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1953년 외무성 조약국이 정리한 소책자 『죽도의 영유』를 골자로 해서 그 후의 새로운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첨가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정리했으나, 초기 '일본정부견해'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독도가 한국 문헌에 처음 나타난 것이 1906년이라고 하면서 일본 문헌 『지학잡지』(1906)에 "한인은 그것을 독도라고 쓰고, 일본의 어부 등은 일반적으로 리앙코도라고 칭한다"고 했으며, 또 1907년 수로부 편 『조선수로지』에도 "그것을 독도라고 쓰고, 일본 어부는 리앙코도라고 말한다"고 기술돼 있다고 했다. 일본인이 울릉도를 근거로 독도에 들어가기 시작한 1904년경부터 울릉도에 거주하는 한인을 어부로서 가끔 동 도에 동반했으므로, 그 이후 한인도 동 도를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독도라고 부르게 됐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 할 것이라고 했다.¹⁶

후카쓰 에이이치[深津栄一]는 양국 간에 교환한 문서는 무주지에 대한 선점의 법적 효과를 문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오히려 그 이후 누가 독도에 대해 보다 유효하게 실제적으로 주권의 계속적 행사를 했는가를 주장하고 있다.¹⁷ 후카쓰는 이를 근거로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판례를 분석하면서 독도의 귀속문제를 논하고 있다.

마쓰쿠마[松隈]는 독도 귀속문제의 역사적 근거에 관해 한국이 여러 문헌을 제시하면서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국 측이 주장하는 문헌이나 사실의 인용은 부정확하며, 해석도 오해가 많다고 '일본정부견해'와 같이 상세하게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¹⁸

또 영토취득 요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905년 독도

영토편입에 관한 각의결정에 의해 국가의 영유의를 확인하고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국가의 영유의사 표시는 당시 일본이 선점할 경우 관행적으로 행해진 고시방법으로서 근대국제법상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근대국제법상 필요한 영토취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의미는 요건 중의 선점에 의한 영토 취득요

15 太寿堂鼎, 1966, 앞의 글, 119~123쪽

16 川上健三, 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183쪽

17 深津栄一, 1962, 『孤島の帰属に関する法理』, 『総合海洋科学』, 4호, 39쪽

18 松隈清, 1962, 앞의 글, 83~116쪽

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점이라는 것은 아직 어떤 국가의 영토에도 소속돼 있지 않은 토지를 자기의 영토로 한다는 국가행위이므로 문제는 독도가 무주지인가 아닌가인데, 현재 일본 정부는 독도는 옛날부터 무주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선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한다. 따라서 독도에 대해 무주지가 아니라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이상, 일본 정부는 근대국제법상 필요한 영토취득 방법의 하나인 선점의 형식을 빌려 영토를 편입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¹⁹

다무라 히로유키[田村洋幸]와 우에다 도시오[植田捷雄]도 일본 정부의 견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는 『은주시청합기』에 독도에 관한 기술이 있고 일본령으로 기록된 문헌이나 고지도가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귀속이 확실치 않았던 독도가 일본령으로 결정된 것은 편입이라고 했으며,²⁰ 후자는 독도 편입에 대해서는 선점의 범리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²¹

이상 당시 일본의 고유영토론 혹은 무주지선점론을 주장한 학자의 견해를 간략히 살펴봤다. 그러나 이 시기의 독도 관련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 중 아마베 겐타로[山辺健太郎]만이 이들과 다른 견해의 논문을 발표했다.²² 아마베는 1905년 독도 영토편입 신청을 한 나카이[中井]의 독도 소속에 대한 인식과 일본의 독도 편입 당시의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님을 논증했다. 일본의 독도 편입은 19세기 말부터 진행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서, 독도편입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독도의 귀속을 문제로 삼는다면 일본의 영토편입이 정당한가, 어떤가를 봐야 한다. 당시 우연히 독도에 도항한 나카이조차 ‘그 섬을 조선 영토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카이의 편입신청서에는 독도의 소속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 1904년경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인식은 없었다.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의 정당성을 결정하기 위한 매우 기본적인 문제는 누가 독도에 대해 먼저 정확한 지식을 갖고 영토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경영해왔나 등 국제법

19 松隈清, 1962, 위의 글, 107~118쪽

20 田村洋幸, 1963, 앞의 글, 205~228쪽

21 植田捷雄, 1965, 앞의 글, 19~34쪽

22 山辺健太郎, 1965, 「竹島問題の歴史的考察」, 『코리아評論』 7(2), 4~14쪽

상 필요한 영토취득 요건의 충족여부라고 봤으며, 일본은 이를 충족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토의 일부로 생각한다는 것은 적어도 1904년에는 조선령 혹은 소속불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제국주의 국가는 타국의 영토를 침략해 경영하며 침략국이 먼저 더 정확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3. 소결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1905년 독도를 무주지로 간주하고 국제법상 선점의 법리를 원용해 영토편입을 했다. 그러나 네 번의 ‘일본정부견해’ 중 처음 두 번의 견해는 역사적 권위를 주장하면서 근대국제법에 따라 무주지인 독도를 편입했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 견해에서는 원래 독도 영유의 정당성을 결정하기 위한 매우 기본적인 문제는 국제법상 필요한 영토취득 요건을 충족시켰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일본인들이 이용해 온 독도를 정식으로 편입조치를 했다고 한다. 이 견해는 고유영토론을 주장하는지 무주지선점론을 주장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 네 번째인 1962년 일본 정부의 견해는 무주지인 독도를 선점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영유의사를 재확인했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2008년의 정부 주장으로 이어진다. 일본이 오래전부터 평온하게 영유를 계속해온 독도에 대해 근대국제법에 따라 영유의사를 재확인했다는 것으로, 소위 ‘원시적 또는 역사적 권위’를 영유의 근거로 삼고 있는²³ 일본 정부로서는 독도편입의 성격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3 中野徹也, 2011, 「竹島の帰属に関する一考察」, 『関西大学法学論集』 60(5), 115쪽

24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부교재의 연표도 1905년 ‘독도편입’부터 시작한다.

25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영토편입에 대해서는 선점의 법리를 적용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영토편입의 성격에 관한 내용이 총 네 번의 모든 ‘일본정부견해’에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일본 정부가 얼마나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²⁴ 고유영토론과 무주지선점론을 병행 주장한 것으로도 보이는 처음 세 차례의 정부견해가²⁵ 1962년 7월의 마지막 ‘일본정부견해’에서는 영유의사

재확인(고유영토론)으로 바뀌는데, 이렇게 된 데는 정부견해의 자체 모순과 1951년부터 시마네현이 행한 ‘시마네현 영토 다케시마의 재확인’ 요구,²⁶ 그리고 마쓰쿠마의 신랄한 지적 등 당시 다수 학자의 견해를 따랐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초기 연구는 일본 정부에 논리를 제공했거나 정부견해를 분석하는 형태의 연구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초창기 일본의 정부 견해와 독도 연구는 내용면에서 서로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 단, 독도 편입의 성격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주장이 제기됐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일본 정부의 견해인 ‘고유영토론’ 즉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지만 근대국제법에 따라 영유의사를 재확인했다는 견해를 긍정하는 논리고, 다른 하나는 ‘무주지선점론’으로서 당시 독도는 어느 나라의 소속도 아니었으므로 국제법상 선점의 법리에 따라 무주지인 독도를 편입했다는 것이다.

III. 최근 일본의 정부견해와 연구동향

1. 최근의 정부견해

일본 외무성은 2008년 2월 『竹島-다케시마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라는 소책자를 발행하고, 이를 한국어, 영어 등으로 번역해 일본어 포함 총 10개 국어로 된 파일을 외무성 홈페이지에 탑재했다. 그러나 소책자의 내용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와 논쟁을 벌이던 와중에 1953년부터 1962년까지 4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전달한 일본의 정부견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소위 ‘10가지 포인트’에서도 독도에 대한 고유영토론을 주장하기 위해 편입이 무주지선점이 아닌 영유의사 재확인이었다는 1962년 7월의 정부견해를 되풀이하고 있다.

다만 추가된 부분이 있다면, 1900년 대한제국 칙령

²⁶ 内藤正中, 2005a, 「竹島は日本固有領土か」, 『世界』(6월호), 53쪽

제41호에 관한 것이다. “석도(石島)는 다케시마가 아니다. 가령 다케시마라고 하더라도 동 칙령 공포 전후에 조선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없으므로 한국의 다케시마 영유권은 확립돼 있지 않았다고 생각된다”는 내용 정도다. 한편 1962년 당시의 정부견해에서 ‘독도와 울릉도를 일본의 서북쪽 한계로 본다’고 해석하며 강조했던 17세기 중엽의 일본 문헌인 『은주시청합기』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다.

2. 1970년대 이후의 연구동향

1) 1970~1980년대

1970~1980년대 일본의 독도 연구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다. 주목할 만한 논문을 집필한 학자로는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 호리 가즈오(堀和生), 그리고 다가와 고조(田川孝三)를 꼽을 수 있겠다.

가지무라(梶村)는 1950~1960년대 한일 양국 간에 오간 견해를 검증해, 독도는 한국령의 울릉도와 형제 섬으로서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보여 조선인은 오래전부터 그 존재를 알고 있었으므로 독도를 인지하고 실효적으로 경영한 것도 조선 측이 빨랐으며, 1696년 에도(江戸)막부는 독도가 조선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일본인의 도항을 일체 금하는 정책을 폈는데, 이때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의식적으로 구별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료는 전혀 없는 반면, 통념적으로 일체라고 여겼던 사료는 많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²⁷

또 1877년경 일본 외무성의 논의에서 다나베 다이이치(田辺太一) 공신국장은 “마쓰시마(독도)는 사실 조선의 울릉도에 속하는 우산”이라고 한 반면, 와타나베 히로모토(渡辺洪基) 기록국장은 “호르넷 록스(독도)가 우리나라에 속한다는 것은 각국의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메이지 정부의 외

무성이 독도에 대해 이 정도밖에 인식하지 못했는데도 계속해서 실효적 경영을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²⁸

²⁷ 梶村秀樹, 1978, 「竹島=独島問題と日本国家」, 『朝鮮研究』 182호, 19~20쪽

²⁸ 梶村秀樹, 1978, 위의 글, 22쪽

그는 1905년 이전에 조선 정부가 독도에 대해 어떤 시정(施政)도 하지 않았으므로 독도 영토편입 당시 무주지 상태였다는 일본의 견해에 대한 반증으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제시하면서²⁹ 한국 정부가 칙령으로 석도(독도)를 울릉군청의 관할 하에 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한국민의 실질적 지배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1905년이 되고 나서 일본이 이 섬을 일본 영토로 하는 각의결정을 한 사실은 그때까지 일본 영토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석도를 관음도라고 비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형과 연혁의 측면에서 보면 가능성이 없으며 독도로 보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다고 했다.

또한 편입이 제국주의적 침략행위였나 아니었나가 최대의 쟁점 중 하나라고 하면서, 일본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제국주의의 영토확장과 관련된 역사문제라고 했다. 편입행위에 대해 한국이 국제적 항의를 하지 못한 것은 조선 전체의 침략을 목적으로 러일전쟁을 일으켰으며, 조선 전체를 군사 점령 하에 두고 군사력을 배경으로 1904년 2월 한일의정서를 강요해서 실질적으로 보호국 체제하에 두었으며 동년 8월의 제1차 한일협약에 따라 외교 고문을 두어 일본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했다.³⁰

호리(堀和)는 주로 근대 이후의 자료를 분석해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니라고 하고 독도 영토편입을 조선의 섬에 대한 침략이라고 했다. 일본 해군 수로지의 독도 인식, 메이지유신 이후의 한일관계, 시마네현 주민의 울릉도 불법 입도와 수목 벌채, 러일전쟁 수행 등과 관련지어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의 침략성을 논증해, 1905년 독도 편입이 17세기 이래 일관되게 일본의 영토였던 독도의 영유권을 재확인하는 것이라는 일본 측의 주장을 허구라고 비판했다.³¹ 즉 독도의 일본 영토편입이 군사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과 당시 한국 측이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해 《대한매일신보》(1906.

29 梶村秀樹, 1978, 위의 글, 23~24쪽.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1969년 이한기가 처음으로 언급했다. 李漢基, 1969, 『韓國의領土』 서울대학교출판부, 281쪽

30 梶村秀樹, 1978, 위의 글, 24쪽

31 堀和生, 1987, 「1905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會論文集』 제24호, 97~125쪽

5.1)와 《황성신문》(1906. 5. 9)이 항의한 사실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평가할 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했다.³²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섬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케시마(울릉도) 내의 마쓰시마(독도)(竹嶋内松嶋)”, “다케시마(울릉도) 근변의 마쓰시마(독도)(竹島近邊松嶋)”, “다케시마(울릉도) 근처의 소도(독도)(竹島近所松之小嶋)” 등을 예로 들면서 독도의 존재 형태를 명백히 했다.³³ 또한 그는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라고 한 1877년 일본 정부의 최고기관인 태정관의 자료를 처음으로 제시했으며, 1870년 조선 시찰 결과보고서인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를 참고해 태정관이 결정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³⁴

다가와(田川)는 일본의 고유영토론을 주장하는 조선사의 권위자로서 역사 부분에서 가와카미의 연구에 많은 영향을 줬다. 1980년대 후반의 논문임에도 한일 양국이 견해를 교환한 이후에 부상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와 시마네 현 지적편찬 관련 질문서에 대한 태정관의 답변은 언급하지 않은 채, 초기 ‘일본정부견해’에서 인용된 사료만을 제시했으며 분석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³⁵

2) 1990년대 이후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나카노 데쓰야[中野徹也], 나이토 세이추[内藤正中],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 히로세 요시오[広瀬善男], 이토 나리히코[伊藤成彦], 세리타 겐타로[芹田健太郎]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일본의 무주지선점론, 한국의 고유영토론, 그리고 일본 포기론을 비롯하여 기타 등 순으로 견해를 개관한다.

32 堀和生, 1987, 위의 글, 119~120쪽

33 堀和生, 1987, 위의 글, 101쪽

34 堀和生, 1987, 위의 글, 103~104쪽

35 田川孝三, 1988, 「竹島領有に関する歴史的考察」, 『東洋文庫書報』 20호, 6~52쪽

쓰카모토[塚本]는 일본 국회도서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독도에 관한 연구를 해왔다. 독도는 일본의 편입조치 시점에서 한일 어느 쪽도 ‘고래의 영토’가 아니며, 한국(또는 타국)에 의한 선점도 완성돼 있지 않았으므로 국제법상 무주지였다고

한다.

편입조치에 대한 그의 주요 견해는 다음과 같다. 일본인이 독도에서 어로 활동을 한 것에 대해 국제법상 점령했다고 하고 있으나, 선점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면 안 되므로 사인에 의한 활동 자체는 선점을 완성시키지 못한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인에 의한 '점유를 위한 행위'를 각의결정을 통해 '국가의 추인'이 있었으므로 선점의 방식은 적합하다.³⁶ 한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 편입 다음 해인 1906년의 시점에서는 동 도가 자국령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문헌상 확인된다. 그 이전에는 1900년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말하는 석도가 독도라면 법령에서 동 도를 행정 관할구역으로서 정한 것이 되므로 국가의 영유의사표시에 해당된다(칙령은 관보로 공시됐다). 그러나 한국은 칙령의 전후에 동 도에 대해 점유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후 칙령의 석도가 독도였다고 하더라도 칙령의 제정으로 국제법상 영유의 권원이 생겼다(예를 들어 선점이 성립했다는 사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동 도가 한국령이 된 적이 없고 한국의 보호·병합의 과정에서 독도를 탈취했다고 하는 논의는 전제가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또는 세계를 향해) 독도를 한국령이라고 인정한 사실이 없다.³⁷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와 관련해서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심흥택이 독도를 '본군 소속'이라고 한 것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2조에서 '울릉전도, 죽도, 석도'를 울도 군수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라고(石을 방언으로 독이라고 하므로 獨이 된다고 한다) 생각된다. 강원도는 정부에 보고하고 의정부 참정대신은 "독도 영지설은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일본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시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독도(법령상의 문헌은 석도)를 관할한다는 내용의 칙령을 제정·공포했다는 것은 '그 토지를 보지(保持)한다는 의사의 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칙령의 전후에 한국 정부나 한국인이 이 섬에 대해 '점유를 위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없다.³⁸

이와 같이 쓰카모토는 1905년 일본의 편입 이전 칙

령 제41호의 석도가 독도라고 하더라도 독도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영토도 아니라고 했으며, 무주지인 독도를 일본이 편입해 '점유를 위한 행위'를 했다고 역설했다.

시모조[下條]는 2004년 문고판 『다케시마는 일한 어디의 것인가』를 출간했다.³⁹ 내용은 대체로 '일본정부견해'와 가와카미, 다가와의 견해에 '조선 국교제시말내담서'(1870), '태정관 문서'(1877),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에 대한 해석을 추가하면서 보강하는 수준이다. 이 책은 수면 하에 있었던 '독도 논쟁'을 밖으로 끌어내,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는 논리를 구성할 경우 불리한 부분이 있으면, '해석의 아전인수', '사료 집필자의 오해', '사료의 개찬' 등을 언급하며 심지어는 일본인이 집필해 일본에서 발간한 책에 일본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한국의 주장을 실은 것에 대해 독도 문제의 실상을 독자가 이해하는 데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⁴⁰

1905년 영토편입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달리 무주지인 독도를 편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⁴¹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독도를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일본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무주지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 이후 패망할 때까지 실효적으로 지배했기 때문이라고 한다.⁴² 편입된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가 됐

다는 논리다. 또한 독도 편입에 대해 한국 측이 침략이라고 하는 것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석도를 독도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 석도는 관음도이므로 독도를 침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⁴³

나카노[中野]는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했다. 그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술하면서 고유영토론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1905년의 영토편입조치를 '영유의사 재확인'으로 보기 어려우며, 각의결정 자체도 독도를 무주지로 인정하고 일본 소속으로 했다고 했다.⁴⁴ 대한제국 칙령 제

39 下條正男, 2004,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 文藝春秋

40 下條正男, 2012, 『竹島 韓国こそ過去を猛省せよ: 歴史的事実こそ最大の武器』, 『Will』(94), 41쪽

41 下條正男, 2013, 『歴史資料から見た竹島問題: 韓国側主張の脆弱性』, 『東亜』(549), 19쪽

42 下條正男, 2012, 앞의 글, 38쪽

43 下條正男, 2013, 앞의 글, 25쪽

44 中野徹也, 2012, 『1905年日本による

41호가 독도를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한 의사표시'였다고 할 수 있다면, 적어도 동 칙령은 발견 또는 선점의 착수에 해당되는 행위로서 한국에 '미속한 권원'이 주어져 타국의 선점행위를 배척할 수가 있었지만, 칙령의 '석도'와 독도가 일치하지 않는 이상 당시 독도는 무주지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⁴⁵

그러면서도 1906년 울릉군수, 강원도 관찰사, 내부대신, 의정부 참정대신 등이 독도는 한국령이라고 단언한 것을 보면 1905년 직전의 시기에 독도가 한국령이라고 인식했던 어떠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부언했다.⁴⁶ 당시의 정세를 뒤돌아볼 때 편입행위에 대응할 수 있었던 나라는 한국뿐이었다. 이를테면 잠재적 경쟁국(係爭國)을 식민지화하고서 무주지선점을 주장하는 것은 침략과 같다고 받아들여도 어쩔 수 없다는 측면은 확실히 있다. 그럼에도 그것이 일정 시기 서구 열강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원용돼 '강자(强者)의 법(法)'이라고 불렸던 근대국제법의 특징이었다는 등의 당시의 사정을 언급하면서,⁴⁷ 이전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려 한다면, 한국 측의 반감만 살 것은 불을 보듯 하다고 지적했다.⁴⁸

나이토[内藤]는 1990년대 중반에 '에도막부의 질문에 대한 돛토리번[鳥取藩]의 답변서'라는 고문서를 발견한 것이 계기가 돼 독도 연구를 시작했다고 한다. 지난 20여 년간 일본의 '다케시마 고유영토론'에 대해 반론을 제기해왔으나,⁴⁹ 한국의 영토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다. 한국 측은 한국 측으로서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주체적으로 증명하면 된다고 제언했는데, 이를 고유영토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일본도 한국도 역사적 근거와 국제법상 필요로 하는 영토취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⁵⁰ 독도 편입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1696년, 1877년 두 차례에 걸쳐 영유권에 대해 부인한 적은 있어도, 일본령이라고 주장한 적은 한 번도 없

竹島領土編入措置の法的性質, 『関西大学法学論集』 61(5), 132쪽

45 中野徹也, 2012, 위의 글, 152쪽

46 中野徹也, 2012, 위의 글, 151쪽

47 中野徹也, 2012, 위의 글, 156쪽

48 中野徹也, 2012, 위의 글, 166쪽

49 대표적인 저서로서는 内藤正中, 2000, 『竹島(鬱陵島)日朝關係史』, 多賀出版이 있다.

50 内藤正中, 2007, 『史的檢證. 竹島・独島』, 岩波書店, 255~256쪽

었으므로 영유의사의 재확인이나 무주지선점의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⁵¹

나이토는 다음과 같이 일본 정부의 주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돛토리번 답변서는 1693년 안용복의 도일을 계기로 벌어진 조일 간의 울릉도 귀속을 둘러싼 '울릉도쟁계'시, 막부와 돛토리번 사이에 오간 서신이다. 이 서신이 직접적인 계기가 돼 막부는 1696년 1월 울릉도 방면의 도해를 금지했다. 1696년 도해금지령에 따라 울릉도에 도항하는 자가 없어짐에 따라, 원래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는 바위섬인 독도에 대한 관심도 없어져 독도에도 건너가는 자가 없었다. 독도는 울릉도에 부속하는 섬으로서 별도로 취급하지 않았으며, 도해면허의 대상이 아닌 독도에 대해서는 도해금지 대상으로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⁵² 메이지 정부 시기의 조선국에 위무성 관리를 파견해 내정을 조사한 보고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는 1696년 울릉도 쟁계 이후를 언급하며 울릉도와 독도가 함께 조선국령이라고 보고 있었으며, 당시 최고 권력기관인 태정관도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했다(1877).⁵³ 그럼에도 야마자 엔지로[山座圓次郎] 위무성 정책국장은 '시국(時局)이야말로 영토편입은 급무'라고 하면서 편입을 추진했다. 그는 서울의 일본 공사관 일등서기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몰랐을 리가 없으면서도 굳이 량코도가 석도(독도)라는 것을 무시하고 량코도를 무주지로 취급했다고 생각된다.⁵⁴ 그러나 당시 일본 정부 등은 이 섬을 한국령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한국의 보호국화 과정에서 편입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는 한국으로서는 일제 지배의 식민지화가 시작된 해며 일본의 독도 영유는 그 첫발이라는 등의 비판을 했다.⁵⁵

이케우치[池内]는 1667년의 일본 문헌인 『은주시청합기』의 '이주[此州]'에 대해 일본 정부의 견해와 달리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는 일본령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⁵⁶ 그리고 1690년대부터 1880년대까지 일본 측도 한국 측도 독도에 대해서는

51 内藤正中, 2005a, 앞의 글, 61쪽

52 内藤正中, 2005a, 위의 글, 56~57쪽

53 内藤正中, 2005b, 『竹島(独島)問題の問題点(下)』, 『統一評論』(478), 82~83쪽

54 内藤正中, 2005b, 위의 글, 84~85쪽

55 内藤正中, 2005a, 앞의 글, 61~62쪽

56 池内敏, 2001, 『17-19世紀鬱陵島海域の生業と交流』, 『歴史學研究』, No. 756, 163쪽

인지하고 있었겠지만, 이 기간 양국 정부는 영유의 대상으로서 독도에 해당 하는 이름을 단독으로 언급한 적이 없었으므로 적어도 이 시기에는 독도에 대한 영유인식은 양국에 없었으며,⁵⁷ 독도가 단순히 지리적 인지의 대상에서 영유인식의 대상으로 전환하기 시작하는 것은 일본인에 의해 울릉도와 함께 독도의 활용이 재개되고 조선이 울릉도 공도화 정책을 포기함에 따라 조선인의 울릉도 이용이 가능하게 된 1880년대부터이므로,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논해야 할 역사는 이 이후부터며, 이 이전의 역사는 지금의 독도의 역사적 귀속문제와 직접 관계가 없다고 했다.⁵⁸

그는 역사적 문헌에 나타나는 우산도가 모두 독도라고 하는 주장은 실증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19세기의 조선 측 문헌과 고지도에 나타난 우산도는 독도와 일치하지 않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석도가 독도와 일치한다고 직접적으로 증명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한국의 고유영토가 아니었으며,⁵⁹ 또 1696년 도해금지령,⁶⁰ 1877년 태정관지령⁶¹을 근거로 당시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다고 한다.⁶²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1905년 독도 편입에 대해 독도를 무주지로 보고 선점의 법리에 따라 일본의 소속으로 하려고 한 행위였지, 현재 일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고유영토로서 영유의사를 재확인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⁶³ 그리고 현재까지의 논증만으로 본다면 1905년 1월 시점에서 독도가 한국령이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무주지선점을 근거로 하는 일본령 편입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⁶⁴ 그럼에도 1904년 군항 나타카[新高]호 일지의 독도 표기와 1906년 조선인 관료 등이 '독도는 한국령'이라고 단언한 것을 생각하면 1905년 직전의 시기에 독도가 한국령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어떤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57 池内敏, 2006, 「竹島/独島=固有の領土論の陥穽」, 『Ratio』(2), 89~90쪽, 1696년 도해금지령에 따라 울릉도는 물론 자체로는 가치가 없는 독도에 건너가는 일본인은 없었으며, 조선 측도 울릉도쟁계 이전의 '공도정책'을 계속 시행하며, 2~3년에 한번씩 수토관을 파견해 엄격히 운용해 울릉도는 물론 독도에 도항하는 것을 용인했는지 없었다고 한다.

58 池内敏, 2006, 위의 글, 91쪽

59 池内敏, 2012,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学出版会, 301~304쪽

60 에도 막부는 1696년과 1837년 두 번에 걸친 도해금지령으로 울릉도를 조선령으로 확인하고 독도를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池内敏, 2012, 위의 글, 303쪽

61 시마네현이 1876년 도면을 첨부해 내무성에 제출한 '地籍編纂方向'에서 마쓰시마를 독도라고 했다. 池内敏, 2012, 위의 글, 304~305쪽

62 池内敏, 2012, 위의 글, 302~305쪽

63 池内敏, 2011, 「竹島/独島論争とは何か-和解へ向けた知恵の創出のために」, 『歴史評論』 733号, 27~28쪽

64 池内敏, 2012, 위의 글, 311쪽

밖에 없으며,⁶⁵ 그렇다면 1905년 일본이 독도를 편입하기 전에 한국 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논할 여지가 있으므로 일본 측은 독도 편입의 형식이었던 무주지선점이 성립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하고 의문을 제기했다.⁶⁶

히로세[広瀬善男]는 독도 문제의 키워드를 '식민지화', '비식민지화'의 법리라고 보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메이지 정부는 태정관 문서의 '외 1도'가 독도며 울릉도의 속도(屬島)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을 것임에도, 러일전쟁 중 독도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시되고 나카이의 어업 실적을 중시해 무주지 선점의 법리를 적용해 편입했다고 하며,⁶⁷ 영역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효적 점유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 대해 주권자로서 행동하는 의사와 국가기능의 일정한 실제적 행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사람이 정주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권적 권리의 행사는 약간이면 족하다고 역설했다.⁶⁸

또한 독도는 전쟁 자유의 시대였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유효한 국제법리였던 강국 일본의 식민지화 활동에 의한 일본의 실효적인 점유행위의 결과가 법적으로 인정받아 일본령으로 났으므로 일본 정부의 독도 영토편입조치는 일본에 의한 외국 영역의 식민지화 과정의 일환으로서 실행된 실효적 점유라고 보는 것이 공평(객관적)하며 정확하다고 했다. 그리고 유엔 체제하에서 비식민지화 법리의 대상이 되는 식민지 지역은 원 소유국 영역(조선 영역인 울릉도=대한제국 영역)과 지리적 근접성(영역적 일체성)을 갖는 것이 조건이 될 수 있으므로 울릉도가 조선(대한제국) 영역이라는 것에 대해 다툼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독도가 울릉도와 역사적 권원을 같이하는

지리적 근접성을 가진 '속도'적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사적 사실로서 승인하는 것이 합리적 이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조선(대한제국) 정부는 가끔 독도에 대해 울릉도의 '속도'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특히 1900년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도 명확히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65 池内敏, 2011, 위의 글, 32쪽

66 池内敏, 2012, 위의 글, 313~314쪽

67 広瀬善男, 2007, 「国際法からみた日韓併合と竹島の領有権」, 『法学研究』 81号, 291~292쪽

68 広瀬善男, 2007, 위의 글, 292쪽

에 일본이 같은 형식의 명확한 대항조치를 취한 것이 1905년의 독도 편입인데, 이미 오늘날의 비식민지화 법리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일본의 대한(對韓) 강경행동(식민지화 활동)이 활발히 전개된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 조치는 식민지화의 일환이었다고 인식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독도는 카이로선언의 언급처럼 ‘폭력’과 ‘탐욕’에 의해 일본이 약취한 섬이라고 주장했다.⁶⁹

이토(伊藤)는 일본 정부는 랑코도(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한국령이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각의결정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한 것에 대해, 각의결정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일방적이었으며 난폭한 조치였나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⁷⁰

1900년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와 관련해서는 석도와 독도의 관계를 알 수 없었다면 한국 정부에 물어보면 되고, 칙령은 일부러 일본 정부를 위해 공포한 것이 아니라 대한제국 내의 통상적인 행정개혁의 지시로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하면 되며, 석도와 독도도 사람들에게 통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한 것뿐이므로, 그러한 말로 석도=독도의 행정구역을 지정한 자체가 동 칙령의 공포 전후에 조선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왔다는 사실의 증명이라고 했다.⁷¹ 게다가 이미 1895년 일본 정부가 명성황후를 살해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며 독도의 영유를 각의 결정한 1905년 1월에는 한국 정부로부터 이미 재정·외교·군사권을 빼앗아 동년 11월 한일협약에 의해 한국 전체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통감의 지배 하에 있었으므로, 독도의 영유는 1910년 8월의 병합조약에 의해 조선의 민족과 국토 전체의 완전한 식민지 지배의 징조로도 보이는 사건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비판·저항의 원점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⁷²

세리타(芹田)는 독도 편입과 식민지 지배는 관계가 없다는 일본의 주장은 법적으로 옳다 하더라도, 식민지 지배를 받은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인이 최초로 빼앗긴 영토라고 인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69 広瀬善男, 2007, 위의 글, 295~296쪽

70 伊藤成彦, 2008, 「竹島問題の本質と解決」, 『マスコミ市民』(476), 29~30쪽

71 伊藤成彦, 2008, 위의 글, 30~31쪽

72 伊藤成彦, 2008, 위의 글, 29~31쪽

지적하면서, 화해의 징표로 일본이 독도를 한국에 양도 혹은 방기하여 한국의 주권을 인정해, 울릉도와 오키(隠岐) 섬 사이에 바다의 경계를 확정하고 한국은 독도를 ‘자연보호구’로 하고 모든 나라의 과학자에게 개방함으로써 한일 양국과 양 국민은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⁷³

3. 소결

현재 일본 정부의 주장은 상술한 바와 같이 ‘일본정부견해’ 이후에 많은 자료가 햇빛을 보게 됐음에도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 또한 그간 새로운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반영하지도 않고, 40여 년 전의 연구성과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외무성의 소책자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오인한 부분이 있으며 중요한 사실임에도 무시하고 누락시키는 등 문제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⁷⁴

최근 일본의 독도 연구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1905년의 영토편입은 영유의사의 재확인이라 아니라 무주지선점이라고 한다. 에도 막부도 메이지 정부도 독도에 대해 영유를 주장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1696년과 1877년 두 번에 걸쳐 일본령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독도를 편입하기 위한 각의결정은 독도가 무주지라는 것을 확인하고 내린 것이다. 그렇다면 독도는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그 당시 독도가 무주지였느냐 아니었느냐 하는 데 있다. 결론은 무주지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국의 고유영토다.

첫째, 안용복의 도일(渡日) 활동으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울릉도의 소속에 관한 논쟁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

73 芹田健太郎, 2006, 「竹島を消すことが唯一の解決法だ」, 『CHUOKORON』(11월호), 277쪽

74 일본 외무성(대사) 출신인 미네 요시키(美根慶樹)는 무주지선점론을 옹호하면서 외무성이 ‘울릉도 외 1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한 태정관 문서를 다루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태정관 결정은 각의결정보다 격이 높고 중요문화에 지정돼 있지만 일개 개인의 의견으로서 신뢰성이 없다고 한 안용복의 기록은 언급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美根慶樹, 2013, 「蓋するな竹島「不都合な公文書」: 明治10年の太政官決定に触れない外務省に, 「国際司法裁判所を将来, 議論するために」と元大使が直言」, 『Facta』(7월호), 45~46쪽

다. 이 과정에서 막부는 돗토리번에 “다케시마(울릉도) 외에 돗토리번에 소속된 섬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돗토리번은 “다케시마(울릉도), 마쓰시마(독도)는 물론 그 밖에 소속된 섬은 없다”고 회답해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번 소속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다.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은 울릉도에 대해서만 도해를 금지했지 독도에 대해서는 금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막부의 질문에 대해 울릉도·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고 한 돗토리번 답변서(1695)는 1696년 도해금지령의 작성 과정에 큰 영향을 끼쳐, 막부의 결정에 따라 울릉도가 조선령이 됐으므로 그 속도인 독도도 조선령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울릉도에 도해했던 오야[大谷]가의 문서를 보면 “다케시마(울릉도) 내의 마쓰시마(독도) (竹嶋内松嶋)” 등의 기록이 있다. 이는 옛 일본인들도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여겼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2005년 일본 오키 섬에서 발견된 안용복의 도일(渡日) 활동에 관한 일본 측 조사보고서인 『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는 안용복이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의 강원도 소속이라고 주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 정박장이나 어채지로 독도를 이용”하는 정도였지, 독도만을 목적으로 도해하는 경우는 없었다.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리면서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독도에 대한 도해금지령을 내릴 필요는 없었다.

1693~1695년 울릉도의 귀속을 놓고 조선과 막부가 교섭한 결과,⁷⁵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섭의 한 당사자인 막부가 1696년 1월 28일 일본인들의 울릉도 방면 도해를 금지하는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막부가 울릉도를 교섭의 한 당사자인 조선의 것으로 인정했으므로, 동 도의 속도인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조선의 영토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부인만 한 것이지 조선의 영토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독도를 무주지였다고 하는 일본 측 주장은 맞지 않다.

둘째, 일본 메이지 정부의 공문서 ‘조선국교제시말

75 당시 양국 간 교섭에 관해서는 池内敏, 2001, 『竹嶋一件の再検討—元祿6~9年の日朝交渉』, 『名古屋大学文学部研究論集』(140), 61~83쪽 참조.

내담서’에는 ‘독도는 울릉도의 이웃한 섬으로서 독도에 대해서는 게재한 것이 없다’고 기록돼 있다. 이 보고서는 메이지 정부가 조선국에 외무성 관리를 파견해 내정을 조사한 것으로서 1696년 ‘울릉도쟁계 이후’를 언급하며 울릉도와 독도가 함께 조선국령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울릉도와 독도를 한 쌍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태정관 문서의 ‘외 1도’가 독도인가 아닌가를 놓고 장기간 논쟁이 있었다. 최근에는 독도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태정관 지령은 일본령이 아니라고만 했지 한국령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독도는 무주지였다고 무주지선점론자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2005년 발견된 1876년 시마네현이 내무성에 보낸 자료에 첨부한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에는 ‘외 1도’에 해당하는 울릉도의 부속 도서인 ‘마쓰시마(독도)’가 그려져 있으며,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일본은 1696년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다.

넷째, 울릉도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으나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인이 무허가로 도항해 거주하며 벌목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조선 정부는 적극적인 개발정책으로 전환했다. 대한제국은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칭했다. 그리고 울도 군수가 관할하는 지역을 ‘울릉전도, 죽도, 석도’로 규정했다. 칙령 제41호는 1900년 10월 27일자 『관보』에 게재됐다. 따라서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은 국제법상 무효다. 일본은 무주지선점론을 내세워 독도를 편입했다고 주장하나,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독도 영유권을 확립해왔고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이를 근대법적으로 재확인했다.⁷⁶

다섯째, 일본의 조선에 대한 영토침략의 야심은 1850년대 정한론 이후에 표출돼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거세진다. 특히 러일전쟁 전후 일본의 영토 야욕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1905년 1월 일본은 러일전쟁 중 독도가 주인이 없는 땅이라는 전제하에 무주지선점론을 내세워 독도를 침탈했다.⁷⁷ 1904년 2월 8일 일본 함대가 뱃순항과 제물

76 시모조는 한국 측이 1905년의 독도의 일본 편입을 침략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제국이 공포한 1900년 10월 25일의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한국령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下條正男, 2013, 앞의 글, 25쪽

77 나카노는 당시 독도는 어떤 나라도 관심을 갖지 않는 무인도가 아니었으므로 정책적 견지에서 적어도 한국에 대해서 통고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조선에 대등한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으며, 또 ‘침

포항의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하면서 러일전쟁이 시작됐다. 일본 해군은 러시아 함대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제주도, 거문도, 울산 등에 망루를 건설했는데, 울릉도에도 1904년 8월 두 개의 망루를 건설했다. 이 과정에서 독도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됐다.

1904년 9월 나카이의 독도 영토편입 청원서에 대해, 내무성은 '일본이 한국을 집어 삼키려는 야심이 있다고 의심을 받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 하여 청원서를 각하하려 했다. 그러나 외무성은 당시 시국을 고려해 '망루를 세우고 무선 또는 해저 전선을 설치하면 적함(敵艦)을 감시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을 내세워 독도 편입을 추진했다.⁷⁸ 영토편입의 배경에 군사적 요청도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⁷⁹ 1904년 8월의 제1차 한일협약에 따라 한국은 실질적으로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였다.⁸⁰

IV. 맺음말

쓰카모토는 일본정부견해 중에서 “근대국제법상 영토취득의 요건은 국가로서의 영유 의사, 그 의사의 공시, 적당한 지배권력의 확립이다. 그러나 개국 이전의 일본에는 국제법의 적용이 없으므로 당시에는 실제로 일본에서 일본의 영토로 생각하고 일본의 영토로서 취급, 타국이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영유하는 데는 충분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 부분을 인용하면서,⁸¹ “이 설명이 옳다면, 개국 이전의 조선에도 국제법의 적용이 없으므로 조선에서 조선의 영토로 생각하고 조선의 영토로서 취급, 타국이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영유하는 데는 충분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⁸² 물론 결론은 한국은

략이라고 받아들이는 한 요인이기도 하다 고 했다. 中野徹也, 2012, 앞의 글, 161쪽

78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1905년 독도 불법편입을 추진했던 야마자 엔지로다. 야마자는 한일의정서 이후 한국 보호정책 추진의 지침으로서 보호관계의 국제법적 검토를 초미의 과제로 삼고 있었던 일본이 1904년 3월 외무성에 설치한 臨時取調委員會의 위원으로서 보호국에 관한 조사를 담당했다. 明石欽司, 「『御雇い外国人』と日本の外交政策－韓国の保護国化を巡って.」, 18쪽; 柳原正治, 2002, 「主權平等と保護國－有賀・立保護國論争を中心として.」, 53쪽, 이상 九州大学, 2001~2003, 2004, 5. 研究成果報告書 수록.

79 中野徹也, 2012, 앞의 글, 155쪽

80 일본 정부의 추천으로 미국인 스티븐슨이 외교고문이 됐다. 이것은 일본 정부의 각의결정은 '외교고문은 외국인으로 하고 제국 공사의 감독 하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고 했다. 明石欽司, 앞의 글, 24쪽

81 다이주도도 같은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 설명이 옳다”고 했다. 太寿堂鼎, 1966, 앞의 글, 122쪽

82 塚本孝, 2008, 「竹島領有權紛争の焦点－國際法の見地から.」,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73쪽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일본은 그것을 충족시켰으므로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1900년 대한제국 칙령을 통해 영유의사를 재확인한 후에 있었던 일본의 편입은 부당한 행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대한제국 칙령이 반포된 1900년 전후에 실효적으로 경영하지 않았으므로 한국의 영토가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독도와 같은 정주하기 어려운 암도에 대해서는 먼저 발견하고, 우리 영토로서 계속적으로 인지하고, 관할 행정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공시하는 것으로 한국이 독도를 영유하는 데는 충분했다고 할 수 있겠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는 19세기 후반부터 1910년 일본에 의해 국권이 침탈될 때까지의 식민지화 과정과 근대국제법 수용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선은 반강제적으로 근대국제법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시기에 따라 근대국제법에 대한 생각과 그 수용에 대한 태도가 달랐다.⁸³ 당시 국제법 수용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일부 개혁 주도 세력 뿐이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수용에 반대했다. 그러나 임오군란 후에는 국제법의 적극적인 수용과 적용을 주장하는 상소가 끊이지 않았다.⁸⁴ 하지만 조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청일전쟁은 근대국제법의 수용과 적용이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효과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 사건이었다. 당연히 근대국제법에 대한 냉소주의가 만연할 수밖에 없었다.⁸⁵

83 한국의 근대국제법 수용은 편의상 초기 수용단계(1876~1882), 적극적 수용단계(1882~1894), 국제법에 대한 회의단계(1894~1910)로 분류한다. 金容九, 1999, 「朝鮮における萬國公法の受容と適用.」, 『東アジア近代史』(2), 29~30쪽

84 金容九, 1999, 위의 글, 30~31쪽

85 金容九, 1999, 위의 글, 37쪽

86 藤田久一, 2000, 「東アジアにおける近代史の展開の諸報告について.」, 『東アジア近代史』(3), 99~100쪽

반면, 일본은 조선과 다른 길을 걸어왔다. 일본의 근대국제법은 반강제적인 수용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근대국제법을 자연법으로 받아들여 당연히 지켜야 할 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은 서구의 국제법 서적을 충실히 기술하거나 번역하는 등의 연구에 심혈을 기울였다.⁸⁶ 메이지 정부는 대내적으로 중앙집권적 통일국가를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서구 열강과 대등한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서구의 제도와 기술을 적극 수용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미국과

의 화친조약(1854), 수호통상조약(1858)을 시작으로 1869년까지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 등 서구 열강과 불평등조약을 체결하게 된다.⁸⁷

그러나 1868년 메이지유신을 달성한 일본 국민들은 불평등조약을 보다 대등하게 개정함으로써 대외적 독립을 확립하고 근대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서구 선진국과 대등한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 조약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⁸⁸ 메이지 정부도 조약개정을 실현해서 '만국공법'이 적용되는 '문명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⁸⁹ 이를 수렴해 당시의 외무성은 지식인을 총동원해 서구 각국의 조약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도록 했다. 1871년 시도한 조약개정은 청일전쟁 직전인 1894년 7월 16일 영국과 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조약을 개정하는 데 성공해 1911년 관세자주권을 완전 회복하면서 달성된다.⁹⁰

이로써 일본은 서구 열강과 형식적으로 대등해졌고, 영국의 우방으로서 전략적인 위상을 설정하는 등 국제적 입지가 강화되면서 아시아를 지배하고자 하는 의욕을 드러낸다. 결국 일본은 근대국제법의 법리를 이용해 부국강병을 위한 실천방법으로 아시아제국 특히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 등 영토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과거 불평등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아시아⁹¹와 아프리카 제국은 식민지로 전락하든가, 반식민지 종속국가가 됐다.⁹²

조선과 같은 신흥독립국의 국제법에 대한 태도나 대응은 19세기 일본의 근대국제법에 대한 수용태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들 국가는 근대국제법을 반드시 수용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특히 식민지화를 합리화했던 선점의 법리와 국제(내지 문명국)표준주의는 오히려 이러한 국가에 의해 거부 내지 반발을 샀다. 관습국제법도 과연 당연히 적용돼야만 했는가에 대해 오히려 신흥독립국 측으로부터 의문이 제기돼 왔다.⁹³

근대국제법의 수용 과정에서 일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였던 한국(조선)은 특히 1696년 울릉도쟁계 결과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에서 알 수 있듯이, 독도에 대해 조선의 영토로 생각하고, 조선의 영토로서 취급했으며, 타국과 다툼이 없었으므로 독도를 영유하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는 일본 제국이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섬이므로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 따라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복귀하는 것은 당연하다.

87 池井優, 1992, 『日本外交史概説』, 慶応義塾大学出版会, 42쪽

88 池井優, 1992, 위의 책, 42~43쪽

89 小宮一夫, 2001, 『条約改正と国内政治』, 吉川弘文館, 1쪽

90 池井優, 1992, 앞의 책, 42쪽

91 조선은 자주적 國權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朝·美修好通商條約을 비롯하여,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2개국과 불평등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92 池井優, 1992, 앞의 책, 41쪽

93 藤田久一, 2000, 앞의 글, 101쪽

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독도 문제’의 최대 쟁점인 일본의 1905년 독도 편입이 역사적 사실에 합당했는가에 초점을 맞춰 논한다. 일본은 국제법을 근거로 독도를 무주지로 간주하고 ‘다케시마[竹島]’라는 이름을 붙여 일본령으로 했다. 그러나 선점의 법리에 따라 영토편입을 했음에도, 일본 정부는 패전 후 줄곧 ‘일본의 고유영토인 다케시마’에 대해 영유권사를 ‘재확인’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독도는 한국의 영토도 그리고 무주지도 아닌 역사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것이다. 1950~1960년대 한일 양국은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해서 네 차례의 견해를 주고받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상황에서 영토편입의 성격이 변하는지, 당시 일본의 정부견해와 연구동향을 논한다.

한편 일본에서는 최근에 와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견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연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 선점의 논리는 일본 정부의 고유영토론을 비판하는 한국의 독도 고유영토론을 뒷받침해 주는 논리 구성에 어느 정도 기여는 했지만, 그러한 논리는 새로운 자료를 통해 일본 정부의 고유영토론이 안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를 거듭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독도는 한국과 일본 중 그 어느 쪽의 영토며, 한일 양국의 공동 통치지역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제3국의 영토도 아니며 귀속 미정의 무주지도 아니다. 독도는 선점론자들이 말하는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의 고유영토다.

〈주제어〉

독도, 다케시마, 영토편입, 고유영토, 무주지, 선점

ABSTRACT

A Study on the Flaws of Japan's Incorporation of Dokdo in 1905: Opinions of the Japanese Government and Research Trends in Japan

Kim, Gwanwon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his paper focuses upon whether Japan's incorporation of Dokdo in 1905 was justifiable in terms of its congruence with historical facts. Japan considered Dokdo as *terra nullius*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and incorporated it into its territory under the name Takeshima. Despite having incorporated the islands based on the legal principles of occupation, Japan continued to reconfirm its intention to act as a sovereign of Dokdo since its defeat in World War II. In other words, according to Japanese arguments, Dokdo is neither Korean territory nor a *terra nullius*, but an inherent territory of Japan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Between the 1950s and 1960s, Korea and Japan exchanged opinions four times over the sovereignty of Dokdo. This paper reexamines the research trend in Japan and the Japanese government's opinions during that particular period in order to determine the situation and process under which the characteristics of Dokdo's territorial incorporation changed.

Several studies have recently come forth in Japan that are questioning the Japanese government's claim that Dokdo is an inherent territory of Japan. The principles of occupation somewhat contributed to formulating the logic behind Korea's claim that Dokdo is inherently Korean territory. This logic, however, results from continued research aimed at addressing the gap between historical facts and the Japanese government's argument that Dokdo has inherently been Japanese territory.

Yet, Dokdo is a territory of either Korea or Japan, not an area jointly controlled by the two countries, nor a territory of a third country, nor a *terra nullius*. Dokdo is Korean territory, not a *terra nullius* as argued by those who endorse the theory of occupation.

Keywords

Dokdo, Takeshima, Territorial incorporation, Inherent territory, *terra nullius*, Occupation

참고문헌

- 신용하 편저, 2000, 『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 제3권, 독도연구보전협회
 신용하 편저, 2001, 『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 제4권, 독도연구보전협회
 외무부, 1977, 『독도관계자료집(1)』
 李漢基, 1969, 『韓國의 領土』, 서울대학교출판부
 金容九, 1999, 「朝鮮における萬國公法の受容と適用」, 『東アジア近代史』 2호
- 内藤正中, 2000, 『竹島(鬱陵島)日朝關係史』, 多賀出版
 内藤正中, 2007, 『史的檢證, 竹島·独島』, 岩波書店
 小宮一夫, 2001, 『條約改正と国内政治』, 吉川弘文館
 池内敏, 2012,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学出版会
 池井優, 1992, 『日本外交史概説』, 慶応義塾大学出版会
 川上健三, 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下條正男, 2004,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 文藝春秋
 皆川洗, 1965, 「竹島紛争とその解決手続-日韓条約の批判的検討」, 『法律時報』 37권 10호
 高村信吉, 1953, 「竹島をめぐる日韓の冷戦」, 『人物往来』 2권 10호
 広瀬善男, 2007, 「國際法からみた日韓併合と竹島の領有権」, 『法学研究』 81号
 堀和生, 1987, 「1905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會論文集』 제24호
 芹田健太郎, 2006, 「竹島を消すことが唯一の解決法だ」, 『CHUOKORON』 11월호
 内藤正中, 2005a, 「竹島は日本固有領土か」, 『世界』 6월호
 内藤正中, 2005b, 「竹島(独島)問題の問題点(下)」, 『統一評論』 478호
 藤田久一, 2000, 「東アジアにおける近代史の展開の諸報告について」, 『東アジア近代史』 3호
 柳原正治, 2002, 「主権平等と保護国-有賀・立保護国論争を中心として」(九州大学 2001-2003, 2004. 5. 研究成果報告書)
 明石欽司, 「'御雇い外国人'と日本の外交政策-韓国の保護国化を巡って」(九州大学 2001-2003, 2004. 5. 研究成果報告書)
 美根慶樹, 2013, 「蓋するな竹島「不都合な公文書」」, 『Facta』 7월호
 梶村秀樹, 1978, 「竹島=独島問題と日本国家」, 『朝鮮研究』 182호
 山辺健太郎, 1965, 「竹島問題の歴史的考察」, 『코리아評論』 7권 2호
- 森田芳夫, 1961, 「竹島領有をめぐる日韓両国の歴史上の見解」, 『外務省調査月報』 2권 5호
 速水保孝, 1954, 「竹島」, 『地方自治』 74호
 松隈清, 1962, 「國際法より觀た李ライン問題と竹島の帰属」, 『八幡大学論集』 12권 2호
 植田捷雄, 1965, 「竹島の帰属をめぐる日韓紛争」, 『一橋論叢』 54권 1호
 深津栄一, 1962, 「孤島の帰属に関する法理」, 『総合海洋科学』 4호
 伊藤成彦, 2008, 「竹島問題の本質と解決」, 『マスコミ市民』 476호
 田川孝三, 1988, 「竹島領有に関する歴史的考察」, 『東洋文庫書報』 20호
 田村幸策, 1954, 「竹島問題の回顧と法理」, 『政治経済』 7권 11호
 田村幸幸, 1963, 「竹島問題に関する一考察」, 『商学論叢』 5호
 中野徹也, 2011, 「竹島の帰属に関する一考察」, 『関西大学法学論集』 60권 5호
 中野徹也, 2012, 「1905年日本による竹島領土編入措置の法的性質」, 『関西大学法学論集』 61권 5호
 池内敏, 2001, 「竹島一件の再検討-元禄6~9年の日朝交渉」, 『名古屋大学文学部研究論集』 140호
 池内敏, 2001, 「17-19世紀鬱陵島海域の生業と交流」, 『歴史學研究』, No. 756
 池内敏, 2006, 「竹島/独島=固有の領土論の陥穽」, 『Ratio』 2호
 村瀬信也, 2012, 「領土'めぐる'視角と國際司法裁判所」, 『外交』 Vol. 16
 塚本孝, 2000, 「日本の領域確定における近代國際法の適用事例-先占法理と竹島の領土編入を中心に」, 『東アジア近代史』 3호
 塚本孝, 2002, 「竹島領有権をめぐる日韓両国政府の見解」, 『レファレンス』 617호
 塚本孝, 2008, 「竹島領有権紛争の焦点-國際法の見地から」,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Web축도문제연구소
 塚本孝, 2011, 「韓国の保護・併合と日韓の領土認識-竹島をめぐる」, 『東アジア近代史』 14호
 秋岡武次郎, 1950, 「日本海西南の松島と竹島」, 『社会地理』 27호
 太寿堂鼎, 1966, 「竹島紛争」, 『國際法外交雜誌』 64권 4·5호
 下條正男, 2008, 「韓国人研究者との出会いで痛感した'竹島問題の不毛」, 『正論』 2월호
 下條正男, 2012, 「竹島 韓国こそ過去を猛省せよ: 歴史的事実こそ最大の武器」, 『Will』 94호
 下條正男, 2013, 「歴史資料から見た竹島問題: 韓国側主張の脆弱性」, 『東亜』 549호

라포르트(E. Laporte)의 울릉도 조사 보고서와 1899년 울릉도 현황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I. 머리말

‘독도 연구를 위해서는 울릉도¹ 연구를 해야 한다.’ 정언명제(定言命題)와 같은 말이다. 그런 때문인지, 최근 울릉도에 관한 자료 조사와 연구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 울릉도에 관한 1차 자료의 발굴도 절실하다. 특히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나온 1900년 전후의 울릉도에 관한 자료는 더욱 그렇다.

1882년 울릉도 개척령 공포 이후 19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울릉도를 현지 조사하고 작성한 보고서들이 몇 건 있다. 한국 측 보고서로는 1882년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李奎遠)의 「울릉도 검찰일기」,² 1900년 울릉도 시찰위원 우용정(禹用鼎)의 「울도기(鬱島記)」³ 등이 있다. 또한 일본 측의 보고서로는 1900년 주한(부산) 일본 부영사 아카쓰카 쇼스케(赤塚正助)의 「울릉도 조사 개황 및 산림 조사 개황 보고의 건」,⁴ 1902년 울릉도 주재 일본 경찰 니시무라 게이조(西村銈象)의 「메이지

1 울릉도는 행정구역상 독도를 포함하나, 여기서 울릉도는 독도를 제외한 울릉도 본섬을 의미한다.

2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 검찰일기」(1882) (이혜은, 2007, 「이규원 울릉도 검찰 계초본」, 『울릉군지』, 울릉군청, 1369~1390쪽 참조)

3 우용정, 1900, 「울도기」(신용하 편저, 2000, 『독도연구총서 7: 독도 영유권 자료의 탐구 제3권』, 독도연구보전협회), 69~79쪽

4 赤塚正助, 1900, 「鬱陵島 調査概況 및 山林調査概況 報告의 件」(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박병선, 2009, 「한말 울릉도·독도 어업: 독도 영유권의 관점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01~106쪽(번역문), 241~246쪽(원문) 참조.

〔明治〕35년 울릉도 상황」,⁵ 1906년 울릉도를 방문하고 쓴 오쿠하라 헤키운(奥原碧雲)의 『독도 및 울릉도』(1907년 발행)⁶ 등이 있다.

또 하나의 주요한 보고서는 서양인의 울릉도 조사 보고서인데, 1899년 부산 해관(海關) 세무사(稅務司) 서리 라포르트(E. Laporte, 羅保得)⁷의 보고서다. 라포르트의 보고서 내용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1899년 9월 23일 《황성신문》 별보(別報)에 게재되어 있다.⁸ 그런데 그 기사 내용은 라포르트의 울릉도 조사 보고서 원문을 요약한 것이다.

라포르트의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은 『구한국외교관계부속문서』(제2권, 해관안 2)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 문서 중에는 1899년 7월 30일자로 대한제국 해관 총세무사 브라운(John McLeavy Brown, 柏卓安)이 외부대신 박제순에게 보고한 서신이 있다.⁹ 그 서신은 ‘서양인 한 명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조사한 결과 보고서를 동봉하여 올린다’는 간략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¹⁰ 그런데, 그 동봉한 보고서의 내용은 위의 『구한국외교관계부속문서』(제2권, 해관안 2)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라포르트의 보고서 내용이 《황성신문》에 요약되어 있어, 그 대강의 내용은 파악할 수 있다. 필자는 평소 「라포르트 보고서」¹¹의 원본 내용이 어떨까 궁금했다. 보고서 원본을 찾게 된다면, 독도와 관련된 몇 가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궁금증은 ‘우산도’는 ‘독도’를 가리킨다는 내용을 보고서 원본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1899년 9월 23일자 《황성신문》 별보의 ‘울릉도 사정’ 첫머리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울진(蔚珍)의 동쪽 바다(東海)에 한 섬(一島)이 있으니 울릉이라 하는데, 그에 부속한 작은 6개의 섬 중(小六島中)에

5 西村銈象, 1902, 「明治35年鬱陵島狀況」(박병선, 2009, 앞의 책, 109~124쪽(번역문), 248~266쪽(원문) 참조)

6 奥原碧雲, 1907(2005 복각), 「竹島及鬱陵島」, 松江市: ハーベスト出版

7 「라포르트(E. Laporte)란 이름은 지금까지 한글로 ‘라뽀떼’, ‘라포테’, ‘라포르트’, ‘라포르테’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라포르트가 프랑스인임을 감안하여 프랑스어에 대한 외래어 표기 방식에 따라서 ‘라포르트’로 표기한다. 또한 ‘라포르트’는 한자로 羅布退 또는 羅保得으로 표기되었다. 1883년 12월 29일자 《한성순보》에 라포르트가 인천 해관에 근무한 프랑스인 羅布退로 표기되어 있는 것 외에는 羅保得으로 표기되어 있다. 東萊港報牒 제3책(규장각 청구기호 奎 17867-2), 昌原港報牒 제1책(1899. 11. 2)(규장각 청구기호 奎 17869-2) 등 참조.

8 《황성신문》, 1899. 9. 23, 별보

9 「鬱陵島 調査報告書送呈의 件」(1899. 7. 30): 『구한국외교관계부속문서』(제2권, 海關案 2, 문서번호 1231번)(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2, 592쪽)

10 이 글 II. 2 중 ‘자료: 鬱陵島 調査報告書送呈의 件’ 참조.

11 영국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된 라포르트의 보고서 원문은 《황성신문》의 ‘라포르트 보고서 요약문’과 구별하여 「라포르트 보고서」라고 표기한다.

가장 두드러진 것(最著者)은 우산도(于山島), 죽도(竹島)나……¹²

위 문장에 있는 ‘우산도(于山島)’가 ‘독도’를 가리킨다는 직접적인 내용이 라포르트의 보고서 원본에 혹시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우산도’가 기록된 바로 위 내용 뒷부분에 라포르트의 보고서 요약문이 게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궁금증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석도(石島)’가 ‘독도’를 가리킨다는 직접적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라포르트의 울릉도 조사는 석도를 규정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10)가 공포되기 1년 전인 1899년 6월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라포르트의 보고서 원본 내용 중에 석도와 독도의 직접적 상관관계를 설명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다.

필자가 이러한 궁금증을 갖고 있던 중 「라포르트 보고서」의 원본 내용을 영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찾게 되었다.¹³ 위 보고서는 별진 자료로 되지 않고, 「한국 관계 추가 서신 제12집」이라는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었다.¹⁴ 이 자료집은 1900년 2월 영국 외교부가 제작한 것으로서 1899년 한국 관련 외교 서신을 활자화하여 묶은 책이다. 주한 영국 대리공사 겸 총영사 조단(J. N. Jordan)이 한국 관련 사항을 영국 정부에 보고한 내용이 주(主)를 이루고 있다. 영국 외교부는 이 자료집을 비밀문서로 분류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이 자료집의 목차 72번 항목을 보면, 주한 영국 대리공사 조단이 보낸 ‘비밀문서 제50호’가 있는데, 그 문서에 「라포르트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그 문서의 제목은 「일본인들의 울릉도 주민에 대한 행태, 부산 해관 세무사 송부 보고서」(Japanese treatment of natives at Dagelet, transmit report of Commissioner of Customs at Fusan)로 되어 있다. 그 항목에 나오는 7월 24일이란 날짜는 주한 영국 대리공사가 「라포르트 보고서」를 영국 정부

¹² 《황성신문》, 1899. 9. 23. 별보

¹³ 「라포르트 보고서」는 필자가 2011~2012년 1년간 킹스칼리지 런던(King's College London)에 방문연구원으로 영국에 체류하던 중 2012년 4월 19일 영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찾았다.

¹⁴ 「Further Correspondence respecting the Affairs of Corea, Part XII(1899)」, 영국 국립문서보관소(The National Archives), 청구기호 F0881/7264

로 보내기 위해 서신을 작성한 날짜다.

「라포르트 보고서」 관련 내용은 위의 자료집 83쪽에서 86쪽에 걸쳐 있다. 즉 83쪽에는 조단이 「라포르트 보고서」를 동봉하여 영국 정부에 보낸 서신이 있고, 「라포르트 보고서」는 그 서신의 첨부문서로 84쪽에서 86쪽에 걸쳐 있다.

「라포르트 보고서」에는 애석하게도 독도에 관한 직접적 내용이 없다. 그럼에도 「라포르트 보고서」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황성신문》의 요약문에서 볼 수 없는 ‘당시 울릉도 주민들과 일본인 불법 체류자들의 생활 현황과 현안 문제’ 등 1899년의 울릉도 사정을 보다 정확하고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황성신문》에는 당시 울릉도의 한인 주민 수를 남녀 약 300명으로 적고 있으나, 「라포르트 보고서」에는 어른과 아이를 합쳐 3,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울릉도 인구나 관련하여, 1896년 9월 울릉도에서 작성된 통계에 따르면 277호 1,134명(남자 662, 여자 472명)이었다.¹⁵ 그 후 울릉도 인구가 차츰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황성신문》의 남녀 300명은 「라포르트 보고서」의 어른 아이 3,000명을 잘못 쓴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황성신문》에는 울릉도 불법 체류 일본인들의 숫자를 200여 명으로 적고 있으나, 「라포르트 보고서」는 배의 선원들을 제외하고도 250명의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체류하고 있었다고 적고 있다. 1899년 당시 울릉도 거주 일본인들은 배의 선원까지 포함하면, 약 300명은 족히 되었을 것 같다.

이 글의 주된 목적은 「라포르트 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하고, 1899년 울릉도 사정이 어떠한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1900년 전후 울릉도와 독도 현황, 나아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제정 배경과 내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¹⁵ 《독립신문》, 1897. 4. 8. “외방통신”, 3~4쪽

II. 라포르트의 울릉도 파견과 보고서 작성 경위

1. 라포르트의 파견 경위

1899년 라포르트는 부산 해관의 세무사(稅務司, 현 세관장) 서리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해 6월 라포르트는 대한제국(이하 한국) 해관 총세무사 브라운에게서 울릉도 사정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뒤의 [자료 1-①] 참조). 그러나 한국 정부가 왜 총세무사 브라운에게 울릉도 조사를 의뢰했는지에 관하여 그 이유를 서술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다만, 영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또 다른 한국 관련 문서를 통해 라포르트의 울릉도 파견 이유를 추정해볼 수 있다. 그 문서에는 1889년 조선 정부가 스트리플링(Alfred B. Stripling, 薛弼林)이란 외국인에게 울릉도 사정을 조사할 것을 의뢰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¹⁶

…… 그 후 기축년(1889) 봄에 울릉도(Dagelet) 등처(等處)로 파견하여 살펴보는 임금의 처분을 받았다. 스트리플링은 즉시 가려고 행장을 꾸리고 출발 명령을 기다렸다. 이에 기다리다가 이해 8월이 되어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라'는 이준영의 말에 따랐는데, 그것은 함경도 등처(等處)로 바꾸어 가서 공무를 처리하도록 한 것이었다. ……¹⁷

조선 정부가 스트리플링에게 울릉도나 함경도 등 한국의 지역 사정을 조사하도록 의뢰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스트리플링이란 자는 누구인가? 그는 영국인으로 중국 상해에서 경찰관으로 있다가, 1883년 조선으로 건너와서 초대 인천 해관 세무사를 지냈다. 1885년 뮐렌도르프(P. G. von Möllendorff, 穆麟德) 실각 이후에는 잠시 조선 해관 총세무사 서리의 직도 수행하였고, 청일전쟁 이후에는 최초 경찰조직인 경무청의

16 「스트리플링 관련 문서」, 1891, '大英欽命駐劄朝鮮統理各國交涉通商事務署理總領事官 大朝鮮督辦交涉通商事務大臣에게 보낸 서신'(1891. 1. 22)(영국 국립문서보관소 청구기호 F0523/1 자료)

17 원문 "後於己丑年春間, 恭蒙處分, 遣往鬱陵島等處察看, 薛弼林即行整備行裝, 待命起程, 乃待至是年八月, 據李準榮云'奉命', 令其改往咸鏡道等處, 辦理公務"

고문관을 지내기도 했다.¹⁸

여기서 조선 정부가 스트리플링에게 조선의 지역 사정을 의뢰한 이유를 몇 가지 사항을 근거로 추정해볼 수 있다. 그것은 우선 그가 조선 해관에 근무한 적이 있어 대외관계와 관세 문제에 밝고, 또한 1883년에 한국에 입국한 자로서 약 6년의 한국 생활을 통해 한국 사정에도 밝았다는 점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19세기 말 당시 강대국이었던 영국의 국적인이라는 점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1899년 당시 한국 정부가 브라운에게 울릉도 조사를 요청한 이유도 스

트리플링의 사례를 통해 추정해볼 수 있다. 총세무사 브라운은 1893년 이래 한국의 관세 업무를 총괄하는 한국 해관의 총책임자이고, 대외관계에도 밝았다. 브라운도 스트리플링과 같은 영국인이었다.¹⁹

『구한국외교관계부속문서』(제2권, 해관안 2, 문서번호 1231번)에는 한국 정부가 총세무사 브라운에게 울릉도 조사를 의뢰할 때, 파견자로 라포르트를 적시하지 않았다. 다만 서양인 직원 1명을 파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²⁰ 그런데 브라운이 라포르트를 울릉도에 파견한 이유는 무엇일까?

라포르트는 일본 교역의 최대 개항장인 부산 해관의 책임자였고, 당시 울릉도행 배편도 부산항에 있어 울릉도로 가기에 수월하였다.²¹ 그는 또한 스트리플링과 같이 1883년 한국에 입국한 자로서, 1883~1899년까지 약 16년간의 한국 생활로 인해 한국 사정에도 밝았을 것이다.²² 다만, 스트리플링이나 브라운과 다른 점은 라포르트가 범국인(法國人), 즉 프랑스인이라는 점이다.²³

1899년에 울릉도를 조사한 라포르트는 1900년 우용정이 울릉도 조사를 할 때도 동행하였다.²⁴ 결국 라

18 "A. B. Stripling, Esq.", *The Korea Review*, Vol. 4, No. 3, 1904(Homer B. Hulbert ed., Printed at the Methodist Publishing House, Seoul), pp. 118~120 참조.

19 총세무사 브라운에 대해서는, 김현숙, 1989, 「한말 고문관 J. McLeavy Brown에 대한 연구」, 『한국사연구』 66 참조.

20 「鬱陵島調査報告書送呈의件」(1899. 7. 30)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2, 앞의 책, 592쪽)

21 《독립신문》(1897. 4. 8, "외방통신", 3쪽)에는 울릉도 도감 배계주가 부산항에서 울릉도로 가는 배편을 기다리는 내용이 나온다.

22 라포르트는 중국 상하이에 있다가, 1883년 4월 24일 조선 해관의 창설과 함께 해관원으로 임명되었고, 스트리플링을 책임자로 6월 12일 조선에 왔다. 1898년 7월 19일 인천 해관에서 부산 해관 세무사 서리로 부임하여, 1901년 7월 11일까지 부산에 있다가 다시 인천으로 가서 인천 해관 세무사를 역임하였다. 한수당 연구원 소장 자료 (<http://blog.naver.com/hahnsudang>) 참조.

23 우용정의 「울도기」(1900), 《한성순보》(1883. 12. 29) 등에는 그가 法國人 또는 法人 즉 프랑스인임을 기록하고 있다. 우용정, 1900, 「울도기」(신용하 편저, 2000, 앞의 책, 73~74쪽 참조); 김현숙, 1989, 앞의 논문, 119쪽

포르트는 울릉도 사정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파견된 최초의 서양인으로서 연이어 두 차례나 울릉도 사정을 조사했던 것이다.

2. 「라포르트 보고서」를 동봉(同封)한 주한 영국 대리공사의 서신

영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라포르트 보고서」는 주한 영국 대리공사 조단이 영국 정부에 보낸 서신의 첨부문서로 되어 있다. 수신인은 당시 영국 총리 겸 외무장관 솔즈베리(Salisbury) 후작이고, 발신인은 주한 영국 대리공사 겸 총영사 조단이다. 이 서신은 비밀문서 제50호로 분류되어 전달되었는데, 서신의 첫머리에는 작성지가 서울이고, 1899년 7월 24일 작성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조단은 서신에서 「라포르트 보고서」를 보내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자료: 조단의 서신]

조단 씨(Mr. Jordan)가 솔즈베리 후작(Marquess of Salisbury)에게
(9월 11일 접수)

(비밀 제50호)

서울, 1899년 7월 24일

각하(My Lord)

한국(Corea)의 동해안에서 좀 떨어져 있는 섬으로 북위 37도 30분, 동경 131도에 위치하는 울릉도(Dagelet)의 지방 관리(Local Governor)가 그 섬 지역 주민들이 일본인 이주자들에게 당하고 있는 가혹 행위(harsh treatment)에 대해 최근 서울에 불평을 호소해왔습니다. 그래서 총세무사(the Chief Commissioner of Customs)인 맥리비 브라운(McLeavy Brown) 씨가 중앙정부(Central government)²⁵의 요청을 받아서 부산 해관 세무사(Commissioner of Customs)를 파견하여

24 우용정, 1900. 「올도기」(신용하 편저, 2000. 위의 책, 73~74쪽, 85~86쪽 참조)

25 여기서 중앙정부는 한국의 정부 부서인 '內部'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지역 사정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운 씨는 정중하고도 비밀리에 저에게 세무사에게서 받은 보고서를 전달해주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한 섬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사항들이 있었고, 이 나라의 외딴 지역이 일본인들에게 착취당하고 있는 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보고서 사본(copy)을 여기에 첨부하여 각하게 보내드립니다.

각하의 충복²⁶

(서명) 조단(J.N. Jordan)

1899년 7월 24일자로 작성된 조단의 서신을 영국 정부가 접수한 날짜는 위의 서신 첫머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99년 9월 11일이다. 한국에서 보낸 서신이 장장 40일이라는 긴 시간이 걸려서 영국에 도착했다. 조단이 보낸 위의 서신에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라포르트 보고서」가 영국 정부에 전달된 경위다. 라포르트는 울릉도 조사 보고서를 1899년 7월 6일 작성하여 그의 상관인 총세무사 브라운에게 보고하였다(자료 1-①). 그런데 『구한국외교관계부속문서』(제2권, 해관안 2, 문서번호 1231번)에는 총세무사 브라운이 1899년 7월 30일자로 외부대신 박제순에게 「라포르트 보고서」를 전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²⁷

[자료: '울릉도 조사 보고서 송정(送呈)의 건']

삼가 아뢰니다. 지난번에 받은 내부대신의 서신을 살피건대, 한 명의 서양인 직원을 파견해 울릉도 도감 배계주와 함께 울릉도로 가서 일체의 사정을 조사하고 협상하여 일을 처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서신을 받고 곧 부산 해관 세무사를 보내 배 도감과 함께 본국 증기선에 승선하여 가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그 세무사가 그 섬의 주민, 생산물, 영업 실태, 그리고 일본인 및 과세 관련 모든 사정을 명확히 조사하여 낱말이 나열하고 정리하여 보고를 올려왔습니다. 그 영문으로 정리

26 「라포르트 보고서」에서는 'I have, &c'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영문 보고서에 나오는 'I have the honour to be, Sir, Your obedient Servant'의 줄임말이다.

27 『鬱陵島調査報告書送呈の件』(1899. 7. 30)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2. 앞의 책, 592쪽)

된 것을 두루 살펴보고, 한문으로 번역하여 내부대신에게 핵심을 살피도록 서신을 올립니다. 이에 해당 서신 초본(草本)과 영문본·한문본 각 1부를 서신과 함께 모두 올려 귀 대신께서 살펴보실 것을 청합니다. 이만 그칩니다. 복 받으시기를 송축합니다.
서신 초본, 영문본, 한문본 모두 3건을 첨부합니다.

광무 3년 7월 30일 총세무사 백탁안 올림
제1819호

외부대신 박제순 각하

그런데 주목할 것은 총세무사 브라운이 「라포르트 보고서」를 한국 외부(外部)에 보내기 전에 영국 측에 먼저 전달했다는 점이다. 즉 라포르트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브라운에게 보낸 날짜는 1899년 7월 6일이다. 브라운은 그 보고서를 받아 7월 30일자로 한국의 외부대신 앞으로 보냈다. 그런데 조단은 이미 1주일 전에 브라운에게서 「라포르트 보고서」를 전달받았고, 7월 24일자 서신으로 「라포르트 보고서」를 동봉하여 영국 총리 앞으로 보냈다.

둘째, 조단이 「라포르트 보고서」를 영국 정부에 보고한 이유다. 그는 그의 서신 말미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한 섬(울릉도)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사항들이 있다”는 점과, “한국의 외딴 지역이 일본인들에게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조단이 흥미롭게 생각하고 주목한 것은 일본인들이 한국의 영토에 무단 침입하여 난동을 부리고 오히려 한국인들이 그들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조단이 「라포르트 보고서」를 영국 정부에 보낼 때 비밀문서로 분류하여 보낸 것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우선, 한국 해관의 총세무사(브라운)가 그에게 공무로 접수된 문서를 사사롭게 영국 정부에 먼저 보내는 것에 대한 공적 부담을 생각할 수 있다.²⁸ 또 다른 한 가지는 라포르트의 보고 내용을 보면 일본 측의 행태가 불법·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하

28 당시 브라운은 총세무사라는 권력의 핵심부에 있으면서, 제국주의 열강의 동향, 해관의 운영 등 각종 기밀한 정보를 영국공사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김현숙, 앞의 논문, 152, 153쪽

고 있고, 조단도 이 점에 동조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일본 측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외교적 부담도 「라포르트 보고서」를 비밀문서로 분류하여 보낸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셋째, 라포르트가 울릉도에 파견되어 조사하게 된 경위다. 울릉도의 지방 관리 곧 도감 배계주가 일본인 이주자들의 난동 때문에 울릉도 주민들이 아주 곤란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앙정부에 호소했다. 1899년 당시로부터 ‘최근’에 배계주가 호소한 내용이 라포르트 파견에 크게 작용했지만, 일본인들의 울릉도 불법 침입 또는 행패는 위에서 언급한 1889년 스트리플링 파견 계획²⁹에서도 본 바와 같이 이미 그 이전부터 문제가 되었다. 도감 배계주가 찾아가 울릉도 사정을 호소한 정부 부처는 내부(內部)이고, 내부는 외부에 협조 요청을 했다.³⁰ 그 후 외부대신은 해관의 총세무사인 브라운에게 관련 사항을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순서로 라포르트의 울릉도 파견이 추진되었다.

넷째, 「라포르트 보고서」가 어떤 형태로 작성되어 보고되었는가 하는 경위다. 브라운이 외부대신에게 보낸 위의 서신을 보면, 브라운은 라포르트가 직접 작성한 영문본 1부와 그것을 다시 한문으로 번역한 한문본 1부를 외부대신 박제순에게 보냈다.³¹ 그에 앞서 조단이 영국 정부로 보낸 「라포르트 보고서」는 조단의 서신에 기록된 바와 같이 ‘사본(copy)’이고,³² 현재 영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라포르트 보고서」는 그 사본을 활자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황성신문》(1899. 9. 23)에 기록된 내용은 브라운이 외부대신에게 보낸 한문본을 국한문 혼용의 기사로 게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황성신문》의 국한문 요약문이 영국 국립문서보관소의 「라포르트 보고서」와 내용상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라포르트 보고서」를 번역하고 요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가 아닐까 생각한다.

29 「스트리플링 관련 문서」(1891. 1. 22) (영국 국립문서보관소 청구기호 F0523/1 자료)

30 도감 배계주가 내부에 찾아가 울릉도 사정을 보고한 내용은 《독립신문》(1897. 4. 8. “외방통신”, 3쪽)에도 있다. 1899년 7월 30일 브라운이 외부대신에게 「라포르트 보고서」를 전달하면서, 내부대신이 살펴보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라포르트의 울릉도 파견은 내부의 요청과 외부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1 「鬱陵島調査報告書送呈의件」(1899. 7. 30)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2. 앞의 책, 592쪽)

32 이 글 II, 2 중 [자료: 조단 서신] 참조: “I venture to transmit a copy of it herewith to your Lordship”

III. 「라포르트 보고서」의 내용

「라포르트 보고서」는 모두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부분은 도입이다(자료 1). 도입 부분의 내용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라포르트 자신이 울릉도 사정을 조사하게 된 경위와 울릉도의 지리 현황이다. 둘째 부분은 울릉도의 한인 주민 수와 그들의 울릉도 정착과 생활에 관한 내용이다(자료 2). 셋째 부분은 울릉도 주민들의 산업과 교역, 생산물 등에 대한 내용이다(자료 3). 넷째 부분은 울릉도에 불법 체류하는 일본인의 수와 그들의 밀수 행태와 벌목 등 일본인들의 거주행태에 관한 내용이다(자료 4). 다섯째 부분은 세금에 관한 내용과 보고서의 끝을 맺는 맺음말 부분(자료 5)이다.

1. 첫째 부분(자료 1): 울릉도 조사 경위와 울릉도 현황

① 보고서의 첫머리에는 보고서의 발신인과 수신인, 작성날짜가 적혀 있다(자료 1-① 참조). 발신인은 ‘세무사 서리 라포르트’며, 수신인은 ‘총세무사 브라운’이다. 또한 보고서는 1899년 7월 6일 부산 해관에서 작성되어 비밀 문서로 분류되어 보내졌다. 라포르트는 먼저 울릉도를 조사하게 된 경위와 울릉도의 지리 현황을 기록하였다.

[자료 1-①]

세무사 서리 라포르트가 총세무사 브라운에게

(비밀)

부산 해관에서, 1899년 7월 6일

각하(Sir)

6월 22일자 서신에 담긴 지시(instructions)에 따라서, 저는 울릉도(Woo Lung Do) 지방 관리인 배계주(Pei Kei Chu) 씨 그리고 부산 사무실의 김롱윈(Kim Long-won) 씨, 아라키(Araki) 씨와 함께 한국의 증기선(Corean LS) 현익(Hyenik)

호를 타고 울릉도(Dagelet Island)를 방문한 건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28일 오후 4시에 부산을 출발하여 그다음 날 아침 7시에 처음으로 울릉도의 최고 봉우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29일 오후 1시가 되어서야 해안 가까이 도착했습니다.

라포르트가 총세무사 브라운의 1899년 6월 22일자 서신을 받고 6월 28일에 부산을 출항하였으니, 브라운의 서신을 받자마자 울릉도 출장을 준비하고 곧바로 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포르트의 울릉도 조사가 신속히 추진된 것을 보면, 총세무사 브라운이 1899년 6월 당시의 울릉도 사정이 중요하고도 긴급한 것으로 판단했고, 그 메시지가 라포르트에게도 전달되었던 것 같다. 당시 상황을 보면, 1898년 말과 1899년 초에 울릉도 도감 배계주가 일본으로 건너가 재판관을 벌였고, 1896년 9월 울릉도의 삼림벌채권을 넘겨받은 러시아가 1899년을 즈음하여 일본인들의 울릉도 불법 벌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는 등 울릉도를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다.³³

라포르트의 울릉도 조사에는 당시 부산에 머물고 있던 울릉도 도감 배계주³⁴와 부산 해관의 한국인 Kim Long-won, 일본인 Araki가 동행하였다. ‘부산 사무실’의 Kim Long-won은 그 시기 부산 해관 직원 명단에 있는 김성원(Kim Sung-won)의 오타로 보인다.³⁵ 김성원(金聲遠)은 조선인 내근직 직원으로 서기(clerk)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 그는 1900년 우용정이 울릉도 조사를 할 때, 라포르트와 함께 다시 울릉도에 갔던 인물이기도 하다.³⁶ 그리고 일본인 아라키[荒木春端]는 당시 부산 해관의 외근직 직원으로서 직책은 감시원(watcher)

33 송병기, 2010,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195~197쪽 참조.

34 울릉도 도감 배계주는 1895년 9월에 초대 도감으로 임명되었다가, 1899년 5월 울릉도 도감으로 재임명되었다. 그리고 1900년 10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한 관제 개편으로 울릉도가 郡으로 승격됨에 따라, 1900년 11월 26일자로 군수가 임명되었는데, 배계주가 초대 군수가 되었다. 송병기, 2010, 위의 책, 183·191·195·220쪽 참조.

35 라포르트는 Kim Long-won을 부산 사무실에 있는 자로 소개하고 있으나, 당시 부산 해관 직원 명단에는 Kim Long-won이 아니라, Kim Sung-won이란 자가 있다. 그는 1899년 당시 부산 해관의 參譯 金聲遠이다(慶尙南北道來去案(1899. 4. 9)(청구 기호 奎17980 제1책 참조). 김성원은 1894·1896년 부산 해관 자료에 따르면, 3명의 조선인 내근직 직원 중 한 명으로, 직책은 서기(clerk)였다(『1894·1896년 부산 해관 자료』, 한수당연구원 소장 자료). 「라포르트 보고서」는 당시 해관의 여타 자료와 같이 타자기로 활자화된 것이 아니라, 펜으로 직접 쓴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부산 해관 직원 Kim Sung-won이 Kim Long-won으로 활자화된 것은 펜으로 쓴 *Sung-won*을 활자화하는 과정에서 Long-won으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당시 울릉도 관련 기록에는 김용원이란 자도 있는데, 그는 1899년 司檢 金庸爰으로 소개되어 있고, 일본인의 울릉도 벌목 및 일본인 사재를 빌려쓰고 감지 못해 문제가 된 사건의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 『內部來去案』(1), 內部大臣의 外部大臣에게의 『照會 第6號』, 光武 4年(1900) 3月 14日條(신용하 편저, 2000, 앞의 책, 53~56쪽 참조)

36 우용정, 1900, 「보고서」(신용하 편저, 2000, 위의 책, 85~86쪽)

이었다.³⁷ 그들은 6월 28일 오후 4시 한국 정부 선박인 증기선 현익(顯益, Hy-enik)호를 타고 21시간의 항해 끝에 6월 29일 오후 1시에 울릉도 해안에 도착했다.³⁸ 부산에서 울릉도까지 거리가 약 300km라고 한다면, 21시간을 항행했으니, 시속 14.3km로 이동했다. 지금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당시 울릉도행 선박으로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운항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라포르트는 울릉도의 명칭을 당시 프랑스식 명칭대로 'Dagelet(다즐레)'와 한국식 발음 'Wool Lung Do(울릉도)'를 혼용하여 표기하고 있다.

② 울릉도를 본 라포르트의 첫 소감은, '매우 아름답고 빼어났다(The appearance of Woo Lung Do is very beautiful and striking)'였다(자료 1-②). 이러한 라포르트의 첫 소감은 본토의 황량한 언덕과 대조를 이루는 울릉도의 푸르고 울창한 산과 깎아지른 듯한 절벽, 그 아래의 맑고 푸른 바다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자료 1-②]

증기선이 울릉도 남쪽에서 다가갔을 때, 울릉도의 모습은 매우 아름답고 빼어났으며, 또 나무가 우거지고 푸른 그 섬의 산비탈은 본토(mainland)의 황량한 언덕과 현저하게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 섬의 면적은 벤제니우스(Benzenius) 선장이 대략적으로 측정한 것에 따르면 25제곱마일³⁹이며, 그 섬의 외관은 몇 군데의 경작지를 제외하고 전면이 해변이나 바다에서 불쑥 솟아 있는 4,000피트⁴⁰ 높이의 가장 높은 산의 정상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큰 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져 뒤덮고 있습니다. 해변에서 1마일⁴¹ 안의 수심은 도표에 따르면 1,000길(fathom)에서 1,600길⁴²이나 되고, 우뚝 솟아있는 절벽의 거의 맨 아래에서 여러 차례 납(lead)을 내렸는데, 수심 100길에도 바닥에 닿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물이 아주 푸르고 맑았기 때문에, 실험을 위해 줄에 병(bottle)을 달아

37 「1894·1896년 부산 해관 자료」(한수당 연구원 소장 자료)

38 현익호는 스웨덴인 벤제니우스(c. G. Benzenius)가 선장이고, 외국 선박들의 입항이 금지된 한국의 연안을 운항하거나, 제주도 또는 멀리 중국의 상해까지 운항하기도 하였다. Robert Neff, 2010, "Part One A diplomat visits, 1895," *The Jeju Weekly*(2010. 2. 16) 기사 참고.

39 25제곱마일 = 64,751,277.5제곱미터(m²). 《황성신문》(1899. 9. 23, 별보)에는 약 75평방리로 표시하고 있다.

40 《황성신문》(1899. 9. 23, 별보): 4,000英尺(ft) (= 1219.2m)

41 《황성신문》(1899. 9. 23, 별보): 3리

42 1페덤(fathom)은 1.83m. 1,000길에서 1,600길은 1,830m에서 2,928m를 의미한다. 《황성신문》(1899. 9. 23, 별보)에는 6,000英尺(1,829m)에서 9,600英尺(2926m)으로 표시하고 있다.

서 측면으로 내렸더니 25피트⁴³ 깊이에서도 뚜렷하게 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라포르트는 현지 조사 보고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먼저 울릉도의 지리적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현익호의 선장 벤제니우스가 측정한 울릉도의 지리적 수치는, 면적이 25제곱마일(64.75km²), 최고봉인 성인봉의 높이가 4,000피트(ft/英尺, 1219.2m)였다. 현재 울릉도의 전체면적이 72.82제곱킬로미터(km²), 성인봉의 높이가 986.7미터(m)인 것을 감안하면, 대략적으로 측정했다고 하지만 상당히 근사한 수치다. 울릉도의 수리적 위치는 앞의 [자료: 조단의 서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위 37도 30분, 동경 131도로 기록했다.⁴⁴ 이 또한 현재 측정된 수치와 상당히 근사하다.⁴⁵

울릉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울릉도의 생활환경은 녹록치 않았다. 산은 해변에서부터 불쑥 솟아 있고, 평탄한 곳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소 평평한 곳을 찾아 화전을 이루며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 또한 가까운 해안의 수심도 100길(183m)을 넘을 정도로 깊어서, 해산물을 채취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자료 2-①). 결국 당시 울릉도 주민들은 온 산을 뒤덮고 있는 나무로 베를 만드는 등 자연을 이용하며 척박한 생활환경을 극복해나갔던 것이다.

2. 두 번째 부분(자료 2): 한인 주민 수와 생활 형태

「라포르트 보고서」의 두 번째 부분은 울릉도의 한인 주민 수와 그들의 정착생활 등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① 울릉도의 한인 주민은 호구 수 약 500호, 어른과 아이를 합쳐서 3,000명이라고 했다(자료 2-①). 그런데 이 숫자는 이 전후 시기 울릉도 인구에 대해 기록한 다른 자료와 비교해보면, 대략적으로 계수된 인구 수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1900년 우용정의 「울도기」

43 25피트(ft) = 7.62m

44 관련 자료는 이 글 II. 2 중 [자료: 조단의 서신] 참조.

45 현재 울릉도의 수리적 위치는 '극동 동경 131° 52' 22" (독도 동도 동단, 극서 동경 130° 47' 37" (서·북면간 대용령 서단), 그리고 '극남 북위 37° 14' 14" (독도 동도 남단, 극북 북위 37° 33' 01" (북면 선창 북단)에 있다. 울릉군청, 2007, 「울릉군지」, 37쪽 참조.

에는 400여 호, 남녀 모두 1,700여 명,⁴⁶ 같은 1900년 아카쓰카의 「울릉도 조사 개황」에는 520여 호, 2,500여 명⁴⁷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일본인들을 포함했느냐 어른 남녀만 계수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1899년 당시 울릉도 한인 주민 수는 호구 수가 400호 또는 500호라는 것을 고려할 때 약 2,000명 이상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울릉도 개척 이후 주민 수가 차츰 늘어났는데, 라포르트는 그 원인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울릉도 생활이 비교적 쉽다는 것. 둘째, 세금을 거의 혹은 전혀 내지 않는다는 것. 셋째, 토질이 비옥하여 거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자료 2-①]

현재 주민들은 어른 아이 3,000명⁴⁸이고, 가구 수는 약 500호라고 하며, 함께 모여 살지 않고 각 사람들의 급박한 사정에 따라 온 언덕이나 해변을 따라 흩어져 살고 있고, 저는 어디에서건 30호 가구 이상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1879년 울릉도(Dagelet)는 적막한 섬이었습니다. 그해 동안 첫 번째 이주민들(settlers)이 약 70마일⁴⁹ 떨어져 있는 본토(mainland)인 강원도(Kang Wond Do)에서 건너왔습니다. 개척자들은 그 섬에서 자라는 풍부한 목재를 활용하여 장사하고,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농민, 상인, 어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민들은 수적으로 많지 않았는데, 고기들이 풍부하지 않고, 바다가 너무 깊어서 잠수부들이 해채(海菜, sea-weed)⁵⁰나 패류(貝類, shell-fish)를 채취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들기로는 매년 피컬(piculs)⁵¹ 이상의 해채를 여전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46 우용정, 1900, 「올도기」(신용하 편저, 2000, 앞의 책, 76쪽)

47 赤塚正助, 1900, 「鬱陵島調査概況」(박병섭, 2009, 앞의 책, 104·244쪽)

48 《황성신문》(1899. 9. 23, 별보)에는 남녀 약 300명이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3,000명의 오타로 보인다.

49 70마일은 112.654km이고, 마일을 해리(nautical mile)로 계산하면 129.6km이다. 울릉도와 죽변 간 거리는 140km이다. 《황성신문》(1899. 9. 23, 별보)에는 육지로부터 200여리로 표시하고 있다.

50 「라포르트 보고서」에 나오는 sea-weed는 해조류 또는 미역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자료 5-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라포르트 보고서」에서는 'all the sea-weed obtained from the sea'라고 하여 sea-weed가 '바다에서 채취한 미역 이외에 우뚝가사리, 다시마' 등 모든 海藻類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황성신문》(1899. 9. 23, 별보)에서는 海藻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해채는 미역을 의미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울릉도에서 채취한 미역, 우뚝가사리, 다시마 등과 같은 해조류 전체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그 시기 울릉도의 해산물과 관련해서는, 赤塚正助, 1900, 「鬱陵島調査概況」(박병섭, 앞의 책, 102쪽); 西村銈象, 1902, 「明治35年鬱陵島狀況」(박병섭, 앞의 책, 112·115쪽) 참고.

51 2,000피컬은 120,960kg이다(1picul = 60.48kg). 《황성신문》(1899. 9. 23, 별보)에는 2,000擔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擔은 양적 단위로 지금의 100斤에 해당한다.

거주민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섬에서의 생활이 비교적 쉽고, 세금이 거의 또는 전혀 없고, 토질(土質)은 비옥하여 거름이 전혀 필요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울릉도의 첫 번째 이주민들은 1879년에 강원도에서 입도한 것으로 적고 있다. 이는 공식적으로 개척령이 1882년에 내려지고, 1883년부터 개척민들이 울릉도 이주를 시작했다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⁵²

초기 울릉도 주민들의 직업을 보면, 선박을 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고, 그다음 농민, 상인, 어민의 순이었다. 어민들이 수적으로 많지 않은 이유는 고기가 풍부하지 않고 물이 깊어 미역이나 전복 등 해산물을 채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역 등 해조류의 경우 매년 채취하여 2,000피컬(120,960kg) 이상을 육지로 수출하고 있었다.

② 울릉도 이주민들의 정착생활은 우선 화전을 만들고 집을 짓는 것에서 시작하였다([자료 2-②]). 라포르트는 그 정착생활 과정을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자료 2-②]

이주민들은 상륙하자마자 섬에 있는 평평하고 접근하기 쉬운 땅을 찾습니다. 그런 곳을 찾으면, 덩불이나 나무에 불을 놓아 그 땅을 정리합니다. 불이 저절로 꺼지면, 가까운 곳에 있는 자재들을 이용하여 집을 짓습니다. 가능한 한 넓은 범위에서, 새까맣게 탄 나무의 뿌리들을 제거하고 땅의 표면을 약간 긁어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릴 준비를 하고, 매년 두 차례 즉, 봄에는 보리나 밀,⁵³ 가을에는 감자와 콩⁵⁴을 수확합니다. 맛 있는 냉수가 풍부하고 시냇물이 산기슭 곳곳에서 흐릅니다.

52 송병기, 2010, 앞의 책, 177~179쪽 참조.

53 《황성신문》(1899. 9. 23, 별보): 大小麥

54 《황성신문》(1899. 9. 23, 별보): 薯[참마]와 콩[표]

이어 라포르트는 울릉도 마을이 육지와 다른 특이

한 점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한국의 마을에서 흔히 보는 가축들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해변을 걷는 동안 개나 돼지, 말이나 소를 한 마리도 보지 못했고, 심지어 닭도 아주 드문 것 같습니다.

울릉도 주민들이 언제부터 가축을 길렀는지 정확하지 않으나, 1899년 당시만 해도 가축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산짐승마저 없는 울릉도에서는 가축을 모두 본토에서 가져와야 했다. 당시 운반하는 선박도 크지 않았고, 배길도 멀고 험난하여 소나 돼지같이 몸집이 큰 가축을 가져오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해변부터 산이 우뚝 솟아 있고 경사가 저서 말을 타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은 더욱 되지 못했다.

3. 세 번째 부분(자료 3): 울릉도 주민의 산업과 교역, 생산물 등

「라포르트 보고서」의 세 번째 부분은 울릉도 한인 주민들의 산업과 본토와의 교역 현황, 그리고 울릉도의 생산물에 관한 내용이다.

① 라포르트는 1899년 당시 선박 건조가 울릉도의 유일한 산업이라고 적고 있다.

[자료 3-①]

선박 건조는 이 섬의 유일한 산업입니다. 선박 건조에 대한 주문은 봄에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와 제주도(Quelpart)로부터 받습니다. 새로운 범선(junk)은 일반적으로 악천후가 시작되기 전인 11월에 건조를 끝내고 항해할 준비를 합니다.

선박은 주로 범선을 만들었고,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심지어 제주도로부터 주문을 받을 만큼 그 규모가 전국적이었다. 거기에다가 일본인들까지

대장간을 이용하며 선박을 건조했으니(자료 4-④), 당시 울릉도의 선박 건조 산업은 제법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선박 건조는 봄부터 가을까지 날씨가 좋은 계절을 이용하였고, 파도가 세지고 날씨가 좋지 않은 겨울이 되기 전에 작업을 모두 마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선박 건조 이외에 울릉도와 본토 간 교역은 미미한 편이었다. 울릉도에서 나가는 물품은 해조류가 대부분이었고, 울릉도에서 많이 생산되는 목재도 열악한 운송수단 때문에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육지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울릉도 이주자들 편에 들어오는 정도였다.

본토와 교역은 미미합니다. 때때로 범선이 이주자들을 싣고 도착하는데, 남자들은 그들의 볼품없는 소유물 곧 몇 포 안 되는 쌀과 연초(煙草, native tobacco)와 몇 가지 피륙(布疋, piece goods)을 싣고 옵니다. 화물이 팔리고 돈을 벌면, 배는 회항을 하는데 대개의 경우 해재이고 간혹 판재(板材, planks)도 싣고 갑니다. 본토에서는 무거운 목재(heavy timber)에 대한 수요는 거의 없으며, 목재 판매가 가능한 시장이 늘 존재하고는 있으나, 한국 범선으로는 운송이 매우 어려운 관계로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② 이어 라포르트는 울릉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확량과 목재의 종류에 대해 기록하였다.

[자료 3-②]

땅이 가파르기 때문에 쌀은 울릉도(Dagelet)에서 자랄 수 없고, 한국인들은 대개 밀, 보리, 감자를 먹고 삽니다. 작년의 수확은 감자 20,000포(包), 보리[大麥] 20,000포, 누런 콩[黃豆] 10,000포와 밀[小麥] 5,000포였습니다.

수량이 매우 오래되고, 키가 큰 소나무 숲⁵⁵이 섬의 언덕을 뺨뺨하게 뒤덮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각종의 귀중하고 단단한 목재 역시 풍부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이 '기약(Kiyak)'이라고 하는 나무,⁵⁶ 백단

55 《황성신문》(1899. 9. 23. 별보): '老年巨杉' 곧 삼나무(杉)로 표시하고 있다.

56 「라포르트 보고서」에는 '기약(Kiyak)' 또는 기약키(Kiyaki)로 되어 있는데, 《황성신

향,⁵⁷ 한국인들이 ‘박차(Pak Cha)’라고 부르는 나무,⁵⁸ ‘감탕(Kam tan)’이라고 하는 나무⁵⁹입니다. 감탕나무의 껍질은 일본인들이 새뿔을 만들기 위해 사용합니다.

감탕나무는 껍질을 벗기면 끈적끈적한 액이 나와서 ‘끈끈이’라고도 했는데, 일본인들이 새를 잡을 때 뱃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4. 네 번째 부분(자료 4): 울릉도 거주 일본인과 밀수 및 벌목

네 번째 부분은 「라포르트 보고서」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울릉도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거주 현황과 밀수, 벌목 등 생활행태에 대한 내용이다. 다섯 번째 부분(자료 5)의 보고 내용과 함께 「라포르트 보고서」 중 가장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① 라포르트는 도감 배계주의 도움을 받으며, 배(현익호)를 타고 울릉도의 동쪽 방향으로 해안을 따라 나아가면서 주로 일본인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자료 4-①]

배계주 씨의 조언에 따라 증기선은 먼저 울릉도의 동쪽 지역으로 갔는데, 그곳은 제가 듣기로 가장 큰 규모의 일본인 거주지가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절벽들 가운데 거의 숨겨져 있는 물개 서식지(Seal Point)를 지나서, 우리는 작은 포구(bay)를 보았습니다. 그 입구의 넓이는 약 100피트(ft)이고, 연안에서 약간 떨어진 거리를 지나는 배들은 쉽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계곡(gully)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40호의 특이한 집과 오두막이 있고, 일본인 남자 140명과 여자 23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해변에 5척의 일본식 범선(junks)과 2척의 동력선(schooners)이 비어 있었는데 높은 파도도 닿지 않는 곳에 끌어올려져 있었습니다. 1척의 작은 일본식 범선이

문)(1899. 9. 23, 별보)에는 槻木(느티나무)으로 표시되어 있다.

57 《황성신문》(1899. 9. 23, 별보): 香木

58 《황성신문》(1899. 9. 23, 별보): 柏子木

59 《황성신문》(1899. 9. 23, 별보): 甘湯木

바다에 떠 있었고, 콩 280포를 싣고 있었습니다. 그 배는 우리가 도착하고 2시간 후에 떠났고, 우리가 듣기로는 2척의 큰 동력선(schooners)이 값비싼 목재를 싣고 6월 27일 일본으로 갔다고 합니다. 7척 배의 선원들은 약 60명으로 그 지역에만 일본인들을 200명 이상 데려왔습니다.

라포르트가 첫 번째로 들른 지역이 오늘날 어느 마을인지 그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만의 입구가 100피트(30.48미터)인 작은 포구가 있다는 것과 마을이 계곡에 형성되어 있는 지리적 현황 등을 보면 도동 마을로 보인다. 당시 그 마을에는 일본인들이 40호 163명(남자 140명, 여자 23명)이 있어, 울릉도 내 최대 규모의 일본인 거주지였다. 이는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02년 도동 마을이 울릉도 내 최대 규모의 일본인 거주지로, 일본인들이 36호 386명(남자 307명, 여자 79명)이 있었다. 그다음이 남양, 통구미, 죽암 순으로 일본인들이 많이 체류하고 있었다.

<표> 1902년 일본인 가구와 인원⁶⁰

마을	도동	저동	내수전	죽암	창동	추산	신촌
호수	36	5	2	5	2	1	1
인구 (남, 여)	386 (307, 79)	12 (7, 5)	9 (5, 4)	20 (14, 6)	4 (2, 2)	1 (1, 0)	1 (1, 0)
마을	태하동	수층층	남양동	통구미	중령	우북동	사동
호수	6	1	9	5	2	2	2
인구 (남, 여)	19 (15, 4)	2 (2, 0)	38 (26, 12)	30 (23, 7)	6 (4, 2)	8 (6, 2)	12 (9, 3)

도동은 그 후 계속해서 최대 규모의 일본인 거주지였다. 1882년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이 울릉도를 조사할 당시에도 도동에 가장 많은 수의 일본인들이 체류하고 있었다.⁶¹ 도동은 천연 포구가 있어 다른 지역보다 배를 대고 물건을 선적하기에 좋은 곳이었다. 당시 일본인들과 선박들은 도동을 거점으로 울릉도를 출입하였다.

60 西村銈象, 1902, 「明治35年鬱陵島狀況」(박병선, 2009, 앞의 책, 111·249·250쪽)

61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 검찰일기」(1882)(이혜은, 2007, 앞의 책, 1379~1382쪽)

② 도동에는 울릉도 산에서 별목한 무수히 많은 나무들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고, 또 일본인들의 집에는 일본에서 가지고온 수입 물품들이 있었다 ([자료 4-②]). 라포르트는 도동의 상황과 그곳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사정을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자료 4-②]

무수히 많은 단단한 목재들이 이미 선적을 위해 잘리거나 베어져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편 모든 집들이 수입 물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쌀, 소금, 자기(瓷器, porcelain), 술, 양포(洋布, grey shirting), 목면(木綿), 등유(kerosene oil), 성냥,⁶² 우산이었습니다. 3척의 일본 범선 곧 예비스(Yebisu)호, 코예이(Koyei)호, 쓰루오예이(Sluoyei)호가 있었습니다. 이 배들은 사카이 세관(이토키 지역, Itoki Province)에서 발급한 허가장을 갖고 있었는데, 수입 화물을 가득 실었고, 일본에서 부산행을 허가받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동 포구에 일본에서 가져온 물품을 선적한 세 척의 일본 범선이 있었다. 이들 선박에는 사카이 세관에서 발급한 허가장을 비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허가장은 비개항장(非開港場)인 울릉도 출입이나 교역을 허락하는 허가장이 아니라 부산항 통관을 허락하는 허가장이었다. 1897년 부산 해관 자료에 따르면, 1899년 울릉도에 있었던 일본 범선 예비스호와 코예이호가 1897년 6월 부산항 통관 선박으로서 수출입 관세를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⁶³

라포르트는 일본인들이 불법적으로 울릉도에 들어온 물품을 거론하면서 그 거래 가치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수입 물품은 한국인들에게는 현금으로 좀처럼 팔리지 않으나 대부분의 경우 콩, 보리, 미역과 교환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정해놓은 수출 품목의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⁶² 《황성신문》(1899. 9. 23, 별보): 火柴

⁶³ 「1897년 부산 해관 자료」(한수당 연구원 소장 자료)

	달러(dol.) 센트(c.)	실링(s.) 펜스(d.) ⁶⁴
콩 1곡(약 5.13부셀 또는 293파운드) ⁶⁵	2.00	= 4.0
보리 1곡(약 5.13부셀 또는 267파운드) ⁶⁶	2.00	4.0
밀 1곡(약 5.13부셀 또는 307파운드) ⁶⁷	1.65	3.3
감자 1피컬(133파운드) ⁶⁸	0.30	0.7
해채(미역 등) 1피컬(133파운드)	2.00	4.0

* 부산에서 구입하면 같은 물품을 반 이하의 가격으로 살 수 있음.

울릉도에서는 일본인들의 밀수 물품이 아주 비싼 가격에 판매되었다. 부산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배나 더 비싼 가격이었다. 물품은 현금으로는 거의 팔리지 않았고, 울릉도에서 재배하는 콩, 보리, 밀, 감자와 바다에서 채취하는 미역 등 현지 생산물과 물물교환 형태로 거래되었다. 그 물품의 교환 가치는 보리(121.2kg에 2달러)나 콩(133.02kg에 2달러)의 가격이 밀(139.4kg에 1.65달러)이나 감자(60.4kg에 0.3달러)보다 높았다. 그중 미역 등 해조류(60kg에 2달러)가 가장 높은 값으로 거래되었는데, 감자 가격의 6.7배에 달했다.

③ 그리고 라포르트는 당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일본인들의 별목에 관해 보고하였다.

[자료 4-③]

와키다 쇼타로(Wakida Shotaro)와 아마노 겐조(Amano Genzo)라는 두 일본인은

⁶⁴ 'dol. c.'는 미국 화폐 단위로 dollar와 cent를, 's. d.'는 영국의 구 화폐인 shilling과 pence를 각각 의미한다.

⁶⁵ 곡(Koku)은 1년에 한 사람이 먹는 쌀의 양을 의미하는 일본식 단위로 보인다. 5.13부셀(bushel) = 153.9리터(liter), 293파운드(lbs) = 133.022킬로그램(kg) (1 bushel = 30 liter, 1 lbs = 454g)

⁶⁶ 267lbs = 121.2kg

⁶⁷ 307lbs = 139.4kg

⁶⁸ 1피컬(picul) = 60.48kg, 133lbs = 60.4kg

별목에 관한 책임자인 것 같고, 관리의 허가를 받아 일을 하며(저는 총세무사님께 그 사건의 한국어본을 드리고, 이 허가장이 어떻게 수여되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일본으로 보내는 주요 수출업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그 섬에 있는 모든 일본인들이 그들의 손이 닿는 곳에 널려 있는, 돈이 될 만한 것을 다소 자유롭게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별목을 위해 나무껍질을 벗기고 그 나무들이 마를 때까지 세워놓았다가, 약 6개월 이후 그 나무들을 찍어 쓰러뜨리

고 배어 팔 준비를 합니다.

라포르트는 일본인들의 벌목 책임자로 와키다 쇼타로와 아마노 겐조를 언급하고 있다. 이들은 관리의 허가를 받아 벌목을 하고, 또 노동자도 고용하는 한편, 목재를 일본으로 보내는 수출업도 한다고 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관리의 허가를 받아 벌목을 한다는데, 내용으로 보아 허가장은 울릉도의 관리(도감)가 수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허가장은 뒤의 자료(자료: 4-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인들의 행패를 잠재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수여된 허가장과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 외무성 기록에는⁶⁹ 1899년 도감 배계주가 울릉도에 없는 사이 배계주 도감을 대신하여 오성일(吳性鎔)이 울릉도 거주 일본인들과 수출품에 대해 세금을 내기로 약조문(約條文)을 작성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⁷⁰ 그 약조문에는 위의 와키타 쇼타로(脇田庄太郎)와⁷¹ 아마노 겐조(天野源藏)의 이름이 울릉도 거주 일본인 상인 24명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⁷² 관련 보충자료의 발굴과 해석이 필요하지만, 내용으로 보아 위의 허가장과 약조문이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포르트는 일본인들이 벌목을 금지한 한국의 국법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이한 벌목 행태도 소개하고 있다. 즉 우선 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약 6개월 동안 그대로 두어 말라 죽으면, 벌목을 하고 선적할 준비를 한다는 것이다.

④ 울릉도 거주 일본인들은 대다수가 오키 섬에서 왔고, 그들이 울릉도에 불법 이주해온 시기는 1894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자료 4-④]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약 160마일⁷³ 떨어져 있는 오키 섬

에서 왔으며, 몇몇 일본인들은 7, 8년을 울릉도(Dagelet)에서 살았다고 주장하지만, 1894년에 울릉도에 도착했습니다.

라포르트 일행은 도동을 조사하고 난 후 저동을 거쳐서 울릉도의 북쪽 지역인 천부 방향으로 나아갔다. 가는 중에 두 곳의 일본인 거주지를 방문하여 그들의 불법 행태를 조사하였다.

북쪽 지역에서 저는 두 개의 일본인 거주지를 방문했는데, 한 지역은 25명의 일본인들이 점거하고 있었고(occupied), 다른 지역에는 15명의 일본인 남자와 1명의 여자가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10척의 일본인 어선과 1척의 일본 범선이 건조 중에 있었고, 대장간은 활발히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지역에서 일본과 불법적인 교역(illicit trade)을 행해 왔다는 똑같은 증거를 발견하였습니다.

일본인들은 대장간을 운영하면서 일본식 선박을 건조하고 있었다. 라포르트는 이 부분에서 ‘occupied(점거 또는 차지)’ 또는 ‘illicit trade(불법 교역)’라는 단어를 쓰면서 비개항장인 울릉도에서 이루어지는 일본인들의 채류와 선박 건조 등이 불법임을 적시하고 있다.

⑤ 일본인들의 울릉도 채류와 벌목, 선박 건조, 교역 등이 불법임에도 울릉도 주민들에 대한 일본인들의 행태는 ‘적반하장’이고 ‘통제 불가능’이었다.

[자료 4-⑤]

두 번째 거주지에 있는 16명의 일본인 거주민들은 현익호에서 불 때 산비탈에 있었고, 제가 한국인들이 일본인 마을이나 재산에까지 불을 놓고 그 사람들을 산으로 내쫓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저는 한인들이 그 섬 전역에서 일본인들에게 당하는 난폭행위(rough treatment)에 대해 한인들이 수많은 불평을 호소하고 있다는

69 「수명조사사항 보고서 중의 수출세 건, 1900, 외무성 기록 3532 『鬱陵島に於ける 伐木關係雜件』(박병섭, 2009, 앞의 책, 107~108쪽, 246~247쪽 참고)

70 「수명조사사항 보고서 중의 수출세 건, 1900, 외무성 기록 3532 『鬱陵島に於ける 伐木關係雜件』(박병섭, 2009, 위의 책, 247쪽 참고)

71 1906년 오쿠하라 헤키운(奥原碧雲) 일행이 울릉도 방문시 와키다(脇田)의 집에 머물렀다고 했는데, 와키다는 울릉도에서 일본인 세력가 중 한 사람이었다. 奥原碧雲, 1907(2005 復刻版), 앞의 책, 79쪽

72 위 두 사람은 1901년 울릉도에서 일본인 상인들이 자체 조직한 『鬱陵島日商組合』의 조합원이기도 했다. 西村銈象, 1902, 『明治35年鬱陵島狀況』(박병섭, 2009, 앞의 책, 262쪽)

73 160마일은 257.44km다(1마일=1.609km). 위의 마일을 해리(nautical mile)로 본다면, 160마일은 296.3해리다(1nm = 1.852km).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불평사항은 몇 개 마을의 대표들이 불평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은 청원서를 저에게 전달했는데 이 보고서에 동봉합니다.

몇몇 소소한 불평 가운데에는, 한인들이 강조하고 있는 금년 4월에 발생한 다소 심각한 소요(serious affray)를 들 수 있습니다. 일본인 몇 명이 한인 여성 한 명을 폭행(assault)하자, 한인들이 모여서 몇 가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폭력적으로 변해 총과 칼로 무장하고 내쫓았는데, 남자 1명에 부상을 입히고 한인들을 그들의 마을로 도로 쫓아보냈습니다. 이 승자(victors)들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배계주 도감이 없는 동안 그 섬의 책임을 맡은 관리가 몇 그루의 나무를 벨 수 있는 허가장을 어쩔 수 없이 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허가장 사본을 한국 관리나 일본인들로부터 얻을 수 없었습니다.

울릉도 주민들이 일본인들의 행패에 불만을 갖고 항의를 하고 심지어 일본인들의 마을이나 재산에까지 불을 놓는 경우도 있었지만, 오히려 한인들이 내쫓기거나 그로 인해 불법을 합법화해주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라포르트 일행이 현지 조사를 할 때, 몇 개 마을의 한인 대표들은 일본인들의 난폭한 행패를 고발하는 청원서를 라포르트에게 전달하고, 그것은 총세무사 브라운에게까지 전달되었다. 라포르트는 일본인들의 행패 중 울릉도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대표적인 한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1899년 4월에 일본인들이 한인 여성 한 명을 폭행했고, 이에 대해 항의하며 배상을 요구했던 한인들이 오히려 부상을 당하고 일본인들이 휘두른 칼과 총에 내쫓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일본인들은 1900년 우용정 등 한일합동 조사시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으나,⁷⁴ 그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라포르트 보고서」를 통해 확인된다.

그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 도감 배계주가 없는 동안

74 「鬱陵島在留日本人調査要領, 韓日人分日査問」(신용하, 2000, 앞의 책, 101쪽); 1900년 주한(부산) 일본 부영사 아카쓰카 쇼스케도 일본인들이 한인 주민들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잘못된 보고를 하고 있다. "일본인들은 동동이라는 마을을 중심으로 모여 하나의 조합을 두고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도민(한국인)들과는 매우 감정이 좋다. 도민은 일본인에게서 많은 편의를 제공받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도민의 옷감인 능복면과 옥양목, 면 등은 모두 일본인의 수입에 의존한다." 赤塚正助, 1900, 「鬱陵島調査概況」(박병선, 앞의 책, 105쪽)

그 섬의 책임을 맡은 관리가 몇 그루의 나무를 벨 수 있는 허가장을 어쩔 수 없이 주게 되었다고 한다. 도감 배계주의 직을 대신 수행한 관리의 이름은 적시하고 있지 않으나 오성일로 보인다. 라포르트는 그 허가장을 한국 관리나 일본인들로부터 얻고자 했으나 얻을 수 없었다고 한다.

5. 다섯 번째 부분(자료 5): '세금 등'과 보고서의 맺음말

「라포르트 보고서」의 마지막 내용은 울릉도의 세금 징수 현황과 보고서의 맺음말로 되어 있다.

① 앞의 [자료 2-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울릉도에 이주자들이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가 세금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울릉도에 거주하는 농민이나 상인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 다만, 도감이 바다에서 채취한 해채세(海菜稅)와 선박 건조에 사용된 나무에 대한 세금인 '조선 목재세(造船木材稅)'⁷⁵를 징수하였다. 즉 해채세는 바다에서 채취하여 섬에 가져온 모든 해채(海菜)에 대해 10%를 징수하였고, 조선 목재세는 건조된 범선 1척당 평균 10,000푼(100^냥)을 징수하였다.

[자료 5-①]

농민이나 상인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 관리는 바다에서 채취하여 섬에 가져온 모든 해채(all the sea-weed)⁷⁶에 대해 10%를 징수하고 선박 건조에 사용된 나무에 대한 세금으로 건조된 범선 1척당 평균 10,000푼(10,000 cash)⁷⁷을 징수합니다.

물품 매각을 돕는 중개인과 중간상인에게 주는 2%의 중개 수수료(commission)⁷⁸를 제외하고 일본인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몇 년 전에 관리(the official)가 노력하여, 벌목해간 목재에 대해 얼마의 보상을 받는 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재 위세와 행태를

75 '조선 목재세'를 '造船稅'라고도 한다(송병기, 2010, 앞의 책, 182·205쪽). 그런데 결론적으로 건조한 범선에 관한 세금이라는 점에서 조선세라고 할 수 있으나, 선박 건조에 사용된 나무에 대한 세금이고, 징수하는 액수를 건조된 선박을 기준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조선 목재세'라는 호칭이 더 적절하게 보인다.

76 보고서 원문에는 'all the sea-weed obtained from the sea'라고 하여 '바다에서 채취한 미역 이외에 우뚝가사리, 다시마' 등 모든 해채를 의미한다.

77 《황성신문》(1899. 9. 23, 별보) 葉 100兩

78 《황성신문》(1899. 9. 23, 별보)에는 일본인은 "實貨時口文(百抽二) 외에는 납세할이 없더라"고 기술하고 있다. '구문'을 '흥정을 붙여주고 그 대가로 받는 돈'이라고 할 때, 중개 수수료에 해당한다.

고려하면(배의 선원을 계산하지 않으면 모두 250명⁷⁹의 거주민이 있습니다), 확신하건대 그들은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어떤 것도 결코 짜내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관리들이나 주민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유일한 소망은 달갑지 않은 불청객들을 하루빨리 퇴출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라포르트의 울릉도 현지 조사 보고의 핵심 내용은 울릉도 거주 일본인들의 행태다. 그중 일본인들의 세금 문제는 부산 해관 세무사직을 담당하고 있는 라포르트에게는 가장 중요한 관심 사항이자 조사 사항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런 그의 조사 결과는 1899년 당시 울릉도 거주 일본인들은 ‘물품 매각을 돕는 중개인이나 중간상에게 2%의 ‘중개 수수료(commission)’를 제외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⁸⁰ 라포르트는 그 몇 년 전에 도감이 노력하여 일본인들로부터 별목에 대한 ‘보상(compensation)’을 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현재의 일본인들의 위세대로라면 앞으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기타 어떠한 것도 짜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울릉도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유일한 소망이 일본인들을 울릉도에서 하루라도 빨리 쫓아보내는 것임을 전하고 있다.

② 라포르트는 울릉도의 남쪽 해안에 있는 또 다른 일본인 거주지를 보게 되었다. 그 지역이 울릉도의 남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사동이나 통구미 마을이 아닐까 생각된다.

[자료 5-②]

또 다른 거주지에는 약 30명의 일본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들은 대부분 별목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울릉도의 남쪽 해안에 위치해 있었는데, 제가 상륙을 시도해보았지만 높은 파도로 인해 상륙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30일 오후 5시에 다시 출발하여 7월 1일

79 《황성신문》(1899. 9. 23, 별보)에는 “배에 실어가는 자들의 其值가 不資하고 본 섬 중에 築室旅居하는 일본인이 200여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80 이와 관련해서는, 1899년 오성일과 일본인들 간 수출품에 대한 세금 약조에 대한 기록도 있는바, 그 약조문의 내용과 그 약조의 유효성 여부와 함께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오후 4시에 부산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별도로 느티나무(Kiyaki wood)와 백단향 건본 그리고 콩·밀·보리 건본을 보내드립니다.

각하의 중복⁸¹

(서명) 라포르트 (E. Laporte)

라포르트는 6월 29일과 30일에 걸친 1박 2일간 울릉도 현지 조사를 마치고 부산으로 돌아왔다. 울릉도에서 부산으로 나올 때는 23시간이나 걸렸는데, 이는 부산에서 울릉도로 들어갈 때보다 2시간이나 더 걸렸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마치 조선의 여느 수도관들이 했던 것처럼, 울릉도의 산물을 가지고왔는데 나무(느티나무·백단향)와 곡식(콩·밀·보리) 건본을 가지고와 총세 무사 브라운에게 보냈다. 라포르트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고 끝을 맺었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라포르트는 1899년 6월 29일과 30일 1박 2일간 아주 신속하게 울릉도 현지 조사를 추진하였다.⁸² 이 조사에는 울릉도 사정에 밝은 울릉도 도감 배계주가 동행하고, 그 외 부산 해관의 한국인과 일본인 직원이 동행했다. 1박 2일이라는 짧은 기간의 조사였지만, 울릉도 도감 배계주의 현지 안내를 기초로 울릉도 현지 조사를 상당히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남겼다.

라포르트의 울릉도 조사 보고는 1900년 전후의 울릉도 및 독도 현황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향후 독도 연구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분석한 사실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라포르트 보고서」에 따르면, 울릉도의 한인들은

81 라포르트 보고서에서는 ‘I am, &c’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영문 보고서에 나오는 ‘I am, Sir, Your obedient Servant’의 줄임말이다.

82 라포르트의 울릉도 조사 전체 일정은 1899년 6월 28일 부산항을 출발하여 울릉도 현지 조사 후 7월 1일 다시 부산항에 도착했으니 3박 4일의 일정이다.

1882년 개척령이 내려지기 전인 1879년에 강원도에서 이주해왔다. 1899년 당시 울릉도 주민들의 주된 산업은 선박 건조였는데, 선박 건조에 관한 주 문은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심지어 제주도에서 받을 만큼 전국적이었다. 1899년 당시 울릉도 주민이 약 3,000명이었는데,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울릉도 주민들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울릉도에서는 울릉도의 바다에서 채취한 미역 등 해채(海菜) 채취에 대한 세금(해채세 10%), 그리고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사용된 목재에 대해 범선 1척당 10,000푼(100냥)의 세금(조선 목재세)을 내었고, 농민이나 상인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 당시 울릉도에서는 주로 보리·콩·감자 등 밭작물을 재배 하였고, 아직까지 벼농사는 짓지 않았다. 또한 몇 마리의 닭 외에 소나 돼지 등 몸집이 큰 가축은 거의 기르지 않았다. 본토와의 교역은 미역이나 선박 건조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② 라포르트의 핵심 조사 내용은 일본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일본인의 불법채류 현황과 생활행태였다. 일본인들은 1894년에 오키 섬에서 건너왔 으며, 대략적으로 울릉도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수는 배의 선원을 포함하 여 약 300명으로, 당시 한인들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규모였다. 울릉도의 도동 마을은 최대 규모의 일본인 거주지였고, 일본인들은 울릉도의 북쪽과 남쪽 지역 등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

울릉도는 개항장이 아니었으므로 일본인들의 울릉도 채류 자체가 불법 이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일본에서 가져온 물건(필수품)을 팔고, 울릉도에서 생산된 곡물을 일본으로 가져가 파는 일도 하였다. 또 벌목이 금지되었음에 도 교묘한 속임수로 벌목을 하고, 심지어 울릉도에 버젓이 대장간까지 차려 놓고 배를 만들며 돈을 벌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어떠한 세금도 내지 않았으며 단지 물품 매각시 중개 수수료(2%)만 내는 정도였다.

울릉도 거주 일본인들의 수가 계속 늘어가고, 그들의 위세도 강해져갔다. 그럴수록 이 섬의 주인인 울릉도 한인 주민과 불청객인 일본인 불법 이주 자들 간에는 '적반하장의 상황'이 만들어졌고,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까 지 이르게 되었다. 라포르트가 그의 보고서에서 불법 사례로 든 것을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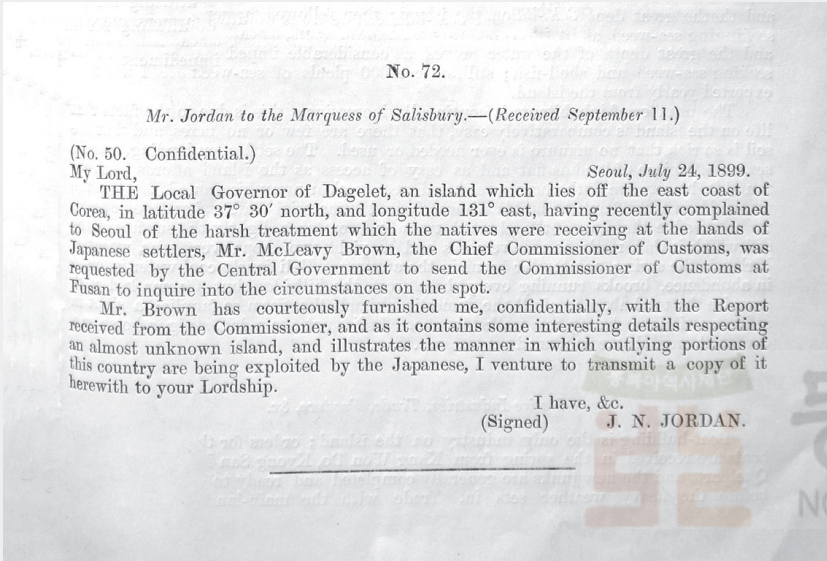
불법 입국, 밀수와 불법 수출, 무단 벌목, 불법 선박 건조, 부녀 폭행, 총기 소 지와 사용, 집단폭행과 상해 등이다.

라포르트는 이러한 일본인들의 행태에 대해 '점거(occupied)', '불법 교역(illicit trade)'이라는 표현을 쓰는가 하면, "확신킨대 울릉도의 관리나 주민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유일한 소망은 달갑지 않은 불청객들을 하루빨리 퇴출시 키는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를 접한 주한 영국 대리공사 조단도 "한 국의 외딴 지역이 일본인들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다(exploited)"고 적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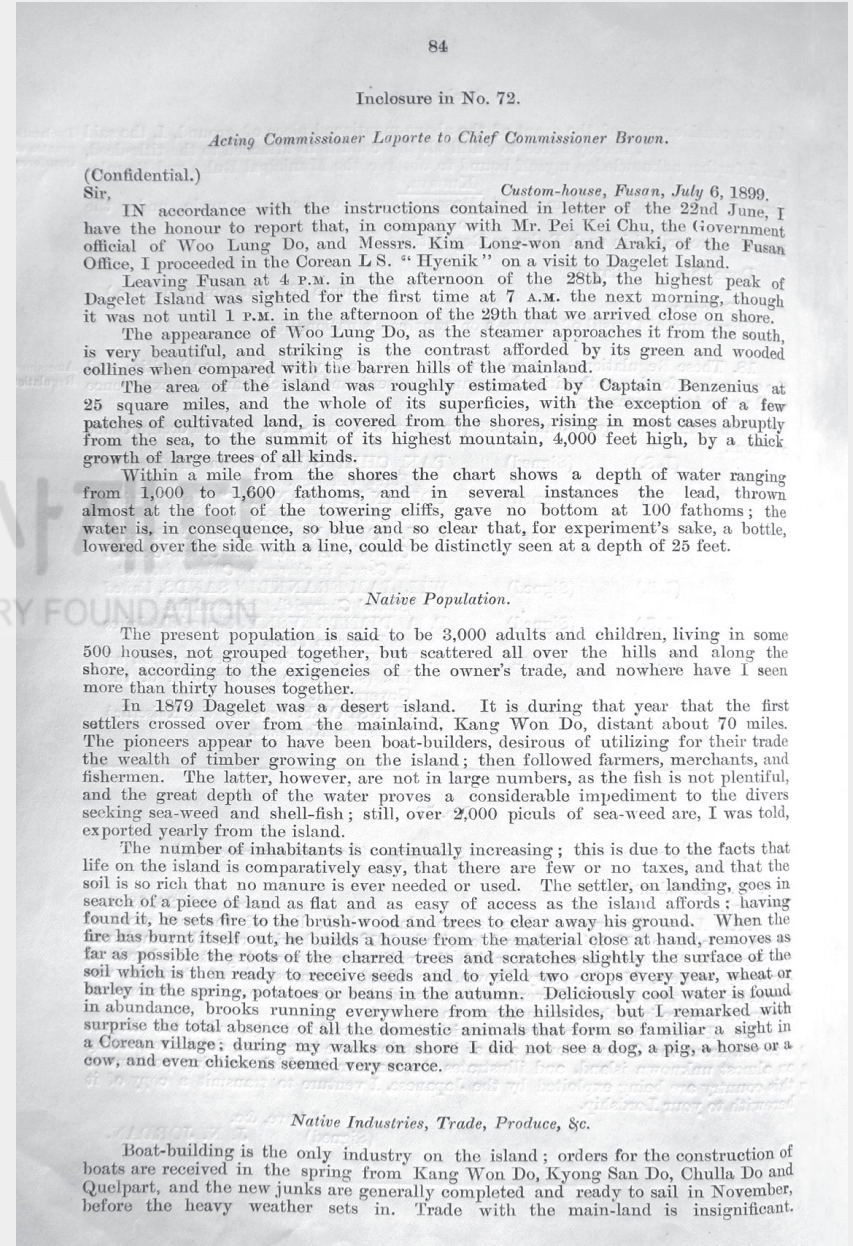
③ 위와 같은 라포르트의 조사 결과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에서 중요한 전기를 제공하였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관한 의안을 상정한 1900년 10월 22일자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칭하는 것에 관한 청의서」를 보면, "울릉도 도감 배계주의 보첩과 본부 시찰관 우용 정과 동래 세무사(東萊稅務司)의 시찰록을 사려 깊게 살펴"라고 기록되어 있 다. 한국 정부는 울릉도 도감 배계주의 상소를 받아서 라포르트를 파견하 고, 그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용정을 울릉도 시찰위원으로 임명하였다. 라포르트는 1900년 6월 우용정과 함께 울릉도 합동 조사단의 일원이 되어 울릉도 사정을 재차 조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제정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는 라포르트의 보고와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포르트 보고서」 관련 자료 소개

[자료 1] 라포르트 보고서를 동봉한 주한 영국 대리공사 조단의 서신



[자료 2] 라포르트의 울릉도 조사 보고서



Occasionally a junk arrives with immigrants; she carries in addition to men and their humble belongings a few bags of rice, native tobacco and some piece-goods; when the cargo is sold and the money realized she sails back loaded in most cases with sea-weed, sometimes with planks. There is little demand for heavy timber on the main-land, but were there always a ready market, very little trade could still be done in it, as the transport by Corean junks would prove an unsurmountable obstacle. Owing to the steepness of the ground, rice cannot be grown on Dagelet and the Coreans live mostly on wheat, barley and potatoes. The crops raised last year consisted of 20,000 bags of potatoes, 20,000 bags of barley, 10,000 bags of yellow beans, and 5,000 bags of wheat. A thick forest of pine-trees of great age and size covers every hill of the island, while various species of valuable hard woods are also found in abundance amongst others: "Kiyak" wood, a kind of sandal wood, a tree called by the Coreans "Pak Cha" and one called "Kam fan," the bark of which is used by the Japanese for manufacturing bird-lime.

The Japanese on Dagelet, their Smuggling and Wood-cutting.

Under Mr. Pei's advice, the steamer first proceeded to the eastern side of the island where, I was told, the largest Japanese Settlement was situated. After passing "Seal point," almost concealed in the middle of the cliffs, we found a small bay, the entrance to which, about 100 feet wide, could be easily overlooked by vessels passing some distance off the coast. There in a gully was built a village of 40 odd houses, or huts, the residence of 140 Japanese men and 23 women. On the beach 5 Japanese junks and 2 schooners, empty, were hauled up out of reach of the heavy swell; one small Japanese junk was afloat, loaded with 280 bags of beans; she left two hours after our arrival and we were told that two large schooners, with valuable cargoes of timber, had gone to Japan on the 27th June. The crews of the seven vessels, sixty men about, brought the Japanese population on that spot alone to over 200.

Enormous logs of hard wood, already cut and sawn ready for shipment, were lying everywhere, while every house contained articles of importation amongst which the most important were rice, salt, porcelain, saki, grey shirtings, cotton wadding, kerosene oil, matches and umbrellas. Three junks the "Yebisu," "Koyei," and "Sluoyei Maru," produced permits to ship from the Sakai Customs (Itoki Province) clearly showing that these junks had brought full import cargoes and had cleared in Japan for Fusan.

The import goods are seldom sold to the Coreans for ready money, but in most cases exchanged against beans, barley, or seaweed, the value of the articles of exportation being fixed by the Japanese as follows:—

	Dol. c.	s. d.
1 koku of beans (about 5·13 bushels, or 293 lbs.) 2 00 = 4 0
1 ,, barley (about 5·13 bushels, or 267 lbs.) 2 00 4 0
1 ,, wheat (about 5·13 bushels, or 307 lbs.) 1 65 3 3
1 picul of potatoes (133 lbs.) 0 30 0 7
1 ,, seaweed (133 lbs.) 2 00 4 0

Or somewhat under half of what the same goods would cost if purchased at Fusan.

Two Japanese, Wakida Shotaro and Amano Genzo, appear to be the Headmen of the wood-cutting concern, working with the official's permission (I am giving you further the Corean version of the case, and how this permission came to be granted) employing workmen and being the principal exporters to Japan; but I imagine that all the Japanese on the island help themselves more or less freely to the richness placed undefended within their reach. To kill the trees they remove the bark, allowing them to stand until they become "seasoned," after six months or so the trees are cut down, sawn, and ready for sale. The majority of the Japanese came from the Oki Islands distant about 160 miles, and arrived at Dagelet in 1894, though a few claim to have lived on Dagelet seven or eight years.

On the northern side I visited two Japanese settlements, one occupied by twenty-five Japanese and the other by fifteen Japanese men and one woman; ten Japanese fishing-boats and one Japanese junk were in course of construction, and a blacksmith's shop was in full operation. In both places I found the same evidences of illicit trade carried on with Japan. The sixteen inhabitants of this last village had, at the sight of the "Hyenik," taken to the hills, and it is only with the greatest difficulty that I

managed to prevent the Coreans from setting fire to the Japanese houses and properties and from hunting the owners up the mountains.

This leads me to mention the numerous complaints preferred by Coreans of the rough treatment they receive at the hands of the Japanese throughout the island, complaints embodied in a Petition handed to me by the Headmen of several villages, and which I have the honour to inclose.

Amongst minor grievances, the Coreans lay great stress on a somewhat serious affray that took place in April of this year. Some Japanese having assaulted a native woman, the Coreans collected together to demand some kind of satisfaction, but the Japanese turned out in force, armed with guns and swords, and a discharge, which wounded one man, sent the Coreans running back to their villages. To pacify the victors the official in charge of the island during Mr. Pei's absence was compelled to give them a written permission to cut a few trees. I was unable to obtain, either from the Corean official or the Japanese, copy of this permission.

Taxes, &c.

Farmers and merchants pay no taxes. The official collects 10 per cent. of all the seaweed obtained from the sea and brought on the island, and a tax on the wood employed for boat-building, and averaging 10,000 cash for each junk built.

With the exception of a commission of 2 per cent. to the brokers or middlemen who assist them in disposing of their goods, the Japanese pay no taxes. No doubt some years ago the official did try and probably succeeded in obtaining from the Japanese some compensation for the timber carried away, but having seen their present strength and their attitude (there are in all 250 residents without counting the crews of vessels), I am convinced that they pay neither tax nor squeeze of any kind, and that officials and people alike have only one wish, to get rid as soon as possible of the unwelcome visitors.

Another settlement with about thirty Japanese, mostly employed in sawing wood, is situated on the south coast of Dagelet, but though I attempted it, I was prevented from landing there by the heavy surge running on that side.

We left again at 5 p.m. on the 30th, reaching Fusan, without incident, at 4 p.m. on the 1st July.

Separately I am sending a sample of Kiyaki wood, of sandal wood, and samples of beans, wheat, and barley.

I am, &c.
(Signed) E. LAPORTE.

국문 초록

이 글의 주된 목적은 영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된 「1899년 라포르트 의 울릉도 조사 보고서」의 원문 내용을 소개하고 당시 울릉도 사정이 어떠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1899년 부산 해관 세무사 서리 라포르트(E. Laporte)가 한국 정부의 요청으 로 울릉도 사정을 조사하게 되었다. 그의 조사 결과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 이 1899년 9월 23일자 《황성신문》(별보)에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그 기사는 라포르트의 보고서 요약문으로 대략적인 내용만 파악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라포르트 보고서」는 영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된 원문 내용 이다.

「라포르트 보고서」는 모두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부분은 도 입으로 라포르트 자신이 울릉도 사정을 조사하게 된 경위와 울릉도의 지리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둘째 부분은 울릉도의 한인 주민 수와 그들의 울릉 도 정착에 관한 내용이다. 셋째 부분은 울릉도 주민들의 산업과 교역, 생산 물 등에 대한 내용이다. 넷째 부분은 「라포르트 보고서」 중 중심이 되는 내 용으로서 울릉도에 불법 입거한 일본인의 수와 그들의 밀수 행태와 벌목 등 일본인들의 불법적인 생활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다섯째 부분은 보고서 의 마지막 부분으로 울릉도에서 과세되는 세금 문제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라포르트 보고서」는 1900년 전후의 울릉도와 독도 현황, 나아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제정 배경과 내용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연 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라포르트, 울릉도, 독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부산 해관

ABSTRACT

The Report on Ulleungdo by E. Laporte and Ulleungdo in 1899

Hong, Seongkeun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his paper seeks to introduce the contents of the report about a survey done on Ulleungdo written by E. Laporte in 1899, which is housed at the National Archives of the United Kingdom, and to review the situation of Ulleungdo at that time.

E. Laporte, who was Acting Commissioner at the Busan Customs Office, investigated circumstances at Ulleungdo upon the Korean government's request in 1899. Hwangseong Newspaper printed the results of his survey as a special report on September 23, 1899. However, the newspaper article was a summary of Laporte's report, which only contained a general outline of the report. This paper introduces the report's original content now housed at the National Archives of the United Kingdom.

The report by E. Laporte consists of five parts. The first part introduces the background of how Laporte came about to conduct a survey of Ulleungdo and the geography of the island. The second part records the number of Korean residents in Ulleungdo and explains how they settled in the island. The third part covers businesses and trades Ulleungdo residents were engaged in and the island's local produce. The fourth part, which is central to the report, lists the number of Japanese people who illegally entered the island and reveals their unlawful activities such as smuggling and unauthorized logging. The final fifth part presents issues related to taxation at Ulleungdo.

The E. Laporte report is expected to help research and comprehensively understand circumstances at Ulleungdo and Dokdo in the 1900s as well as the background and content of the Korean Government Ordinance No. 41 issued in 1900.

Keywords

E. Laporte, Ulleungdo, Dokdo, Korean Government Ordinance No. 41, Busan Customs Office

참고문헌

[1차적 자료]

「慶尙南北道來去案」, 1899. 4. 9, 규장각(청구기호 奎 17980)

『內部來去案』(1), 內部大臣의 外部大臣에게의 『照會 第6號』 光武 4年(1900) 3月 14日條: 신용하 편저, 2000, 『독도연구총서 7: 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 제3권』, 독도연구보전협회

「라포르트(E. Laporte) 보고서」(1899): 영국 외교부, 1900, 「Further Correspondence respecting the Affairs of Corea, Part XII」(영국 국립문서보관소, 청구기호 FO881/7264)

「스트리플링(A.B. Stripling) 관련 문서」: 1891, 영국 국립문서보관소(청구기호 FO523/1 자료)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 검찰일기」(1882): 이해은, 2007, 「이규원 울릉도 검찰계초본」, 『울릉군지』(울릉군청)

「鬱陵島調査報告書送呈의 件」(1899. 7. 30): 『구한국외교관계부속문서』(제2권, 海關案 2, 문서번호 1231번)(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2)

「昌原港報牒 제1책」, 1899. 11. 2, 규장각(청구기호 奎 17869-2)

「1894·1896년·1897년 부산 해관 자료」, 한수당 연구원 소장 자료(<http://blog.naver.com/hahnsudang>)

《독립신문》, 1897. 4. 8

《독립신문》, 1897. 10. 12

《황성신문》(별보), 1899. 9. 23

西村銈象, 1902, 「明治35年鬱陵島狀況」: 박병섭, 2009, 『한말 울릉도·독도 어업: 독도 영유권의 관점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赤塚正助, 1900, 「鬱陵島 調査概況 및 山林調査概況 報告의 件」: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Robert Neff, 2010. 2. 16, “Part One A diplomat visits, 1895,” *The Jeju Weekly*

“A. B. Stripling, Esq.,” 1904, *The Korea Review*, Vol. 4, No. 3(Homer B. Hulbert ed., Printed at the Methodist Publishing House, Seoul)

[저서, 논문 등]

김현숙, 1989, 「한말 고문관 J. McLeavy Brown에 대한 연구」, 『한국사연구』 66

박병섭, 2009, 『한말 울릉도·독도 어업: 독도 영유권의 관점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송병기, 2010,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신용하 편저, 2000, 『독도연구총서 7: 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 제3권』, 독도연구보전협회

울릉군청, 2007, 『울릉군지』

유미림, 2012, 「수세 관행과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 『영토해양연구』 제4호

奥原碧雲, 1907(2005 復刻版), 『竹島及鬱陵島』, ハーベスト出版

1965년 한일어업협상의 정치과정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I. 머리말

1965년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정상화되었다.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에 서는 청구권, 기본관계,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 문화재 문제 등이 다루어졌다. 1951년 예비회담을 시작으로 1965년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이 시간은 어쩌면 일본의 입장에서 서는 지난날 한국에 대한 지배를 청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었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가혹한 지배에서 벗어나 일본에 대한 적대감정을 지워야 하는 긴 시간이었다. 한일회담의 다른 이슈들이 '과거의 청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면 어업문제는 미래의 한일관계에 해당하는 문제로서 양국의 경제적 이익, 즉 국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어업협상은 최후까지 한일 양국의 국익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타결을 낙관하기 힘든 문제였다. 특히 어업문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 이상으로 국민감정을 자극했다. 1945년 한국 독립 후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이 대립하게 된 계기 또한 어업문제였다. 한국은 일본이 40년 동안 한국을 점령했음에도 또다시 한국의 풍부한 어장을 손에 넣어 경제적 침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맥아더

라인을 침범하는 일본 어선에 대한 나포를 단행하였다. 1952년 대일 강화 조약에 따라 맥아더라인이 폐지되고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이하 평화선)'¹을 공포함에 따라 어업문제는 한일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실제로 평화선 설정은 어선 수와 어업기술이 월등한 일본에서 한국 어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동해는 일본 어민들이 오랫동안 어로 활동을 한 생활 기반이었기 때문에, 이는 양국의 어민들과 일반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사안이었다.

'평화선' 문제는 한일 양국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도 견해 차이가 큰 것이었다. 한일협정 체결 당시 한국의 야당과 대학생들의 시위와 저항이 가장 큰 것이 '평화선' 폐지에 관련된 것이었고, 어업협정은 한국에서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였다. 당시 한국인들은, 일본에 대한 평화선 양보는 매우 굴욕적인 것이며 평화선이 철폐되는 순간 일본 어선들이 월등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 근해의 어업자원을 말살시킬 것으로 생각했다. 일본에 비해 낙후된 한국 어업이 영원히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한국인들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1965년 협정 후 한국의 어업은 일본의 연안어업을 위협할 만큼 성장하였고, 원양어업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1965년 한일어업협정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 글에서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과정에서 함께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에 관하여 한국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한일 간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평화선을 둘러싼 국내 대립은 어떻게 조정이 되었는가에 대하여 그 역사적 경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²

1 평화선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Republic of Korea Presidential Proclamation of Sovereignty over Adjacent Seas)'이다. 초기 한국 측이 평화선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네 가지였다. 첫째, 자원보호, 둘째, 한일 간 어업기술 차이에 따른 불균등 경쟁의 해소, 셋째, 평화선 수역 내의 한국 어민과 일본 어민의 분쟁 방지, 넷째, 공산주의의 침입 방지였다. 이승만 정부가 평화선을 선포하기까지의 과정은 조윤수, 2008, 『평화선과 한일어업협상: 이승만 정권기의 해양질서를 둘러싼 한일간의 마찰』, 『일본연구논총』 제28호, 200~223쪽 참조.

2 본 논문 중 한일어업협정 체결 과정은, 조윤수, 2008, 『일한어업교섭의 국제정치: 해양질서의 탈식민지화와 국익의 조정』, 東北大学 박사학위논문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II. 이승만 정권기의 어업협상(1951~1960)

편의상 1965년 한일어업협상의 협상과정을 이승만 정권기와 박정희 정권으로 나누어 분석해보기로 한다. 한일 간 어업협상 대립의 핵심은 '평화선' 문제였다. 한국은 '연안국의 관할권'을, 일본은 '공해자유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회담 기간 동안 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힘썼다.

전후, 한일 양 국가 간 어업문제가 등장한 것은 1945년 9월 27일 맥아더 라인이 선포된 이후, 일본 측이 세 차례에 걸쳐 맥아더라인의 확장을 요구 하면서부터였다.³ 한국 측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과정에서 맥아더 라인이 계속 유지되도록 연합국인 미국 측에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결국 한일 간 어업문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는 별도로 일본과의 개별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서, 한국 또한 한일 수교 협상에 임하게 되었다.

제1차~제3차까지 어업회담의 주요 이슈는 평화선을 둘러싼 양국의 국제법적 논쟁이 대부분이었다.

평화선 선포에 대한 한국의 주장은 '공해자원이 연안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공해자원 또한 관련국에 의해 보호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었고, 반면 일본의 주장은 '공해에서 자유어업 활동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국 측이 '평화선'을 주장한 첫 번째 이유는 일본과의 어업 기술력 격차를 감안하여 공해상에서의 실질적이고 공평한 원칙이 필요하며, 두 번째 특히 한국 연안의 어족 자원의 고갈로 자원 보호가 필수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한국 측의 어업관할권(평화선 수역)의 설치의 필수 불가결한 것이며, 평화선 수역 설정은 한국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임을 일본 측에 주장했다.⁴

3 1945년 9월 27일 SCAPIN(Supreme Commander for Allied Powers Instruction Note) 제1033호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이 허가된 구역에 관한 각서'에 따라 일본의 어업 구역이 정해졌다. 그 경계선은 GHQ 최고 사령관의 이름인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의 이름을 따 '맥아더라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일본은 세 차례에 걸쳐 맥아더라인을 확장해나갔다. 조운수, 2011, 「한국교섭 참석자들의 일본인식 변화와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를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창간호, 147쪽

4 한일 양국은 국제법과 국제관습에 따라 양국의 의견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하였다. 그러나 일본 측은 평화선 문제를 현재의 국제법에 따라 처리해 나가자고 주장한 반면, 한국 측은 양국의 경제상황과 기술력 차를 포함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공해자원을 어떻게 연안국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것인가를 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현재 연안국의 어업관리권을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제관습법에 따라 연안국의 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양국의 국제법적 해석에 대한 인식은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협상의 난항은 1차 회담부터 예측되었다.

제1차 한일회담(1952. 2. 15~1952. 4. 24) 어업위원회에서 일본이 제안한 어업협정안을 중심으로 한일 양국 간에는 '어업관할권'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양국 모두 국제법적·국제관습법적 법적 근거를 각각 제시하였다.

제2차 및 제3차 어업회담에서의 주요 이슈는 한국 측이 나포한 일본 어선에 대한 처리문제였다. 특히 제3차 어업회담 과정에서는 평화선 수역에서 조업하는 일본 어선을 한국 측이 나포하는 과정에 일본 수산청의 순시선이 나포되고 총격사건이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 정부는 즉시 '한국 정부의 행동이 공해자유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일반 어선이 아닌 공무 중인 순시선을 나포하는 것은 주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엄연히 불법'이라고 비난함과 동시에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어선 총격사건으로 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측은 제3차 한일회담 청구권 위원회에서의 일본 측 구보타 위원의 발언⁵을 문제 삼아 아예 한일 회담 자체를 중단시켰다.

양국이 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한일회담이 서서히 진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56년 한일 억류자 상호 석방 문제 협의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일본 정부는 1952년 5월, 부산에 강제 송환된 한국인을 나가사키현 오무라 수용소에 수용시켰다. 1945년 이전 일본에 입국한 한국인에 대해서는 일본에 법적 책임이 있다며 일부 한국인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송환을 거부하자 일본 정부가 이들을 수용소에 수용시킨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도 평화선을 침범하여 나포된 일본인 어부들이 부산에 수용되어 있었다. 이들 중 형

5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郎] 대표가 협상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① 36년간의 일본의 강제점령은 한국민에 유익하였다. ② 한국 민족의 노예화에 대해서 언급한 카이로선언은 연합국의 전시 히스테리의 표현이다. ③ 일본이 구 재한 일본인 재산을 미군정 명령 제33호로써 처리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④ 대일강화조약 체결 전에 한국이 독립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⑤ 연합국이 일본 국민을 한국에서 송환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이원덕, 1996, 『한일과거사 처리의 원점』, 서울대학교출판부, 66쪽

기를 마친 일본인들도 있었으나 한국 정부는 오무라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한국인을 석방하지 않으면 일본인들의 석방을 보류한다고 일본 측에 전달했다. 한국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 어부문제는 일본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미쳤다. 수상관저 앞에는 한국에 억류당한 어민의 가족들이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이 문제는 야당의 정치공격으로도 이어졌다. 일본은 한일 회담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4차 한일회담

재개를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했다.⁶

제4차 어업회담은 1958년 10~12월까지 8차례에 걸쳐 위원회가 열렸다. 이전 회담에서 평화선 수역에 대해 한치의 양보도 없는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한국은 4차 어업협상에서 유연한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⁷ 특히 어업위원회에서 한국 측 협상자들은 본국에 어업협상에서 일본 측에 양보할 수 있는 최대의 양보안과 대책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⁸ 정부 또한 어업협상으로 인하여 다른 협상이 결렬되는 상황은 최소한 피하면서 융통성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훈령을 한국 측 협상자들에게 지시하였다.⁹ 이와 같은 한국 측의 태도는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것으로서 한일어업회담에 임하는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일회담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하여 회담이 중지되었다.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한일회담 재개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국의 새 정권 탄생을 축하하고자 고사카 젠타로[小坂善太郎] 외상이 '친선 사절단'의 자격으로 1960년 9월 6일 한국을 방문했다. 1945년 이후 일본의 외상이 공식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었다. 한국에서도 고사카 젠타로 외상의 방한을 기념하는 뜻에서 한국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 어부 40명 전원을 석방함으로써 1952년 평화선 선포 이후 처음으로 나포된 일본 어부는 0명이 되었다.¹⁰ 제5차 한일회담 어업위원회(1960. 10. 25~1961. 5. 15)에서는 회담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전관수역과 같은 양국의 민감한 문제는 뒤로 하고 먼저 공해상의 어떤 어족에 대해서 보호가 필요한지 '자원론'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¹¹

6 1956년 4월 김용식 공사와 시게미쓰 마모리(重光葵) 외상의 비공식 회담의 절충 결과 4차 회담 재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합의되었다. ① 한국 측은 형기를 마친 일본인 승조원을 석방한다. ② 한국 정부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불법으로 일본에 입국한 한국인을 한국으로 송환한다. ③ 일본 정부는 제2차세계대전 이전에 일본에 입국한 조선인을 석방한다. 그리고 그들이 일본에 남을 것인지 한국에 귀국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들의 자유의지에 맡긴다. ④ 위와 같은 것을 실행하기 위하여 워킹그룹을 조직하여 진행한다. 한국외교문서, 「제4차 한일회담 예비협상(1956~1958)」, V3 (1958. 1~4), 723.1JA.예.1956-58/99-101, 경무대/아주, Re-0002, 프레임 번호, 2003~2010. 한국정부외교문서 인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열거함. 문서철 명, 분류 번호, 등록 번호, 생산 과부서, 롤 번호, 프레임 번호(혹은 페이지)

7 4차 한일회담 중 일본은 '거주지 선택의 자유'라는 인도적 이유로 재일 한국인 중 희망하는 자를 일본 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으로 송환시켜 한국을 자국시켰음에도 이승만 정권은 한일회담에 적극성을 띠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한국 경제에 도움을 준 미국의 원조가 줄어들면서 미국의 원조 감소분에 대해서 일본에서 지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현실적 상황에 직면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승만의 한일회담에 대한 타결 의지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승만은 1960년 85회 생일을 맞이하여 당시 류태하 주일대사를 경무대로 불러 한일회담을 연내(1960) 타결해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실, 1984, 「한국외교사비사」, 정호출판사, 386~387쪽

8 한국정부외교문서, 「제4차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및 일반문제(1958~60)」, 723.1JA.선 1958-60/709, 아주, Re-0003, file 05, frame 1604

9 위의 문서, 1490~1492

10 제5차 회담에서 한국 측은 평화선 수역

일본 측은 어업방식, 어종에 따라 어업 금지구역과 제한구역을 확정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여기에 한국 측도 동의하였다.¹² 일본 측이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구역'과 '제한구역'을 확정할 것을 한국 측에 제안함으로써 지금까지 부정하였던 한국 측의 '어업관할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본 측이 용인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국 측의 유진오 대표는 한일 간의 어업기술 격차에서 오는 실질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일본 측의 사와다 렌조[澤田廉三] 대표에게 설명했다. 여기에 대하여 사와다 대표는 일본 측의 기술을 한국 측에 이전하는 안을 제안하였다.¹³ 이러한 아이디어는 후에 어업협력기금이라는 형식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한일 양국은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장면 정권의 퇴진 등 복잡한 국내 정치사정 때문에 또 다시 회담은 중단되었다.

III. 박정희 정권의 어업교섭 (1): 교섭의 활성화

박정희 정권은 한일회담에 대하여 강한 의욕을 보였다. '조국 근대화'를 혁명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원조와 함께 일본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한국은 적극적으로 한일회담에 임했다. 한일 간의 어업협상도 박정희 정권에 들어와서 보다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회담 재개를 위한 예비교섭, 외상회담, 전문가 회담, 정치회담의 과정을 거쳤으며 이 시기는 어떤 시기보다 어업협상 진행 중 최고의 격전장이었다.

어업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김종필·오하라 회담¹⁴에 따른 한일청구권 기본 합의가 극적으로

을 침범하는 어선들에 대하여 나포를 최대한 자제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한국정부외교문서, 「고사카 일본 외상의 방한(1960. 9. 6~7)」, 724.32JA1960/846, 아주, Re-0013, file 04, Frame 1634~1635

11 한국정부외교문서, 「제5차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회의록 및 비공식회담 보고」, 723.1JA.선 1960~61/714, 아주, Re-0005, file 04, frame 556~557

12 한국정부외교문서,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본회의(1960. 10~61. 5)」, 723.1JA.본1960-61/713, 아주, Re-0005, file 04, frame 1896~1899

13 한국정부외교문서,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본회의(1960. 10~61. 5)」, 723.1JA.본1960-61/713, 아주, Re-0005, file 04, frame 1900~1912

14 김종필·오하라 메모의 내용은 무상 3억 원, 유상 3억 원, 민간 베이스 차관 3억 원을 한국에 제공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구권 금액에 대한 합의다.

타결되면서부터였다. 이는 당시 한국 측은 청구권에 관하여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정제되어 있는 어업회담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일본 측에 약속 했기 때문이다. 일본 측에서도 평화선의 폐지가 최대의 관심사항인 만큼, 한국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일청구권 금액에 대한 협상을 우선적으로 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종필 중앙정보부 부장과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의 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언급되기도 하였다. 오히라 외상은 독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한일이 공동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위탁할 것을 주장했으나 김종필 부장은 이를 부정했다. 김종필은 “한국 정부의 독도에 대한 공식 입장은 독도는 한일회담의 현안사항이 아니며, 일본 측이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한다면, 한국 국민에게 과거의 침략을 다시 상기시킴으로써, 회담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오히라 외상은 1962년 11월 12일,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와의 제2차 회담에서 독도문제를 집요하게 거론하였고 이에 김종필 부장은 오히라 외상에게 ‘제3국에 의한 조정’을 언급하였다.¹⁵ 당시 일본 정부는 국내정치에서 한국에 나포된 일본인 어부와 더불어 독도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어떤 식으로라도 해결 방법을 찾아 야당의 정치적 공격을 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하여 당시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공개된 일본 외교문서에서 독도에 대하여 설명한 부분에 ‘강치의 수가 감소한 현재에는 경제적으로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¹⁶라고 기술되어 있다.

김종필·오히라 청구권에 대한 기본 합의 후, 1962년 12월 5일,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회의에서 한국 측은 처음으로 평화선 수역에서 약간 축소된 어업수역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제안한 12해리의 어업수역과 비교하면 여전히 불만이였다. 일본 측은 한국이 제시한 안은 ‘김종필·오히라 합의’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협상의 대상으로조차 인정할 수 없다고 강

15 그러나 이와 같은 김종필 부장의 ‘제3국 조정’안이 한국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컸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독도가 한국 영토임에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다면 제3국의 조정에 맡기자고 한 한국 정부 정치가의 발언은 논리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종필 부장의 이러한 발언이 국내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배의환 대사는 ‘김종필 부장의 발언은 현재 한일회담에서 독도 문제를 제외하기 위하여 독도 문제를 미해결 상태로 계속 유지하기 위한 작전상의 대안’이라고 즉시 외무부에 보고했다. 한국정부외교문서, 「김종필 특사의 일본 방문 1962. 10~11」, 724.41JA1962/796, 아주, Re-0013, file 97, frame 2051~2052, 2118

16 일본외교문서(2013년 공개), 파일번호 68, 69쪽 / 파일번호 1287, 69쪽

하게 반발했다. 12월 7일의 회합에서 우라베 도시오[卜部敏男] 참사관은 12월 5일 제안한 일본 측 안은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희생적인 안이며, 일부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정치적으로 큰 결단을 내려 제안한 안이라고 설명하였다. 당시 일본의 국내 사정상 12해리로 국회를 설득하는 것은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동해안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생활 터전이었다. 평화선으로 인한 나포가 진행되면서 서일본 해역의 어민들은 생활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1958년 제네바 해양법회의에서 86개국 중 단지 21개국만이 3해리의 영해 폭을 지지하였고 대부분 12해리 영해를 주장¹⁷하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여 이를 기초로 일본 정부는 국회에서 12해리까지는 국내 설득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일본 측은 12해리를 넘어서는 안은 국내에서 설득할 자신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일본 측 제안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⁸ ① 한국의 관할수역을 영안의 해안선을 따라 획선하는 저조선에서 12해리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② 12해리의 어업수역에 대해서 일본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어업실적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어업협정의 발표일로부터 10년간, 일본의 선박이 12해리 수역의 외측 6해리 내의 수역(6~12해리)에 관하여 어업협정의 부속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것을 인정한다. ③ 한국 측의 어업수역 가운데 일본 선박이 어업에 종사하는 것이 인정되는 구역에서는 양 체결국의 선박은 그 기국(旗國)의 관리 및 관할하에 한다. ④ 양 체결국은 어업협정에 의하여 합의되어 제한 또는 규제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 체결국의 국민 또는 선박의 공해상에서의 어업 활동이 그 소속된 체결국에 의하

여 부과되는 것 외에 어떠한 규제 또는 제재도 받지 않는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을 확인한다. ⑤ 일본의 영해에 대해서도 12해리로 규정한다면 동일의 조건에서 어업수역을 설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⑥ 양 체결국은 양국 공통의 이해관계에 있는 어업자원의 최대의 지속적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학적 조사·

17 박찬호·김한택, 2009, 『국제해양법』, 지인북출판사, 44쪽 참고.

18 한국정부외교문서,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의(1962. 6~12)V1」, 723.1JA.어1962-64/741-745, 아주, Re-0007, file 06, frame 2051~2093

연구를 한다. ⑦ 어업협정의 해석과 적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분쟁은, 양 체결국의 합의에 기초하여 기타의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경우, 어느쪽이든 일방의 당사국이 국제사법재판소 결정을 위탁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일본의 안에 선뜻 동의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일본과의 어업기술력 차가 현저한 이상 12해리를 넘어서는 수역에서 한일이 경쟁적으로 조업을 하게 된다면 좋은 배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 유리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즉 공해상에서 한일 간의 어업기술력 격차를 비롯하여 한국과 일본의 경제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실질적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1963년 7월 5일의 전문가 회담 제28차 회합에서 한국은 전관수역 40해리 안을 일본 측에 제안했다.¹⁹ 한국의 최세황 대표는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40해리의 전관수역을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이유로 한국은 양국의 과도한 조업으로부터 연안국의 어업자원을 보호하고 장래 한국 어선이 일본 연안에 진출할 경우 양국에 생길 수 있는 분쟁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이 제시한 40해리안뿐만 아니라 12해리에서 0.1해리도 양보할 수 없다며 회담을 전면 거부했다.²⁰

한국은 정식 회담은 거부했으나 일본에 비공식 회담을 제안하였다. 비공식 회합에서 한국은 40해리의 전관수역 범위 내에서 약간 유연한 입장을 보였고 일본 측도 한국 측을 고려하여 12+를 검토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국 측은 전관수역 범위에 유연성을 보이면서, 실질적으로는 어업협력기금에서 최대한 일본 측의 양보를 받는다는 전략으로 협상에 임하였다. 낙후된 한국의 어업기술은 협력자금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었다.

19 한국정부외교문서,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의(1962. 6~12), V3(1962. 6~1963. 6~9)」, 723.1JA어1962-64, 741-745, Re=0007, file 08, frame 424

20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의록(1963. 4~64. 1)」, 723.1JA어1962-64/741-745, 아주, Re=0008, file 01, 92~95쪽

IV. 박정희 정권의 어업협상 (2): 어업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대책

전관수역 12해리 안은 한국 국내의 반발이 강하게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회의가 1963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63년 무렵 김종필·오하라의 청구권 기본합의 문제와 평화선 축소 문제는 한국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였다. 전관수역을 둘러싼 대책회의는 주로 농림부 안을 토대로 최고회의 외무국방위원, 중앙정보부, 외무부, 농림부, 해군, 경제기획원, 공보부 등이 참석하여 검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1963년 1월 9일 한국 정부는 평화선을 유지하는 한 한일회담의 타결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평화선 수역에서 약간 축소한 40해리 전관수역과 12해리 안을 두고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²¹ 1963년 7월까지도 한국은 공식적으로 40해리 전관수역을 주장하였으나 일본이 12마일 전관수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실무협상 및 비공식 회담조차도 거부하겠다고 한국 측에 통보하자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회의를 시작했다.

1963년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기 직전인 1963년 5~9월까지 평화선 문제에 대한 집중 대책회의가 10여 차례 개최되었다. 주요 회의 참석자는 외

21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의(1962. 6~12), V2(1962. 6~64. 3)」, 723.1JA어1962-64.741-745, 298~304쪽

22 당시 평화선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어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수산물 계자들의 저항은 매우 컸다. 어업협력자금이나 청구권 몇 푼 준다고 평화선을 포기하는 것은 어민들을 모두 죽이는 것이라고 호소하며 평화선 유지를 계속 주장했고 농림부로서는 당시 영세어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의견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 지명관, 2004, 「한국 맥스컴을 통해 본 한일관계-신문에 나타난 대일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 연구-강점에서 공존까지』, 소화출판사, 11~109쪽 참고.

무부장관, 정무국장, 동북아과장, 경제기획원, 농림부장관, 수산국장, 원양어업과장, 공보부 문화선전국장, 합동참모본부장, 최고회의 멤버들 중 중앙정보부 2국장과 군인,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가장 큰 입장 차이를 보인 부서는 외무부와 농림부였다. 외무부는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12해리 전관수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농림부는 전관수역 40마일 선을 가지고 어민의 감정을 눌러줬다고 주장하며 40해리 전관수역을 지키지 않으면 영세어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우리 어업은 일본에 또다시 침해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²² 국방부의 경우 어업보다는 군사적

〈표 1〉 평화선에 대한 각 부처별 입장

외무부	평화선 수역 폐지 12해리 전관수역 설정 이유: 1960년 국제해양법회의에서도 12마일 선 인정, 현재 통용되고 있는 선으로 한국이 평화선을 주장할 경우 국제적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미국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음 일본의 어업협력기금을 통한 영세어민의 어업 발전 가능
국방부	군사적인 견지에서 평화선 존속 이유: 전관수역을 12마일로 가정할 때 간첩 침투 방지 및 해상 보안의 강화를 위하여 해상보안청 설치 건의
농림부	어민을 위한 40해리 전관수역 확보 필요 이유: 12마일은 영세어민에게 큰 피해를 가져와 결국 한국어업을 일본 어업자본에 예속시킬 것임

인 견지에서 평화선의 존속을 주장했다. 간첩 검거의 통계를 예를 들며 육로 침입이 23%, 해로 침입이 64%로 전체의 3분의 2가 해상 침입을 하고 있으며 해로 침입 중 11%가 일본을 경유한 침입이므로 평화선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경우 이 지역의 선박 증가는 한국의 안보문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화선 문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²³ 국방부는 특히 한국 해상 경비 능력으로는 간첩 색출이 지극히 곤란하다며 평화선 철폐 내지 축소는 장차 한국을 방어하는 데 지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므로 국방선으로 평화선을 존속시킬 것을 주장했다.

외무부는 한국 측이 40해리 안을 계속 주장하여 협상이 결렬된다면 그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으며, 국제표준에서 벗어난 40해리의 관할수역을 주장할 경우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의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농림부와 국방부를 설득했다. 특히 일본이 12해리 전관수역에서 1미터도 양보할 가능성이 없으며 국제적으로도 납득할 만한 전관수역을 설정하지 않으면 한일회담이 결렬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정보부는 각 부처의 의견을 듣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40해리 전관수역 설정이 불가능하다면 전관수역 12해리 + α 부분에서 일본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과 어업협력기금에서 어떻게 최대의 실익을 얻을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농림부와 외무부에 설명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앙정보부가 집중한 것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관수역 12해리가 초래하는 여론의

23 1963년 5~9월 제6차 한일회담(1961. 10. 20~64. 4). 한일회담에 관한 대책회의: 어업문제를 중심으로 1963. 5.-9. 프레임 7-8

악화와 야당의 공격이었다. 중앙정보부는 외무부의 설명과 같이 전관수역 12해리로 일본 안에 접근하지 않으면 협상이 결렬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한국의 국내정치 사정상 일본 안에 접근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1963년 7월까지 공식적으로는 전관수역 40해리 안을 주장하고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비공식 회담을 통해서 12해리 전관수역과 어업협력기금에 대하여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평화선에 대한 국민 홍보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 외무부는 공보부의 협조하에 평화선에 대한 국민 홍보 방안에 착수하여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일조했다.²⁴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평화선 문제는 대일 저자세 외교와 굴욕 외교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적대의식은 종종 평화선 문제에 투

24 주요 홍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경비정의 후진성에 대한 홍보이다. 일본의 어선을 단속할 만큼 뛰어난 경비정이 없으므로 평화선에 대한 완벽한 경비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당시 경비정의 숫자도 일본에 비하여 열세였다. 일본이 317척의 경비정을 보유한 반면 한국은 12척에 불과했다. 둘째, 농어촌의 근대화는 평화선이 전제조건이 아니라 일본의 선진기술 습득을 통해 한국의 낙후된 어업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공보부는 학자와 전문가들을 통해 평화선이 국제법상 문제가 많다는 취지의 내용을 학술적 입장에서 발표하거나 TV 인터뷰를 하는 방법도 취하였다. 1963년 5~9월 제6차 한일회담(1961. 10. 20~64. 4). 한일회담에 관한 대책회의: 어업문제를 중심으로, 1963. 5.-9. 프레임 45-66

25 1963년 8월 초 최영택 참사관이 외교관으로 재기용되어 실제 협상자들과 긴밀한 연락을 하는 동시에 한일회담과 관련하여 일본의 국내정치뿐만 아니라 재계 또한 분석하여 일본 측 움직임을 일일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한일어업협상 과정에서는 일본의 정치가 고노 이치로(河野一郎)와 야스키 가즈오(矢次一夫)가 막후협상을 통해 활약한 것으로 보인다.

영되기도 하였다. 1950~1960년대 중반까지 한국 경제에서 어업은 수출 1등 공신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문제는 전 국민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당시 한국 산업은 일본과의 관계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식민지 지배하의 산업구조에 여전히 묶여 있었다. 모든 산업 기계는 일본제였고 기계가 고장이라도 나면 일본에 수리를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식민지 시기 생산과정의 일부만을 한국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수산물 가공도 일본에서 시장을 찾아야만 했다. 해방 후에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한 의존은 더욱 강해졌다. 무엇보다 일본의 시장이 되는 것을 국민들은 두려워했다. 이러한 점을 불식시켜주지 않으면 국민감정상 한일회담에 대한 반대여론으로 인해 회담 타결이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한일회담에 대한 국내 홍보가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한편 정제되어 있는 한일회담을 타결하기 위하여 한국은 막후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²⁵ 중앙정보부는 한일 국교 정상화가 국가 이익뿐만

이 아니라 청구권을 통해서 한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야당의 공격에 직면하여 대통령 선거가 불리해질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이 평화선을 실질적으로 포기하고 일본과의 회담 타결을 위해 12해리를 전격 발표한다면 정권 유지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국내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의 전관수역 문제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 발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회담을 중지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일본과의 비공식 회담을 통해서 한일 간 어업문제에 대한 협상을 진행시켰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업대책위원회를 통해서 한국이 평화선 수역에서 후퇴하여 일본이 제안한 12해리를 수락한 이유는 12해리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일본과의 협상 결렬의 위험도 있었지만 1958·1960년에 있었던 해양법회의가 더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엔 해양법회의 과정에서 영해 폭 설정이 4~12해리 내에서는 유동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12해리를 넘는 주장은 국제법상 어긋난다는 이론에는 국가들이 동의하고 있었고²⁶ 한국이 평화선을 유지한다면 국제적 비난과 한일회담이 결렬되는 상황까지 감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이유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에서 일본과 협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는 당시 박정희 최고회의의장의 의지도 영향을 미쳤다. 1963년 7월 24일 어업문제 대책 회의에 참석한 유병하 농림부장관은 40해리 전관수역을 포기하고 12해리 전관수역을 받아들이는 경우 야당과 어민을 납득시킬 만한 자신이 없으며 일본이 주장하는 어업협력자금도 결국은 5.95%의 이자와 3~4년 내 상환을 조건으로 하고있어 결코 한국에 유리한 조건이 아님을 설명하며 전관수역 12해리 안에 반대했다.²⁷

이에 대하여 박정희 최고회의의장은 유병하 농림부 장관의 극단적인 태도는 한일회담 타결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한국의 경제발전도 가져올 수 없으며 유병하 농림부장관의 발언을 비판하였다.²⁸ 그러나

²⁶ 박찬호·김한택, 2009, 앞의 책, 47쪽

²⁷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질책: 어업관계회의(1962. 6~12), V3(1962. 6~64. 3), 프레임 번호 581~585

²⁸ 위의 문서

유병하 농림부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한국의 전관수역을 12해리로 결정한다는 국내정치적 최종 합의는 이끌어냈지만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 한국의 새로운 전관수역 발표를 지연하고 국내 정치상황을 우선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V. 어업협상의 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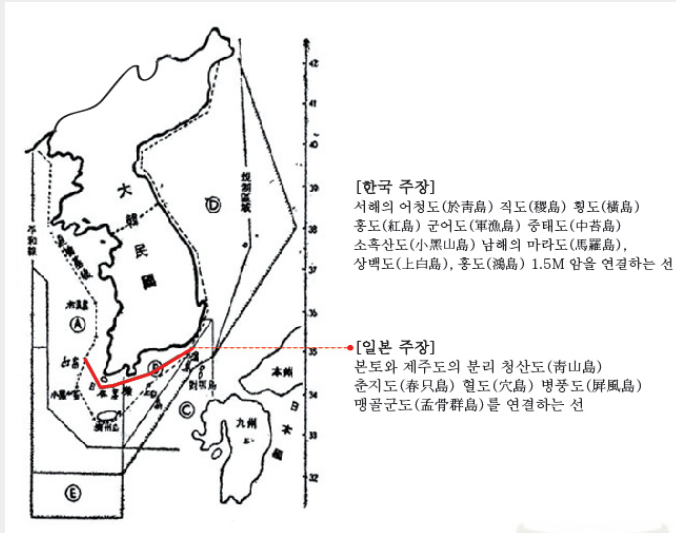
1964년 3월 10일~4월 6일까지 개최된 원용석·아카기 무네노리[赤城宗徳] 농상회담에서는 지금까지 최대의 난관이었던 12해리 전관수역의 합의가 암묵적으로 이루어졌다.²⁹

한국은 국내 정치적 과장을 고려하여 한국의 전관수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제주도 주변 수역을 제외한 한국 연안의 기선 설정에 대한 합의를 기술적으로 이루어낸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 주변 수역은 한국과 일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어장으로 양국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대립의 쟁점은 한국은 본토와 제주도를 포함하여 직선 기선으로 기선 설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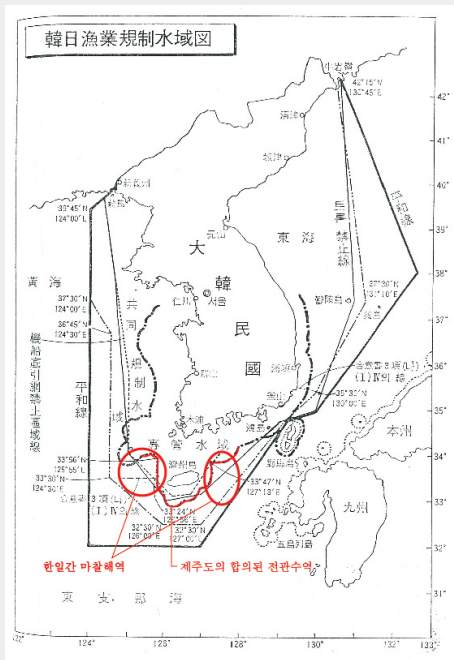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일본은 본토와 제주도를 분리하여 제주도 주변은 저조선에 기초하여 전관수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그림 1〉 참고).

제주도 주변의 기선 설정을 비롯하여 공동규제수역 내의 규제 척수 문제, 어업협력기금, 어선 단속 문제 등 남아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4년 12월 7일~1965년 6월 22일까지 9차례에 걸쳐 제7차 한일 어업회담이 개최되었다. 제7차 회담 기간 중 1965년 3월 3일~4월 10일까지 10차례에 걸친 제2차 농상회담이 아카기 장관과 한국측 차관회 장관 사이에서 개최되었다. 이 협상에서 최종까지 난항하던 제주도 주변 수역에 대한 기선 설정과 어업협력기금에 대한 최종

²⁹ 그동안 핵심문제였던 전관수역 문제는 기선설정에 대한 협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12해리로 합의되었다. 농상회담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 1964년 3월 6일 한국 정부의 훈령을 살펴보면 전관수역은 직선기선에서 12해리까지로 한다. 그러나 협정문에는 전관수역이라는 명칭과 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고 경도나 위도로 표시하며, 이와 같은 수역은 '어족보호선' 혹은 '연안 어업보호선'이라고 제시한다고 지시하고 있다. 한국의 여론을 의식하여 '전관수역'이라는 언급을 피하는 대신에 기선을 결정하면서 자연스럽게 12해리가 정해진 것이다. 한국정부외교문서, 「속개, 제6차한일회담: 농상회담(어업관계), 동경(1964. 3. 10~4. 6)V1」, 723.1JA어1964/759, 아주, Re 0009, frame 985



〈그림 1〉 제주도 주변 기선 설정에 대한 한일 간의 주장(동아일보, 1965. 1. 16) 참고



〈그림 2〉
 한국의 전관수역 최종 안
 (지철근, 1979, 『평화선』, 범우사, 472쪽 참고)

조율이 이루어졌다. 제주도 주변 수역은 일본 어민들이 가장 많이 나포된 해역으로 한일 간 긴장감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 수역은 일본 내에서 가장 큰 관심지역이었고 한국에서도 남해 연안 어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좋은 어장이었기 때문에 양국의 국내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좀처럼 해결이 쉽지 않았다. 특히 제주도 동쪽의 선망어장과 제주도 서쪽의 이서저인망 어장이 문제의 핵심으로 제주도 주변의 기선 획선은 협상 과정에서 매우 난항하였다(그림 2)참고.

이 지역에 대하여 한국이 양보하지 않자 일본은 제주도 주변의 기선 문제에 대한 해결없이 한국과 어업협력기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없다며 거부하였다. 또한 1965년 3월 16일 제8차 농상회담에서 일본 측은 평화선 침범으로 나포한 일본 어선에 대한 배상금 70억 엔을 한국 측에 요구하며 이를 정식으로 농상회담의 의제로 설정할 것을 주장했다.³⁰ 일본은 적어도 어업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되기 전까지 한국 측과 평화선에 기인한 일본 어선 나포 및 선박에 대한 보상문제만은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측에 압박을 가하였다. 농상회담 중 차균희 농림부장관은 제주도 주변의 기선 설정에 대한 한국의 안을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담을 결렬하는 수밖에 없다고 정일형 국무총리, 김규원 중앙정보부장,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다.³¹ 그러나 사실 제주도 서쪽 기선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국제적 관습에 기초한 주장으로 한국이 논리적인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려웠다. 제주도 주변의 빨간색으로 표시된 수역은 황금어장으로 이미 한국이 평화선까지 양보한 상태에서 제주도 주변의 어장마저 양보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손실이 매우 클 것이었기 때문에 차균희 장관은 끝까지 일본 측을 설득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10차 농상회담인 3월 24일 정식 회담을 앞두고 한일 장관들은 3월 19·20·23일 세 차례에 걸쳐 비공식 회담을 가졌다. 아

30 「제7차 한일회담: 어업관계회의 및 훈령, 1964. 12~65. 2(V2농상회담 : 어업관계, 1965. 3. 3~4. 2)」, 프레임 번호 617~619

31 위의 문서, 프레임 번호 650

카기 농상은 이미 일본이 제안한 제주도 주변 수역에 대한 기선 설정도 일본 국내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선으로 일본 국회의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이며 이때 국

내에서 납득할 만한 기선 설정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곤란하다는 사정을 언급했다.³² 결국 한국과 일본이 조금씩 양보한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한일 양국은 그동안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전관수역 및 기선 설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남겨진 문제인 어선 단속 부분과 어업협력기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한국은 9,000만 달러의 어업협력기금을 일본 측에 요구하며 이를 청구권의 범위와는 별도로 취급할 것을 주장했고 일본은 청구권의 범위 안에서 8,5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동원 장관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1965년 3월 23일~4월 3일까지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悦三郎] 외상과 회담을 가졌다.

외상회담 과정에서 일본은 한국이 나포한 일본 어선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였다. 한국의 이동원 장관은 일본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 한국 측도 일본이 가져간 선박문제³³에 대한 반환과 보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나포어선과 선박 반환문제에 대한 상계를 주장하며 일본 측에 정치적 해결을 요청했다.³⁴ 일본이 요구한 나포한 어선에 대한 보상은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이를 협상의 카드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일본은 어선 단속 및 재판관할권에 대하여 '기국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나포 어선에 대한 보상문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한 것이다. 일본이 한일 간의 어업문제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일본 어선의 안전조업이었다. 한국은 연안국의 관련 법령을 어긴 외국 선박은 연안국의 법에 따라 나포될 수 있으며 선박을 정지시키는 등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안국주의'를 주장했고, 일본은 공해상에 떠 있는 선박은 원칙상 오로지 게양한 깃발이 대표하는 국가 즉 '기국'의 법률에만 종속되는 '기국주의'를 주장하였다. 시이나 외상은 한국이 나포한 어선에 대한 정치적 해결문제는 다나

카 가쿠에이[田中角榮] 대장상의 반대가 있으나 한국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³⁵

결국 어업협력기금은 한국의 주장대로 9,000만 달러로 타결되었고³⁶ 일

35 당시 일본의 야당은 국회에서 평화선 나포에 따른 손해배상을 한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주장하는 한편, 한일협상에서 일본이 양보만 한다고 비판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어업단체도 어선나포 및 억류어선에 대한 피해보상금액 70억 엔의 손해배상을 한일어업협정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毎日新聞》, 1965. 3. 9; 한국정부외교문서, 「제7차한일회담: 어업관계회의 및 훈령, 1964. 12~65. 2(V2농상회담: 어업관계, 1965. 3. 3~4. 2)」, 프레임 번호 547

36 어업협력기금은 총액 9,000만 달러로 영세어민을 위한 지원 4,000만 달러 이하 5%, 기타 지원 5,000만 달러 이하 5.75%로 한일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37 한국 측의 요구에 접근하기 위하여 시이나 외상이 다나카 대장상을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椎名悦三郎追悼録刊行會, 1982, 『記録椎名悦三郎』, 凸版印刷株式會社, 85~89쪽

38 제7차 회담의 난항 과정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외교문서, 「제7차 회담 어업관계회의 및 훈령 1964. 12~1965. 6 전4권」, 723.1JA01 1964~65/ 1460-63, 동북아주, Re-0010/0011, file 09, 01, 02, 03을 참조할 것.

39 가조인 후 한일어업협정을 비롯한 굴욕 외교에 반대하는 시위가 절정에 달했다.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특히 공동규제수역에서 '단속 및 재판 관할권'이 어선이 속하는 체결 국민 행하는 것은 일본 어선은 규제받지 않는 것이라며 결국 한국 정부가 평화선을 포기하여 어민의 생존권을 위협받게 하고 한국 어업을 포기했다며 연일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본은 '기국주의'를 관철하는 것으로 최종 매듭지었다. 어업협력기금에 대한 일본 내 조정은 3월 19일~23일까지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수상, 시이나 에쓰사부로 외상, 다나카 가쿠에이 대장상 4명의 회담으로 이루어졌다.³⁷

마침내 1965년 4월 1일~4월 3일까지 철야 협상을 통해 한일어업협정 가조인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국 국내에서는 어선단속조항에서의 '기국주의'에 대한 비난이 집중되면서 어업단체를 비롯하여 대학생과 야당의 강경한 한일회담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한일회담 반대의 중심에는 한일어업협정이 있었다.

1965년 4월 3일 가조인 이후부터 협상 타결까지 마지막 조문 작업을 둘러싸고 양국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협상은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면서 낙관을 예측할 수가 없었다.³⁸ 한국 측은 4월 3일 합의사항과 더불어 한국에서 강경한 반대여론³⁹이 있었던 어선 단속에 관한 '기국주의'를 보완하는 몇 가지의 추가 협의 사항을 일본 측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일본 측은 이 같은 한국 측의 요구가 이미 결정된 4·3 합의사항을 위반할 뿐 아니라 전면적인 수정을 의미하는 일종의 재협상 요구에 해당한다면 강력히 항의하였다. 일본 측은 한국 측 제안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면서 5월 20일 이후 협상을 전면 중단시켰다. 기존의 통설은 4·3 합의 이후 한일회담이 주로 청구권 분야에 집중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4·3 이후의 상황에서도 어업문

32 일본 국회에서는 본토와 제주도를 포함한 전관수역을 설정한다는 것에 대하여 한국에 대한 양보가 과하다는 비판여론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제주도 주변 수역은 쓰시마[對馬] 어민을 비롯하여 서일본 영세어민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어장으로 일본 어민은 이 어장이 생명선과 같다고 주장하였다. 일본 국회에서는 연일 한일어업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가 안일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국회, 1963. 9. 2 「제43외무위원회」 제5호; 일본국회, 1964. 10. 9 「제46회 농림수산위원회」 제70호; 일본국회, 1965. 3. 25 「제48회 참의원 예산심 의위원회」18호

33 선박문제는 일본이 자국의 국민을 한국에서 철수시킬 때 이용한 한국의 선박 중 일본에서 반환되지 않은 선박을 말한다.

34 한국외교문서, 「이장관의 일본방문」, 724.31JA.1965.1486, 프레임 번호 130

제는 회담 전체의 성패를 가름하는 핵심쟁점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당시 어업기술에서 월등한 차이를 보였던 일본 어선이 한국 연안에 자주 진출하여 조업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한국 측은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일본 측을 설득했다. 한국은 협정 조인식 바로 전날까지 어업 단속에서 ‘연안국주의’를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일본 측의 강한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단속 조항에서 ‘공동승선’이라는 내용만 포함시키는 데 만족해야 했다.⁴⁰

1965년 협정 체결 당시 독도 영유권의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교환공문’의 조문작성을 위한 협상과정에서는 치열하게 한일 간의 논쟁⁴¹이 있었으나 어업위원회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VI. 맺음말

1965년 한일어업협정의 핵심문제는 평화선이었다. 1965년 당시 한국의 목표는 한국 연안 해역에서 일본 어선의 진출을 규제하는 데 있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하여 어업기술이 낙후되어 한국 연안에서 일본 어선의 어업행위를 제한하는 방법은 오로지 영해 폭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반면 어업기술이 발달하여 전 세계 바다 어디라도 조업이 가능했던 일본의 목표는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일본이 보다 넓은 어장에서 안전하게 조업하는 것이었다. 한일어업협정이 조인되면서 평화선은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리고 한국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1958년 유엔해양법에 기초하여 전 관수역을 12해리로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이 국제적 표준에 맞지 않는 평화선을 지키기 위한 명분과 실리가 모두 없었다고도 할 수 있다.

40 어업협정에 관해서 일본 또한 국내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실제로 당시 일본의 영해가 3해리였음을 가정한다면 12해리는 큰 양보였다. 아카기 무네노리 농장도 평화선 문제로 한국과 상당한 줄다리기가 있었지만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赤城宗徳, 1973, 『私の履歴書』, 日本経済新聞社 판. 참고. 또한 한일어업협정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어업기술 지도는 물론이고, 어선을 만들게 하고 가공시설을 갖추게 하며, 게다가 어획된 수산물까지 대량으로 수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유리한 어업협정이 세계 다른 나라에 있을 것인가 하고 당시 시이나 외상은 한일어업협정이 일본의 양보가 컸음을 말하고 있다. 지명관, 2004, 『한일어업협정 비판의 논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일관계사연구』, 173쪽 참고; 단순히 한국의 양보만으로 협상이 체결된 것은 아니다. 또한 한일회담에 대한 국내비판이 회담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41 한일회담 당시 한일 간의 독도 문제는 조윤수, 2012, 『한일회담과 독도: 한국, 일본, 미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영도해양연구』 제4호, 146~171쪽 참고.

‘평화선’ 문제에 대한 국내 조정과정은 대일교섭 이상으로 어려운 문제였다. 한국 어업이 발전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농림부와 외무부의 의견차는 극과 극이었다. 10여 차례에 걸친 평화선에 대한 대책회의를 통하여 한국은 평화선 수역을 축소하는 대신 일본에서 어업협력기금이라는 실질적 보상을 받는 것으로 국내합의를 이루어냈다.

한편 1965년 한일어업협정 체결 후, 일본 측의 어업협력을 위한 금융 9,000만 달러는 일본의 중고선을 값싸게 사들이고 새로운 어선을 건조하는데 사용되었다. 평화선을 실질적으로 폐지하면 한국의 어업이 일본의 어업에 종속될 것이라는 1965년 당시 한국 어민들의 우려와는 달리, 한국 어업은 빠르게 성장하여 오히려 일본의 연근해 어업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측이 끝까지 관철하고자 했던 ‘기국주의’는 시간을 흐르면서 일본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역사에 대한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평화선 철폐를 요구하며 공해자유 원칙을 주장하던 일본은 거꾸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며 한국과의 새로운 어업협정을 요구하였고 결국 일본은 1998년에 1965년 어업협정을 파기하였다. 1998년 체결한 신 한일어업협정도 1965년 협정과 마찬가지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1965년 협정과 1998년 협정의 차이점과 현재 남겨진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문 초록

1945년 한국 독립 후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이 대립하게 된 계기는 어업 문제였다. 한일 간 어업문제는 1952년 대일 강화조약에 따라 맥아더라인의 폐지가 확정되면서 한층 표면화되었다. 특히 '평화선' 문제는 한일회담 기간 중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평화선' 문제에 대한 처리를 두고 분열을 가져왔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안한 전관수역 12해리 안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회의를 1963년 5~9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대책회의 과정에서 농림부는 영세어민의 어업 발전을 위하여 전관수역 40해리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외무부는 1958년과 1960년의 해양법회의 과정에서 영해 폭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국제사회가 12해리를 넘는 것은 국제법상 어긋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에서 일본과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한국 정부는 '평화선'을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이로 인한 한국 어민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대책회의를 통해서 합의하였다. 그 방안은 일본의 어업협력기금 지원 방식이었다. 그러나 '평화선'의 실질적 폐지는 국내정치의 불안을 가져왔다. 당시 한국의 야당과 대학생들은 박정희 정권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일회담을 이용하여 매국적 행위를 한다며 비판했고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였다.

한일어업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일본에 대한 국민감정이 복잡하게 반영되면서 협정 타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당시 국민감정은 한일협정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협상을 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외교문서를 분석해보면 불리한 상황에서도 한국이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모습 또한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논문은 1965년 한일어업협상에 대한 역사적 경위를 분석해 보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한일회담, 한일어업협정, 유엔해양법협약, 평화선, 한일회담 반대운동

ABSTRACT

The Political Process of the South Korea-Japan Fisheries Negotiations in 1965

Cho, Younsoo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Since the Republic of Korea became liberated from Japan in 1945, the first friction that arose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sparked by fishing rights. The issue surrounding fishery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rose further to the surface as the MacArthur Line's abolition was finalized when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came into force in 1952. The Peace Line declar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articularly emerged as one of the main topics of contention throughout South Korea-Japan talks held at the time. Dispute concerning the Peace Line not only affected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but also brought a local division within South Korea over how to settle i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eld about ten meetings between May and September in 1963 to decide how to deal with Japan's suggestion on a 12 nautical mile distance for an exclusive fishing zone. At the meeting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rgued that a distance of 40 nautical miles must be secured in order to ensure the development of small-scale fisheries in Korea.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n the other hand explained the importance of compromising with Japan at an internationally acceptable level because in reality, resources were insufficient to properly patrol and guard the waters marked by the Peace Line. Also, a consensus had already been formed amo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exceeding 12 nautical miles for an exclusive fishing zone is a breach of international law, although there had been controversy over the width of territorial waters during the first and secon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in 1958 and 1960, respectively. These ten meetings ultimately led to a consensus on the need for a plan that would minimize the harm to be inflicted upon Korean fishermen in exchange for a de facto repeal of the Peace Line. That plan was to

receiving funding from Japan for South Korea to cooperate with them in fishery. However, the Peace Line's de facto repeal evoked political instability in South Korea. The opposition party and college students criticized the plan as a treacherous act committed to sustain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which unfolded into a nationwide movement opposing the treaty with Japan.

It is true that reaching a settlement for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was complicated by the national sentiment Koreans possessed toward Japan, which considered the treaty a result of unilateral concession on the part of South Korea. Yet, analysis of primary sources also provides glimpses of the country striving to attain its national interests under adverse condition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a historical account of negotiations on the South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in 1965.

Keywords

South Korea-Japan Talks, South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Peace Line, Movement against South Korea-Japan Talks

참고문헌

[1차사료]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08, 『한일회담 외교문서 해제집 1-5』, 동북아역사재단
 일본외교문서, 2008~2009, 『한일회담 일본외교문서』,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외교문서, 2005년 공개, 『1965년 한일회담 외교문서』, 외교사료관

[한국어 문헌]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편, 2010, 『외교문서 공개와 한일회담의 재조명 - 의제로 본 한일회담』, 선인출판사

박실, 1984, 『한국의교비사』, 정호출판사
 이도성 편저, 1995, 『실록 박정희와 한일회담』, 도서출판 한송
 이원덕, 1996, 『한일과거사 처리의 원점』, 서울대학교출판부
 지명관, 2004, 『한일관계사 연구-강점에서 공존까지』, 소화출판사
 지철근, 1979, 『평화선』, 범우사
 조운수, 2008, 「『평화선』과 한일어업협상: 이승만 정권기의 해양질서를 둘러싼 한일간의 마찰」, 『일본연구논총』 제28호
 조운수, 2012, 「한일회담과 독도: 한국, 일본, 미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제4호

[일본어 문헌]

吉沢文寿, 2005, 『戦後日韓関係史』, クレイン
 山内康英, 1995, 『交渉の本質 - 海洋レジームの転換と日本と外交』, 東京大学出版会
 矢次一夫, 1973, 『わか浪人外交を語る』, 東洋経新報社
 赤城宗徳, 1973, 『私の履歴書』, 日本経済新聞社
 赤城宗徳・鈴木孝信 編, 1979, 『国会十年の側面史』, 産経新聞社出版局
 前田利一, 1961, 「日韓第五次会談再開 - 財産請求権と漁業問題とをハカリに」, 『世界週報』
 椎名悦三郎追悼録刊行会, 1982, 『記録椎名悦三郎』, 凸版印刷株式会社
 太田修, 2003, 『日韓交渉 - 請求権問題の研究』, クレイン
 和田正明, 1972, 『日韓漁業の親発足』, 水産経済新聞社

조선시대 울릉도 수토정책(搜討政策)에 대한 고고학적 시·공간 검토

심현용 울진봉평신라비 전시관 학예연구사

I. 머리말

최근 들어 우리나라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해 일본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영유권 주장이 더욱 거세졌다. 독도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정당성과 객관적인 논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시대 울릉도¹를 우리 영토로 관리하였던 수토정책(搜討政策)은 중요한 연구과제다. 조선시대 사용된 '수토'의 의미는 바다를 중심으로 해안이나 해상 또는 해도에서 왜적·도적·변란 등을 다스리는 군사 용어로 자국민보다는 우리 영토를 침범한 타국인 또는 적군을 수색하여 토벌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수토정책은 조선의 군사적 국방정책의 하나였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조선시대 울릉도의 수토정책에 대한 연구가 개설서적으로 연구되다가 최근 들어 깊

1 필자는 이 글에서 굳이 '독도'라는 단어를 별개로 표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울릉도라는 범위 안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조선시대의 대부분의 고지도에서도 확인(양보경, 2005, 「울릉도, 독도의 역사지리학적 고찰 - 한국 고지도로 본 울릉도와 독도」, 『북방사논총』 7, 고구려연구재단; 이상태, 2011, 「고지도에 나타난 삼척과 우산국」, 『이사부와 동해』 3, 한국이사부학회)되는데, 울릉도 부근에 독도가 그려져 있어 울릉도의 영역 안에 부속도서로 독도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크개는 한반도, 즉 조선의 영토에 포함되었음을 표시한 것이다. 그리고 조선시대 군인(수군)이었던 수토사들은 울릉도 수도시 군인의 필수 지침물인 지도를 가지고 출발했음은 지금의 군인에 비추어보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토사들은 울릉도뿐만 아니라 주변의 부속도사인 독도도 함께 수토하였을 것임은 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는 첫 울릉도 수토관으로 파견된 장한상이 남긴 『울릉도사적』이라는 기

록에서도 동쪽 300리 거리 바다 한가운데에 섬이 있다고 하여 독도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로 보아도 충분히 짐작되는 것이다. 다만 울릉도 수도시 이러한 세세한 사항이 문헌사료에 잘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라 생각되므로 이 글에서의 울릉도 수도라고 한 수도대상의 공간적 범위는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를 함께 포함한 것이다. 즉 '울릉도'라는 용어 안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밝힌다.

2 송병기, 1998, 「조선 후기 울릉도 경영 - 수토제도의 확립」, 『진단학보』 86, 진단학회; 이근택, 2000, 「조선 숙종대 울릉도분쟁과 수토제의 확립」,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호동, 2000, 「조선시대 울릉도 수토정책의 역사적 의미」, 『한국중세사논총』, 이수건교수정년기념, 한국중세사논총간행위원회; 유미림, 2009, 「장한상의 울릉도 수토와 수토제의 추이에 관한 고찰」,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1-1,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손승철, 2010, 「조선시대 '공도정책'의 허구성과 '수토제' 분석」, 『이사부와 동해』 창간호, 한국이사부학회; 배재홍, 2011, 「조선 후기 울릉도 수토제 운용의 실상」, 『대구사학』 103, 대구사학회; 이승진, 2012, 「조선시대 울릉도 수도 사료 검토」, 『제3회 울릉도포럼』, 2012년 울릉군 국제학술대회, 울릉군·울릉문화원; 손승철, 2013, 「울릉도 수토와 삼척영장 장한상」, 『이사부와 동해』 5, 한국이사부학회; 백인기, 2013, 「조선 후기 울릉도 수토제도의 주기성과 그 의미」 - 숙종부터 영조까지를 중심으로, 『이사부와 동해』 6, 한국이사부학회

3 심현용, 2008a, 「조선시대 울릉도·독도 수토관련 '울진 대풍헌' 소장 자료 소개」, 『독도지킴이 수토제도에 대한 재조명』, 제1회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북도지회 학술대회,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북도지회; 심현용, 2008b, 「조선시대 울릉도·독도 수토관련 '울진 대풍헌' 소장자료 고찰」, 『강원문화사연구』 13, 강원항토문화연구원; 심현용, 2009, 「울진 대풍헌 헌판 소개 - 조선시대 울릉도·독도 수토제와 관련하여」, 『132회

이 있는 연구가 시작되었다.² 그리고 울진 대풍헌(待風軒)(〈그림 12-6〉)에서 울릉도 수토에 관한 다수의 헌판과 고문서가 조사되어 문헌사료에서 잘 확인되지 않는 내용, 특히 19세기 울릉도에 수토사가 파견되어 우리 영토로서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져 선행연구를 더욱 보완하게 되었다.³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문헌사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사료의 빈약함으로 몇몇 부분에서는 세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유물·유적의 고고학적 접근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래서 필자는 울릉도 수토에 대한 연구를 고고학적 관점에서 진행한다면 문헌사 분야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개별 사실(史實)에 관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바로 유물·유적인 고고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토 관련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지역인 울릉도·울진·삼척을 조사하면서 수토 관련 유물·유적을 찾기 시작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의미에서 진행된 것으로, 제II장에서 향후 연구자들의 다양한 해석에 도움이 되고자 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포진성, 산수화, 석비, 각석문, 헌판, 고문서 등의 울릉도 수토 관련 자료를 자세히 소개하고, 제III장에서는 이러한 고고·문자자료를 바탕으로 문헌사료와 비교하여 조선시대 울릉도 수토에 대한 몇 가지 시·공간적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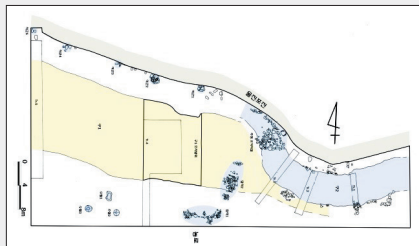
II. 울릉도 수도 관련 고고자료와 문자자료

1. 고고자료

1) 울진 포진



① 발굴 후 전경



② 발굴 유구 배치도

<그림 1> 울진 포진

최근에 울진 포진과 월송 포진 두 유적이 일부분이
나마 발굴조사되어 고고학적으로 문헌기록을 확인해
주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즉, 울진 포진의 발굴조사는
2011년 9월 14일~12월 13일까지 실시되었으며, 경
북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 247-2번지 일원으로 조사면
적은 1,461m²이다. 이곳은 울진 포진성의 남쪽 일대
로 조선시대 구 2기, 석군 5기, 집석유구 2기, 수혈유구
3기 등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남쪽 성벽 바깥에 있던
해자로 추정된다. 그 내부에서 석교시설, 목익과 자기,
기와 등이 출토되었다⁴(<그림 1>).

울진 포진은 원래 울진군 울진읍 현대동 고현포에
토성을 쌓아 설치되었는데, 중종 7년(1512) 울진군 근
남면 수산리 비래봉에 석성을 쌓아 이축하였다. 수군
만호 1명과 수군 400명이 주둔했으며, 인조 5년(1627)

대구사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대구사
학회; 심현용, 2010a, 『울진 대풍헌 현판』,
『대구사학』 98, 대구사학회; 심현용, 2010b,
『II. 연혁』, 『대풍헌 해체수리공사보고서』,
울진군. 『울진 대풍헌』은 경상북도 문화재자
료 제493호로 지정(2005. 9. 20)되었다가
2008년 11월 7일~2010년 1월 8일까지 해
체복원이 이루어진 후 경상북도 유형문화
재 제165호로 승격 지정(2010. 3. 11)되었으
며, 이곳에 소장된 「수도절목」과 「완문」의
고문서는 「울진 대풍헌 소장 문서」라는 명칭
으로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511호로 지정
(2006. 6. 29)되었다. 또한 대풍헌에 계관된
17점의 현판 중 12점은 「울진 대풍헌 현판
일괄」이라는 명칭으로 경상북도 유형문화
재 제441호로 지정(2012. 5. 14)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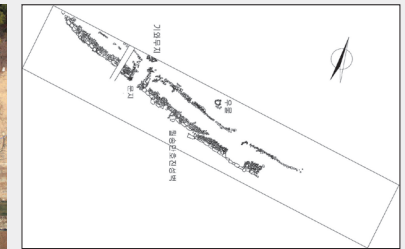
4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1, 『울진군 근
남면 수산리 247-2번지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신축부지내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보
고서』

에 폐지되었다.⁵

2) 월송 포진



① 발굴 후 전경



② 발굴 유구 배치도

<그림 2> 월송 포진

5 심현용·김성준, 1999, 『울진포진(포영)에
관한 연구』, 『울진문화』 13, 울진문화원

6 삼한문화재연구원, 2012, 『울진 망양-
작산간 도로확포장공사부지 내 유적 발굴
조사 결과서』

7 울진군, 2010, 『대풍헌 해체수리공사보
고서』, 99쪽. 울진 대풍헌 해체 복원시 지붕
에서 여러 기와가 수습되었는데, 이 기와의
등면 하단부에 손으로 눌러 3~4줄의 음각
선이 돌려져 있는데, 이 기와는 1851년 대
풍헌 중수시의 것으로 추정된다.

8 성림문화재연구원, 2013, 『울진 월송포
진성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9 김호동, 2012, 『월송포진의 역사』, 『울진
사향』 3, 울진문화원 울진향토사연구회; 대
구대학교박물관, 1998, 『울진군 성지유적
지표조사보고서』, 울진군, 190~198쪽; 유
재춘, 2013, 『IV. 고찰 1. 조선시대 수군배
치와 월송포진성』, 『울진 월송포진성 정밀
지표조사 보고서』, 성림문화재연구원,
206~227쪽

월송 포진은 2011년 8월 2일~2012년 4월 12일까
지 발굴조사가 실시되었으며, 경북 울진군 평해읍 월
송리 303-17번지 일원으로 조사면적은 1,520m²이다.
이곳은 월송 포진성의 남쪽 일대로 성벽·문지·우물·
기와무지 등이 확인되었으며, 분청자·백자·기와·가
락지 등이 출토되었다⁶(<그림 2>). 특히 일부 기와는 대
풍헌 수습 기와⁷와 같은 형식이 확인되어 월송 포진과
대풍헌의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는 자료가 되었다(<그
림 3>). 또 정밀지표조사에서 성곽의 규모는 둘레 약
322m, 동-서 107m, 남-북 73m이며, 평면형태는 말
각장방형으로 전체면적은 약 7,544m²로 추정되었다.⁸
이 월송 포진은 태조 6년(1397) 평해 읍성에서 동북쪽
으로 7리 떨어진 곳에 처음 설치되었고, 명종 10년
(1555) 석성을 쌓았으며, 만호 1명과 진졸이 적을 때는
70명, 많을 때는 400명까지 주둔하였다 한다.⁹



① 월송 포진 출토 기와

② 대풍헌 출토 기와

<그림 3> 월송 포진과 대풍헌에서 출토된 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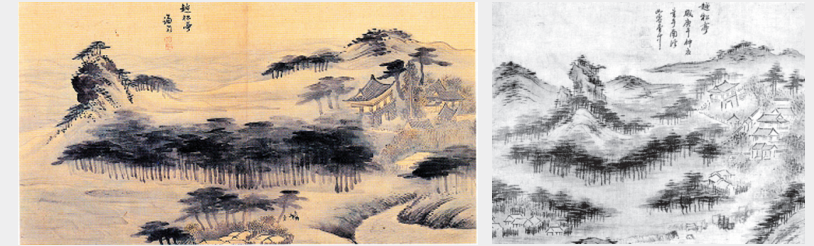
3) 월송 포진의 산수화와 고지도

전술한 월송 포진성의 유적에 대하여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림이 있다.¹⁰ 대부분 조선 후기의 것으로 겸재 정선을 필두로 정충엽, 김홍도 등의 작품으로 관동팔경이라는 아름다운 경치를 표현하기 위해 그려진 진경산수화인데, 관동팔경 중의 하나인 월송정을 그리면서 월송 포진성이 함께 그려져 있어 월송 포진의 형태와 규모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정선(1676~1759)의 월송정도(〈그림 4-①〉)는 1738년 <관동명승첩>의 11폭 중 1폭으로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¹¹ 이 그림에는 관동팔경의 하나인 월송정과 성벽이 그려져 있어 월송 포진성을 잘 파악할 수 있다. 즉 북쪽에는 석축으로 쌓은 돈대 위에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와가가 있는 누각인 월송정이 있고, 서쪽에는 성벽이 돌아가는데 성벽 상단에 요철식의 평여장이 보인다. 남쪽과 동남쪽에는 월송 만호가 살던 관사인 듯한 기와집들이 들어서 있으며, 그 앞으로는 하천이 있어 해자 역할을 한 듯하다. 그리고 정충엽(1725~1800이후)의 월송정도(〈그림 4-②〉)는 개인소장으로 북쪽의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와가를 올린 누각(월송정)과 주위의 성벽, 그리고 관사로 보이는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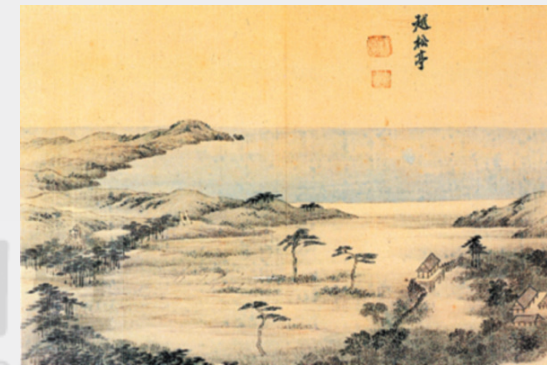
10 심현용, 2006, 「월송정 조사보고」, 『울진문학』 12, 울진문화회, 162~168쪽. 앞의 글에서 필자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강세황이 1788년에 그린 산수화를 박은순(1997, 『금강산도 연구』, 일지사, 251~253쪽)의 견해를 따라 '월송정(越松亭)'의 경치를 그린 '월송정도로 보았으나, 여기서는 국립춘천박물관(2002, 『우리 땅 우리의 진경』, 조선시대 진경산수화 특별전, 통천문화사, 167쪽)의 견해에 따라 월송정이 아니라 '가학정(駕鶴亭)'을 그린 '가학정도로 수정하므로 이 글에서는 강세황의 그림을 제외하였다.

11 최완수, 1999, 『겸재를 따라가는 금강산 여행』, 대원사, 268~273쪽



① 정선의 월송정도

② 정충엽의 월송정도



③ 김홍도의 월송정도



④ 허필의 월송정도

⑤ 미상의 월송정도

⑥ 미상의 월송정도

<그림 4> 조선시대의 월송 포진을 그린 산수화

와집과 초가마을 등이 겸재의 그림을 거의 빼닮았다. 또 김홍도(1745~1806경) 필로 전하는 월송정도(〈그림 4-③〉)는 관동팔경 그림을 그린 〈해산도첩〉의 하나로 개인소장이다. 김홍도의 금강산도들은 1788년 관동지방으로의 봉명 사경을 계기로 그렸는데, 월송정도도 이때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¹² 이 그림에는 북쪽에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와가를 올린 누각인 월송정이 있으며, 월송정 양옆으로 성벽이 이어졌고, 남쪽에는 관사인 듯한 기와집들이 들어서 있다. 포진성에서 얼마 떨어진 북쪽 구릉에는 과녁이 그려져 있어 사정터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허필(1709~1761)의 월송정도(〈그림 4-④〉)는 〈관동팔경도병〉 중의 하나로 선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그림은 북서쪽 또는 서쪽에서 구도를 잡은 것으로 성벽의 북서쪽 모서리 안쪽에 월송정과 건물이 있으며, 건물 앞에 성문이 있고 양옆으로 성벽이 돌아가고 있다. 성벽의 위쪽은 평여장에 타구와 총안이 보이는데, 이는 정선, 정충엽, 김홍도 등이 그린 월송정도와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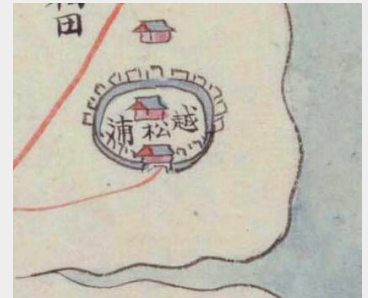
그러나 작자 미상의 월송정도인 〈그림 4-⑤·⑥〉은 앞의 그림과 사뭇 다르다. 미상의 월송도(〈그림 4-⑤〉)는 〈관동팔경도〉 중의 하나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그림은 평면 타원형의 성벽이 돌아가는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구릉을 따라 점점 올라가며 축조하였다. 성벽은 내·외면을 석축한 협축식이며, 성벽 상단에는 요철여장이 있다. 남쪽 성문은 개거형의 누문형 구조이며, 북쪽 성문은 홍예식의 문루로 그 위에 월송정이 있다. 내부에는 동쪽과 서쪽에 나뉘어 건물이 배치되어 있으나 동쪽에 많다.¹³ 특히 남쪽 성문은 2012년 발굴조사된 남쪽 일대의 유적상황과 거의 유사하다. 이러한 전경은 〈그림 4-①~④〉의 월송 포진성 규모보다 축소되어 있으므로 앞의 그림들보다 좀 더 늦은 시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미상의 월송정도(〈그림 4-⑥〉)는 〈담채관동십경도〉 중의 하나로 경기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월송정과 관청인 듯한 기와집들이 들어서 있으나 성문과 성벽은 보이지 않는다. 이로 보아 월송 포진성이 그 역할을 잃어버린 후인 19세기 말~20세기 초의 경치를 그린 그림으

12 이동주, 1975, 「김단원이라는 화원, 『우리나라의 옛그림』, 박영사, 57~114쪽; 박은순, 1997, 앞의 책, 258쪽

13 성림문화재연구원, 2013, 앞의 책, 109~110쪽



① 1872년 지방지도(평해군) 세부
〈그림 5〉 월송 포진이 그려진 고지도



② 해동지도(평해군) 세부

로 추정된다.

또한 그림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고지도에서도 월송 포진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1872년 지방지도〉를 비롯하여 〈여지도서〉(1757~1765), 〈광여도〉(1767~1776), 〈해동지도〉(1776), 〈비변사인방안지도〉(18c 중엽), 〈여지도〉(18c 중엽), 「관동지」(1829~1831), 「관동읍지」(1871), 〈대동여지도〉(1861) 등에서 평해군을 그린 고지도 안에 월송 포진성이 그려져 있어 참고가 된다(〈그림 5〉).

4) 월송 만호 이유신의 묘

월송 만호 이유신의 묘는 경북 울진군 평해읍 직산리 산 98-1번지 남산



① 이유신 묘(서→동)

② 이유신 묘비(앞)

③ 이유신 묘비(뒤)

〈그림 6〉 월송 만호 이유신의 묘와 묘비

동 도치곡에 있다. 묘는 장축방향이 동→서향하여 있으며, 비는 화강암으로 만들었고, 크기는 현 높이 93×윗 너비 40.5×아래 너비 34×두께 9cm이며, 비대는 없다(그림 6). 비문¹⁴은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으며, 두 번 기록하였는데, 1947년 부인의 묘를 합장하면서 추가되었다.

명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유신은 철종 8년(1857) 12월 12일 태어나 고종 15년(1878)에 무과에 급제하고, 고종 20년(1883)에 월송 진장에 제수되었으며, 고종 23년(1886) 6월 8일 30세의 나이로 죽는다.

묘는 1886년에 조성되고 묘비는 고종 25년(1888) 9월 15일 세웠다. 그러나 이유신이 월송 만호를 지낸 사실이 『경주이씨의정공파세보』¹⁵에는 나오지만 『조선왕조실록』(이하 『실록』이라 함)이나 『승정원일기』 등의 사료에는 전혀 보이지 않아 이를 그대로 따르기는 어려우므로 여기서는 자료로 활용하지 않고 소개만 하겠다.

2. 문자자료

1) 평해 군수 겸 울도 첨사 심의완 영세불망비

심의완 영세불망비는 경북 울진군 온정면 외선미2리 90번지 비석거리에 있는 3기의 송덕비 중 우측에 있는 1기다. 이 불망비는 원래 온정면 외선미2리 137번지에 파손되어 있던 것을 2009년 11월 서쪽으로 약 30m 떨어진 지금의 위치로 옮겨 정비하였다. 이 비는 청색 화강암으로 만들었고, 비신의 크기는 현 높이 97(전체 높이 100)×너비 33.5×두께 10.5cm로 세장방형을 하고 있으며, 비대는 최근에 만들었다(그림 7). 비문¹⁶은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으며, 각자된 기록으로 보아 이 비는 고종 22년(1885) 10월에 세워졌다.

14 “宣略將軍行三陟鎮管越松浦/ 水軍萬戶慶州李公裕信之墓/ 檀紀四二八〇年旧九月八日甲坐合窆/ 淑夫人丹陽張氏[전면(방향은 유물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이하 동일함)] 崇禎紀元後五戊子九月十五日立[좌측면] 公諱裕信字允中其先慶州人新羅佐命功臣諱謁平/ 公之後也自慶州移居平海高祖諱完範妣晉州姜氏/ 曾祖諱聖郁妣金海金氏祖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 軍諱世春妣淑夫人延安車氏父幼學啓宇配晉州河/ 氏公戊寅武科癸未十二月 除拜越松鎮將配淑人/ 丹陽張氏无子以從兄龍之次子喜榮爲嗣公生于/ 上之丁巳十二月十二日辛于丙戌六月八日享年三十/ 葬于郡南楸谷西坐原女幼不盡錄[후면]”

15 경주이씨의정공파세보, 1991, 『慶州李氏毅靖公派世譜』, 114쪽. 이 파보 114쪽에 三十四世간의 “裕信”조에 “字 允中이니 辛巳에 武科요 甲申에 行三陟鎮官月松浦水軍萬戶시다. 哲宗 丁巳 十二月 十二日生하사 六月 八日에 別世하시니 墓는 平海邑 南山 道治谷 西坐시다. 配는 丹陽張氏시니 癸丑 七月 十九日生하시니 墓는 平海邑 南山 道治谷 合窆하시다.” (필자주: 띄어쓰기함)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묘비의 내용과 일부 다른 것이 있다.

16 “郡守兼鬱島僉使 沈公宜瓌 永世不忘(송)/ 兩代一郡 恩同馮驩 頌登四方(자)/ 孰不錄仰 德頻鄒衍 汗傳千秋(우)[전면] (光緒十一年乙酉十月日/ 內外仙味/ 搭邱三洞/ 謹暨[후면]”



① 외선미리 비석군 전경(북→남)



② 심의완 비(앞)



③ 심의완 비(뒤)

〈그림 7〉 평해 군수 심의완 불망비

2) 울릉도 태하리 광서명 각석문



① 각석문 바위 전경(남→북)



② 각석문 세부

〈그림 8〉 울릉도 태하리 광서명 각석문

17 김원룡, 1963, 『울릉도』, 국립박물관고적조사보고 제4책, 65쪽;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2, 『문화유적분포지도-울릉군』, 77쪽;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7, 『울릉군지』, 울릉군청, 990쪽

18 “光緒十九年癸巳五月日/ 聖化東漸我使西來 誠切祝華惠深求蕩/ 行平海郡守兼鬱陵島僉使趙公鍾成永世不忘碑/ 參判前檢察使行開拓使李公奎遠/ 領議政沈公舜澤恤賑永世不忘臺/ 主事行越松萬戶兼島長檢察官徐敬秀/ 光緒十六年庚寅四月日前五衛將孫周瑩誌”

이 각석문은 이미 잘 알려진 것으로 경북 울릉군 서면 태하리 465번지에 위치하며, ‘울릉도 태하리 광서명 각석문’이라는 명칭으로 경북 문화재자료 제411호로 지정(2001. 11. 1)되어 있다. 명문은 자연바위 앞면에 세로 7줄로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다(그림 8). 그러나 그동안 원문 판독에 일부 오류¹⁷가 있어 필자가 재판독¹⁸하였다. 명문이 각자된 시기는 광서 16년(1890) 4월과 광서 19년(1893) 5월의 기록이 보이고 또 관직

의 시기가 다른 여러 사람의 이름이 보이므로 최소한 세 번 이상의 시기에 각자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울진 운암서원 쌍절기 현판



① 해단각 전경(동→서)



② 쌍절기 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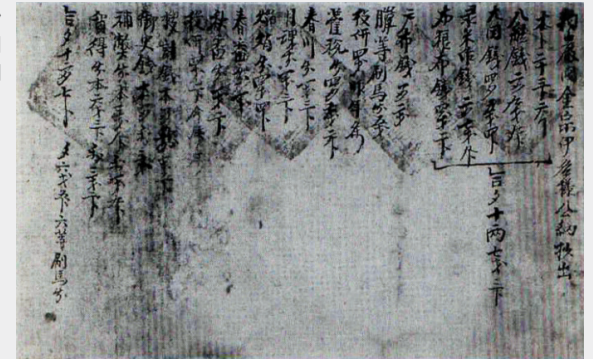
〈그림 9〉 해단각과 쌍절기 현판

이 쌍절기(雙節記) 현판은 경북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381번지에 있는 운암서원(雲巖書院) 경내 해단각(海壇閣) 안에 게판되어 있다. 현판은 나무로 만들었으며, 크기는 내부 너비 127×높이 34.5cm이고 전체 크기는 너비 130.3×높이 38cm로 세장방형을 하고 있다. 현판은 바탕널과 테두리에 검은색을 칠하고, 명문은 해서체로 음각하고 흰색을 칠하였다(〈그림 9〉). 이 쌍절기의 내용¹⁹은 고려 충신인 백암(白巖) 김제(金濟)의 절의를 칭송한 것으로 신상규(1838~?)가 평해 군수 재임기간(1884. 8. 13~1885. 3. 17)²⁰에 작성한 것이다. 이 현판 우측 맨 끝에 ‘[...] 上之二十一年甲申十月 日/ 通政大夫行平海郡守兼鬱陵島鎮水軍僉節制使/ 東陽申相珪敬記’라고 적혀 있어 고종 21년(1884) 10월에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9 “雙節記/ 先生姓金氏 諱濟 諡忠介 號白巖 善山人 籠巖先生諱/ 澍 卽其弟也 始祖諱宣弓 高麗門下侍中 有諱元老 進賢館大提學 是爲先生皇考 妣水州金氏 生先生兄弟/ 于善山府北九竹山下 注兒里 姿稟既異 文章亦夙就/ 兒時携浙玩花于鷗籬赤壁上 成一聯句 時白巖十二/ 歲籠巖八歲 白巖先唱云 巖磨水府千層白 籠巖和云/ 錦落天機一段紅 聞者驚嘆 以爲有壁立千仞之像 超/ 世出倫之氣云 俱長仕于高麗末 白巖先生 以朝奉郎/ 知平海郡事 逮/ 聖朝開運 卽臨海痛哭 改名齊海 題詩郡壁曰 呼船東/ 問魯津連五百年今一介臣 可使孤魂能不死 願隨紅/ 日照中垠 遂訣別妻子 著蘆笠子 乘舟入海 不知所終/ 籠巖先生 奉使天朝 歸到鴨綠江 始聞時事 三日痛/ 哭于江上 寄書夫人柳氏曰 忠臣不事二君 烈女不更/ 二夫 吾渡江卽無所容其身 我知夫人有娠 若生男名/ 曰楊燧 生女名曰命德 送朝服及靴 但以此爲信 夫人/ 下世後以此合葬 爲我夫婦之墓 且以到江上還向/ 中朝之日爲我忌日 葬後勿用誌文墓碣 又詩別書狀/ 官曰 隴樹蒼蒼塞日昏 白山雲雪照離樽 君行莫恨天/ 涯別 我是歸人

4) 울진 거일리 고문서

〈그림 10〉 울진 구암동 김중이 각양공납초출 고문서



亦斷魂 是乃壬申十二月二十二日也/ 遂還入中國 遷跡于荊楚 皇朝奇之 除禮部尚書而/ 不就以祿終其身 至今沅湘之間 多其子孫云 先生兄/ 弟秉節之蹟 大槩如是 而各在萬里之外 所樹立適與/ 相符 又不異歟 嗚呼 先生時以一命之微 遠守下縣 既/ 不在支傾扶危之列 又未有攬兵就俘之境 則退伏巖/ 穴 永矢自靖 如治耘諸賢 亦豈不卓然可敬乎 而乃高/ 蹈遠引 視滄溟如平地 以舟楫爲祗席 飄然出世 而/ 不知其所之 是其心 豈不曰尺地莫非周土也 粒米莫非/ 周粟也 吾不忍身載異天異 苟活則只有一死在耳 而/ 與其死而埋骨於此地 曷若從吾所好於域外天地 使/ 不死孤魂 隨紅日而照中垠乎 其秉心之苦 制行之難/ 足以隕千秋志士之淚 古今稱節義者 必以伯夷叔齊/ 爲首 而後世之所考見而欽歎者 惟是採薇歌數句耳/ 今先生其心 卽夷齊之心 其事 卽夷齊之事 而蹈海一/ 詩 又不讓美於登山數曲 只此亦足暴白於天下後世/ 又何必多乎哉/ 上之二十一年甲申十月 日/ 通政大夫行平海郡守 兼鬱陵島鎮水軍僉節制使/ 東陽申相珪 敬記”

20 울진군지편찬위원회, 2001, 『울진군지』 하, 울진군, 425쪽

21 김택규, 2000, 『동해안어촌민속지 자료집』,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연구총서 23, 영남대학교출판부. 이 글에서는 분량이 많아 이 고문서들의 원문을 생략 하겠으며, 자세한 원문은 이 책을 참조하기 바란다.

울진 거일리 고문서는 경북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남쪽에 위치한 평해읍 거일리 구암마을에 소장되어 있던 것으로 구암마을은 울진 대풍현 소장 「완문」에 나오는 구암동이다. 이 고문서는 김택규가 1984년 조사하였으며, 그 자료가 2000년에 책으로 발간되었다.²¹ 이 책에서 울릉도 수토 및 대풍현과 관련된 3개의 고문서를 찾을 수 있는데, 「狗巖洞金宗伊各樣公納抄出(1893)」은 이 책의 675쪽에 흑백사진으로만 소개(〈그림 10〉)되었으며, 「公納成冊 開國伍百肆年乙未十一月二十八日(1895. 11. 28)」은 49~57쪽에 문서의 사진 없이 원문만 소개하였다. 그리고 「各洞求乞標 乙巳十月初八日(1905. 10. 8)」도 689~690쪽에서 문서의 사진 없이 원문만 소개했는데, 옮겨 기록하면서 ‘乞標’를 ‘公標’로, ‘乙巳’를 ‘己巳’로, ‘待風所’를 ‘待尼所’로 오기(誤記)하는 등 일부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 안타깝게도 현재 이 고문서의 행방을 알 수 없다.

「구암동 김중이 각양공납초출(1893)」은 김중이가 울

릉도 수토 경비로 사용하는 '搜討錢' 등의 여러 종류 세금을 납부한 금액이 적혀 있으며, 「공납정책 개국 오백사년 을미 십일월 이십팔일(1895. 11. 28)」에 서는 「邱山 搜討殖利錢」과 「官 搜討殖利錢」 등의 내용이 나오며, 다수의 주민들이 수토시 드는 비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搜討錢' 등의 세금을 납부한 금액이, 또 「각동구결표 을사 시월 초팔일(1905. 10. 8)」은 구산동 대풍헌과 주변마을의 동사·고사 등을 중수하면서 각 마을에서 받은 찬조금의 금액이 적혀 있다.

III. 울릉도 수토정책의 시·공간적 검토

1. 울릉도 수토정책의 시간적 범위

1) 울릉도 수토정책의 시작과 끝

조선시대 울릉도에 대한 관리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초기의 쇄환정책과 후기의 수토정책이 그것이다.

조선 초기에는 울릉도에 거주하는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지로 데려오는 '쇄환정책(순심·쇄출정책)'을 실시한다.²² 즉, 태종 3년(1403) 8월 “강원도 무릉도 거주민들에게 육지로 나오도록 명령하였는데, 이것은 감사의 품계에 따른 것이다”라는 기사²³에서 울릉도에 있던 사람을 본토로 옮겨오는 쇄환정책이 처음 실시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태종 17년(1417) 울릉도민 이주 정책을 확정하고 세종 20년(1438)까지 모든 섬의 주민을 육지로 이주시키게 된다. 그러나 조선 후기 17세기 말에 들어와 울릉도 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는데, 이것이 '수토정책'이다. '수토(搜討)'란 '수색하여 토벌한다'는 뜻의 군사용어다. 조선시대에 수토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울릉도로 인해서다. 이는 숙종 19년(1693) 안용복의 일본 도해 사건을 계기로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22 김호동, 2005, 「조선초기 울릉도·독도에 대한 '공도정책' 재검토」, 『민족문화논총』 3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김호동, 2010, 「독도 영유권 공고화와 관련된 용어 사용에 대한 검토」, 『대구사학』 98, 대구사학회

23 『태종실록』, 태종 3년(1403) 8월 11일(병진)

터 울릉도에 대한 영유권을 공고히 하고자 수토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지속해서 울릉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수군(水軍)으로 이 섬들에 대해 수토를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울릉도를 수토한 기록을 살펴보면 후술하는 <표 1>과 같은데, 이 표에서 보듯이 숙종 20년(1694) 무신 장한상을 처음으로 울릉도에 보내어 수토케 하였다.²⁴ 후술하겠지만 울릉도 수토의 시작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큰 이견이 없다. 하지만 그 폐지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견이 분분하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울릉도 수토제도는 언제 폐지되는가?

조선 말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실록』·『승정원일기』·『비변사등록』 등 사료에는 울릉도에 수토사(搜討使)를 파견했다는 기사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로 인해 조선이 늦은 시기까지 울릉도에 대해 수토정책을 시행하였는지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었다. 하지만, 최근 울진 대풍헌에 있는 다수의 현판(1851. 6 이전~1906. 5)과 「완문(1871. 10)」·「수토절목(1883. 10)」이라는 고문서,²⁵ 그리고 삼척의 『한길택 생활일기』²⁶에서 19세기 말까지 국가에서 수군으로 이루어진 수토사, 즉 군대를 파견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어 빈약한 문헌

사료를 보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도 울릉도 수토제의 폐지 시점은 분명하지 않다. 이를 위해 먼저 울릉도의 행정적 변천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울릉도는 숙종 20년(1694)부터 수토정책이 실시되어 오던 것이 고종 31년(1894) 갑오개혁이 단행되자 개화파 정부는 그해 12월 27일 울릉도 수토시 격군을 조달하고 필요한 물품을 바치는 것을 폐지하였으며,²⁷ 이듬해 1월 29일에는 울릉도를 수토하는 규례가 지금 이 미 영구히 혁파되었으니 월송 만호가 겸하고 있는 도장을 폐지하고 별도로 전임 도장을 두며, 해마다 배를 수차례 보내 도민의 질고를 물어보게 하였고,²⁸ 그해

24 삼척 영장 장한상이 울릉도를 수토한 여러 문헌기록 중 「척주지」 하 울릉도에는 「강희 11년 임자, 즉 현종 13년(1672)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강희 33년 갑술, 즉 숙종 20년(1694)의 오류다.

25 심현용, 2008b, 앞의 글; 심현용, 2010a, 앞의 글

26 배재홍, 2011, 앞의 글

27 『고종실록』, 고종 31년(1894) 12월 27일(기사).

28 『고종실록』, 고종 32년(1895) 1월 29일(신축); 『승정원일기』, 고종 32년(1895) 1월 29일(신축); 『일성록』, 고종 32년(1895) 1월 29일(신축); 『구한국관보』 개국 504년(1895) 정월 29일

8월 16일에는 도장의 명칭을 도감으로 고쳤다.²⁹ 그리고 고종 광무 4년(1900) 10월 25일 칙령 제41호로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郡守)로 개정하여 울도군으로 승격시킴으로써 강원도 27개 군현 중의 하나가 되어 처음으로 군제(郡制)가 실시되었다. 여기서 1895년 1월 29일 조선의 울릉도 수토제는 폐지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동안 이 폐지 시점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욱³⁰은 고종 20년(1883) 7월에 조인된 조일통상장정에서 조선이 경상도 해안에서 일본 어선의 어업활동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1883년 7월 이후에는 울릉도에 수토사를 파견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이때쯤에 폐지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대풍헌 소장 「수토절목」 고문서와 ‘구산동사기(1888. 4)’ 현판을 통해 1883년 7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울릉도 수토가 실시되고 있었음이 확인되어 이를 따를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사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A) 내무대신 박영효가 아뢰기를, [...] “울릉도를 수토하는 규례를 지금 이미 영구히 혁파[今既永革]하였으니 월송 만호가 겸하고 있는 도장을 별도로 감당할 만한 1인을 택하여 도장으로 차정해 섬 백성의 사무를 맡아 다스리게 하고 해마다 배를 수차례 보내어 섬 백성의 고통을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³¹

위 사료 A에서 확인되듯이 울릉도 수토제는 혁파되었는데, 영구히 혁파[永革] 앞에 ‘지금 이미[今既]’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이는 『승정원일기』와 『일성록』도 마찬가지다. 이 수식어로 보아 울릉도 수토는 이 당시 혁파된 것이 아니라 1895년 1월 29일보 다 이전에 이미 혁파되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보다 그리 멀지 않은 앞 시기에 폐지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음의 사료에서 그 시점을 찾을 수 있다.

B) 총리대신, 내무대신, 탁지대신이 아뢰기를, “[...] 울릉

29 『고종실록』, 고종 32년(1895) 8월 16일 (갑신)

30 이욱, 2005, 「〈완문 신미 칠월 일〉, 〈수토절목 공개변통 계미시월 일 구산동〉, 『일본의 역사왜곡과 대응방안』, 광복 60주년 기념학술대회, 한국국학진흥원, 148쪽

31 『고종실록』, 고종 32년(1895) 1월 29일 (신축)

도를 수토하는 선격(船格)과 집물(什物)을 바치는 것을 영영 없애는 문제입니다. 그 점은 지금 이미 개척되었는데 좌수영에서 동쪽 바닷가 각 고을에 배정하여 삼척진·월송진에 이속하는 것은 심히 무의미한 일입니다. 수토하는 선격과 집물을 이제부터 영영 없애라고 경상도와 강원도에 분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윤허하였다.³²

사료 B는 경상좌수영에서 동해안 각 고을에다 삼척진과 월송진의 울릉도 수토를 위해 배군과 집물을 바치도록 배정하는 것을 폐지하여 울릉도 수토제가 폐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이듬해에 사료 A의 내용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에 소개한 「구암동 김종이 각양공납초출(1893)」(〈그림 10〉)을 보아도 1893년 울릉도 수토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울릉도 수토제의 폐지 시점은 1883년 7월쯤이 아니라 고종 31년(1894) 12월 27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송병기³³와 이근택³⁴을 비롯한 김호동,³⁵ 유미림,³⁶ 손승철³⁷과 배재홍³⁸도 사료 B를 근거로 1894년 12월 울릉도 수토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고 보았다.

그런데 1894년 울릉도 수토를 공식 폐지한 후에도 울진지역에서는 수토세를 납부한 문서가 발견되었다. 전술한 「공납성책 개국 오백사년 을미 십일월 이십팔일」이 바로 그것이다. 이로 인해 사료에 기록된 울릉도 수토 폐지 시점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다.

이 울진 거일리 고문서들은 울릉도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사료인데도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하여 선행연구에서 전혀 활용되지 못하였다. 이 중 「구암동 김종이 각양공납초출(1893)」에서는 주민 김종이가 수토 경비로 사용하는 ‘수토전(搜討錢)’ 등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공납성책 개국 오백사년 을미 십일월 이십팔일」에서도 주민들이 수토시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수토전’ 등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만약 사료 B처럼 1894년 12월 울릉도 수토가 혁파

32 『고종실록』, 고종 31년(1894) 12월 27일 (기사)

33 송병기, 1998, 앞의 글, 174쪽

34 이근택, 2000, 앞의 책, 48쪽

35 김호동, 2000, 앞의 글, 855쪽

36 유미림, 2009, 앞의 글, 170쪽

37 손승철, 2010, 앞의 글, 302~303쪽

38 배재홍, 2011, 앞의 글, 121쪽

되었다면, 이보다 늦은 시기(1895. 11)에 백성들이 수토 관련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기존 사료와 달리 이 고문서는 울릉도 수토 폐지가 곧바로 시행되지 않고 다음 해 11월 28일까지 계속해서 실시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아닐까?

물론 국가에서 정책상 울릉도 수토제도를 이미 폐지하였지만, 지방에 있는 울진(당시 평해군)까지 그 행정력이 시달되기에는 시일이 걸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울진 대풍헌 소장 고문서와 다수의 현판에서 보듯이 당시 이 지역 백성의 고충과 어려움이 심하여 여러 차례 관(官, 평해군)에 이를 해결해 주기를 요청한 민원을 생각해본다면 그 효력(행정력)이 11개월 이상이나 늦게 하달·시행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울릉도 수토제는 1894년 12월 27일 폐지하였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그 효력이 바로 시행되지 않고 이후 일정기간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여기서는 그 가능성만 열어놓기로 하겠다.

2) 울릉도 수토의 간격

먼저 조선시대 울릉도를 수토한 현황을 찾아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조선시대 울릉도 수토 시행 현황³⁹

번호	수토 시기	수토사		출처
		직위	이름	
1	1694	삼척 첨사/삼척 영장/삼척 영장/삼척 영장	장한상	『속중실록』 숙종 20년 8월 14일(기유)·숙종 24년 4월 20일(갑자)/『울릉도사적』/『척주선생안』 진주부선생안 부사 박상형/『서계집록』 울릉도
2	1699	월송 만호	전회일	『속중실록』 숙종 25년 7월 15일(임오)/『비변사등록』 숙종 25년 7월 15일
3	1702	삼척 영장	이준명	『속중실록』 숙종 28년 5월 28일(기유)
4	1705	월송 만호	-	『속중실록』 숙종 31년 6월 13일(을사)
5	1711	절충장군 삼척 영장 겸 첨절제사	박석창	울릉도 도동리 신묘명 각석문
6	1735	? / 삼척 영장	구역	『영조실록』 영조 11년 1월 13일(갑신)/울릉도 도동리 옹정13년명 각석문

7	1745	월송 만호	박후기	『승정원일기』 영조 22년 4월 24일(기축)
8	1751	삼척 첨사	심의회	『승정원일기』 영조 45년 10월 15일(계해)
9	1765	삼척 첨사/삼척 첨사	조한기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2월 18일(갑오)/『와유록』 울릉도 수토기
10	1772	월송 만호	배찬봉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5월 6일(경자)
11	1776	월송 만호	?	『승정원일기』 정조 즉위년 5월 22일(갑오)
12	1783	?	?	『승정원일기』 정조 9년 1월 10일(경신)
13	1786	월송 만호	김창윤	『일성록』 정조 10년 6월 4일(병자)
14	1787	?	?	『한길택 생활일기』 정조 11년 8월 12일
15	1794	월송 만호	한창국	『정조실록』 정조 18년 6월 3일(무오)
16	1799	월송 만호	노인소	『승정원일기』 정조 23년 10월 2일(정해)
17	1801	삼척 영장/삼척 영장	김최환	울릉도 태하리 해안 좌측 암벽 각석문/『한길택 생활일기』 순조 1년 3월 30일
18	1803	월송 만호	박수빈	『비변사등록』 순조 3년 5월 22일
19	1805	삼척 영장	이보국	울릉도 태하리 해안 좌측 암벽 각석문
20	1807	?	?	『한길택 생활일기』 순조 7년 2월 7일
21	1809	?	?	『한길택 생활일기』 순조 9년 3월 1일
22	1811	?	?	『한길택 생활일기』 순조 11년 3월 1일
23	1813	?	?	『한길택 생활일기』 순조 13년 2월 21일
24	1819	삼척 첨사	오재신	『한길택 생활일기』 순조 19년 윤4월 9일
25	1823	?	?	『한길택 생활일기』 순조 23년 3월 1일
26	1829	월송 만호	?	『한길택 생활일기』 순조 29년 4월 3일
27	1831	삼척 영장	이경정	울릉도 태하리 해안 우측 암벽 각석
28	1841	월송 만호	오인현	『비변사등록』 헌종 7년 6월 10일
29	1843	?	?	『한길택 생활일기』 헌종 9년 4월 3일
30	1845	?	?	『한길택 생활일기』 헌종 11년 3월 17일
31	1847	삼척 영장	정재천	울릉도 태하리 해안 우측 암벽 각석문
32	1859	삼척 첨사	강재의	『한길택 생활일기』 철종 10년 4월 9일
33	1866	월송 만호/월송 만호	장원익	평해군수 심능무·이윤흡 영세불망지판/월송영장 장원익 영세불망지판
34	1868	? / 월송 만호	? / 장원익	평해군수 심능무·이윤흡 영세불망지판/월송영장 장원익 영세불망지판
35	1881	?	?	『승정원일기』 고종 18년 5월 22일(계미)
36	1888	월송 만호 겸 도장	서경수	울릉 태하리 광서명 각석문

³⁹ 이 표는 김호동, 2007, 『독도·울릉도의 역사』, 경인문화사, 116~118쪽의 <표 1> '조선시대 울릉도 순심·수토관'·손승철.

<표 1>에서 보듯이 조선은 숙종 20년(1694) 무신 장한상을 울릉도에 보내어 수토케 하였다. 이후 울릉도

수토가 정책으로 채택되어 제도화된다.

C) [...] 상운이 말하기를, “울릉도 일은 이제 이미 명백하게 귀일(歸一)되어 왜인은 본국인의 어채(魚採)를 금한다 말했고, 우리나라는 때때로 사람을 보내어 수토(搜討)하겠다는 뜻을 서계 중에 대답해 보냈습니다. [...] 이는 무인도여서 불가불 간간이 사람을 보내어 순검(巡檢)하여 오도록 해야 하는 까닭에 감히 이같이 양달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의 지방을 영구히 버릴 수 없으며, 매년 입송하는 것 또한 많은 폐단이 있으므로 2년을 간격으로 입송함이 가하다”라고 하였다. 상운이 말하기를 “3년에 한 번 보내는 것을 정식으로 삼는다면, 상상년(上上年)에 이미 가보고 왔으므로 다음 해(明年)에 마땅히 입송해야 하는데, 듣건대 본도는 반드시 5월 사이 바람이 고를 때 왕래할 수 있다고 하니 다음 해 5월 사이에 입송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며, 차송(差送)하는 사람은 입송할 때마다 품지(稟旨)하여 차송함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니, 임금께서 “그리하라”고 하였다.⁴⁰

사료 C는 영의정 유상운이 울릉도 수토를 건의하자 숙종은 이를 받아들여 2년 걸러 3년에 한 번씩 수토하도록 제도화하고 다음 해(1698)에 수토하라고 지시한다. 이렇게 3년에 한 번씩 수토하는 것이 정식이라면, 유상운이 건의한 해가 1697년이므로 상상년은 1695년이 되며, 명년은 1698년이 된다. 하지만 <표 1>에서 상상년(1695)에 수토한 기록이 보이지 않으므로 유상운은 장한상이 수토한 해, 즉 1694년을 상상년으로 착각한 것 같다. 그리고 사료 D에서 보듯이 1698년에는 흉년으로 인해 지시대로 수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표 1>에서 보듯이 1699년 시행된다. 이렇듯 장한상이 1694년 울릉도를 첫 수토한 이후 1697년 지속적인 울릉도 수토가 제도화되며, 제도화된 이후의 첫 수토는 1699년에 시행되었던 것이다. 결국 장한상의 첫 수

2010, 앞의 글, 303쪽의 <표> '울릉도 수토 관련 사료 일람'; 배재홍, 2011, 앞의 글, 117~118쪽의 <표 1> '조선 후기 울릉도 수토 실시 현황'; 백인기, 2013, 앞의 글, 160~161쪽의 <표 1> '숙종대 수토관련 주요 기록'과 169쪽의 <표 2> '영조대 수토관련 주요 기록'을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40 『승정원일기』, 숙종 23년(1697) 4월 13일 (입술)

토 이후 다시 시행되는 것은 5년 후의 일이다.

울릉도 수토정책은 숙종이 1697년 2년 간격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3년설)으로 정식 결정하였다. 그러나 문헌기록마다 수토 시기의 주기, 즉 간격이 다양하게 나타나 혼동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송병기⁴¹는 숙종 20년(1694) 울릉도 수토방침이 확정되고 숙종 23년(1697) 2년 걸러 3년에 1차씩 정식화 되었다고 보았으며, 이근택⁴²은 1690년대 말 숙종 연간에 2년 걸러 3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것이 정식이라고 하였다. 유미림⁴³도 1697년 수토제가 확립되어 2년 간격 3년설이 정식이라 하였고, 손승철⁴⁴도 이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김호동⁴⁵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 배재홍⁴⁶은 2년 간격 3년마다 한 차례씩 하는 것이 정식이지만, 정조대 말인 18세기 말경부터는 2년마다로 바뀌었다고 하였으며, 백인기⁴⁷는 숙종·경종을 거쳐 영조 초까지는 2년 걸러 3년이 원칙이었으나, 영조 21년(1745) 이후부터는 2년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였다. 여기에 대해 좀 더 다양한 자료로 검토해 보자.

<표 2>를 살펴보면, 수토 주기가 1년 간격, 2년 간격(3년마다), 3년 간격 또는 1·2년마다, 5년마다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기록마다 수토 주기가 1~5년설 등 제각각 달라 수토시기의 간격에 혼동을 야기한다. 그러

나 27건의 사료 중에 2년 간격(3년마다)(13건) > 1년 간격(8건) > 3년 간격(3건) > 1·2년 간격(1건), 1·2년마다(1건), 5년마다(1건) 순으로 3년설이 가장 많고 2년설이 그다음이다.

하지만 <표 1>의 실제 확인되는 수토현황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모두 36번의 수토 중 2년 후(12건) > 3년 후(3건) > 4년 후(2건) > 5년 후(2건) > 1년 후(1건)⁴⁸ 순으로 나타나며, 6년 이상도 15건으로 가장 긴 것은 24년 후로 파악된다. 즉 수토 후 1년 걸러 2년째(2년 후, 2년마다)에 다시 수토하는 '2년설'이 12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다. 물론 실시되었지만 기록되지 않은 것도 상당

41 송병기, 1998, 앞의 글, 161~166쪽

42 이근택, 2000, 앞의 책, 47쪽

43 유미림, 2009, 앞의 글, 157~160쪽

44 손승철, 2010, 앞의 글, 296~299쪽

45 김호동, 2000, 앞의 글, 845쪽

46 배재홍, 2011, 앞의 글, 117~119쪽

47 백인기, 2013, 앞의 글, 166~168·174~179쪽

48 『한길택 생활일기』는 아직까지 자세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하루빨리 이 『한길택 생활일기』의 자세한 공개가 이루어져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표 2〉 기록으로 본 울릉도 수토 간격

번호	출 처	시 기	내 용
1	『속중실록』, 숙종 20년 8월 14일(기유)	1694	1·2년 간격 (間一二年搜討爲宜)
2	『속중실록』, 숙종 23년 4월 13일(임술)/ 『승정원일기』, 숙종 23년 4월 13일(임술)	1697	2년 간격(間二年入送)/ 2년 간격...3년에 한 번 (間二年入送...三年一次 定送爲式)
3	『승정원일기』, 숙종 24년 3월 20일(을미)/ 『승정원일기』, 숙종 24년 4월 20일(갑자)/ 『속중실록』, 숙종 24년 4월 20일(갑자)	1698	2년 간격 (間二年送人搜討事...其時定以間二 年入送/ 間二年看審定奪/ 定以間 二年送邊將搜討之)
4	『속중실록』, 숙종 28년 5월 28일(기유)	1702	2년 간격 (間二年使邊將輪回搜討已有定式)
5	『영조실록』, 영조 11년 1월 13일(갑신)/ 『승정원일기』, 영조 11년 1월 17일(무자)/ 『국조보감』 권61 영조조 5 을미 11년	1735	3년마다(定以三年一往)/ 3년마다(定式以三年一往)/ 1·2년마다(每一二年一搜討)
6	『강계고』, 울릉도	1756	3년마다(每三年一送)
7	『동국문헌비고』 권18 여지도13 관방3 해방 동해 울진	1770	3년마다(定爲法每三年一送)
8	『승정원일기』, 정조 2년 12월 20일(병자)	1778	3년에 한 번 (搜討乃是三年一次舉行之事)
9	『춘관지』, 울릉도쟁계 (『연려실기술』 별집 권17 변어전고 제도)	1744~1781 (1736~1806)	5년마다(每五年輪回一往)
10	『승정원일기』, 정조 9년 1월 10일(경신)	1785	1년 간격 (間一年舉行 自是定式)
11	『승정원일기』, 정조 10년 3월 10일(갑인)	1786	간년(搜討言之此是間年一行者)
12	『정조실록』, 정조 18년 6월 3일(무오)	1794	2년 간격 (搜討間二年使邊將 輪回舉行已有定式)
13	『승정원일기』, 정조 19년 6월 4일(계미)	1795	간년(間年搜討既是應行之例)
14	『승정원일기』, 정조 20년 6월 24일(무술)	1796	간년(搜討間年爲之)
15	『척주지』 하 울릉도	1848	3년 간격(間三年交互往來)
16	평해군수 심능무·이윤흠 영세불망지판	1870	3년 간격(間三年搜討)
17	평해군수 이용익 영세불망지판	1871	간년(間年行之)
18	월송영장 황공 영세불망지판	1872	간년(間年搜討)
19	전임 손주형·손중간·손수백 영세불망지판	1878	1년 간격(間一年搜討)
20	『울릉도 검찰일기』	1882	간년(間年搜討)
21	『수토절목』	1883	3년 간격 (間三年行之者乃是定式)
22	『울진군지』 해[원 평해] 기사	1939	3년마다(每三年一次搜討之行)

수 있으리라 여겨지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수토 초기에는 숙종(1697)이 정한 것처럼 1699년, 1702년, 1705년으로 2년 간격 3년에 1회 시행되는 ‘3년설’로 확인되며, 이후 3년 간격으로 살펴 보면, 숙종 34년(1708, 기록 없음), 숙종 37년(1711), 숙종 40년(1714, 기록 없음), 숙종 43년(1717, 흉년으로 정지)⁴⁹ 등으로 숙종대 말까지 계속 유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조대에 들어와 정조 23년(1799) 이후부터는 대체로 안정적으로 2년 후에 수토하고 있으며, 또한 가장 많은 ‘2년설’도 이후부터 대부분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숙종대 중엽인 17세기 말(1697)부터 2년 간격 3년마다 시행되던 수토 주기가 정조대 말, 즉 18세기 말에 와서 1년 간격 2년마다로 변경되었다고 보는 설은 타당하다. 그 시기를 더 좁혀보려면 1794년과 1799년 월송 만호가 연이어 수토하는 것이 단서가 된다. 윤희수토가 정식이므로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즉 여기에 3년설과 윤희수토를 대입하면 1797년에 삼척 영장이 수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1797년의 2년 후인 1799년에 수토하고 있으므로 2년설로 변경된 것은 1797년부터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 이는 정조대 말부터는, 울릉도 수토정책의 간격이 1년 단축되어 더욱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임금별 수토현황에서도 숙종대(5건) → 영조대(5건) → 정조대(6건) → 순조대(11건) → 헌종대(4건) → 철종대(1건) → 고종대(4건)로 정조 이후 순조 때 급격이 증가하며, 〈표 2〉의 현황에서도 숙종·영조 때 대부분의 2년 간격에서 정조·고종 때 1년 간격으로 다수 기록되는 것에서 추정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표 2〉에 보이는 주기의 차이는 왜 발생하였을까?

먼저 ‘간격’과 ‘마다’라는 용어의 혼돈으로 계산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간년이나 1~3년 간격은 그 숫자만큼의 해를 건너뛰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년 또는 1년 간격은 수토 후 1년을 걸러 다음 해, 즉 2년째·2년 후·2년마다와 같은 뜻이며, 2년 간격은 2년 걸러 3년째로 3년 후·3년마다와 동일하며, 3년 간격은 3년 걸러 4년째로 4년 후·4년마다와 같은 의미이다. 그러나 1~5년마다에서, 1년마다는 간격 없이 매년을, 2년마다는 1년 간격 2년째를, 3년마다는

49 『속중실록』, 숙종 43년(1717) 3월 17일 (임신)

2년을 걸러 3년째, 5년마다는 4년 간격으로 5년째 실시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기록자들이 이러한 '마다'와 '간격'에 혼동을 하여 잘못 계산하는 오류를 범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또한 선행 자료를 찾아보았더라도 <표 1>처럼 다양한 간격이 확인되므로 인해 <표 2>의 사료처럼 그 간격이 다양하게 기록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표 2>에서 27건 중 3년설이 1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기록자들이, 울릉도 수토정책이 처음 제도화되는 숙종 때, 즉 1697년의 기록을 무비판적으로 따랐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표 1>에서 보듯이 수토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의 사료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D) [...] 당초 갑술년(1694)에 무신 장한상을 파견하여 울릉도의 지세(地勢)를 살펴보고 하고, 왜인으로 하여금 그곳이 우리나라의 땅임을 알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내 2년 간격으로 변장(邊將)을 보내어 수토(搜討)하기로 했는데, [...] “금년이 마땅히 가야 하는 해이기는 하지만, 영동지방에 흉년이 들어 행장(行裝)을 차려 보내기 어려운 형편이니, 내년 봄에 가서 살펴보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에 그대로 따랐다.⁵⁰

E) 강원도 감사 조최수가 아뢰기를, “울릉도의 수토를 금년에 마땅히 해야 하지만 흉년에 폐단이 있으니, 청컨대 이를 정지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 “지난 정축년(1697)에 왜인들이 이 섬을 달라고 청하자, 조정에서 엄하게 배척하고 장한상을 보내어 그 섬의 모양을 그려서 왔으며, 3년에 한 번씩 가보기로 정하였으니 이를 정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겼다.⁵¹

위 사료 D·E에서 흉년이 발생하자 수토를 연기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사료 D의 수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해에 시행되었으나, 사료 E

50 『속중실록』, 숙종 24년(1698) 4월 20일(갑자). 그리고 『승정원일기』, 숙종 24년(1698) 4월 20일(갑자)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

51 『영조실록』, 영조 11년(1735) 1월 13일(갑신)

의 수토는 흉년이지만 결국 시행되었음을 <표 1>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수토할 그해에 흉년⁵² 등으로 인해 민폐 발생의 우려와 경제적 어려움 등 당시 사회상황을 고려하여 수토시기를 늦추었기 때문에 그 간격이 사료마다 다양하게 기록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 같다.

2. 울릉도 수토정책의 공간적 범위

1) 동해안 방어선상의 삼척 포영과 월송 포진

울릉도 수토시 수토시는 사료 C(1697)처럼 파견할 때마다 품지(稟旨)하여 임명하도록 하였다.⁵³ 그러나 숙종 24년(1698) 3월 좌의정 윤지선의 건의로 수토시는 강원도 변장(邊將) 중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결정되고,⁵⁴ 1702년에는 변장이 번갈아가며 윤희수토(輪回搜討)하는 것이 정식이라 하였다. 이는 다음의 기사에서 살펴볼 수 있다.

F) 삼척 영장 이준명과 왜역 최재홍이 울릉도에서 돌아와 [...] 바쳤다. 울릉도는 2년을 걸러 변장을 보내어 번갈아가며 수토(輪回搜討)하는 것이 이미 정식으로 되어 있어 올해는 삼척이 그 차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준명이 올진 죽변진에서 배를 타고 이틀 낮밤 만에 돌아왔는데, 제주보다 배나 멀다고 한다.⁵⁵

사료 F에서 ‘이미’ 변장의 윤희수토가 정식으로 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1698년부터 강원도 삼척 영장과 월송 만호가 번갈아 수토하도록 확정된 것 같다.⁵⁶ 이는 <표 1>에서도 쉽게 확인되며, 수토사를 품지하는 것은 시행도 못 해보고 변경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각종 사료에서 울릉도 수토는 삼척부의 삼척 영장과 평해군의 월송 만호가 교대로 파견되는 것으로 적히

52 『속중실록』, 숙종 24년(1698) 4월 20일(갑자); 『속중실록』, 숙종 43년(1717) 3월 17일(임신); 『속중실록』, 숙종 44년(1718) 2월 30일(기유); 『승정원일기』, 영조 10년(1734) 1월 14일(신묘); 『영조실록』, 영조 11년(1735) 1월 13일(갑신); 『국조보감』, 권61 영조조 5 을미 11년(1735); 『승정원일기』, 영조 40년(1764) 1월 16일(무진); 『승정원일기』, 영조 45년(1769) 1월 4일(무자); 『승정원일기』, 정조 2년(1778) 1월 10일(신미); 『승정원일기』, 정조 9년(1785) 1월 10일(경신); 『일성록』, 정조 10년(1786) 6월 4일(병자); 『척주선생안진주부선생안 부사 서노수

53 『승정원일기』, 숙종 23년(1697) 4월 13일(임술)

54 『승정원일기』, 숙종 24년(1698) 3월 20일(을미). 이후 『속중실록』, 숙종 24년(1698) 4월 20일(갑자)인 사료 D와 『승정원일기』, 숙종 24년(1698) 4월 20일(갑자)에 영의정 유상운도 변장을 보내어 울릉도 수토를 하도록 정해져 있다고 하였다.

55 『속중실록』, 숙종 28년(1702) 5월 28일(기유)

56 배재홍, 2011, 앞의 글, 116쪽

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 두 수군부대가 선정되었을까? 이는 다음의 동해안 방어의 연혁에서 추론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조선시대 강원도의 울진현과 평해군은 태종 13년(1413) 지방제도의 개편 시 삼척도호부의 관할하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세종 때 양계와 각 도(道) 연변의 군사적 요지를 상·중·하진(上·中·下緊)으로 구분하는데, 이때 하진에 속하게 된다.⁵⁷ 특히 조선은 각 도에 몇 개의 진(鎭)을 두고 부근의 여러 고을을 중·좌·우의 삼익(三翼)으로 구분하여 수비하였는데, 강원도는 인조 때부터 원주에 중영(中營), 철원에 좌영(左營), 삼척에 우영(右營)을 설치하였으며, 울진현의 울진 포진과 평해군의 월송 포진은 우영이 설치된 삼척부의 삼척 포진(三陟浦鎭) 관할하에 두었다. 삼척 포진은 지금의 강원도 삼척시 정라동에 위치하는데, 중종 15년(1520) 석성이 완공되며, 고종 광무 2년(1898) 건물이 불타 없어지고 대한제국기에 군사 개편으로 폐지되었다.⁵⁸ 하지만 고지도에서 그 현황을 살펴볼 수 있으며, 지금은 삼척항 개발로 인해 그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다(그림 11).

최근에 울진 포진과 월송 포진의 일부가 발굴조사되었다. 그런데 북쪽(당시 울진현)에 위치한 울진 포진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일찍 폐지(1627)되었다. 하지만 남쪽(당시 평해군)에 있는 월송 포진은 이미 소개한 조선시대 산수화와 고지도에서 보듯이 늦은 시기까지 운영된다. 즉 월송 포진은 『대동지지』⁵⁹와 『관동읍지』⁶⁰에 기록되고 『승정원일기』⁶¹·『일성록』⁶²·『강원도관초』⁶³·『고종실록』⁶⁴ 등에서 계속해서 월송 만호가 임명되는 것에서 19세기 말까지 존속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고종 19년(1882) 4월 27일 이규원이 월송진을 방문하였는데, 벌써 건물은 거의 무너져 제 모습을 잃었고 성루는 그 형체만 남아 있을 뿐이며, 월송정은 오래전에 무너져 그 터만 남았다⁶⁵라는 상황과

57 이준희, 1990, 『조선시대 지방행정제도 연구』, 일지사, 140쪽

58 배재홍, 2007, 『제2장 삼척 오하리산성에 대한 역사적 고찰』, 『조선시대 삼척지방사 연구』, 도서출판 우물이 있는 집, 48~59쪽; 유재춘, 2010a, 『동해안의 수군 유적 연구-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이사부와 동해』 창간호, 한국이사부학회, 31·42~43쪽; 유재춘, 2010b, 『삼척 지역 일대 성곽 및 수군 유적 연구』, 『이사부 삼척 출항과 동해 비전』, 한국이사부학회, 150~152쪽

59 『대동지지』(1864) 권16 강원도 평해 진보

60 『관동읍지』(1871) 평해군 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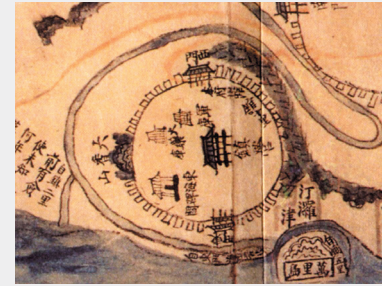
61 『승정원일기』, 고종 11년(1874) 12월 17일(병술)

62 『일성록』, 고종 25년(1888) 6월 15일(을미)

63 『강원도관초』, 경인(1890) 8월 7일

64 『고종실록』, 고종 32년(1895) 1월 29일(신축)

65 이규원, 『울릉도검찰일기』



① 삼척진영 지도 세부(18세기 후반)

② 삼척 포영이 있었던 현 위치(남→북)

〈그림 11〉 삼척 포영의 고지도와 현 위치

1904년에는 건물이 거의 다 없어지고 관아 건물 12칸과 창고 4칸만 남았다⁶⁶는 것으로 보아 늦어도 1882년 이전에 그 기능을 상당부분 상실한 것 같다.

이렇게 강원도 영동의 동해안을 포괄하여 다스린 중심 부대는 삼척 포영이었으며, 그 하부조직으로 울진 포진과 월송 포진이 있었다. 울릉도를 속도(屬島)로 갖고 있는 울진 현령(1882년에는 평해군으로 이관)을 수도시 파견하지 않고 삼척 영장과 월송 만호를 파견하게 된 까닭은 당시 동해안의 경비를 수군(水軍)이 맡아 하였기 때문이며, 울릉도를 수토할 시점(1694)에는 울진 포진이 이미 폐지(1627)되었기 때문에 삼척 포영과 월송 포진이 수토를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울릉도 수도시 원거리와 난류로 인해 많은 인력과 경비, 시간 등이 소모되므로 그 피해를 줄이고자 두 수군 부대를 교대로, 즉 유희수토를 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2) 수토사의 출발지 변천

한편, 조선시대 울릉도로 가는 동해안의 출발지가 당시 삼척부의 장오리진, 울진현의 죽변진과 울진포, 그리고 평해군의 구산포 등 여러 곳이 사료에서 확인된다.

먼저 수토정책의 일환은 아니지만, 조선 초 성종 3년(1472) 삼봉도(독도)⁶⁷를 찾아나선 박종원 일행이 울

66 『평해고지』 권2 평해군월송진보수호장정

67 신용하, 1997,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81~87쪽; 김호동, 2007, 앞의 책, 78~79쪽



① 삼척 삼척항 원경(남→북)



② 삼척 장호항 원경(북→남)



③ 울진 죽변항 원경(남→북)



④ 울진 왕피천 하구와 비래봉(남→북)



⑤ 울진 구산항 원경(남→북)



⑥ 복원 후 울진 대풍현 전경(남→북)

<그림 12> 울릉도 출발지인 현재 항구의 전경

진포(蔚珍浦)에서 출발하여 간성군의 청간진과 강릉 우계현의 오이진으로 돌아왔다.⁶⁸ 이로 보아 울릉도로 갈 때는 당시 울진현의 울진포에서 출발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곳은 지금의 경북 울진군 왕피천 하구(그림 12-④)다. 이후 중종 7년(1512) 울진포에는 고

68 『성종실록』, 성종 3년(1472) 6월 12일 (정축)

현포에 있던 울진 포진을 이축하였는데, 그 포진성터가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 비래봉(그림 12-④)에 남아 있다.

그리고 수토정책의 일환으로 최초로 울릉도 수토관으로 파견된 삼척 영장 장한상이 숙종 20년(1694) 삼척부의 남면 장오리진(莊五里津) 대풍소(待風所)에서 출발하고 있는데,⁶⁹ 지금의 강원도 삼척시 장호리에 있는 장호항(그

림 12-②)⁷⁰이 바로 그곳이다. 또 월송 만호 전회일이 숙종 25년(1699) 울릉도를 수토하고 돌아온 곳이 대풍소로⁷¹ 이는 바로 대풍현(그림 12-⑥)이 있는 경북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의 구산포(구미포=구미진, 지금의 구산항)를 말한다. 이는 수토를 담당했던 월송 포진이라는 수군부대가 바로 인접해 있었기 때문으로 출발지도 이 구산항(그림 12-⑤)이었을 것이며, 정조 10년(1786) 월송 만호 김창윤이 평해 구미진에서 출항하는 것⁷²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순조 19년(1819) 삼척 영장 오재신이 울릉도로 가기 위해 평해로 떠났다⁷³고 한 것으로 보아 구산포에서 출항하기 위한 것일 것이며, 수토사는 아니지만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이 1882년 4월 구산포에서 출발하기도⁷⁴ 한다.

그리고 울진현 죽변진(竹邊津)에서도 출발하는 것이 확인된다. 즉 숙종 28년(1702) 삼척 영장 이준명이 죽변진에서 출항하고⁷⁵ 영조 41년(1765) 삼척 영장 조한기가 죽변진에서 출항하며,⁷⁶ 정조 11년(1787) 삼척에서 임시 수토할 때도 죽변진에서 출발하고⁷⁷ 있다. 죽변진은 지금의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의 죽변항(그림 12-③)으로 삼척시와 가장 가까운 곳이다.

이와 같이 수토시 울릉도로 출발하는 동해안의 출발지가 삼척부의 장오리진, 울진현의 죽변진과 평해군의 구산포 등 일정하지 않다. 물론 삼척 포영이 있던

69 장한상, 『울릉도사적』, 박세당, 『서계잡록』 울릉도

70 한글학회, 1967, 『한국지명총람』 2(강원편), 153쪽

71 『숙종실록』, 숙종 25년(1699) 7월 15일 (임오)

72 『일성록』, 정조 10년(1786) 6월 4일(병자)

73 『한길덕 생활일기』, 순조 19년(1819) 윤 4월 9일

74 이규원, 『울릉도검찰일기』

75 『숙종실록』, 숙종 28년(1702) 5월 28일 (기유)

76 『와유록』 「울릉도 수토기」에 삼척 영장 조한기의 출항지가 나오는데, 1765년 4월 4일 삼척을 출발하여 4월 5일 '울진현'에 이르니 4척의 배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날씨가 인해 출항하지 못하고 계속 머무르다가 4월 15일 새벽에 서남풍을 타고 출발하였고, 울릉도에서 육지 쪽으로 다시 온 것은 4월 24일로 '월송'을 보았으며, 4월 26일에 본진(삼척 포영)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여기서 울릉도에서 돌아온 방향인 '월송'은 당시 평해군에 속해 있었고 이미 여러 척의 배가 울진현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울진현에서 출항한 것은 분명하다. 만약 평해군 월송(구산항)에서 출항했다면, 북쪽인 울진현까지 와서 기다릴 필요가 없으므로 울진현의 항구는 '죽변진'으로 추정된다.

77 『한길덕 생활일기』, 정조 11년(1787) 8월 12일

삼척포도 그 출발지가 되었을 것이다. 삼척포는 지금의 강원도 삼척시 삼척항(일명 정리항)(〈그림 12-①〉)이다.

또 수토사의 출발지가 주로 울진지역(평해군·울진현)⁷⁸인 것은 다음의 사료가 주목된다.

G) 강원도 어사 조석명이 영동지방의 해방(海防)의 허술한 상황을 논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물가 사람(浦人)의 말을 상세히 듣건대, ‘평해·울진은 울릉도와 거리가 가장 가까워서 뱃길에 조금도 장애가 없고, 울릉도 동쪽에 섬이 서로 보이는데, 왜경(倭境)에 접해 있다’고 하였습니다. [...] 왜선(倭船)의 왕래가 빈번함을 알 수 있는 [...] 후일의 변란이 반드시 영남에서 말미암지 않고 영동으로 말미암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방어의 대책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하니, 묘당(廟堂)에서 그 말에 따라 강원도에 신칙하여 군보(軍保)를 단속할 것을 청하였다.⁷⁹

이 사료 G는 숙종 40년(1714)에 이미 울진지역이 울릉도와 가장 가까운 곳이고, 또 이 지역의 뱃길이 가장 안전하여 순탄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그 출발지가 주로 울진지역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월송 만호는 처음부터 구산포에서 출항하였지만 삼척 영장은 초기에는 삼척에서 출발하다가 18세기 들어와 남쪽인 울진 죽변진으로 내려오며, 19세기에는 이보다 더 남쪽인 평해 구산포에서 출발하는 변화를 보인다.

그럼 언제부터 월송 만호와 삼척 영장 모두가 ‘구산포’를 그 출발 기점으로 삼았을까?

19세기 초부터는 삼척 영장이 구산포에서 출항한다. 그리고 대풍헌 소장 현판과 「수토절목」·「완문」 및 거일리 고문서, 그리고 『울진군지』 수토전설 등의 자료로 보아 19세기 말까지 계속해서 월송 만호와 삼척 영장 모두 구산포에서 출발하고 있다. 배재홍⁸⁰은 그

78 이 글에서 사용한 ‘울진지역’은 지금의 울진군 영역을 말하는 것으로 이하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지금의 울진군은 조선시대 북쪽의 울진현과 남쪽의 평해군이 1914년에 통합된 것이다(심현용, 2012, 『경북 울진군의 연혁에 대한 재검토』, 『울진사향』 3, 울진문화원 울진향토사연구회).

79 『속중실록 보궐정오』, 숙종 40년(1714) 7월 22일(신유)

80 배재홍, 2011, 앞의 글, 12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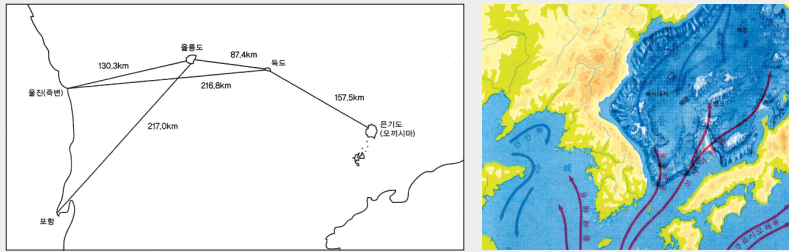
시기를 19세기 이후로 보았다. 하지만 1787년까지 삼척 영장이 죽변진에서 출항하다 1819년에 들어와 갑자기 구산포로 그 출항지를 바꾸는 것과 후술하는 사료 I(1799)에 진두에서 대풍(待風)할 때 민간에서 양식값을 거둔다는 기사⁸¹로 보아 늦어도 1787~1799년 사이, 즉 18세기 말에 그 기점이 구산포로 정해져 삼척 영장과 월송 만호가 모두 이곳에서 출항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

이렇게 삼척 영장과 월송 만호가 모두 구산포에 와서 대풍헌에서 순풍(順風)을 기다리며 머물렀다가 울릉도로 출발하게 된 것은 수토 초기에는 단순히 두 포진(浦鎭)이 있는 가까운 항구에서 출발하다가 이후 사료 G와 같이 동해의 항로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어 울진지역이 거리상으로 울릉도와 가장 가깝고 또 구산포에서 출발하는 것이 해로(海路)상 가장 안전하고 순탄한 것을 터득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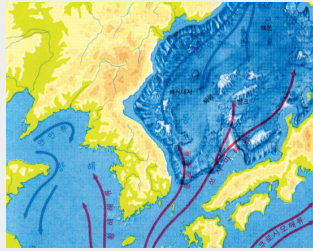
조선시대에 축적된 거리와 해로에 대한 정보는 현대의 과학적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즉 육지와 울릉도·독도의 거리는 1998년 국립해양조사원의 우리나라 영해기점 조사측량(〈그림 13-①〉)에서 사실로 밝혀졌다. 육지에서 울릉도와 가장 가까운 곳이 죽변으로 그 거리는 130.3km이며, 죽변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216.8km이다. 그리고 해로에 대해서는 지금 동해안의 해류(〈그림 13-②〉)를 살펴보아도 짐작할 수 있는데, 현재의 동해안 해류는 북쪽의 북한 한류와 남쪽의 동한 난류가 울진 앞바다에서 만나 울릉도·독도 쪽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해류의 흐름에 대해 조선시대 수토사들은 여러 번 울릉도로 항해하면서 파악하였던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현재 운행되고 있는 울진(후포항)·강릉(강릉항) ↔ 울릉도(저동항), 포항(포항구항)·동해(목호항) ↔ 울릉도(도동항) 간 선박의 항해노선과 울릉도(도동항) ↔ 독도 간 선박의 항해노선도(〈그림 13-③〉)에서 유추해보면 조선시대의 울릉도 수토사들의 항해 노선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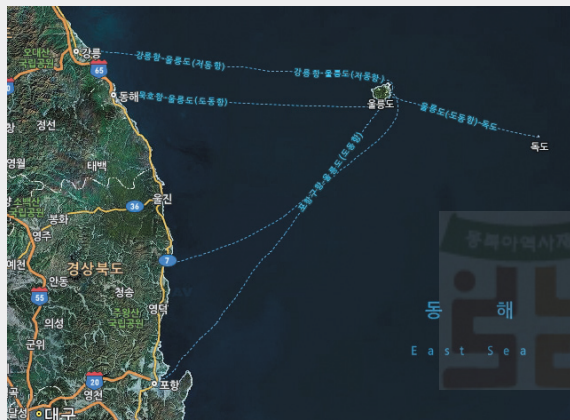
81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울진 대풍헌 소장 고문서와 현판들인데, 이로 보아 사료 I의 ‘진두(津頭)’는 ‘평해 구산포’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1799년에는 모두 구산포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육지와 울릉도·독도의 거리⁸²



② 동해안의 해류⁸³



③ 육지에서 울릉도·독도로 가는 항해 노선도(출처: 네이버 지도)

<그림 13> 울릉도·독도의 거리와 동해안 해류

3. 수토시 울릉도의 행정체제와 지역민의 역할

1) 울릉도의 행정체제

지금의 울진과 울릉도의 역사적 첫 만남은 현존 문헌기록으로는 『고려사』⁸⁴가 최초의 자료다. 여기에 울릉도·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섬은 고려시대부터 울진의 관할 행정구역으로 포괄되어 있었음⁸⁵을 알려준다. 그리고 울릉도는 고려 전기 ‘1032~1141년’ 사이에 울진현의 행정체

82 문화재청, 2009, 『한국의 자연유산 독도』, 49쪽의 <그림> ‘독도와 주변 지역 사이의 거리’

83 김상호 외, 1985, 『고등 학교 사회과 부도』, 금성교과서(주), 22쪽의 <그림> ‘② 해저지형과 해류’

84 『고려사』 권58 지리3 동계 울진현. 그러나 『고려사』(1451) 완성 이전의 『세종실록지리지』 권153 강원도 삼척도호부 울진현에 이미 나와 있으므로 현존 문헌상 『세종실록지리지』(1432)가 가장 빠르다. 하지만 『고려사』는 고려 왕조의 실록을 참고하여 만든

제에 들어온 것 같다.⁸⁶ 조선시대 들어와 고려의 5도 양계체제가 8도 체제

것이며, 이 『고려사』에 이미 고려시대에는 울진현에 소속된 것으로 기록되므로 필자는 여기서 『고려사』가 최초의 것이라 하였다.

85 당시의 울릉도·독도는 고려시대 5도·양계 체제하에서 일반적인 군현과 같은 행정체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군사조직체로서 동계 감창사의 관할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울릉도는 삼척·울진·평해 등지의 방어전선의 일원으로 묶여 있었던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그 조직체계는 동계의 명주도에 울진현을 경유하여 도달하게 되는 하부의 조직단위, 군령집단으로 동해안 방위체계의 일원에 편제되어 있었던 것이다(김윤곤, 1998, 『우산국과 신라·고려의 관계』, 『울릉도·독도의 종합적 연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40쪽; 김호동, 1998, 『군현제의 시각에서 바라다 본 울릉도·독도』, 『울릉도·독도의 종합적 연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56쪽). 이에 대해 이병후(2002, 『울진지역과 울릉도·독도와의 역사적 관련성』, 『역사교육논집』 28, 역사교육학회, 164쪽)는 울릉도(독도)가 고려시대의 군현 행정체계상 주읍·속읍의 관계는 아니더라도 울진현의 중속적 도시나 진성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았다.

86 심현용, 2012, 앞의 글, 125~127쪽

87 『태종실록』, 태종 3년(1403) 8월 11일(병진)

88 『세종실록지리지』(1432) 강원도 삼척도호부 울진현

89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권45 강원도 울진현 산천

90 『숙종실록』, 숙종 20년(1694) 8월 14일(기유)

91 『승정원일기』, 고종 19년(1882) 8월 20일(계유)

92 『강원감영관첩』 제6책 임오(1882) 9월 초 9일 도부

로 바뀌면서 울릉도에 대한 관할권이 동계에서 강원도로 이관된다.⁸⁷ 그렇다면 조선시대 군현체계상 강원도에 속한 울릉도의 통치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사되었는지 살펴보자. 이는 『세종실록지리지』 울진현에서 최초 확인된다.

H) [...] 우산과 무릉 두 섬이 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 우산국, 또는 울릉도라 하였는데, 지방(地方)이 1백 리며, [...]].⁸⁸

사료 H에서 우산과 무릉 두 섬이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신라 때 우산국 또는 울릉도라 한다는 내용으로 울릉도·독도가 울진현 관할이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조선시대 대표적인 관찬사료인 『신증동국여지승람』⁸⁹에서 이 기록을 그대로 잇고 있다. 이것은 숙종 20년(1694)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⁹⁰에서도 재확인되며, 이후 다수의 사료에서 확인된다. 그러므로 울릉도·독도는 강원도 울진현의 속도로서 군현제의 틀 속에 엄연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 속읍과 달리 태종 3년(1403) 3월의 조처 이후 쇠퇴정책으로 인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읍(設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에 울릉도의 행정체제가 정립되기 시작한다. 즉, 울릉도는 임오군란이 수습된 직후인 고종 19년(1882) 8월 20일 영의정 홍순목이 울릉도 개척방안을 제안하여⁹¹ 도장에 전석규가 임명되고⁹² 울릉도가 울

진현에서 평해군으로 관할 소속이 바뀐다.⁹³ 1884년 3월에는 삼척 영장이 울릉도 첨사를 겸직하게 되며,⁹⁴ 그해 6월에는 평해 군수가 울릉도 첨사를 겸직하고⁹⁵ 1888년 2월에는 월송 만호가 울릉 도장을 겸임하는⁹⁶ 변화를 겪는다. 다시 1895년 1월에는 월송 만호가 겸하고 있는 도장을 폐지하고 별도로 전임 도장을 두었으며,⁹⁷ 그해 8월에는 도장의 명칭을 도감으로 고쳤다.⁹⁸ 그리고 고종 광무 4년(1900) 10월 25일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울도군으로 승격시켜 행정체제상 완전한 설음이 이루어졌다. 1907년에는 그동안 강원도에 속해 있던 것을 울릉군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경상남도로 이속시킨다.⁹⁹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울릉도는 많은 변화를 겪는데, 사료상에 나타나는 이러한 행정체제의 변천이 사실인지 유물로 입증해보자.

먼저 ‘울릉도 태하리 광서명 각석문’을 살펴보겠다. 여기에 ‘行平海郡守兼鬱陵島僉使 趙公鍾成 永世不忘碑’와 ‘行越松萬戶兼島長檢察官徐敬秀’라는 두 인물이 보이는데, 사료의 내용을 입증한다. 조중성은 『일성록』에 고종 27년(1890) 8월¹⁰⁰ 평해 군수가 되고 1892년 12월¹⁰¹ 울릉도 특별 수검을 맡고 1893년 3월¹⁰² 수도한다. 이때 조중성은 울릉도 사검관(鬱陵島查檢官)을¹⁰³ 겸직하고 있었으며, 1894년 7월¹⁰⁴ 내금장에 제수된다. 그러므로 조중성의 암각 시기는 1893년으로 볼 수 있다. 또 이로 보아 평해 군수가 울릉도 첨사를 겸직하는 1884년 6월~1888년 2월 이외에 월송 만호가 울릉 도장을 겸직하는 1888년 2월~1895년 1월 사이에 다시 평해 군수가 울릉도 첨사(사검관)를 겸직하는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서경수도 월송 만호가 울릉 도장을 겸직한

기간인 1888년 2월~1895년 1월 사이에 월송 만호와 도장을 겸임하면서 울릉도를 수도하였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서경수는 『고종실록』과 달리 고종 24년(1887) 7월¹⁰⁵에 이미 도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고종 25년(1888) 5월 21일 울릉도에 들어가서 6월 19일 돌아오는 것¹⁰⁶으로

보아 서경수의 암각 시기는 1888년 5~6월로 볼 수 있다.

또 ‘울진 운암서원 쌍절기 현판’이 있다. 이 현판은 맨 끝에 ‘[...] 上之二十一年甲申十月 日/ 通政大夫行平海郡守兼鬱陵島鎮水軍僉節制使/ 東陽申相珪敬記’라고 적혀 있어 고종 21년(1884) 10월에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평해 군수 신상규(1838~?)의 재임 기간인 1884년 8월 13일~1885년 3월 17일¹⁰⁷ 사이에 작성되었으며, 평해 군수가 울릉도 첨사를 겸직한 사료의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평해 군수 겸 울도 첨사 심의완 영세불망비’를 살펴보자. 이 불망비는 고종 22년(1885) 10월에 세워졌는데, 전술한 평해 군수가 울릉도 첨사를 겸직한 사료의 내용을 입증하는 금석문이다. 심의완은 고종 22년(1885) 3월 28일 평해 군수로 부임하였으나, 1886년 1월 14일 강화 판관으로 이동하여 갔다.¹⁰⁸ 그리고 심의완은 『울릉도 검찰일기』에서 1882년 4월 29일 이규원과 함께 평해 구산포를 떠나는데, 이는 ‘울릉도 태하리 임오명 각석문(1882. 5)’에서도 그의 이름이 확인되며, 당시 그는 중추도사였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 따라 그가 평해 군수로 부임하게 된 것 같다.

또 『울진군지』에 기록된 수도 관련 전설¹⁰⁹에서도 울진지역과 울릉도의 체제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수도전설에 평해 군수나 월송 만호가 울도 첨사를 겸임한다

93 『강원감영관첩』 제6책 임오(1882) 10월 도부

94 『고종실록』, 고종 21년(1884) 3월 15일 (경인)

95 『고종실록』, 고종 21년(1884) 6월 30일 (임인)

96 『고종실록』, 고종 25년(1888) 2월 6일 (무자)

97 『고종실록』, 고종 32년(1895) 1월 29일 (신축)

98 『고종실록』, 고종 32년(1895) 8월 16일 (갑신)

99 그리고 1914년 3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로 경상남도 울릉군은 경상북도 울릉군으로 이속되어 지금까지 경상북도 관할구역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1915년 5월 1일 관제개정으로 부군도제(府郡島制)가 실시됨에 따라 군을 폐지하는 대신 도제로 개편할 때 울릉군을 제주도와 더불어 울릉도(鬱陵島)로 개편하였다. 광복 후 정부가 수립된 이후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 제145조에 의해 울릉도는 울릉군으로 환원되는 등 행정적으로 여러 번 변화를 겪었다.

100 『일성록』, 고종 27년(1890) 8월 8일(을사)

101 『강원도관초』, 임진(1892) 12월 9일

102 『강원도관초』, 계사(1893) 3월 12일; 『강원도관초』, 계사(1893) 9월 20일

103 『강원도관초』, 계사(1893) 11월 8일; 『일성록』, 고종 30년(1893) 11월 9일(정해)

104 『일성록』, 고종 31년(1894) 7월 5일(기해)

105 『강원도관초』, 정해(1887) 7월 26일. 서경수는 1888년 6월 『일성록』, 고종 25년(1888) 6월 15일 월송 만호의 직분이 보이고, 1889년 7월 『강원도관초』, 기축(1889) 7월 17일 월송 만호 겸 울릉도 도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1889년 7월 『강원도관초』, 기축(1889) 7월 25일에는 울릉도 내 일본인의 작폐에 대해 보고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파직되나, 1890년 8월 『강원도관초』, 경인(1890) 8월 7일에는 서경수의 직분인 월송 만호 겸 울릉도 도장의 임기가 현재 다 되었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106 『강원도관초』, 무자(1888) 7월 10일

107 울진군지편찬위원회, 2001, 『울진군지』 하, 울진군, 425쪽

108 울진군지편찬위원회, 2001, 위의 책, 425쪽

109 남석하 외, 1939, 『울진군지』 하(원명해) 기사. “鬱島僉事(필자주: 事는 使의 오류)은 郡守或萬戶例兼而每三年一次搜討之行에 盛陳威儀하야 侯風於邱山洞舍하야 發向東北間하니 遇順風則二日後可泊이라 古有一郡守이 帶知印同去竣事하고 回船之際에 錯留烟管於館所하고 使知印으로 還推而久久不返일새 卽使隸卒로 四下尋覓 호되 竟無形迹故로 留待幾日에 落莫而歸矣러니 三年後에 復往搜討則昔日知印이 忽地迎認이어늘 且驚且喜하야 詰問其由則推還烟管하고 路經古祠러니 適有一少女緊抱腰脊하야 不許放過하야 不得已落在島下하야 與女同居이 今至三年云而盛稱水國이 使於大陸이라하고 因返還烟管하니 忽又不見이라 郡守悅德訾訝하야 謾不知是人是鬼而無從調得일새 嘆咄歸還云이라.”(出東文雜誌)

고 하였는데, 이로 보아 이 전설의 시기는 평해 군수가 겸임하는 1884년 6월 30일 이후와 월송 만호가 겸임하는 1888년 2월 6일 이후로 좁혀 볼 수 있다. 하지만 평해 군수가 겸임하는 것보다 늦은 시기에 월송 만호가 겸직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더 좁혀서 1888년 2월 6일 이후의 전설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전술한 울릉도 행정체제의 변화에서도 울릉도 수토정책이 울진지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울진 지역민의 역할

그렇다면 이렇게 울릉도 수토정책이 실시되면서 밀접히 연결된 울진 지역민의 역할은 어떠했는지 살펴보자.

울진지역과 삼척의 두 포구는 적이 통과하는 요충지인데, 조선시대 사변이 생기면 그 형세가 매우 어려워 전술하였듯이 울진지역과 삼척에 수군을 전담하는 포진을 설치하여 방어에 충실을 기하고자 했다. 특히 울진지역을 지키지 못하면 영동·영서지방 모두가 적의 공격을 받기 쉬웠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울진지역은 국방상으로 중요한 요충지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이곳 지역민들은 울릉도의 수토에 기여하게 되었다.

19세기 중·후반의 「완문(1871)」·「수토절목(1883)」·「구암동 김중이 각양 공납초출(1893)」·「공납정책 개국 오백사년 을미 십일월 이십팔일(1895)」 등의 고문서와 「구산동사 중수기(1851)」·「평해 군수 심능무·이윤흡 영세불망지판(1870)」·「월송 영장 장원의 영세불망지판(1870)」·「평해 군수 이윤익 영세불망지판(1871)」·「월송 영장 황공 영세불망지판(1872)」·「전임 손주형·손중간·손수백 영세불망지판(1878)」·「도감 박억이 영세불망지판(1878)」·「구산동사기(1888)」 등의 현관 내용¹¹⁰을 살펴보면, 울릉도 수토시 구산동을 포함한 대풍현 주변 9개 마을, 즉 울진 지역민이 막중한 경비를 부담하고 일정부분 업무도 맡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나온다. 이는 이미 18세기 말의 사료에서도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에 울릉도를 수토하는 것은 월송 만호가 할 차례인데, 채삼절목(採參節目) 가운데에는 단지 ‘영장이 갈 때에 채삼군(採參軍)을 들여보낸다’는 말만 있고, 만호가 갈 경우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는데, [...] 강릉은 5명, 양양 8명, 삼척 10명, 평해 4명, 울진 3명씩 나누어 정해 보내는데, 이들은 모두 풍파에 익숙하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 간간이 빠지려고 하는 자가 많다. 그러므로 채삼군을 가려 뽑는 담당관이 중간에서 조종하며 뇌물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진두(津頭)에서 바람을 기다릴 때에는 양식 값이라고 하면서 민간에서 거두어들인다. [...] 좌의정 이병모가 아뢰기를, “지금의 삼정(參政)은 [...] 백성들에게 폐단을 끼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수토하는 것은 전과 같이 영장과 만호를 차례대로 보내 거행하게 하고 [...]” 하니, 따랐다.¹¹¹

사료 I에서 보듯이 울릉도 수토는 지방민에게 경비부담과 부역을 제공하게 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가져다주었다. 이는 지속되어 전술한 울진 거일리 고문서, 대풍현 소장 고문서와 현관에 그 실상이 자세하다. 그중 가장 힘든 것이 수토시 일행들이 순풍(順風)을 기다리며 구산항의 대풍현에 머물 때의 경비부담이었다. 수토사가 유숙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주민이 접대하는 비용이 양일에 100금이나 지출될 때도 있어 주민들은 이러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평해 관아에 진정하는 등 대풍현 주변 주민의 고충과 불편함은 대풍현 소장 「수토절목」과 「완문」에서 파악되듯이 실로 상당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평해군 관아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구산동과 그 주변 8개 마을에 풀되 이율도 정해주고 또 발생한 이자를 경비로 충당하게 하였다. 또 9동이 담당하는 경비를 줄여주기 위해 항구에 정박하는 선박에 세금을 거두어 수토시 보충하게 하는 절목도 만들어주는 정책을 내놓기도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민(民)의 어려움을 파악한 평해 군수 심능무·이

윤익·이윤흡과 월송 영장 장원의·황공 등의 현관들도 있어 울릉도 수토시 부담하는 경비에 보태도록 돈

1) 강원 감사 윤필병이 비변사에 공문을 보내기를, “금년

¹¹⁰ 심현용, 2008b, 앞의 글; 심현용, 2010a, 앞의 글

¹¹¹ 『정조실록』, 정조 23년(1799) 3월 18일 (병자)

과 경작지를 지급하여 그 폐단을 줄이는 등 백성들을 돌보았으며, 특히 월송 영장 장원익은 솔로서 그들의 고충을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관(官) 뿐만 아니라 민에서도 도움이 이어졌다. 즉 구산동 주민 중 전임 손주형·손종간·손수백과 도감 박억이 등은 스스로 돈과 논을 내어 수토시 주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지방의 유지로서 모범적인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울릉도 수토의 업무가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깊이 스며들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군·관·민이 단합하여 수토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특히 울진 지역민의 협조는 동해안 해상의 전초 지역인 울릉도에 대한 국가의 수토정책이 원활히 유지 및 지속될 수 있게 일조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오늘날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토'로 공고히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여겨진다.

이와 같이 울릉도 수토시 울진 지역민이 경비의 부담과 부역 등 수토사를 접대하는 고충과 불편을 무릅쓴 가장 큰 이유는 국가의 영토를 지키고자 한 백성의 도리를 행하는 데 주체적으로 나서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구산항 주변 마을 사람들은 대풍헌을 제당(사당) 격으로 모시며 자발적으로 관리해오고 있으며, 조선시대 울릉도 수토시에 마을 주민들이 관·군을 도운 것에 대하여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울진군청에서 대풍헌을 해체복원(2008. 11. 7~2010. 1. 8)하자 구산동민들은 스스로 사비를 털어 '대풍헌 중건 복원기' 현판을 제작(2010. 1. 13)하여 대풍헌 안에 게관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역사적 전통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IV. 맺음말

울릉도 수토정책은 조선 후기 안용복의 활동 이후 제도화되어 약 200년간 동해안의 삼척 진장과 월송 만호에 의해 지속되어 왔다. 이는 조선시대에 울릉도(독도)를 우리 영토로 관리하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국토

방위의 군사정책이다. 그동안 이 울릉도 수토제도에 대한 연구는 문헌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필자는 문헌기록의 사실 증명을 위해 고고학적 자료인 포진성 유적과 석비, 각석문, 현판, 산수화 등의 유물을 가지고 문헌자료와 비교해가며 몇 가지 문제를 시·공간적으로 검토해보았다. 특히 이번 에 소개한 고고·문자자료는 필자가 찾아내거나 개별적으로 알려져 있어 학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며, 또한 일부 오류로 인해 잘못 알려져 있어서 연구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앞으로 이를 활용한 연구와 좀 더 많은 자료가 조사되어 수토 연구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맺음말을 대신하여 검토 결과를 정리해보겠다.

첫째, 울릉도에 대한 조선의 수토정책은 1694년 시작되었으나, 이 제도의 폐지 시점은 1894년 12월 27일이 아니라 1895년 11월 28일까지 계속 해서 실시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 이유는 울진 거일리에서 발견된 「공납정책 개국 오백사년 을미 십일월 이십팔일」 고문서를 그 근거로 들었다.

둘째, 울릉도 수토 간격은 문헌에 그 주기가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는 흉년 등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 반영되어 일정하지 않은 것이며, 실제 수토 현황과 고문서·현판·문헌 등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초기에는 3년설이 정식이었으나, 1797년 이후로는 1년을 걸러 2년 후에 가는 2년설로 변경되었음을 주장하였다.

셋째, 울릉도 수토 담당 부대로 수군인 삼척 포영과 월송 포진이 선정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두 포진이 동해안의 방어선상에서 경비를 담당하였던 군인(수군)이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특히 월송 포진의 존속과 모습에 대해서는 정선과 정충엽 등이 그린 산수화를 소개하였다.

넷째, 울릉도 수토 출항지는 삼척의 삼척포·장오리진, 울진의 죽변진, 그리고 평해의 구산포로 다양하나 18세기 말인 1787~1799년부터는 삼척 영장과 월송 만호 모두 구산포에서 출항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수토사들이 여러 번 수토해오면서 획득한 경험을 통해 이때쯤 동해 해류에 대한 지식이 확보되어 가장 안전한 뱃길을 선택했기 때문으로 파악하였다.

다섯째, 19세기 후반~20세기 초의 울릉도 행정체제 중 평해 군수나 월송 만호가 울릉 도장을 겸직하는 문헌사료에 대해 울릉도의 '태하리 광서명 각석문'과 울진의 '운암서원 쌍절기 현판'·'평해 군수 겸 울도 첨사 심의완 영세불망비' 등의 유물과 울진에 전해오는 '수토전설'을 근거로 이를 입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울릉도 수토시 울진 지역민들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당시 울진 대풍헌 주변 백성들은 울릉도 수토사 일행의 경비를 부담하고 부역을 담당하는 고충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평해 군수와 월송 영장 등의 현관과 지역 유지들도 지역민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동참하였다. 이러한 지역민의 역할은 국가가 울릉도 수토정책을 원활히 유지하는 데 일조하여 국토 방위라는 백성의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한 것에 그 의의를 두었다.

국문 초록

조선시대의 울릉도 수토정책에 대한 연구는 학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대부분 문헌기록 중심이었으며, 특히 19세기 울릉도 수토는 기록의 빈약함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최근 울진 대풍헌에서 19세기의 울릉도 수토와 관련한 다수의 현판과 고문서가 발견되어 조선 말 울릉도에 수토사를 파견하여 국가의 고유 영토로서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을 파악하게 되어 선행연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줄 수도 하였다.

이 글은 필자가 학계에 소개한 대풍헌 소장 현판과 고문서, 그리고 이번 에 추가로 소개하는 석비, 산수화, 현판, 고문서 등의 자료를 가지고 문헌사료와 비교하면서 조선시대 울릉도(독도) 수토정책에 대한 선행연구에서의 몇 가지 문제를 시·공간적으로 재검토해본 것이다.

첫째, 울릉도에 행해진 조선시대의 수토정책은 1694년에 시작되었으나, 폐지 시점은 사료의 기록처럼 1894년 12월 27일이 아니라 1895년 11월 28일까지 계속해서 실시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 근거로 「공납정책 개국 오백사년 을미 십일월 이십팔일」이라는 고문서를 들었다. 또한 수토 간격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지만 초기에는 3년설이 정식이었으나 1797년 이후로는 2년설로 바뀐 것으로 보았다.

둘째, 울릉도 수토 담당으로 삼척 포영과 월송 포진이 선정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두 포진이 동해안의 경비를 담당한 수군, 즉 군인이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셋째, 울릉도 수토사들의 출발지는 삼척의 삼척항과 장호항, 울진의 죽변항과 왕피천 하구, 그리고 평해의 구산항 등 다양하나, 18세기 말인 1787~1799년부터는 삼척 영장과 월송 진장 모두 구산포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수토사들이 해류에 대한 지식이 누적되어 이때쯤 구산포에서 출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한 뱃길임을 알았기 때문으로 판단하였다.

넷째, 19세기 후반~20세기 초의 울릉도 행정체계 중 평해 군수나 월송 만호가 울릉 도장을 겸직하는 기록에 대해 울릉도의 각석문과 울진의 현 관·석비 등을 그 근거로 입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울릉도 수토시 울진 지역민들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당시 울진 대풍헌 주변 지역민들은 수토사 일행의 경비와 부역을 부담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었으나, 국토방위라는 백성의 의무를 다하였다. 이러한 지역민의 역할이 국가의 울릉도 수토정책을 원활히 유지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았다.

〈주제어〉

조선, 수토, 울릉도, 독도, 울진, 삼척, 대풍헌

ABSTRACT

Archaeological Review of Joseon's Policies on Patrolling Ulleungdo

Shim, Hyunyoung
Curator, Uljin Bongpyeong Sillabi Museum

Research has actively been conducted on government policies for patrolling Ulleungdo during the Joseon Dynasty, mainly through studying relevant historical documents. However, in-depth research on patrolling Ulleungdo in the nineteenth century has been inhibited due to the insufficient amount of related records. At Daepungheon, Uljin, several old tablets and documents related to government policies on patrolling Ulleungdo in the nineteenth century have recently been uncovered. The relics confirm the fact that patrol officers were dispatched to Ulleungdo around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to manage the island as part of Joseon's territory, which thereby supplements a shortcoming in preceding studies.

In addition to existing tablets and old documents kept at Daepungheon that have previously been examined, this paper examines newly discovered monuments, paintings, tablets and documents and compares them with existing historical documents and records to reconsider a couple of temporal and spatial issues in preceding studies on the Joseon government's policy to patrol Ulleungdo and Dokdo.

First, this paper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after the government policy of patrolling Ulleungdo in the Joseon Dynasty was implemented in 1694, the policy could have been maintained until November 28, 1895, not December 27, 1894 as noted in historical records. The old document 'Gongnapseongchaek Gaeguk Ohbaeksanyeon Eulmi Sibilwol Isippalil' is cited as supporting evidence of the suggested possibility. Patrols were not conducted at regular intervals in their early stages and the interval itself seems to have been shortened from every three to two years from 1797 onward.

Second, this paper argues that the reason fortresses at Samcheok and Wolsong were assigned to the task of patrolling Ulleungdo was because naval forces in charge of patrolling the Korean peninsula's eastern coast were stationed at the two bases.

Third, this paper arrives at the deduction that the departure location of patrol officers changed over time. They at first departed from various locations, including Port Samcheok and Port Jangho in Samcheok, Port Jukbyeon and Wangpicheon Rivermouth in Uljin, and Port Gusan in Pyeonghae. However,

since between 1787 and 1799, commanders stationed at the fortresses at Samcheok and Wolsong all seem to have departed from Port Gusan. This is probably because they had accumulated knowledge of the current by then and realized that departing from Port Gusan would lead to the safest and easiest sailing route.

Fourth, the rock inscription at Ulleungdo along with tablets and stone monuments at Uljin are cited as supporting evidence in confirming records that the Gunsu (governor) of Pyeonghae and Manho (naval officer) stationed at Wolsong alternately took the additional post as governor of Ulleungdo between the lat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y.

Finally, the paper examines the roles the residents of Uljin played in patrolling Ulleungdo. At that time, residents living near Daepungheon in Uljin were inconvenienced with the burden of bearing the expenses and compulsory labor officers required for patrol. Nevertheless, the residents fulfilled their duties in contributing toward the defense of their national territory, which made it possible for the government to smoothly maintain its patrol policy on Ulleungdo.

Keywords

Joseon, Patrol Policy, Ulleungdo, Dokdo, Uljin, Samcheok, Daepungheon

참고문헌

『강원감영관첩』, 『강원도관초』, 『경주이씨의정공파세보』, 『관동지』, 『관동읍지』, 『고려사』, 『구한국관보』, 『국조보감』, 『대동지지』, 『동국문헌비고』, 『비변사등록』, 『서계잡록』, 『승정원일기』,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연려실기술』, 『와유록』, 『울릉도검찰일기』, 『울릉도사적』, 『일성록』, 『조선왕조실록』, 『척주선생안』, 『척주지』, 『평해교지』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2, 『문화유적분포지도-울릉군』

국립춘천박물관, 2002, 『우리 땅 우리의 진경』, 조선시대 진경산수화 특별전, 통천문화사

김상호 외, 1985, 『고등 학교 사회과 부도』, 금성교과서(주)

김원룡, 1963, 『울릉도』, 국립박물관고적조사보고 제4책

김택규, 2000, 『동해안어촌민속지 자료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김호동, 2007, 『독도·울릉도의 역사』, 경인문화사

남석화 외, 1939, 『울진군지』

대구대학교박물관, 1998, 『울진군 성지유적 지표조사보고서』, 울진군 문화재청, 2009, 『한국의 자연유산 독도』

박은순, 1997, 『금강산도 연구』, 일지사

배재홍, 2007, 『조선시대 삼척지방사 연구』, 도서출판 우물이 있는 집

삼한문화재연구원, 2012, 『울진 망양-직산간 도로확포장공사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서』

성림문화재연구원, 2013, 『울진 월송포진성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신용하, 1997,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7, 『울릉군지』, 울릉군청

울진군, 2010, 『대풍헌 해체수리공사보고서』

울진군지편찬위원회, 2001, 『울진군지』 상·중·하, 울진군

이근택, 2000, 『조선 숙종대 울릉도분쟁과 수토제의 확립』, 국민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이동주, 1975, 『우리나라의 옛그림』, 박영사

이준희, 1990, 『조선시대 지방행정제도연구』, 일지사

최완수, 1999, 『겸재를 따라가는 금강산 여행』, 대원사

평해향교, 2005, 『평해향교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1,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 247-2번지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신축부지내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보고서』

한글학회, 1967, 『한국지명총람』 2(강원편)

김윤근, 1998, 「우산국과 신라·고려의 관계」, 『울릉도·독도의 종합적 연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김호동, 1998, 「군현제의 시각에서 바라다 본 울릉도·독도」, 『울릉도·독도의 종합적 연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김호동, 2000, 「조선시대 울릉도 수토정책의 역사적 의미」, 『한국중세사논총』, 이수건교수 정년기념, 한국중세사논총간행위원회

김호동, 2005, 「조선초기 울릉도·독도에 대한 ‘공도정책’ 재검토」, 『민족문화논총』 3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김호동, 2010, 「독도 영유권 공고화와 관련된 용어 사용에 대한 검토」, 『대구사학』 98, 대구사학회

김호동, 2012, 「월송포진의 역사」, 『울진사항』 3, 울진문화원 울진향토사연구회

배재홍, 2011, 「조선후기 울릉도 수토제 운용의 실상」, 『대구사학』 103, 대구사학회

백인기, 2013, 「조선후기 울릉도 수토제도의 주기성과 그 의의 I-속종부터 영조까지를 중심으로」, 『이사부와 동해』 6, 한국이사부학회

손승철, 2010, 「조선시대 ‘공도정책’의 허구성과 ‘수토제’ 분석」, 『이사부와 동해』 창간호, 한국이사부학회

손승철, 2013, 「울릉도 수토와 삼척영장 장한상」, 『이사부와 동해』 5, 한국이사부학회

송병기, 1998, 「조선후기 울릉도 경영-수토제도의 확립」, 『진단학보』 86, 진단학회

심현용, 2006, 「월송정 조사보고」, 『울진문학』 12, 울진문화회

심현용, 2008a, 「조선시대 울릉도·독도 수토관련 ‘울진 대풍헌’ 소장 자료 소개」, 『독도지킴이 수토제도에 대한 재조명』, 제1회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북도지회 학술대회,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북도지회

심현용, 2008b, 「조선시대 울릉도·독도 수토관련 ‘울진 대풍헌’ 소장자료 고찰」, 『강원문화사연구』 13, 강원향토문화연구회

심현용, 2009, 「울진 대풍헌 현판 소개-조선시대 울릉도·독도 수토제와 관련하여」, 『132회 대구사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대구사학회

심현용, 2010, 「울진 대풍헌 현판」, 『대구사학』 98, 대구사학회

심현용, 2012, 「경북 울진군의 연혁에 대한 재검토」, 『울진사항』 3, 울진문화원 울진향토사연구회

심현용·김성준, 1999, 「울진포진(포영)에 관한 연구」, 『울진문화』 13, 울진문화원

양보경, 2005, 「울릉도, 독도의 역사지리학적 고찰-한국 고지도로 본 울릉도와 독도」, 『북방사논총』 7, 고구려연구재단

유미림, 2009, 「장한상의 울릉도 수토와 수토제의 추이에 관한 고찰」,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1-1,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유재춘, 2010a, 「동해안의 수군 유적 연구-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이사부와 동해』 창간호, 한국이사부학회

유재춘, 2010b, 「삼척 지역 일대 성곽 및 수군 유적 연구」, 『이사부 삼척 출항과 동해 비전』, 한국이사부학회

유재춘, 2013, 「IV, 고찰 1. 조선시대 수군배치와 월송포진성」, 『울진 월송포진성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성림문화재연구원

이병휴, 2002, 「울진지역과 울릉도·독도와의 역사적 관련성」, 『역사교육논집』 28, 역사교육학회

이상태, 2011, 「고지도에 나타난 삼척과 우산국」, 『이사부와 동해』 3, 한국이사부학회

이승진, 2012, 「조선시대 울릉도 수토 사료 검토」, 『제3회 울릉도 포럼』, 2012년 울릉군국제학술대회, 울릉군·울릉문화원

이욱, 2005, 「〈완문 신미 칠월 일〉, 〈수토절목 공개변통 계시시월 일 구산동〉, 『일본의 역사왜곡과 대응방안』, 광복 60주년 기념학술대회, 한국국학진흥원

센카쿠 영유권 분쟁에 관한 일본 대학생의 의식조사

: 독도 문제와의 함의

이성환 계명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1. 센카쿠 영유권 분쟁의 배경과 전개과정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근대국가의 성립과정에서 전쟁과 함께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해왔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을 종결짓는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제2조 및 제3조)으로 일본은 이 기간 동안 획득한 영토를 포기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제2차세계대전 이전에 획득한 영토를 둘러싸고 일본은 주변국들과의 영토분쟁에 직면해 있으며, 그것은 동아시아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과는 독도 문제, 중국과는 센카쿠,¹ 러시아와는 쿠릴열도 4개 섬(일본의 북방 4개 도서)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 197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된 중국과 일본 사이의 센카쿠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최근 격화일로로 걷고 있으며, 전쟁일보 직전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중일 간에 센카쿠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1970년 7월 대만이 센카쿠를 포함한 영해수역에서의 자원탐사를 규정하는 법안을 승인한 후, 일본의 센카쿠 불법점유

1 센카쿠제도는 중국명 다오위다오[钓鱼岛]·대만명 다오위타이[钓鱼台]라 불리며, 한국에서는 조어도·센카쿠제도·센카쿠열도 등 다양한 형태로 불리고 있다. 또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국가의 명칭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센카쿠라 불려왔으나, 센카쿠 문제가 격화되고 일본에 대한 중국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언론에서는 센카쿠와 다오위다오를 병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센카쿠라 한다.

에 대해 항의하면서 시작되었다. 1971년 대만을 대신하여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한 중국은 일본의 센카쿠 점유를 공식적으로 비난하였다. 이를 계기로 중일 간에는 센카쿠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본격화되었다. 그 배경에는 이 섬들이 주요 항로상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풍부한 석유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1969년 유엔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의 보고서].

중국은 1992년 영해법 제정을 통해 센카쿠제도를 자국 영토로 명문화하면서 중일 간에 영유권 분쟁을 기정사실화했다. 2010년 9월 7일에 발생한 중국 어선과 일본 보안청 순시선의 충돌사건은 양국의 영유권 분쟁을 현재화시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어서 2012년 9월 일본 정부가 센카쿠를 국유화한 데 대해 중국이 강력 항의하면서 군사적 무력충돌의 위기를 조성했다.²

센카쿠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1895년 1월 14일 일본이 각의결정을 통해 센카쿠를 오키나와현에 편입시킨 것이 그 발단이다. 일본의 센카쿠제도 편입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³ 일본 외무성은 일본의 센카쿠 편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원래 센카쿠는 1885년 이후 [일본]정부가 오키나와 당국을 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삼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 단순히 이것이 무인도일 뿐만 아니라 청국의 지배가 미친 흔적이 없음을 신중히 확인한 후, 1895년 1월 14일 현지에 표항(標杭)을 건설하는 취지의 각의 결정을 하고 정식으로 우리나라(일본)의 영토로 편입하기로 한 것이다.”⁴ 여기에는 ‘무주지’를 확인하는 데 10년 이상 걸렸으며, 또 중국과의 관련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일본이 중국에 조회를 하지 않고 무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다.⁵

2 당시 중국에서는 전쟁 불사론까지 등장하면서 일본의 국유화 조치 직후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반일대모가 발생했으며, 일본기업, 유통업체 등에 대한 파괴와 약탈이 자행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리고 중국 어선·군함 등이 센카쿠의 일본 영해 침범도 빈발했다. 센카쿠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관해서는 윤호, 2013, 『일본의 다오위다오 국유화에 대한 중국의 인식 및 대응』, 『일본문화연구』 제46집 참조.

3 井上清, 1969, 『尖閣列島』, 第三書館

4 <http://www.mofa.go.jp/mofaj/area/senkaku/kenkai.html>. 그런데 일본이 실제로 표지를 세운 것은 미국 통치하의 1969년이다. 그것도 중앙정부가 아니고 이시가키시[石垣市]가 세운 것으로 상부에는 ‘八重山尖閣郡島’라 쓴 후 각 섬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으며, 하부에 ‘石垣市建之’라 쓰여 있다.

5 名嘉憲夫, 2013, 『領土問題から國境劃定問題へー紛争解決論の視点から考える尖閣・竹島・北方四島』, 明石書店, 156쪽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과 센카쿠의 관계는 1884년 후쿠오카의 실업가 고가 다쓰시로[古賀辰四郎]가 처음 이 섬을 탐험하고, 이듬해 오키나와현에 개척허가를 신청하면서 시작되었다. 오키나와현은 센카쿠가 중국의 고문헌에 기록된 조어대(釣魚台), 황미서(黃尾巖), 적미서(赤尾巖) 등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는 우려를 하면서 아마가타 아리토모 내무대신에게 상신을 한다. 이에 아마가타는 청국 소속이라는 증거가 없으니, 실지 조사 후 국표(國標)를 세우는 데 지장이 없다는 의견과 함께, 외무성에 의견을 타진한다. 1885년 10월 21일, 이노우에 가오루 외무대신은 이 섬들이 청국의 국경에 접해 있으며, 대만 신문 등이 일본이 대만 주변 청국 소속의 섬들을 점령하려고 하고 있다는 풍설을 보도하고 있으니, 국표 건설은 후일을 기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 이후 이에 대한 논의는 중단되었으나, 1894년 청일전쟁 발발과 함께 상황이 돌변한다. 1894년 12월 27일 오키나와현이 신청한 국표건설 신청에 대해 일본 정부는 “그 당시와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1895년 1월 14일 각의에서 편입을 결정하고, 21일 오키나와현에 통지했다.⁶

여기서 문제는 편입시기다. 1895년 1월은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가 거의 확정되고, 대만의 할양도 시야에 들어와 있는 시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센카쿠를 편입한 것은 전쟁 승리에 편승하여 “비밀리에 청국으로부터 [센카쿠를-필자] 훔쳤다”는⁷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일본의 일방적인 승리로 강화조약(시모노세키조약)에서 대만, 땡호도, 요동반도 등을 할양할 수밖에 없는 비대칭적 상황에서 중국은 일본의 센카쿠 편입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다. 이 점 1905년 1월 28일 각의 결정을 거쳐 2월 22일 일본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⁸

센카쿠 편입 3개월 후 시모노세키조약이 체결되어 일본은 대만과 땡호도(澎湖島)를 할양받았으며, 독도 편입 6개월 후 포츠머스조약, 9개월 후 을사조약을 체결

결하여 일본은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점에서 센카쿠는 청일전쟁, 독도는 러일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한중 양국에서 센카쿠와 독도는 영토문제가 아니라 역사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문맥에서다. 이에 반해 일본은 독도와 센카쿠는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과 관련 없이 합법적으로 취한 영토편입 조치이기 때문에 독도와 센카쿠는 역사문제가 아니라 영토문제라고 주장한다.⁹

반면에 중국은 왜 1971년에 갑자기 센카쿠에 대한 영유를 주장하기 시작했는가. 이에 대해 세리타 겐타로[芹田健太郎]는 중국이 센카쿠를 카이로선언의 “만주, 대만과 땡호도 같은 일본이 청국에서 도취(盜取)한 모든 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인식했다면, 대만을 전후 곧바로 영토로 편입한 것처럼, 중국이 센카쿠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는 데에는 큰 장애가 없었을 것이다”고 지적한다.¹⁰ 그러나 당시는 국공내전이 진행 중이었으며, 무인도며 멀리 떨어진 센카쿠에까지 신경을 쓰지 못했을 것이라는 상황론이 제기된다.

센카쿠를 둘러싼 중일 간의 영유권 분쟁은 한일 간의 독도 문제와 역사적·현실적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이 많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중에 일본

이 센카쿠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했다는 이른바 무주지 선점론은 공통점이다. 차이점은 독도와 센카쿠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다는 것이다. 청일전쟁의 가해자인 일본이 센카쿠를 실효 지배하고 있으며, 러일전쟁의 피해자인 한국이 독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끊임없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여 분쟁지역화를 도모하는 한편, 센카쿠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상유지를 피하고 있다. 따라서 센카쿠제도와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과 태도는 모순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센카쿠를 둘러싼 중일 간의 영유권 분쟁에 대한 연구에서 한일 간의 독도 문제¹¹ 연구에 대한 시사

6 井上清, 1969, 앞의 책; 浦野起央, 2005, 『尖閣諸島 琉球 中国-日中国際関係史』, 三和書籍; 芹田健太郎, 『日本の領土』, 中央公論社 등을 참조하여 정리함.

7 井上清, 1969, 위의 책, 123쪽

8 1905년 1월 9일 러시아에서 피의 일요일 사건이 발발하면서 러시아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전황이 일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던 와중에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켰다. 동시에 일본은 “전략상 필요한 (조선의) 지점을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한일의정서가 체결된 상태에 있었다.

9 일본은 북방 4개 섬은 역사문제이며, 센카쿠와 독도 문제는 영토문제라 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해결방법으로 일본은 센카쿠와 독도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고려하고 있으며, 북방 4개 섬에 대해서는 외교적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10 芹田健太郎, 2010, 앞의 책, 128~129쪽

11 독도와 센카쿠의 영유권을 둘러싼 중일·한일 간의 대립은 그 차원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다. 센카쿠의 경우는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이 직접 충돌을 야기하고 있으나, 독도의 경우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직접 분쟁의 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를 구분하기 위해 센카쿠의 경우는 ‘영유권 분쟁’ 또는 ‘센카쿠 문제’로, 독도의 경우는 ‘독도 문제’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 방법과 연구 설계¹²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센카쿠 영유권 분쟁의 전개과정을 배경으로 이 문제를 일본 대학생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토문제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을 통해 기존 영토문제에서 간과되었던 미시적 요소를 분석틀 안에 포함시켜 법률적·역사적 분석에 머물렀던 영토문제에 대한 연구 지평을 확장시키는 의미가 있다. 바꿔 말하면 영토문제에 대한 사회적 행위주체(social actors)들을 영토문제의 설명요인으로 상정하여, 영토분쟁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현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한 나라의 영토 문제는 실재적 영토(actual territory)와 구성원들의 그 영토에 대한 의식 또는 인식(perception of territory)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¹³ 특히 영토분쟁에서는 구성원들의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주요한 팩터로 작용한다. 예를 들면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은 이 문제에 대한 한일 양 국민들의 인식이 매우 중요한 팩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까지 진행된 센카쿠 문제에 대한 연구는 객관적 현상으로서의 영유권 분쟁에 대한 정치·경제·역사적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 현상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영토분쟁의 전모를 밝힐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영토분쟁은 국가의 정체성과 민족주의 등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영유권 분쟁이라는 객관적인 실체와 함께 사회주체(social actors)들의 인식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의 영토정책에

일정한 영향을 끼치는 사회 구성원의 인식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¹⁴ 전통적으로 국가정체성이 민족의식과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동북아시아의 경우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¹⁵ 동아시아에서 삶의 지배적 단위는 여전히 국가며 민족과 국경은 개인의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강한 흡인력과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 최근 동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독도, 센카쿠(중국어명 댜오위다오), 남사군도 등을 둘러싼 영토분쟁에서 나타나는 각국 국민들의 민족주의적 성향이 바로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센카쿠 영유권 분쟁에 대한 일본 대학생들의 의식을 조사하여,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과 태도를 분석한다. 이러한 의식조사는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센카쿠 영유권 분쟁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가능케 할 것이다. 또 일본인들의 센카쿠 영유권 문제에 대한 인식과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에 어떠한 차이와 공통점이 있는지를 분석하여, 한국의 독도 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이를 위해 계명대학교 국경연구소가 2011년 4월에서 5월에 걸쳐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한국인의 국경인식에 대한 의식조사’ 데이터 가운데 독도 관련 문항을 추출하여 비교분석하였다.¹⁶

센카쿠 영유권 분쟁에 대한 일본 대학생의 의식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설문조사는 메이조대학[名城大學, 나고야 소재]의 이나바 치하루[稲葉千晴] 교수 및 바이코대학[梅光大學, 시모노세키 소재]의 이명옥 교수와 공동으로 조사에 참여한 일본의 6개 대학 관계자의 협조를 얻어서 실시되었다. 조사 항목은 2011년 계명대학교 국경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한국인의 국경인식’ 조사 항목 가운데 독도 관련 8개 항목을 원용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인의 독도 문제에 대한 인식과 일본인의 센카쿠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서다.

조사 자료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조사 지역은

12 제2장의 이론적 부분에 대한 서술은 이성환, 2013, 「조어도분쟁에 관한 중국의 인식」, 『일본문화연구』 제45집을 수정 가필한 것이며, 이 논문에서 독도에 관련된 서술 부분은 마찬가지로이다.

13 실재적 영토가 물리적인 국경과 이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의 정책과 갈등을 의미한다면, 영토의식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국의 영토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와 태도, 영토이슈에 대한 담론 등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영토 문제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즉 영토의식은 실질적으로 영토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사회의 구성원들의 영토문제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지배하는 요소들인 것이다.

14 Vladimir Kolossov, 2005, "Border Studies: Changing Perspectives and Theoretical Approaches," *Geopolitics* 10, pp. 622~627

15 전보애, 2012, 「중학생의 영토정체성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제47권 6호, 90쪽

16 계명대학교 국경연구소의 조사는 2011년 4월 19일에서 5월 9일(21일간)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9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표본은 2010년 12월 31일 주민등록 인구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추어 추출하였으며, 표집 오차는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3.1%다.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20대의 대학 학력자를 추출하여 활용했다.

도쿄, 시마네현, 히로시마시, 오키나와, 규슈로 한정하였다. 대체적으로 센카쿠에 가까운 일본 남부지역을 선택하였으며, 도쿄를 포함시킨 이유는 일본 대학생들의 평균적인 인식을 알기 위해서였다. 조사 대상은 비용 등의 제한으로 일본 소재 6개 대학으로 한정하였다.¹⁷ 조사는 2012년 6월에서 8월에 걸쳐 대면조사로 이루어졌다. 유효 표본은 862명이며, 성별은 남자 52.4%(452명), 여자 47.6%(410명)이다. 한국의 경우는 계명대학교 국경연구소가 전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실시한 1,019명 가운데 19~29세의 195명을 표본으로 하였다.

설문 결과는 SPSS 18.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주로 빈도,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교차분석을 이용하였다. 분석에서 결측값은 제외하였다.

표본 특성

구분	N	%
남성	452	52.4
여성	410	47.6
합계	862	100.0

III. 분석

1. 센카쿠에 대한 영유권 인식

센카쿠는 대만의 타이페이[臺北] 북동쪽 120마일에 있는 5개의 무인도를 지칭한다. 현재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나, 중일 간에 치열한 영유권 분쟁이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명나라 시대 대만 어부들이 조

17 조사 대상 대학은 히로시마 시립대학(히로시마 소재), 시마네현립대학(시마네현 소재), 메이조대학(나고야 소재), 메이오대학(오키나와 소재), 게이오대학(도쿄 소재), 바이코대학(규슈 소재) 등이다. 이 대학들은 도쿄 이남의 각 지역을 평균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특히 메이오대학은 센카쿠와, 시마네현립대학은 독도 문제와 연관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포함하였다.

업에 이 섬을 이용하였고, 중국 사신이 오키나와를 왕래하면서 이 섬에 관한 기록을 남겼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1893년 서태후가 센카쿠에서 약초를 캐던 신하에게 이 섬을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중국이 관할하고 있던 센카쿠를 1895년 1월 일본은 청일전쟁 와중에 센카쿠를 도취(盜取)했

으며,¹⁸ 카이로와 포츠담선언의 정신에 의거하여 빼앗긴 영토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1884년 고가 다쓰시로라는 사람이 섬을 발견하고 1895년 1월 14일에 편입을 했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3조는 타이완, 스프레틀리 섬에 대해서는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하고, 남서제도 중에서 오키나와와 다이토 열도를 포함한 북위 29도 이남을 미국의 점령통치 하에 두기로 하였다. 그 후 미국은 1971년 오키나와와 함께 센카쿠를 일본에 돌려주었다. 따라서 일본은 중일 간에는 영토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¹⁹

그러면 일본 대학생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센카쿠의 영유권이 어느 나라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1>과 같다. 70.8%의 응답자가 센카쿠를 일본 땅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모르겠다는 응답률도 27.8%나 되었다. 10명 중 7명 정도가 센카쿠를 일본 땅이라 여기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의 약 98% 이상이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²⁰ 센카쿠에 대한 일본 대학생의 영유권 인식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인다.²¹ 또 27.8%의 응답자가 모르겠다고 답한 것은 의외로 높은 수치며, 여자의 경우 그 응답률이 38.0%에 달하고 있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러한 경

18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2012년 9월 27일(뉴욕 현지시간) 유엔총회 일반연설에서 “센카쿠는 중국의 고유영토로,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명확한 증거가 있다”, “일본은 1895년 청일전쟁 말기에 다오위다오를 훔쳤다. 그 역사적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비난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9/28/0200000000A KR20120928178700073.HTML?did=1179m>

19 센카쿠의 영유권 분쟁에 대한 중일 양국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http://www.mofa.go.jp/mofaj/area/senkaku/qa_1010.html) “Q&A on the Senkaku Islands(尖閣諸島に関するQ&A)” 참조.

20 한국인의 독도 영유권 인식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다음과 같은 조사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다. 독도 표기와 관련하여 한국인의 98.8%가 다케시마, 혹은 독도·다케시마의 병기가 아닌 ‘독도’로 표기하여야 한다는 인식조사 결과가 있다. 그 이유로 “우리나라 땅이므로”, “역사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으며, 여기에는 독도에 대한 강한 자국영토의식이 작용하고 있다(동북아역사재단, 2010. 『2010 한중일 역사인식 조사 결과보고서』, 54쪽).

21 일본 내각부는 2013년 7월에 ‘센카쿠에 관한 특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센카쿠를 ‘알고 있었다’가 91.1%, ‘몰랐다’가 7.7%, ‘모르겠다’가 1.3%였다. 그리고 센카쿠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관심이 있다’가 73.7%, ‘관심이 없다’가 17.9%, ‘모르겠다’가 1.3%였다. 내각부 조사의 센카쿠에 대한 관심도가 필자가 조사한 영유권 의식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 영유권에 대한 성별 교차표

$\chi^2(p)=40.005(.000)$

구분	센카쿠는 어느 나라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일본(%)	중국(%)	모르겠다(%)	
남자	360(79.8%)	7(1.6%)	84(18.6%)	451
여자	248(60.8%)	5(1.2%)	155(38.0%)	408
전체	608(70.8%)	12(1.4%)	239(27.8%)	859

〈표 2〉 영유권에 대한 지역별 교차표

$\chi^2(p)=46.854(.000)$

구분	센카쿠는 어느 나라 땅			전체
	일본(%)	중국(%)	모르겠다(%)	
시마네현립대학	123(75.0)	3	38(23.1)	164
게이오대학	105(80.8)	0	25(19.2)	130
바이코대학	79(54.9)	1	64(44.4)	144
히로시마시립대학	79(63.7)	0	45(36.3)	124
메이요대학	90(77.6)	5	21(18.1)	116
메이조대학	134(72.4)	3	48(26.0)	185
전체	610(70.7)	12(1.4)	241(27.9)	863

향은 2013년 7월 일본 내각부에서 실시한 ‘센카쿠에 관한 특별 세론(世論)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센카쿠에 ‘관심이 있다’가 73.7%, ‘관심이 없다’가 24.9%였다.²²

변수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보자. 우선 성별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에 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영유권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지역별 소재 대학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센카쿠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도쿄의 게이오대학 학생들의 영유권 의식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지리적으로 센카쿠와 가장 가까운 오키나와 소재의 메이요대학이 그다음을 잇고 있다. 게이오대학의 경우는 도쿄라는 지역적 특성상 신문, 텔레비전, 정부 발표 등 상대적으로 정보

의 유통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메이요대학의 경우는 센카쿠와 역사적·지리적으로 관련이 깊은 오

²² <http://www8.cao.go.jp/survey/toku/betu/h25/h25-senkaku.pdf#page=2> (2013년 9월 검색)

키나와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센카쿠는 행정적으로 오키나와현에 소속되어 있음)에 영유권 의식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마네현립대학이 상대적으로 영유권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시마네현은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를 관할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으며, 다케시마의 날 제정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 독도 반환 운동의 진원지로서 다른 지역보다 영유권 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영유권 분쟁의 원인

센카쿠를 둘러싼 중일 간의 영유권 분쟁은 1970년대 초반부터다. 그러나 중일 간에는 유보론 또는 ‘차세대 해결론’이 암묵적으로 성립되어 일정기간 표면화되지 않았다.²³ 그 이유는 냉전을 배경으로 미·중·일은 소련에 대응한다는 공동목표를 가지면서 제휴, 밀월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²⁴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중국이 센카쿠에 대한 영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분쟁이 본격화되었다. 1992년 2월 중국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회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인접구법(區法)’(일반적으로 영해법이라 함)은 “대만과 조어도(釣魚島)를 포함한 부속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하는 도서이다”라고 명문화했다. 그 이후 중국은 1995년 말에 해양 탐사선과 석유시추장비를 센카쿠 해역에 보내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일본의 우익단체 회원 7명이 센카쿠에 상륙하여 일본 국기를 게양하였다. 이에 대만과 홍콩 선박 50여 척이 센카쿠에 출동, 상륙하여 중국과 대만국기를 게양하면서 충돌이 발생했고, 중국에서는 대규모 항의시위가 발생했다.

²³ 孫崎享, 2012, 『日本の国境問題－尖閣・竹島・北方領土』, ちくま新書, 76~84쪽

²⁴ 손기섭, 2013, 『동북아 해양영토 분쟁의 현재화 분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4집 2호, 324~325쪽

중일 간의 영유권 분쟁의 배경에는 센카쿠 주변 해역에 2천만 배럴의 석유와 175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자원확보 문제가 있다. 중일 양국은 해저자원에 대한 개발권을 확보하

기 위해 경쟁적으로 광구 설정과 탐사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2003년 8월 중국이 중간수역에서 가스전 개발에 착수하면서 양국 간의 충돌은 더욱 격화되었다. 일본은 해저 지층을 조사한 결과 해저 매장 자원이 중국에게도 굴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중국은 센카쿠 해역이 중국의 대륙붕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했다.²⁵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 9월에 발생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어선의 충돌사건을 계기로 센카쿠 영유권 분쟁이 첨예하게 부상되었다. 중국은 선장의 석방을 요구하며 희토류 수출을 전면금지하는 등의 보복조치를 취했다. 2012년의 일본의 국유화 조치는²⁶ 양국의 대립을 일거에 증폭시켰다.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취해진 일본 정부의 조치는 중국의 민족주의를 자극하면서 군사충돌 일보직전까지 갔다.²⁷

그러면 일본 대학생들은 센카쿠 영유권 분쟁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있을까. “중일 간의 센카쿠 영유권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표 3〉 센카쿠 영유권 분쟁 원인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일본의 외교력 부족	277	32.5
중국의 센카쿠 주변의 자원 확보 정책	261	30.7
중국의 영토확장 전략	183	21.5
일본의 국력 부족	78	9.2
일본의 역사자료의 부족	52	6.1
합계	851	100.0

〈표 3-1〉 독도 문제의 원인

구분	비율(%)
한국의 외교력 부족	15.3
일본의 독도 주변 확보 정책	39.5
일본의 침략 야욕	20.9
한국의 국력 부족	15.3
한국의 역사자료의 부족	6.0
합계	100.0

25 読売新聞政治部, 2012, 『基礎からわかる日本の領土 海洋問題』, 中央公論新社, 140~149쪽

26 1896년 오키나와현에 군제가 시행되면서 센카쿠는 야에스야마군(八重山郡)에 편입되었고, 같은 해 9월 일본 정부는 고가 다쓰시로에게 30년간 무료대여를 하였다. 1932년 그의 아들 고가 요시쓰구(古賀善次)에게 불하하면서 센카쿠는 사유지가 되었다.

27 고상두, 2011,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 영유권 분쟁과 민족주의』, 『21세기정치학회보』 제21집 2호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3〉과 같으며, 지역별, 남녀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본 대학생들은 센카쿠 영유권 발생의 원인을 분산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일본의 외교력 부족과 중국의 자원 확보를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다음으로 중국의 영토확장 정책을 들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중국의 자원 확보와 영토확장 정책에 일본이 외교적으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2010년 9월의 일본 순시선과 중국 어선 충돌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일본은 중국 선장의 석방요구를 받아들이는 등 외교적으로 무력한 모습을 보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센카쿠 영유권 분쟁을 비롯해 최근에 전개된 한국, 중국, 러시아 등과의 영토분쟁에 대해 일본의 연구자와 보수세력들은 그 원인을 일본의 국력 쇠퇴에서 찾는 경우가 많다. 도쿄 가즈히코(東郷和言)는 최근 영토분쟁의 원인에 대한 일본에서의 논의를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영향력 약화와 민주당 정권 이후 미일관계의 혼란이라는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²⁸ 일본의 정치·경제적 약화가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국력부족이나 역사자료의 부족을 센카쿠 영유권 분쟁의 원인으로 드는 경우는 10% 미만으로 나타나, 영토문제에 대한 전문가들과의 인식의 갭을 보여주고 있다.

독도 영유권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 한국인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 분포는 〈표 3-1〉과 같다. 한국인의 약 40%는 독도 문제 발생 원인을 일본의 독도 주변 자원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의 침략 야욕과 한국의 국력 부족을 원인으로 들고 있는 응답은 각각 20.9%와 15.3%이다. 자원에 대한 욕심, 침략 야욕, 한국의 국력

부족은 내용적으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 공세라는 점에서 상호 관련이 있다. 반면에 독도와 관련한 역사자료의 부족을 들고 있는 비율은 6%에 그치고 있

28 保阪正康·東郷和言, 2012, 『日本の領土問題-北方四島・竹島・尖閣諸島』, 角川書店, 7~11쪽

다. 한일 간의 독도 논쟁이 역사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과는 큰 괴리가 있다. 현재까지 독도 주변의 자원 매장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도 문제의 발생 원인을 일본의 자원 확보정책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독도 문제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한국인은 독도 문제의 원인을 자원문제와 일본의 침략 야욕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일본인은 센카쿠 문제의 원인을 자원문제와 일본의 외교력 부족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영유권 문제의 발생 원인을 다 같이 상대국가의 팽창적 특성으로 인식하고 있다. 양국을 비교하면 일본은 외교력 부족을, 한국은 국력 부족을 영유권 분쟁의 원인으로 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그리고 한일 양국에서 역사자료의 부족이라고 답한 비율이 다 같이 6%로 매우 낮다. 분쟁지역에 대한 역사적 연구성(권원)에 대한 강한 자신감으로 볼 수 있으나, 매스미디어나 교육 등을 통한 자국 중심의 일방적인 정보 흐름도 원인일 것이다.

3. 정부의 대응에 대한 평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대학생들은 센카쿠를 일본 땅으로 생각하고, 영유권 문제의 발생 원인을 중국의 팽창 정책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하여, 일본 대학생들은 센카쿠 영유권 분쟁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일반적으로 자국의 영토에 대해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는 데에는 일정하게 자국 정부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있다. 즉 영유권 분쟁은 영토보전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국 정부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대응에 부정적 인식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영유권 의식이 강할수록 정부의 대응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높아지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40.3%(찬성과 매우찬성의 합)에 그치고 있다. 변수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에서

〈표 4〉 센카쿠 문제에 일본 정부의 대응 교차표

$\chi^2(p)=21.737(.000)$

구분	매우찬성	찬성	반대	매우반대	전체
남자	12	154	212	63	441
	2.7%	34.9%	48.1%	14.3%	100.0%
여자	4	162	194	21	381
	1.0%	42.5%	50.9%	5.5%	100.0%
전체	16	316	406	84	822
	1.9%	38.4%	49.5%	10.2%	100.0%

〈표 4-1〉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매우 찬성한다	1.0%
찬성한다	18.6%
반대한다	58.1%
매우 반대한다	21.7%
합계	100.0%

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부정적 평가 비율이 높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표 4)).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남성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유권 의식이 낮은 여성 집단이 정부의 대응에 부정적 인식을 약하게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학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정부의 대응에 대한 평가는 대학의 소재 지역이 아니라 성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은 영유권 의식의 강도와도 비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경우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정부 대응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19.6%에 그치고 있다(표 4-1)). 일본과 한국의 경우를 비교하면 한일 양국의 집단은 다 같이 정부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가 그 비율이 더 높다. 그 이유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의식이 일본인의 센카쿠에 대한 영유권 의식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 대응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영유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대응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더욱 증폭시키면서 그 대안으로 시민사회의 반응이 민감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보다 한국에서 영토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더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4. 정부의 대응방법에 대한 평가

다음으로 센카쿠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센카쿠 영유권 분쟁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센카쿠는 일본의 고유영토며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 정부의 주장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이미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특히 국제사회는 센카쿠는 중일 간의 영유권 분쟁지로 알려지고 있으며, 센카쿠에 대한 고유영토설은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²⁹

일본에서는 중일 간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정부의 고유영토론과는 다른 측면에서 센카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존재한다. 하나는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입장에 가까운 형태로 중국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센카쿠 영유권 분쟁을 현실로 받아들여 보다 유연한 태도로 중국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자의 경우는 중일 양국의 군사력 비교, 그리고 미일동맹의 유효성 등을 거론하면서 군사력 동원까지 거론한다. 2013년 들어 일본 정부가 헌법개정과 해석개헌론을 들고나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다.³⁰ 후자는 현상유지를 목표로 해서 1972년의 다나야게론(차세대 해결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입장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통한 해결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0년의 일본 순시선과 중국 어선의 충돌사건 처리에서 일본이 중일 어업협정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법을 적용하여 선장에 대한 처벌을 강행한 것이 센카쿠

²⁹ 중국은 일본의 고유영토론을 부정하는데 미국의 입장을 인용하고 있다. 1971년 미국이 오키나와와 함께 센카쿠에 대한 통치권(施政權)을 일본에 반환하면서 “미국은 통치권과 주권을 별개로 생각한다. 주권문제는 당사국이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와다 하루키 교수는 고유영토라는 용어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특히 정치학, 법학 등의 분야에서는 이 용어 자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주로 역사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다.和田春樹, 2012, 『領土問題をどう解決するか-対立から対話へ』, 平凡社, 21~36쪽 참조.

³⁰ 孫崎亨, 2013, 『検証 尖閣問題』, 岩波書店, 57~58쪽

〈표 5〉 일본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

$\chi^2(p)=17.312(0.04)$

	조용한 외교	강력한 외교	전체
시마네현립대학	51	112	163
	31.3%	68.7%	100.0%
게이오대학	42	88	130
	32.3%	67.7%	100.0%
바이코대학	64	78	142
	45.1%	54.9%	100.0%
히로시마시립대학	59	62	121
	48.8%	51.2%	100.0%
메이조대학	37	77	114
	32.5%	67.5%	100.0%
메이요대학	58	121	179
	32.4%	67.6%	100.0%
전체	311	538	849
	36.6%	63.4%	100.0%

〈표 5-1〉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

조용한 외교	6.2%
강력한 외교	93.8%
합계	100.0%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도 있다.³¹

이에 대해 일본 대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센카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본 정부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해 약 63.4%가 중국에 대해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표 5〉). 이는 〈표 4〉에서 나타난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비율 59.7%보다 약간 높다. 정부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도 정부에게 보다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한국의 독도 문제와 비교해보면, 정부가 강력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비율이 한국 쪽이 훨씬 더 높은 93.8%를 보이고 있다(〈표 5-1〉). 즉 한국 사람의 거의 대부분이 일본에 대해 강력한 외

³¹ 孫崎亨, 2012, 앞의 책, 81~84쪽

교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앞의 문항에서 정부의 대응에 부정적 평가가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

이를 지역별 소재 대학의 변수와 관련하여보면 시마네현립대학, 게이오 대학, 메이요대학이 상대적으로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들 대학은 대체적으로 영유권 의식이 강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메이요대학은 센카쿠를 행정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오키나와현에 소재하고 있으며, 시마네현립대학은 독도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지역이다. 영유권 의식이 정부의 대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센카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취해야 할 방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다. “센카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취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 응답 가능)”라는 물음에 대한 840명의 응답 분포는 <표 6>과 같다. 국제사회에 대한 호소가 압도적으로 높다. 국제사회의 우호적인 여론의 형성이 센카쿠 분쟁을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2012년 9월 26일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유엔총회 연설에서 센카쿠 문제와 독도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며,³² 일본 정부가 2013년 센카쿠 문제를 포함해 영토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시킨 것도 이 때문이다.³³

다음으로 큰 차이를 두고 중국 어선의 나포 등을 포함한 실효적인 지배력 강화, 자위대 주둔, 미일동맹 강화가 그 뒤를 잇고 있으나,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중국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내포한 조치에 대한 응답률이 낮은 것이다. 그러나 어선 나포, 자위대 주둔과 미일동맹 강화는 무력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 세 항목을 합하면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주변국들과의 영토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원인을 미일관계의 변화에서 찾는 시각이 부상하고 있는 것은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최근 센카쿠, 독도, 북방영토(쿠릴열도 영토문제) 등에 대해 근린

32 《경향신문》, 2012. 9. 27

33 일본은 2013년도 회계연도 예산 가운데 영토문제와 관련된 예산은 2012년의 4억 5천만 엔에서 증액되어 8억 1천만 엔이다. 한편 한국의 경우, 독도 관련 예산은 약 62억 2천만 원으로 2012년보다 약 3배 증가한 금액이다. 《매일신문》, 2013. 5. 21

제국이 종래 이상으로 대담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 그것은 2009년부터 2010년에 걸쳐 [민주당의] 하토야마 수상이 후텐마[오키나와 기지] 문제에서 ‘[기지를] 최소한 오키나와현 밖으로 옮겨야 한다’고 제언을 하고, 이것으로 미일안보체제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³⁴는 주장이다. 센카쿠 영유권 분쟁이 격화된 이후, 미일관계 강화, 헌법개정을 통한 군사력 강화 등에 대한 일본

<표 6> 센카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야 할 방책 (840명 응답, 복수응답)

구 분	사례 수(명)	비 율(%)
국제사회의 여론에 호소	504	60.0
어선 나포 등 실효적 지배력 강화	274	32.6
자위대 주둔	199	23.7
미일동맹 강화	199	23.7
민간 마을 건설	122	14.5
합계	1,298	154.5

<표 6-1> 센카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야 할 방책 <표 5>에서 ‘강력한 외교’ 응답자 538명, 복수응답)

구 분	사례 수(명)	비 율(%)
국제사회의 여론에 호소	293	54.5
어선 나포 등 실효적 지배력 강화	204	38.0
자위대 주둔	155	28.8
미일동맹 강화	126	23.4
민간 마을 건설	81	15.1
합계	859	159.8

<표 6-2>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야 할 방책

국제사회의 여론에 호소	67.4%
일본 어선 나포 등 실효적 지배력 강화	21.0%
중국 또는 러시아와 협력	16.6%
군대 주둔	33.2%
민간 마을 건설	40.3%
합계	179%

34 孫崎享, 2013, 앞의 책, 58쪽

국민의 지지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표 5>에서 일본 정부에게 강력한 외교를 요구한 집단(538명)의 각 항목별 응답비율은 <표 6-1>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들은 국제사회 홍보와 중국 어선 나포 등을 포함한 실효적 지배력 강화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다. 여기에서 강력한 외교적 대응이란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와 중국 어선 나포 등을 포함한 실효적 지배력 강화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둘을 합하면 국제사회에 홍보를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어선의 나포 등과 같이 센카쿠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센카쿠를 유인도화(有人島化)해야 한다는 데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으며, 정치권과 보수세력 등을 중심으로 가끔 언급되는 자위대 주둔과 미일동맹 강화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낮다. 센카쿠의 유인도화와 자위대 주둔에 대한 비율이 낮은 것은 이러한 조치들이 중국과의 직접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센카쿠 문제 해결을 위해 미일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율이 낮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센카쿠 문제에 대해 미일동맹이 유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다.³⁵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강력한 외교적 대응이 중국과의 직접 충돌도 불사하는 강경한 정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독도 문제의 대응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표 6-2>와 같다. 이를 일본과 비교를 하면 한국의 경우, 국제사회의 여론에 호소한다는 응답률이 일본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독도를 유인도화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일본에 비해 매우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독도는 실제로 유인도화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그럼에도 독도 유인도화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것은 경상북도의 독도촌 건설 구상, 독도로 본격적 지 옮기기 운동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³⁶ 반면에 센카쿠에는 제2차세계대전 이전에 다수의 일본인(약 200명)이 거주한 사실이 있어, 유인도화의 가능성이 크다. 유인도화

³⁵ 『正論』 12월호, 2010, 70~71쪽

³⁶ 이성환, 2012, 「지방정부의 국경인식과 영토정책 - 경상북도의 독도 인식과 정책을 중심으로」, 『비교 일본학』 제26집 참조.

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응답률의 차이는 실현 가능성과는 상반된 현상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과 일본은 다 같이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다음으로 일본은 실효적 지배강화, 미국과의 동맹강화, 자위대 주둔 등의 순이다. 반면에 한국은 민간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며, 군대 주둔에 대해서도 한국이 약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센카쿠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보다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더 강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인의 반응은 독도 문제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식민지 지배 문제와 직결되면서 반일 민족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³⁷

5. 센카쿠 문제 해결방법

그러면 센카쿠 문제의 해결방법으로 어떠한 것이 가능할까. 영토문제는 무력을 사용(전쟁)하거나 국제사법재판소(이하 ICJ라 함)의 판결을 통하지 않고는 해결이 매우 어렵다. 현실적으로 무력사용이 쉽지 않고, 중국이 ICJ에 제소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영유권을 일본이 가진 상태에서 타협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설문 문항은 센카쿠가 일본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영유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다(물론 이 타협안이 현실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센카쿠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복수응답 가능)”라는 질문에 대한 819명의 응답 분포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는 센카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가운데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받는다”는 응답률이 가장 많으며(46.3%), “영유권은 일본이 가지고 일본과 중국이 센카쿠 주변 자원을 공동 개발한다”

³⁷ 일본 해상보안청이 독도 주변의 해양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독도를 둘러싸고 한 일 간에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2006년 4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담화를 통해 독도 문제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이자 과거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이다. (중앙일보), 2006. 4. 26

〈표 7〉 센카쿠 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방안은?

구분	국제사법재판소 판단	자원의 공동개발	공동관리	중국의 어업권 인정	중국의 자유왕래 인정	과거사 사죄 후 공동 관리	합계
사례 수(명)	379	208	152	149	130	111	1,129
비율(%)	46.3	25.4	18.6	18.2	15.9	13.6	138.0

〈표 7-1〉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찬반

구분	찬성	반대	모름	합계
사례 수(명)	489	72	301	862
비율(%)	56.7	8.4	34.9	100.0

〈표 7-2〉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방안은?

구분	국제사법재판소 판단	자원의 공동개발	공동관리	일본의 어업권 인정	일본의 자유왕래 인정	과거사 사죄 후 공동관리	합계
비율(%)	38.9	19.2	17.4	14.8	21.3	17.4	129.0

(25.4%)가 그다음이다. 그 외 선택지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ICJ 제소를 통해서 영유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공동개발도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선택지를 더욱 좁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센카쿠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물었다. 찬성이 56.7%, 반대와 모름이 43.3%로 ICJ를 통한 문제해결을 선호하는 의견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표 7-1〉). 한국의 경우도 일본보다는 다소 낮으나 38.9%가 독도 영유권 문제의 해결의 방법으로서 ICJ의 판단을 지지하고 있다(〈표 7-2〉). 양국에서 다 같이 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서 ICJ의 판단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³⁸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센카쿠에 대해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ICJ 제소를 고려하지

38 이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으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설문조사를 한 경우는 있다. 조사 대상 고등학생(180명) 가운데 73명(40.6%)이 독도 문제 해결방법의 일환으로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법에 따라야 한다”는 응답을 하였다(최미정, 2009, 「독도문제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과 수업」,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0쪽).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현대송의 조사에 따르면, 24.9%가 독도 문제 해결은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玄大松, 2006, 「領土ナショナリズムの誕生: 獨島/竹島問題の政治學」, ミネルヴァ書房, 219쪽).

39 2012년 9월 일본 정부의 센카쿠 국유화 조치를 둘러싸고 전개된 중일 간의 치열한 영유권 분쟁 이후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문제해결방식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 마에하라 민주당 정 조희장은 “우리(일본-필자)가 센카쿠를 실효 지배하고 있으며 우리가 먼저 ICJ에 제소하는 것은 이상한 얘기이다”라고 하면서 중국이 제소할 경우 응소를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나가시마 총리 보좌관도 “중국이 제소할 경우 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일본유신회 대표인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은 거듭 센카쿠 문제를 ICJ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이 ICJ 제소를 시야에 넣고 있기는 하나,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이유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407997, 2013. 9. 10 검색).

40 飯田敬輔·河野勝·境家史郎, 2012, 「連続世論調査で追う竹島: 尖閣: 政府の対応を国民はどう評価しているか」, 『中央公論』 127(16), 中央公論新社, 145쪽

41 이석우, 2010, 「한국의 영토분쟁의 해결에 있어 역사비평적 접근의 시도」, 『서울국제법연구』 제17집 1호, 서울국제법연구원; 이용호, 2010, 「일본 외무성의 독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 비판: 독도 문제의 ICJ에 의한 해결 주장과 그 대응방안」, 『민족문화논총』 제44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쪽 참조.

42 영유권 문제가 있음에도 한일 간의 어업협정, 한일 간의 대륙붕개발에 관한 협정, 중일 간의 어업협정 등이 체결된 것은 타협의 예로 볼 수 있다. 또 최근 일본에서는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타협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名嘉憲夫, 2013, 앞의 책; 羽場久美子, 2013, 「尖閣・竹島をめぐる「固有の領土」論の危うさ-ヨーロッパの国際政治から」, 『世界』 839, 岩波書店; 和田春樹, 2012, 「領土問題をどう解決するか-対立から対話へ」, 平凡社 등

않고 있다. 이는 한국 정부의 독도 문제에 대한 인식과 같다. 그러나 최근 일본 내에서 센카쿠 문제에 대해 영유권 분쟁을 인정하고 ICJ를 통한 문제해결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³⁹ 그리고 일본 정부는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 이에 대항하기 위해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결정했으며, 일본 국민의 약 80% 이상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⁴⁰ 일본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것은, 시기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반동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최악의 경우 ICJ에 제소를 당했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⁴¹ 간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일 양국에서 ICJ 제소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 외 공동관리, 어업권 인정, 자유왕래 인정 등의 항목에서 큰 차이는 없으나 약 10~20% 정도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이들 항목은 광의로 보면 공동이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영유권이 확보된다면 공동이용을 매개로 어느 정도 타협의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⁴² 현재의 실효적 지배(현상유지)가 인정된다면 상대국에 대해 어느 정도 양보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영토문제를 반드시 제로섬의 관계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공동관리, 공동개발 등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더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센카쿠에 대한 것보다 한국의 독도에 대한 배타성이 더 강하다는 것을 말한다.

6. 국제사법재판소(ICJ)와 센카쿠 문제

최근 영토분쟁에 관한 ICJ의 판단이 늘어나고 있으며, ICJ를 통한 분쟁 해결은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나 ICJ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는 당사국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나,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쪽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센카쿠 영유권을 둘러싸고 일본과 중국이 ICJ 제소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적은 없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은 공식적으로 센카쿠에 대한 영유권 분쟁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ICJ 제소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 센카쿠를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또 중국은 남중국해 섬의 영유권 갈등에 제3국이 개입하는 걸 우려해 영토문제에서 철저히 양자 간 해결 원칙을 내세우고 있고, 센카쿠의 영유를 핵심적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ICJ 제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³

센카쿠 문제가 ICJ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분쟁’의 존재를 주장하는 중국의 제소가 전제조건이다. 또 ICJ의 재판은 분쟁의 유무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인정해야 한다. 센카쿠 문제를 역사문제가 아니라 법적 문제라고 주장하고 또 ICJ의 강제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는 일본은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센카쿠 영유권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의 대학생들이 센카쿠 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을 받는다”는 항목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독도와 센카쿠 영유권 문제에 대한 이해 부족이거나 ICJ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표 8-1>에서 보듯이 센카쿠 문제의 원인으로

일본의 국력부족, 역사자료의 부족이라 생각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일본 대학생들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⁴⁴ 이를 위해 국제

⁴³ 読売新聞政治部, 2013. 『基礎からわかる日本の領土海洋問題』, 中央公論新社, 39~41쪽

⁴⁴ 일방적인 ICJ 제소도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① 평화적 해결을 바란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② 상대 국

<표 8> 센카쿠의 영유권

	일본	중국	모르겠다	합계
사례 수(명)	280	3	96	379
비율(%)	73.9	0.8	25.3	100.0

<표 8-1> 센카쿠 영유권 분쟁의 원인

구분	중국의 영토 확장 전략	일본의 외교력 부족	일본의 국력부족	센카쿠 영토에 대한 일본의 역사자료의 부족	중국의 센카쿠 주변의 자원 확보 정책	합계
사례 수(명)	73	122	27	24	129	375
비율(%)	19.3	32.3	7.1	6.3	34.0	100.0

<표 8-2> 센카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정책(복수응답)

구분	국제사회의 여론에 호소	어선 나포 등 실효적 지배력 강화	자위대 주둔	미일동맹 강화	민간 마을 건설	합계
사례 수(명)	266	127	90	97	44	624
비율(%)	70.2	33.5	23.7	25.6	11.6	153.6

사법재판소를 통한 문제해결에 찬성한 집단(‘국제사법재판소 지지집단’ 또는 ‘지지집단’이라 함. <표 7>에서 1번 항목을 선택한 379명)의 특성을 다른 설문 항목과의 교차분석을 통해 검토한다. 우선 국제사법재판소 지지집단은, 조사대상 집단 전체의 평균보다 센카쿠에 대한 영유권 의식이 약간 강하게 나타났다. 조사대상 집단 전체에서는 약 70.8%가 센카쿠를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데 비해 국제사법재판소 지지집단에서는 73.9%가 센카쿠를 일본 땅으로 인식하고 있다(<표 8>).

다음은 센카쿠 영유권 분쟁의 원인에 대해서다. 국제사법재판소 지지집단은 조사대상 집단 전체보다 센카쿠 문제의 원인을 중국의 자원 확보 정책으로 보는 경향이 약간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일본의 외교력 부족이라 답한 비율이 높다(<표 8-1>). 이는 영유권 분쟁의 원인은 자원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공세에 있으며, 거기에 일본이 외교적으로 충분히 대응하

민들에게 자국의 영토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③ 분쟁을 진정시키는 기능을 한다.

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인식 구조, 즉 중국의 공세에 외교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이 유력한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국력과 역사자료의 부족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의 도전에 대해 정부가 외교적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또 국제사법재판소 지지집단에서는 조사대상 집단 전체보다 센카쿠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게 강력한 외교적 대응 및 국제사회의 여론에 호소, 미일동맹의 강화 등의 항목에서 약간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표 8-2〉). 전체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 지지집단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 그 자체를 중국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7. 동아시아공동체와 영토문제

2010년 이후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가 영토분쟁을 계기로 급속하게 악화되어가고 있다. 국가 간의 호감도도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더욱 나빠져, 2012년에는 중일 국교정상화 40주년 기념행사 등 두 나라 사이의 국제행사와 중국인들의 일본 방문이 취소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일본 내각부가 매년 10월에 실시하는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영토문제와 양국관계의 관련성을 알 수 있다. 중일 간에 센카쿠 문제가 현재화한 2010년을 전후해서 실시한 조사 결과는 〈표 9〉 및 〈표 9-1〉과 같다.⁴⁵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낍니까?"라는 질문에 친근감을 느낀다는 비율이 2009년에는 38.5%, 2010년에는 20%, 2012년에는 18%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현재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전체적으로 양호하다고 생각합니까?"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0년 9월 초 중국 어선과 일본 보안청 순시선 충돌사건으로 중일 간에 센카쿠

45 일본 내각부, 「외교에 관한 세론조사(外交に関する世論調査)」 각 연도별(<http://www8.cao.go.jp/survey/h24/h24-gaiko/2-1.html>) 2013년 8월 검색

〈표 9〉 중국에 대한 친근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매우 친근감을 느낀다(%)	7.0	9.2	4.6	5.5	3.9
친근감을 느낀다(%)	24.8	29.3	15.4	20.8	14.1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	32.4	33.5	30.5	34.8	31.2
전혀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	34.2	25.0	47.3	36.6	49.5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9-1〉 현재의 중일관계(%)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매우 양호하다(%)	2.5	4.1	1.1	1.6	0.6
양호하다(%)	21.1	34.4	7.2	17.2	4.2
양호하지 않다(%)	42.0	39.4	32.4	45.3	28.9
전혀 양호하지 않다(%)	29.9	15.8	56.2	31.0	63.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영유권 분쟁이 본격화한 이후 중일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에는 중일 간의 영유권 분쟁이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친근감과 중일관계에 대한 평가가 다소 호전되고 있으나, 2012년 9월 일본 정부의 센카쿠 국유화 조치에 따른 중일 간 영유권 분쟁의 격화는 다시 두 나라의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국가정체성이 민족의식과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동북아시아의 경우는 영토분쟁과 민족주의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거꾸로 민족주의가 영토분쟁을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족주의와 영토분쟁이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민족주의의 약화가 영토분쟁을 완화시키게 될 것이다.⁴⁶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국가와 국경을 넘어서 동아시아공동체와 같은 지역통합이 영유권 분쟁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유럽공동체와 같은 동아시아공동체의 건설이야말

46 손기웅·박상현, 2012, 「인지심리학과 협상론의 함의를 통한 영토분쟁의 해결가능성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52집 1호, 9쪽

〈표 10〉 동아시아공동체의 형성과 영토분쟁

	한국	일본
완전히 없어진다	1.0%	2.7%
없어진다	18.2%	13.9%
없어지지 않는다	67.7%	68.8%
오히려 심해진다	13.0%	14.7%
합계	100%	100.0%

로 영토분쟁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는 영토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연구자와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아시아공동체의 형성과 영토분쟁의 관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유럽이 EU를 만든 것처럼 한중일의 동아시아공동체가 형성되면 센카쿠문제 및 독도문제 등 영토분쟁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일본 대학생의 16.6%가 긍정적인 응답을, 83.5%가 부정적인 응답을 했다. 오히려 심해질 것이라는 응답도 10% 이상이다(〈표 10〉). 즉 일본 대학생의 대부분은 동아시아공동체의 형성이 영토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19.2%가 긍정적 인식을, 80.7%가 부정적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일본보다 한국이 긍정적 의견이 약간 많다.

이러한 경향은 한중일 3국 간 시민사회의 상호 신뢰도와 동아시아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06년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연구센터가 실시한 한중일 3국의 상대 시민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보면, 3국의 시민들 간의 신뢰수준은 평균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⁴⁷ 또 2009년 동북아역사재단이 실시한 동북아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서 일본의 경우 28.7%, 한국의 경우 55.7%만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⁴⁸ 즉 상호 신뢰수준이 낮고 동아

47 한중일 3국 시민들은 전반적으로 상호 간 신뢰도가 낮다. 한국인과 중국인은 일본인을, 일본인은 한국인을 상대적으로 더 신뢰한다. 경제 발전과 신뢰 정도가 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동아시아연구센터, 2006, 『설문조사자료집: 한중일 3국 시민사회의 의사소통 구조 비교』, 한승완, 2006, 『동북아 시민사회와 동북아 정체성의 형성』, 『사회와 철학』 제11호, 253쪽에서 재인용). 한중일 3국 간의 신뢰는 조사 시기마다 다르다. 이에 대해서는 김재한, 2009, 『동북아지역 우적관계의 구조』, 『국방연구』 제52권 제3호, 78~83쪽 참조.

48 동북아역사재단, 2009, 『동아시아공동체논의의 현황과 전망』, 동북아역사재단, 311~314쪽.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동북아공동체는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그렇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28.65%, 66.99%였다. 한국의 경우는 ‘필요하다’, ‘불필요하다’가 각각 55.7%, 42.3%였다.

시아공동체에 대한 필요성도 높지 않은 상태에서는 동아시아공동체의 형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공동체의 형성이 영토문제의 해결로 연결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요약하면 동아시아공동체의 형성이 영토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토분쟁은 국민국가가 존재하는 이상, 지역통합 등을 통해서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토분쟁이 ‘없어진다’는 비율이 ‘악화된다’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의미 있는 측면이다. 동북아공동체의 형성이 영토분쟁 해결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적어도 마이너스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IV.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2012년 실시된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인의 독도 문제에 대한 인식과의 비교를 통해, 일본 대학생의 센카쿠 문제에 대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대학생들은 센카쿠에 대한 영유권 의식이 한국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의식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의 영유권 의식이 매우 낮았다. 그러나 영유권 인식이 낮은 것에 대한 원인을 밝히지는 못했다. 지역적으로는 센카쿠와 역사 지리적으로 관련이 깊은 지역에 소재하는 메이요 대학과, 독도와 관련이 있는 지역에 소재하는 시마네현립대학 학생들의 영유권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지역과 영유권 의식의 관련성을 확인했다.

둘째, 한국인은 독도 문제의 원인을 자원문제와 일본의 침략 야욕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일본인은 센카쿠 문제의 원인을 자원문제와 일본의 외교력 부족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영유권 문제의 원인을 상대국가의 팽창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일 양국에서 역사자료의 부족이라고 답한 비율이 다 같이 6%로 매우 낮다. 분쟁지역에 대한 역사적

연고성(권원)에 대한 강한 자신감으로 볼 수 있으나, 자국 중심의 일방적인 정보 흐름도 원인일 것이다.

셋째, 일본과 한국의 조사대상자들은 다 같이 정부의 영토정책(센카쿠, 독도에 대한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한국의 경우가 더욱 두드러졌다.

넷째, 한일 양국의 조사대상자들은 영토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여론에 호소해야 한다는 인식을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일본은 실효적 지배강화, 미국과의 동맹강화, 자위대 주둔 등의 순이다. 반면에 한국은 독도에 민간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전체적으로 일본보다 한국의 경우가 더 적극적이고 강경한 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한국인의 반응은 독도 문제가 단순히 영토분쟁이 아니라 식민지 지배 문제와 직결되면서 반일 민족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다섯째, 센카쿠 문제의 해결방안으로는 한일 양국에서 “ICJ의 판결을 받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일 양국 정부가 ICJ 제소를 상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정책과 조사대상자의 인식에 갭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ICJ의 판결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것은 중국의 공세에 외교적 대응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공동체의 형성이 영토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경향은 한국보다 일본의 조사대상자에게서 약간 더 강하게 나타났다. 적어도 동아시아에서는 국민국가가 존재하는 이상 영토분쟁은 지역통합 등을 통해서도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일 양국에서 19.2%, 16.6%의 조사대상자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은 희망적인 신호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국문 초록

이 연구에서는 2012년 실시된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인의 독도 문제에 대한 인식과의 비교를 통해, 일본 대학생의 센카쿠 문제에 대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대학생들은 센카쿠에 대한 영유권 의식이 한국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의식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의 영유권 의식이 매우 낮았다. 지역적으로는 센카쿠와 역사 지리적으로 관련이 깊은 지역에 소재하는 메이요대학교, 독도와 관련이 있는 지역에 소재하는 시마네현립대학 학생들의 영유권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지역과 영유권 의식의 관련성을 확인했다.

둘째, 한국인은 독도 문제의 원인을 자원문제와 일본의 침략 야욕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일본인은 센카쿠 문제의 원인을 자원문제와 일본의 외교력 부족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영유권 문제의 원인을 상대국가의 팽창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일본과 한국의 조사대상자들은 다 같이 정부의 영토정책(센카쿠, 독도에 대한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한국의 경우가 더욱 두드러졌다.

넷째, 한일 양국의 조사대상자들은 영토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여론에 호소해야 한다는 인식을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일본은 실효적 지배강화, 미국과의 동맹강화, 자위대 주둔 등의 순이다. 반면에 한국은 독도에 민간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전체적으로 일본보다 한국의 경우가 더 적극적이고 강경한 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센카쿠 문제의 해결방안으로는 한일 양국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을 받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이유는 영유권 분쟁의 원인을 상대국가의 팽창 정책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 정부가 ICJ 제소를 상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정책과 조사대상자의 인

식에 상당한 갭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공동체의 형성이 결코 영토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경향은 한국보다 일본의 조사 대상자에게서 약간 더 강하게 나타났다. 적어도 동아시아에서는 국민국가가 존재하는 이상 영토분쟁은 지역통합 등을 통해서도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센카쿠, 다오위다오, 독도, 영유권분쟁

ABSTRACT

Japanese College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Senkaku Islands: Implications for the Dokdo Issue

Lee, Sunghwan

Professor, Department of Japanese studies, Keimyung University

This article utilizes survey results from 2012 to compare the awareness Koreans possess toward the Dokdo issue with the Japanese college students' awareness of the dispute over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f Senkaku islands. The comparison's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Japanese college students are less conscious about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Senkaku Islands than Koreans are over Dokdo. In particular, consciousness was lowest among female Japanese students. Meanwhile, a correlation was confirmed between region and the awareness of territorial sovereignty. Students at Meiyu University and Shimane University both showed greater awareness due to Meiyu University's geographical and historical proximity to Senkaku Islands and Shimane Prefecture's involvement in the Dokdo issue.

Second, Koreans have a strong tendency to deem natural resources and Japan's ambition of invasion as the causes of the Dokdo issue, whereas

the Japanese are likely to view the causes of the Senkaku Islands issue lying in natural resources and lack of Japan's diplomatic power. All in all, both Koreans and the Japanese seem to assume that territorial disputes are caused by the expansionist foreign policy of the other country involved in a particular dispute.

Third, both countries' respondents, Koreans notably more so, tend to evaluate their government's territorial policies negatively.

Fourth, both countries' respondents believe that it is most important for their government to attract the international society's attention in order to resolve territorial issues. In order of importance, Japanese respondents next list reinforcement of effective occupation, strengthening Japan's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nd stationing a self-defense force as factors that would contribute to resolving issues. In contrast, the most popular choice for Koreans is to allow civilians to reside at Dokdo. In general, Korean respondents have a tendency to prefer more active and stronger resolutions.

Fifth, respondents in both Korea and Japan regard a ruling from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as the best way to resolve the Senkaku Islands issue. This response seems to be based on the perception that expansionist foreign policies of other countries lead to territorial disputes. Given that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have not yet taken the Dokdo issue to the ICJ, there seems to be a considerable gap between government policies and the perception of survey respondents.

Finally, analysis for this paper confirms that establishing an East Asian Community cannot become a means to resolve territorial issues, and Koreans contributed more heavily toward this confirmation. In this regard, the existence of nation-states in East Asia seems to preclude the use of regional integration to resolve territorial disputes.

Keywords

Senkaku, Diaoyudao Islands, Dokdo, Territorial Sovereignty Disputes

참고문헌

동북아역사재단, 2009, 『동아시아공동체논의의 현황과 전망』,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2010, 『2010 한중일 역사인식 조사 결과보고서』 10
 동아시아연구센터, 2006, 『설문조사자료집: 한중일 3국 시민사회의 의사소통 구조비교』
 고상두, 2011,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 영유권 분쟁과 민족주의」, 『21세기정치학회보』 제21집 2호
 손기섭, 2013, 「동북아 해양영토 분쟁의 현재화 분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4집 2호
 손기웅·박상현, 「인지심리학과 협상론의 함의를 통한 영토분쟁의 해결가능성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52집 1호
 윤호, 2013, 「일본의 다오위다오 국유화에 대한 중국의 인식 및 대응」, 『일본문화연구』 제46집, 동아시아일본학회
 이석우, 2010, 「한국의 영토분쟁의 해결에 있어 역사비평적 접근의 시도」, 『서울국제법연구』 제17집 1호, 서울국제법연구원
 이성환, 2012, 「지방정부의 국경인식과 영토정책 - 경상북도의 독도 인식과 정책을 중심으로」, 『비교 일본학』 제26집
 이성환, 2013, 「조어도분쟁에 관한 중국의 인식」, 『일본문화연구』 제45집
 이용호, 2010, 「일본 외무성의 죽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 비판: 독도문제의 ICJ에 의한 해결 주장과 그 대응방안」, 『민족문화논총』 제44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전보애, 2012, 「중학생의 영토정체성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제47권 6호
 최미정, 2009, 「독도문제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과 수업」,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승완, 2006, 「동북아시아민사회와 동북아 정체성의 형성」, 『사회와 철학』 제11호
 일본 내각부, 「외교에 관한 세론조사(外交に関する世論調査)」 각 연도별 (<http://www8.cao.go.jp/survey/h24/h24-gaiko/2-1.html> 2013년 8월 검색)

芹田健太郎, 2010, 『日本の領土』, 中央公論社
 読売新聞政治部, 2013, 『基礎からわかる日本の領土海洋問題』, 中央公論新社

名嘉憲夫, 2013, 『領土問題から国境画定問題へー紛争解決論の視点から考える尖閣・竹島・北方四島』, 明石書店
 保阪正康・東郷和言, 2012, 『日本の領土問題ー北方四島・竹島・尖閣諸島』, 角川書店
 孫崎亨, 2012, 『日本の国境問題ー尖閣・竹島・北方領土』, ちくま新書
 孫崎亨, 2013, 『検証 尖閣問題』, 岩波書店
 井上清, 1969, 『尖閣列島』, 第三書館
 浦野起央, 2005, 『尖閣諸島 琉球 中国ー日中国際関係史』, 三和書籍
 玄大松, 2006, 『領土ナショナリズムの誕生: 獨島/竹島問題の政治學』, ミネルヴァ書房
 和田春樹, 2012, 『領土問題をどう解決するかー対立から対話へ』, 平凡社
 飯田敬輔・河野勝・境家史郎, 2012, 「連続世論調査で迫る竹島・尖閣: 政府の対応を国民はどう評価しているか」, 『中央公論』 127(16), 中央公論新社
 羽場久美子, 2013, 「尖閣・竹島をめぐる「国有の領土」論の危うさーヨーロッパの国際政治から」, 『世界』 839, 岩波書店
 『正論』, 2010년 12월호
 Kolossov, Vladimir, 2005, "Border Studies: Changing Perspectives and Theoretical Approaches," *Geopolitics* 10

인접국 갈등과 협력의 기승전결(하)

: 독일 · 프랑스 동반자 관계의 역사현장 이야기

김재한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I. 정상들의 만남 - 참혹한 과거로부터 탈출 갈구 그러나 과거의 기억

제2차세계대전 이후 국제관계의 무대는 유럽대륙이 아니라,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독일과 프랑스는 지리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세계패권을 추진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한 국가들이 유럽대륙 밖에서 등장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패전국 독일뿐 아니라 승전연합국에 포함되었던 프랑스도 점차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한 깨달음의 첫 번째 장소는 포츠담회담(Potsdam conference)이었다.

1945년 5월 독일이 무조건 항복하였고, 이에 따라 전승연합국은 점령 중인 독일의 수도 베를린이나 그 인접지역에서 전후(戰後) 질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갖기로 하였다. 당시 베를린은 공습으로 많이 파손된 상태였고, 인접한 포츠담은 상대적으로 공습 피해가 적었다. 포츠담은 독일 민족주의의 상징인 프리드리히(Fredrich) 2세의 상수시궁전이 있는 도시다. 북부 포츠담에서 호수를 끼고 아담하게 자리 잡은 체칠리엔호프궁전(Schloss Cecilienhof)은 호엔촐레른(Hohenzollern) 왕가의 마지막 궁전으로, 빌헬름(Wilhelm) 황태



*1945년 포츠담회담이 열렸던 체칠리엔호프궁전. 지금은 호텔로 사용되고 있다. 오른쪽 위 작은 사진은 포츠담회담이 열리던 현장을 담은 것이고, 오른쪽 아래 작은 사진은 현재 호텔에서 같은 장소를 전시실로 개방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 영국, 소련의 대표만 참석하여 그때나 지금이나 3국 국기만 테이블에 게양되어 있다. 프랑스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왼쪽 아래 작은 사진은 회담에 참석한 미·영·소 3국 정상 모습이다.

자와 체칠리(Cecilie) 황태자비를 위해 1914~1917년에 걸쳐 건립되었다. 이 체칠리엔호프궁전에서 전승연합국은 1945년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회담을 가졌다. 이것이 바로 포츠담회담이다.

미국, 영국, 소련은 독일이 항복하기 전인 1945년 2월 알타(Yalta)에서 독일을 분할 점령하기로 이미 합의했다. 세 나라는 포츠담회담에서 패전국 독일의 분할 점령을 재확인했다.

프랑스는 미국, 영국, 소련이 참가한 독일 항복 이전의 알타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포츠담회담에 공식적으로는 참가하지 못했다. 소련이 프랑스의 참석에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비록 포츠담회담에 공식적으로 참가하지 못했지만, 소련과의 경쟁을 의식해 서방 측 지분의 증대를 원했던 미국의 주장으로 독일 점령국 지위를 부여받았다. 프랑스는 미국과 영국의 독일 점령지역 일부를 양도받아 독일 점령국의 지위를 얻었다. 전후 독일을



* 제국의회의사당(Reichstag)은 1871년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한 후 건축되었다. 1939년 히틀러 독일 총통은 이 의사당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필요성을 연설했다(위 작은 사진). 1963년 엘리제궁에서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과 콘라트 아데나워 서독 총리는 양국 우호조약에 서명한 후 서로 포옹하였다(아래 작은 사진). 제국의회의사당은 제2차세계대전 때 파손되어 방치되다가 1972년에 보수되었고 1990년 12월에는 통일 독일의 첫 연방의회가 개최되었다. 2013년 1월 엘리제조약 50주년을 맞아 독일과 프랑스의 의원들은 제국의회의사당에서 합동회의를 가졌는데, 나치정권 의회보다 더 산만하고 덜 화려했지만 화목하게 진행되었다.

점령했을 당시 프랑스는 독일에 대한 악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미국은 서유럽의 단결을 주문했다.

제2차세계대전 후의 1945년 포츠담협정과 1954년 파리강화조약의 내용은 제1차세계대전의 베르사유강화조약과 달랐다. 포츠담협정은 독일 점령의 목적이 독일의 무장해제, 비(非)군사화, 비(非)나치화, 민주화에 있음을 명시했다.

독일과 프랑스 간 화해가 처음으로 공식화된 것은 1963년 1월 엘리제조약(불어: traité de l'Élysée, 독어: Elysee-Vertrag)이다. 엘리제조약은 프랑스 대통령 관저인 파리 엘리제궁전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며 독일과 프랑스 간의 우호조약이다.

엘리제조약은 양국 화해의 출발이지만, 그 첫 출발을 위한 사전조율은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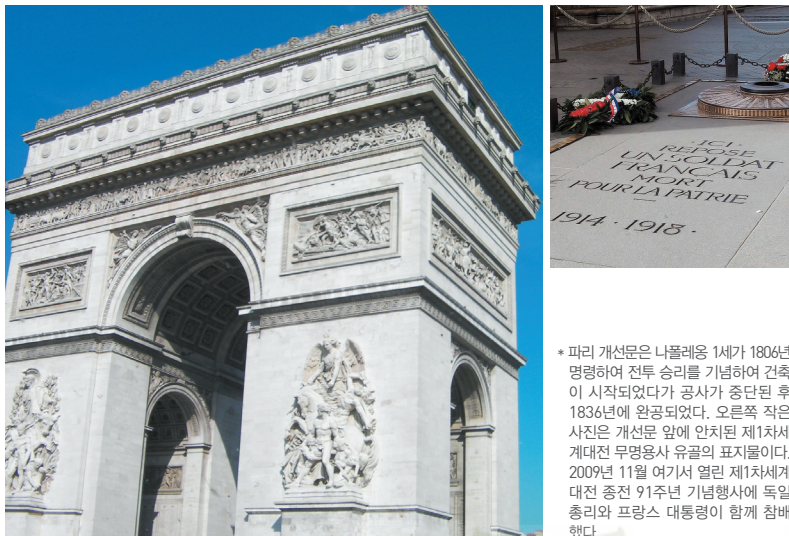
단하지 않았다.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 프랑스 정부와 콘라트 아데나워(Konrad Adenauer) 서독 정부는 1958년 첫 정상 간 만남 이후 여러 차례 상호 접촉을 한 후에야 비로소 1963년 엘리제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서독 총리의 프랑스 방문은 콘트라 아데나워의 1951년 방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독일이 프랑스와 화해하려고 했을 뿐 아니라 프랑스도 주변국 독일과의 화해를 원했기 때문에 양국 간 화해가 가능했다.

엘리제조약에서는 양국이 다양한 정례 회담을 갖기로 하였다. 조약 체결 이래 50년 동안 양국 간 정상회담의 횟수가 약 100회에 이르고, 관련 부처 장관 간 회담도 자주 개최되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로 약 2,200개의 도시 간 제휴가 맺어져 있다.

엘리제조약에 따라 1965년 설립된 청소년사무소(불어: Office franco-allemand pour la Jeunesse, 독어: Deutsch-Französisches Jugendwerk)는 양국의 수많은 청소년들을 교류시켰다. 양국의 합동 중고등학교와 연합대학교도 양국 청소년 교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2013년까지 800만 명 이상의 참여와 30만 건 이상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는 양국 간 적대감정을 완화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2013년 현재 상대국에서 일하는 국민들은 각각 약 3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2003년 엘리제조약 4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양국은 공동 국적을 인정하고 각료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0년 프랑스 재무상이 독일 각료회의에 참석하였으며, 2013년 양국은 엘리제조약 50주년을 기념하여 베를린에서 양국 합동각료회의를 가졌다.

1975년 지스카르 데스탱(V. Giscard d'Estaing)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 항복의 날' 행사를 '유럽의 날' 행사로 대체하겠다고 선언했다. 1984년 9월 프랑스 베르딩의 제1차세계대전 기념식에 헬무트 콜(Helmut Kohl) 서독 총리가 방문하여 프랑수아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 프랑스 대통령과 포옹 속에서도 한참 동안 손을 잡았다. 헬무트 콜 총리의 아버지는 제1차세계대전 때 베르딩 근처 전투에 참전한 적이 있고,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본인이 제2차세계대전 때 베르딩 근처에 포로로 잡혀 있었다. 베르딩은 제1차세계



* 파리 개선문은 나폴레옹 1세가 1806년 명령하여 전투 승리를 기념하여 건축이 시작되었다가 공사가 중단된 후 1836년에 완공되었다. 오른쪽 작은 사진은 개선문 앞에 안치된 제1차세계대전 무명용사 유골의 표지물이다. 2009년 11월 여기서 열린 제1차세계대전 종전 91주년 기념행사에 독일 총리와 프랑스 대통령이 함께 참배했다.

대전 때 양국 군인 수십만이 죽은 곳이자 샤를마뉴(Charlemagne) 제국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분리된 843년 베르딩조약의 장소다. 1990년 프랑스는 독일 통일에 동의하였다.

독일 통일 이후 양국 간 교류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물론 모든 기념일에 양국 정상이 늘 참가하지는 않았다. 1998년 11월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öder) 독일 총리는 자크 시라크(Jacques Chirac) 프랑스 대통령과의 제1차세계대전 종전 80주년 공동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기도 했다. 그렇지만 양국 간 교류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1992년 파리 샹젤리제(Champs-Élysées) 거리에서 열린 프랑스혁명 기념행사에 유럽군(Eurokorps) 소속 독일군이 가두행진을 했다. 2009년 11월에는 샹젤리제 거리 근방 개선문(L'Arc de Triomphe)에서 열린 제1차세계대전 종전 91주년 행사에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가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나란히 추모의식을 거행했다.

2003년 1월 프랑스 베르사유궁전 극장에서는 엘리제조약 4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 의원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게르

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도 참석했다. 베르사유궁전은 19세기와 20세기에 프랑스와 독일이 치욕과 설욕을 주고받았던 곳으로 양국 숙적(宿敵)관계의 상징적 장소다.

2004년 6월 수만 명이 살상된 노르망디(Normandie) 상륙작전의 60주년 기념식에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가 참가하여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그 의미를 되새겼다. 2013년 9월 요아힘 가우크(Joachim Gauck) 독일 대통령은 주민 642명이 1944년 6월 나치에게 학살된 후 안장된 프랑스 북부 오라두르쉬르글란(Oradour-sur-Glane) 묘지에서 프랑수아 올랑드(Francois Hollande)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추모행사에 참여했다. 추모행사 후 두 정상은 두 손을 굳게 잡았으며, 독일 요하임 가우크 대통령은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러 왔다고 말했다.

독일 기민당(CDU)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01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정당 후보인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을 지지했으나 니콜라 사르코지는 낙선하고 대신 사회당 후보였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취임함에 따라 여러 불협화음(不協和音)이 보도되는 등 양국 정상 간 친선관계는 약화된 것으로 비쳐지기도 했다. 그렇지만 정상 간 만남의 빈도는 결코 줄지 않았다.

프랑스와 독일은 제2차세계대전 이전에도 교류가 많았다. 특히 역사교과서에 관한 양국 간 회의는 진척이 느렸지만 양국의 인식 차이를 좁히는 데 기여하였다. 역사교과서 내용의 변화에는 양국 정부 간 합의 없이 민간 차원에서 자국의 역사교과서 내용을 변화시키려는 독자적 노력도 영향을 주었다. 프랑스에서 역사교과서의 대명사로 불렸던 말레(Malet)와 이삭(Isaac)의 교과서에서 1920년대에는 독일인의 심성(心性)을 유럽 전쟁의 원인으로 서술하다가, 1930년대에 들어서서는 제1차세계대전 강화조약인 베르사유조약의 부당성에 관한 독일인의 견해도 서술하였다.

역사교과서 객관화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본격화되었다. 민간 주도의 공동회의에서는 점진적으로 객관적 서술들에 합의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프랑스가 독일을 계속 약화시키려 했고, 독일을 복구하려는 미국 및 영국과 갈등을 겪었으며, 자르(Saar)를 독일에서 분리하려고 시도했고, 루르지역(Ruhrgebiet)을 획득하려고 시도했다는 등의 내용은 양국 역사교과서협회의 '1987년 권고안'에 포함되었다. 자국의 안보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서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마련되었다. 또 독일 내에서 반(反)히틀러 투쟁의 선봉에 섰다가 희생당한 학생조직 백장미(Rose blanche) 사건을 프랑스 교과서에 소개하는 등 나치에 대한 독일인의 저항도 '1987년 권고안'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2006년 양국 정부가 주도한 공동 역사교과서(불어: Histoire, 독어: Geschichte)가 처음으로 출간되었다. 다섯 부로 구성된 책의 각 부 말미에 '독일 프랑스의 교차된 시선(불어: Regards croisés franco-allemands, 독어: deutsch-französischer Perspektivenwechsel)'이라는 항목으로 양국 간 견해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역사교과서는 중장기적 효과를 지닌다. 공동 역사교과서의 정신은 한마디로 역지사지(易地思之), 즉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본다는 것이다. 양국 정부가 주도한 공동 역사교과서는 과거의 문제를 애써 외면하지 않았고 대화를 통해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자리가 되었다.

II. 세기의 무릎 꿇기 - 반성 그리고 국내정치적 수용

과거를 망각하거나 외면할 때보다 과거를 반성하고 용서할 때 화해는 가능하다. 망각하거나 외면하여 실현되는 것은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며 진정한 화해는 아니다. 진정성은 일관된 행동에서 관찰된다. 과거의 반성이 국내정치와 법제도로 일관되게 이루어질 때 화해가 성립하는 것이다.

제2차세계대전 직후 전승연합국은 독일 국민 모두를 나치 범죄의 공범으로 보았다. 독일 내부는 이에 반박했다. 또 대(對)소련 공동전선을 모색하려는 미국과 영국 측에서도 나치와 독일 국민을 분리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2차세계대전 전범에 대한 뉘른베르크(Nürnberg)



* 뉘른베르크는 히틀러가 사랑한 도시라고 불린다. 비행선 발명자 체펠린(Zeppelin)의 이름을 딴 체펠린광장(Zeppelfeldes)은 히틀러의 대표적인 건축물인데(은 사진), 1934년 체펠린광장에서 히틀러는 전몰자추모집회를 열었다(오른쪽 작은 사진). 1945~1946년 뉘른베르크에서 나치 전범들은 프랑스를 포함한 전승 4개국에 의해 재판을 받았다(왼쪽 작은 사진).

재판에서 전승연합국의 입장은 조금씩 달랐다. 소련은 더 가혹한 처벌을 주장했고, 미국은 독일 재건을 위해 나치 가담자의 수를 줄일 필요를 느껴 상대적으로 덜 가혹한 처벌을 주장했다. 뉘른베르크 법정은 독일인 12명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뉘른베르크 재판은 전 독일인의 탈(脫)나치화의 계기로 활용되었다.

프랑스도 독일의 전몰(戰歿)자를 희생자로 본다. 독일이 나치 만행을 반성하고 적지 않은 독일인이 나치정권의 탄압을 받았기 때문이다. 1980년대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의 적은 독일이 아니라 독일을 짓누른 권력과 이념이었고 나치정권에 희생된 독일인들도 피해자라고 언급했다.

사실 나치정권은 독일 대중의 지지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독일 국민과 무관한 정권으로 보기 어렵다. 프랑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제2차세계대전 초기 독일의 점령에 의해 수립된 프랑스 비시(Vichy)정권은 프랑스 학계에



* 나치정권이 책을 불태운 광장 지하에 빈 서가를 세워둔 기념물을 볼 수 있다(큰 사진). 브란덴부르크문 옆에 건립된 홀로코스트 추모 공원에는 관 모양의 직육면체 2,711개가 설치되어 있다(왼쪽 작은 사진). 서베를린 쪽 베를린장벽에 붙어 있는 나치 테러기관의 폐허 건물에는 테러전시관을 조성하였다(오른쪽 작은 사진).

서 정통성 없는 괴뢰정권으로 간주되었다가 1970년대부터는 프랑스 의회 의 만장일치에 의한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정권이었다고 인정되고 있다. 비시정권 수립 후 프랑스 국민들은 독일과 협력하는 비시정권 정책에 저항했기 때문에 그 정통성이 소멸되었다는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나치정권 수립이 독일 국민의 지지에 의해 시작되었다더라도 나치정권의 정책은 독일 국민과 관계없이 추진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후속 독일 정권들이 나치정권의 만행을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독일의 반성은 국내정치적으로 확고한 기반을 갖고 추진되어 왔다. 독일 정부는 반(反)인도적 전쟁범죄를 지금까지도 법률로 처벌하고 있다. 2013년 5월 독일 검찰은 70년 전인 1941~1945년에 폴란드 아우슈비츠(Auschwitz) 수용소 학살에 연루된 90대 중반 노인을 체포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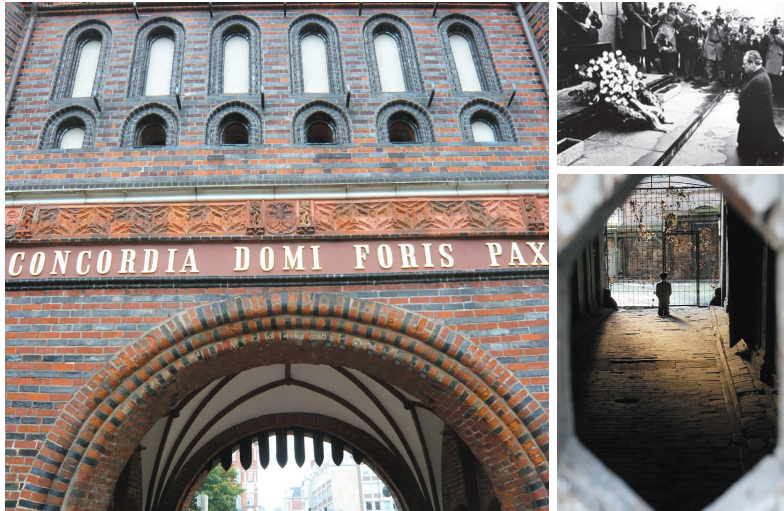
독일은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베를린 곳곳

에는 나치정권을 반성하는 기념물이 많다. 1933~1945년까지 나치정권의 테러기관이 있던 자리에 1987년 베를린시 750주년 기념전시회를 열었고 통일 후에는 전시관(Topography of terror)을 조성하였다. 1935년 나치정권이 서적 수만 권을 불태운 이른바 분서(焚書)의 장소인 베벨광장(Bebelplatz)에는 빈 서가를 지하에 둔 기념물을 설치했다. 또 브란덴부르크문 옆 광장에 건립된 홀로코스트 추모공원(Holocaust Mahnmal)은 10년 이상 찬반 논쟁이 진행되다가 2003년에 기공하여 종전 60년이 되던 해인 2005년에 완공되었다. 관 모양의 서로 다른 크기의 직육면체 2,711개는 특정한 의미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희생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베를린뿐 아니라 여러 도시에서도 나치정권을 반성하는 전시관이 많다. 보불(Franco-Prussian)전쟁 때 나폴레옹(Napoleon) 3세가 수개월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던 카셀에도 그런 활동이 있다. 1955년부터 매 4~5년마다 프리데리치아눔(Fridericianum)미술관, 옛 나치 수용소, 병커 등 카셀의 여러 장소에서 나치정권의 반(反)인륜적 행위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모던 아트의 기록(documentation)이라는 뜻을 지닌 카셀 도큐멘타(Documenta)가 개최되고 있다.

독일의 과거사 사죄의 상징적 모습은 1970년 12월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격리지역(ghetto)의 희생자 추모비 앞에서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서독 총리가 무릎을 꿇은 사진에 잘 나타난다. 당시 서독 내부의 비판은 거셌다. 빌리 브란트를 지지한 좌파 매체 『슈피겔(Spiegel)』조차 빌리 브란트의 행동을 비판했다. 그렇지만 이런 빌리 브란트의 행동은 주변국의 의구심을 떨쳐 버리는 데 기여했다. 젊은 시절을 나치세력과의 투쟁으로 보내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는 사람(나치 피해자)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사람들(나치)과 독일 국민을 대신해 무릎을 꿇었다(사과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독일의 북부 도시 뤼베크(Lübeck)에는 빌리 브란트 관련 장소가 많다. 뤼베크의 남대문에 해당하는 홀스텐 성문(Holstentor)에 적혀 있는 라틴어 문구 ‘CONCORDIA DOMI FORIS PAX(안으로는 화합, 밖으로는 평화)’는 빌리 브란트의 대외정책을 상징하고 있고, 홀스텐 성문 앞의 길은 빌리 브란트길(Willy-Brandt-Allee)로 명명되어 있다.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Ostpolitik)은 동독에



*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어릴 때 자주 보면서 자랐다는 홀스텐 성문의 문구 'CONCORDIA DOMI FORIS PAX'는 빌리 브란트 행보를 함축한다. 오른쪽 위 사진은 1970년 바르샤바 나치 피해자 추모비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모습이 다. 오른쪽 아래 사진은 2012년 같은 지역에 설치된 무릎 꿇은 히틀러 조각상인데, 유대인 유족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 콘라트 아데나워는 랭스대성당에서 미사를 하면서 샤를 드골과 함께 무릎을 꿇었다. 이후 성당 정문 바닥에 기념 석판이 만들어졌다. 11시 2분이라는 분 단위까지 표기해 콘라트 아데나워와 함께 화해를 맹세한다는 샤를 드골의 문구다. 작은 사진은 랭스의 공동 미사를 당시 세기의 사람으로 묘사한 만평이다. 나폴레옹 3세, 비스마르크, 나폴레옹 1세, 루이 14세, 샤를마뉴 등 양국 숙적관계의 주역들부터 통치시대의 황제까지 총망라하고 있다.

대한 정책이라기보다 폴란드와 프랑스를 포함한 주변국에 대한 정책이었다.

빌리 브란트 총리 외에 다른 독일 총리들의 무릎꿇기도 회자되고 있다. 실제로 무릎을 꿇었는지 사진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독일 총리들의 태도는 충분히 진지했다. 2009년 9월 1일 폴란드 그란스크의 제2차세계대전 발발 70주년 기념식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그랬고, 또 1962년 프랑스 랭스(Reims)대성당에서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가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미사를 보면서도 그랬다. 랭스대성당 공동미사는 독일과 프랑스의 동반자 관계의 출발을 알리는 신성한 의식이였다.

III. 노트르담성당 - 영원하지 않은 숙적관계 그리고 반(反)패권적 통합

프랑스어로 성모마리아를 지칭하는 노트르담(Notre Dame)이라는 이름의 프랑스 성당은 여러 개다. 주변국과 숙적이거나 동반자 관계라는 맥락에서는 랭스, 파리,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의 세 노트르담성당이 의미를 갖는다.

1962년 7월 프랑스 랭스 노트르담성당(Cathédrale Notre-Dame de Reims)에서의 샤를 드골과 콘라트 아데나워의 공동미사는 양국 화해 시작의 상징이다. 약 100년 동안 지속된 독일과의 숙적관계는 긴 프랑스 역사 가운데 일부 기간에 불과하다. 랭스대성당 앞의 잔 다르크(Jeanne d'Arc) 동상은 프랑스의 숙적이 다른 나라일 때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백년전쟁 내내 영국은 프랑스에게 숙적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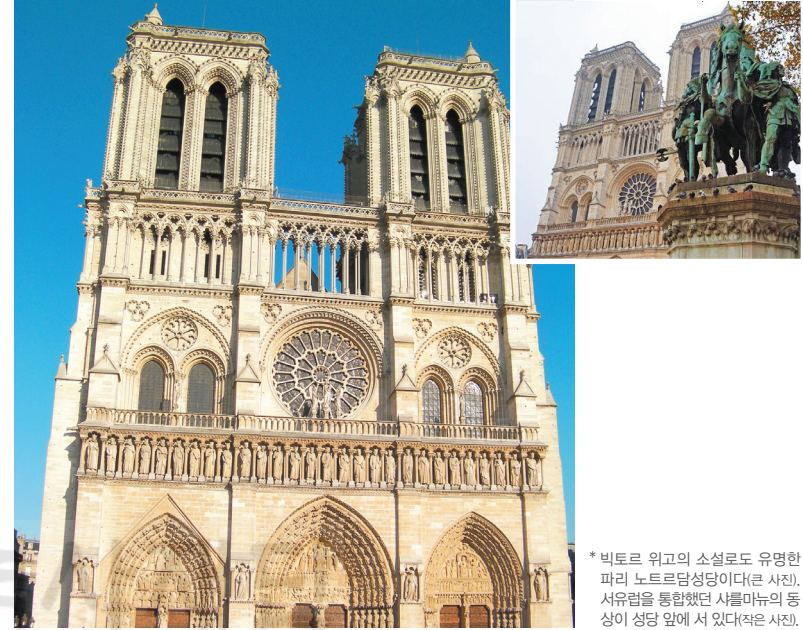
14~15세기 유럽은 프랑스왕위 계승권 문제로 영국과 프랑스가 오랜 기간 전쟁을 수행한 이른바 백년전쟁의 시기였다. 발루아(Valois) 왕가 샤를 6세의 아들 샤를 왕세자는 잉글랜드 그리고 잉글랜드와 연합한 부르고뉴(Bourgogne) 때문에 프랑스 일부 지역만 차지하고 있었다. 부르고뉴는 신성로마 제국(독일)에 점령한 동부 프랑스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프랑스 내부에서는 프랑스 공주가 잉글랜드 헨리 5세와 결혼하여 잉글랜드에 프랑스왕위 계



* 큰 사진은 랭스대성당 앞의 잔 다르크 동상이다. 잔 다르크는 랭스를 수복하여 프랑스가 영국에서 독립하게 만들었다. 작은 사진은 콘라트 아데나워 서독 총리가 1962년 랭스대성당에서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 미사를 끝낸 후 성당 밖으로 나와 주변에 손을 흔들고 있다. 2012년 같은 장소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화해 5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승권을 주려는 시도가 있었다. 당시 잉글랜드에 대한 적개심과 프랑스의 민족의식이 약하게나마 퍼져 있었다. 잉글랜드군과 부르고뉴군의 랭스 점령으로 대관식을 치르지 못하던 샤를 왕세자는 로렌(Lorraine) 지역 출신의 잔 다르크가 랭스를 수복시킴에 따라 랭스에서 대관식을 갖고 샤를 7세로 취임했다. 이후 잔 다르크는 부르고뉴 군대에게 잡혔고 잉글랜드의 주도하에 마녀로 몰려 화형당했다. 샤를 7세는 잔 다르크가 화형당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잔 다르크 사망 후 부르고뉴는 잉글랜드와의 동맹을 파기하고 프랑스 왕국과 화해했으며 잉글랜드는 프랑스에서 축출되고 백년전쟁은 끝났다. 이처럼 독일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의 양축은 영국이었다.

잔 다르크와 백년전쟁 종식을 계기로 프랑스는 하나로 통합되었다. 다시 500년 후, 통합이라는 서유럽의 변화 속에서 샤를 드골과 콘라트 아데나워의 랭스 노트르담성당 공동미사를 계기로 프랑스와 독일 동반자 관계가 출범한다.



* 빅토르 위고의 소설로도 유명한 파리 노트르담성당이다(큰 사진). 서유럽을 통합했던 샤를마뉴의 동상이 성당 앞에 서 있다(작은 사진).

파리의 노트르담(Notre-Dame de Paris)은 15세기 파리를 배경으로 한 빅토르 위고(Victor-Marie Hugo)의 소설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는 『노트르담 꼽추』로 번역되어 있다. 파리 노트르담성당은 1804년 나폴레옹 1세가 대관식을 가졌던 곳이다. 랭스가 아닌 파리에서 나폴레옹 1세가 대관식을 가진 이유는 서유럽을 통일한 샤를마뉴(Charlemagne)를 계승하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프랑스에는 노트르담성당 이상으로 샤를마뉴 동상이 곳곳에 있다. 샤를마뉴 동상은 샤를마뉴 제국의 중심 도시였던 독일 도시 아헨(Aachen)에도 있음은 물론이다. 파리 노트르담성당 앞에도 샤를마뉴 동상이 있다.

지금은 두 나라로 분리된 독일과 프랑스는 한 나라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5세기 서(西)게르만계의 프랑크족이 건국한 프랑크 왕국이다. 프랑크 왕국은 샤를마뉴, 카를대제(Karl der Große), 카롤루스대제(Carolus Magnus), 카를로대제(Carlo Magno), 찰스대제(Charles the Great) 등으로 불리는 카롤



* 스트라스부르의 노트르담성당이다. 유럽연합은 세 곳에 의사당을 두고 있는데, 오른쪽 아래 작은 사진은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스트라스부르 소재 유럽의회회사당이다. 오른쪽 위 작은 사진은 유럽의회 룩셈부르크 사무소 옆 노트르담성당이다.

링거 왕조의 제2대 국왕(재위 768~814) 때 다른 게르만 부족들을 통합하여 서유럽 대부분을 포함하였다.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기원을 샤를마뉴로 주장하기도 한다.

샤를마뉴는 유럽의 아버지로 칭해지기도 하며,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샤를마뉴의 프랑크 제국의 범위는 EU의 모태로 1952년 발족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의 범위와 거의 일치한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이 ECSC 가입국이었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건물의 이름중 하나도 '샤를마뉴'다.

스트라스부르에도 노트르담성당이 있다. 그 지명도도 랭스와 파리의 것에 비해 못하지 않다. 이 스트라스부르도 샤를마뉴와 깊은 관련이 있다.

814년 샤를마뉴가 사망한 후 삼남 루이(루트비히 1세)가 황제로 즉위했다. 루

이는 집권 후기 신앙에 몰두하여 '경건왕'(the Pious)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힘에 의한 통치에 소홀히 했다. 여러 차례 왕자들의 반란으로 제국은 매우 불안했다. 840년 루이가 사망하면서 제국은 분열되었다. 처음에는 루이의 장자 로타르(불어: 로테르 Lothaire, 독어: Lothair)가 후계자인 구도였다. 842년 로타르의 두 동생은 스트라스부르에 모였다. 그리고 로타르를 견제하여 서로 돕는다는 스트라스부르 맹약(Oath of Strasbourg)을 맺는다. 두 동생 루트비히(Ludwig, Louis)와 샤를(Charles, Carolus)이 게르만어와 로망어(프랑스어의 전신)로 842년에 맺은 이 맹약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프랑스어와 독일어 문서다.

이후 로타르가 차지한 로타랭기아(Lotharingia, 중프랑크)는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접경지역인 로렌(독어로는 로트링겐 Lothringen)의 시작이자 어원이다. '독일왕(the German)' 루트비히는 오늘날 독일에 해당하는 게르마니아(동프랑크)를 차지하였다. 머리카락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토가 불모지라서 '대머리왕(the Bald)'으로 불렸던 샤를은 프랑스(서프랑크)를 차지했다. 루트비히와 샤를의 스트라스부르 맹약은 독일과 프랑스라는 두 나라의 출범을 알리는 것이자 동시에 두 나라 간의 협력을 약속한 최초의 조약이다.

주변국 간의 숙적관계에서 접경지역 거주자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자주 받게 된다. 로렌 지역 출신의 잔 다르크가 마녀사냥으로 화형당한 것도 부르고뉴와 잉글랜드뿐 아니라 프랑스의 방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알자스(Alsace) 지역 출신의 유대인 드레퓌스(Alfred Dreyfus)도 마녀사냥으로 희생된 바 있다. 1894년 프랑스군 장교 드레퓌스는 군사정보를 독일 측에 제공한 혐의로 수감되었는데, 드레퓌스의 무죄 주장을 둘러싼 반(反)유대주의 및 반(反)독일의 우파와 반(反)군국주의 및 인권옹호의 좌파 간의 대립 속에 드레퓌스뿐 아니라 드레퓌스를 옹호한 에밀 졸라(Émile Zola)와 같은 유명인들도 마녀사냥의 곤혹을 치렀다. 외부든 내부든 적대적 대립이 있으면 마녀사냥도 잘 먹힌다.

1949년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Dean Acheson)은 프랑스에 서독과의 협력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미국이 서독 루르 지역의 생산규제를 해제하려고 했을 때 프랑스는 처음에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그러다가 곧 서유럽의 결속이

독일의 오판을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독일과 프랑스 간의 적대 요인을 해소하고 유럽을 결속하자는 취지에서 초국가적 기구를 통해 석탄과 철강 산업을 공동으로 관리하자는 프랑스 외무장관 슈망(Robert Schuman)의 선언이 1950년 5월 발표되었다. 독일,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이 슈망선언을 수락하여 1951년 4월 조약이 체결되었고, 1952년 8월 독어 명칭 Europäische Gemeinschaft für Kohle und Stahl (EGKS), 불어 명칭 Communauté Européenne du Charbon et de l'Acier (CECA)의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발족되었다. ECSC는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를 거쳐 1993년 11월 공식 출범한 유럽연합(EU)의 전신(前身)으로 기능하였다.

프랑스 알자스-로렌 지역의 철광석은 독일 루르 지역의 석탄과 함께 ECSC체제로 관리되었다. 석탄·철강산업 협력의 경제적 목적뿐 아니라 제2차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재무장을 견제하려는 주변국의 우려가 ECSC 성립의 배경이었다. 냉전시대에 프랑스는 서방권의 대소 견제 목적인 서독의 재무장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서독의 군대를 서독의 지휘하에 두지 않기 위해 프랑스는 유럽공동군 창설을 추진하기도 했다. 무기 생산의 기반이 되는 석탄과 철강의 ECSC 공동관리를 통해 독일의 도발을 방지하려는 프랑스의 의도가 있었고, 동시에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독일의 계산이 깔려 있었다. 더구나 유럽대륙을 두고 맹주를 자처하려고 했던 프랑스와 독일 모두 미국과 소련이라는 초강대국의 등장으로 세계무대에서 쇠퇴하게 되었다.

유럽통합 그리고 독일·프랑스 간 화해는 대(對)소련 공동 견제에서 나온 측면이 있었지만, 소련 외에도 영국과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미국은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서유럽의 결속을 원했지만, 프랑스 특히 샤를 드골의 경우 대서양 중심의 유럽보다는 유럽대륙 중심의 유럽을, 즉 영국이나 미국 주도의 서유럽보다는 프랑스 중심의 서유럽을 더 원했다. 프랑스가 영국의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및 유럽공동체(EC) 가입을 1962년과 1967년에 거부한 것이 그러한 예다. 영국은 1973년에야

EC에 가입할 수 있었다.

독일과 프랑스 간의 엘리제조약도 미국을 일방적으로 따르려는 의도보다 미국에서 독립하려는 의도가 작용했다.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1963년 엘리제조약으로 서독과 함께 미국을 견제하려 했다. 그렇지만 서독은 엘리제조약의 의회 비준안에 미국과 서독의 기존 관계가 엘리제조약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프랑스와의 우호관계뿐 아니라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려 하였다. 미국을 견제하려는 프랑스는 서독과 우호관계를 급진전하려는 동기를 잃었고, 엘리제조약 이후 독일과 프랑스 간 관계가 급진적으로 변모하지는 않았다.

1952년 ECSC 의회(Assembly)는 알자스의 중심 도시 스트라스부르에 설치되었다. 1958년 EEC 의회 그리고 유럽원자력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 의회와 통합되어 1962년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로 개칭되었다. 스트라스부르 외에도 벨기에 브뤼셀과 룩셈부르크에도 유럽의회의사당이 있지만, 유럽의회 정기 본회의는 8월을 제외한 매월 1주(4일) 동안 스트라스부르 의사당에서 열리고 있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의사당이 상징하듯이,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나 독일의 슈트라스부르크(Strassburg) 대신에 유럽의 스트라스부르로 불리는 경향이 있다.

IV. 프랑크푸르트와 센겐 – 국경의 개방 그리고 동반자 관계의 숙성

샤를마뉴의 프랑크왕국, 나폴레옹 1세의 유럽 정복, 프로이센의 독일 통일, 독일의 제1차세계대전 및 제2차세계대전 모두 표면적으로는 유럽 통합을 추구한 것이었지만, 실상은 전쟁으로 패권을 추구한 것이었다. 독일의 제1제국으로 불리는 신성로마제국뿐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를 아우르는 샤를마뉴의 신성로마제국도 실상은 신성하지 않았으며, 로마적이지도 않았다. 패권적 통합은 숙적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시킨다. 이에



* 마인 강 건너편에서 본 프랑크푸르트 시내 쪽 모습이다. 작은 사진은 오데르강 건너편 폴란드에서 본 프랑크푸르트 시내 쪽 모습이다. 독일이 통일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도시 발전의 모습은 매우 다르다.

비해 개방적이고 공동체적인 유럽연합식 통합은 동반자 관계에 기여한다.

독일은 통일을 추진하면서 프랑스와의 서부 국경지역뿐 아니라 폴란드와의 동부 국경지역 영유권에 집착하지 않았다. 독일의 입장에서는 폴란드 내 일부 지역이 독일 영토라고 주장해볼 수도 있었다. 독일이 영토분쟁 지역 일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은 통일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유럽연합 체제에서는 굳이 독일에 귀속하지 않더라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경의 개방적 운용으로 주변국과의 분쟁도 피하고 하나의 경제권으로 실리를 획득하려는 것이다.

독일 도시 가운데 프랑크푸르트는 세계 사람들에게 매우 낯익은 도시다. 프랑크푸르트는 ‘프랑크족의 여울(ford, 걸을 수 있는 얇은 하천)’ 혹은 ‘프랑크족의 통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때 프랑크는 프랑스라는 의미보다 라인 강 하류 지역에서 갈리아(Gallia) 지역으로 진출하여 프랑크왕국을 건설한 서(西)게르만 부족을 뜻한다. 따라서 프랑스와 독일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다.

독일에는 프랑크푸르트는 명칭의 도시가 둘이다. 그래서 도시를 관통하는 하천 이름을 따서 마인강변 프랑크푸르트(Frankfurt am Main)와 오데르강변 프랑크푸르트(Frankfurt an der Oder)로 부른다. 마인강변의 프랑크푸르트는 프랑스에서 멀지 않은 도시이고, 오데르강변 프랑크푸르트는 폴란드와 접경하고 있는 도시다. 오늘날 이 두 도시는 다른 발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 직후 프랑스는 독일의 경제부흥을 원치 않았다. 1945년 패전한 독일을 폰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와 프리드리히 실러(Johann Christoph Friedrich Von Schiller)가 살았던 목가적인 농업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미국 내 의견도 있었지만, 소련의 위협을 의식한 냉전구도 때문에 1946년 조지 마셜(George Marshall) 미국 국무장관은 유럽부흥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 마셜플랜)을 추진하였다. 서독에 속했던 마인강변 프랑크푸르트는 서유럽 경제부흥의 주요 지역으로 활용되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독일에서 항공기가 가장 많이 출입경하는 유럽의 허브(hub) 공항이다.

이에 비해 동독에 속했던 오데르강변 프랑크푸르트는 자본주의식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물론 물질적 풍요가 무조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동독이나 동유럽의 지역들이 친환경적이거나 주민 삶의 질이 높았던 것은 아니다.

냉전시대의 등장으로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마지노(Maginot)선은 사라지고 대신에 서유럽과 동유럽 사이에 철의 장막(curtain of iron)이 등장했다. 철의 장막은 동독과 서독 그리고 동유럽과 서유럽을 구분하던 경계선이었다. 철의 장막의 공식적인 첫 언급은 영국의 윈스턴 처칠(Winston Lenard Spencer Churchill) 수상의 연설에서였다. 실제 철의 장막 위치에 대해서는 달리 주장되기도 한다. 유고슬라비아를 동유럽에 포함시켜 철의 장막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비교적 독립적인 국가였던 유고슬라비아를 철의 장막 국가에 제외시키기도 한다. 1989년 5월 소련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의 지원으로 헝가리는 오스트리아와의 국경 즉 철의 장막을 해체하였다. 또 1990년 7월 1일 독일은 동서독 분단의 철의 장막을 공식적으로 철폐하였다.

오늘날 철의 장막은 존재하지 않는다. 철의 장막은 미술품과 박물관으로



* 보주뒤노르 생물권보전지역 남서쪽 끝을 관통하는 프랑스 도로다. 왼쪽 위의 작은 사진은 프랑스에서 룩셈부르크로 들어가는 국경이다. 여기서 가까운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3국의 경계가 만나는 센겐의 배 위에서 국경개방조약을 맺음으로써 대부분의 차량은 국경통과시 검문을 받지 않는다. 국경 표지판도 사진 속에서 멀리 보이는 국가 이름 이니셜의 간판뿐이다.

기념되고 있을 뿐이다. 헝가리는 오스트리아와 접경한 펠쇠차타르(Felsőcsatár)에 철의 장막 박물관(Vasfüggöny Múzeum)을 열었고, 체코는 독일과 접경한 로즈바도프(Rozvadov)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접경한 발티체(Valtice)에 철의 장막 박물관을 운영 중이다. 철의 장막은 동유럽 공산정권의 붕괴로 유럽의 생태환경보전을 위한 유럽그린벨트(European Green Belt)로 추진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간 화해의 노력은 생태보전 사업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1985년부터 독일과 프랑스 간의 접경지역 생물권보전협력이 추진되었다. 여기에는 순수한 생물권보전 활동뿐 아니라 청소년 교류를 포함한 교류 및 화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정보교류와 만남, 학교와 청소년의 교류, 국경지대 관광 등의 사업들이 추진되었고 이러한 사업은 이웃 국가와의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1988년 유네스코는 프랑스의 보주뒤노르 자연공원(Natural Parc of Voges du Nord)을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 BR)으로 지정했다. 1992년에는 인

접지역인 독일의 팔처발드 자연공원(Phalzerwald Natural Park)도 유네스코 BR로 지정되었다. 유네스코 지정이라는 매개로 양국 교류는 더욱 활발해졌다. 1998년 유럽에서 최초로 유네스코 접경생물권보전지역(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TBR)으로 지정되었다.

셴겐조약(Schengen agreement)은 인접국 간의 실질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였다. 1985년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 세 나라의 국경선이 만나는 지역인 셴겐의 모젤(불어: Moselle, 독어: Mosel, 룩셈부르크어: Musel)강 유람선에서 이 세 국가와 벨기에, 네덜란드의 대표들이 모여 국경 검문 폐지와 여행 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실제 국경 개방은 동유럽 공산정권의 붕괴로 연기되어 1995년에 실현되었다.

V. 맺음말

독일과 프랑스의 동반자 관계는 양국관계보다 다른 주변국이나 국제기구를 포함한 다자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 주변국에는 함께 협력할 나라뿐 아니라 함께 견제해야 할 나라도 포함된다. 특히 함께 견제할 특정 세력도 있다. 아마 나치세력이 그런 예에 속할 것이다.

민족주의라는 용어는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어감의 단어이지만 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배타적이고 국수적인 뉘앙스를 풍긴다. 나치즘과 파시즘 모두 그런 뉘앙스다. 독일이나 프랑스에도 스킨헤드 족과 같은 외국인 배격주의자들이 활동하지만 그 비중은 낮다. 그 비중이 크면 문제고 작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뿐이다. 독일은 대체로 열린 민족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통일을 허용하였다.

평화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는 영토분쟁 가운데 하나는 통일한 독일 사례다. 엄밀하게 말하면 소규모가 아닌 대규모의 세계대전을 두 차례나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영토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가능했다고 볼 수도 있다. 제2차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이 폴란드 및 프랑스

와 국경을 합의한 배경으로 여러 가지를 언급할 수 있다. 먼저, 통일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대외 양보가 필요했으며, 유럽통합으로 독일-프랑스 국경지역이나 독일-폴란드 국경지역의 국적(國籍)이 덜 중요해졌다. 무엇보다도 패전국 독일은 패전국 차원보다 가해국이라는 차원의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독일의 정책은 내부의 반성과 외부와의 타협을 주장한 정파들의 국내적 지지 기반이 탄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일본과 중국의 국내정치는 한국의 영토문제에 큰 영향을 준다. 인접국 국민 모두를 적대시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당사국의 양심적 목소리가 존중되도록 하는 것이 영토 외교의 출발점일 수 있다. 인접국 간 숙적관계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감정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발한다. 인접국가와 대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웃국가와 화해하는 것도 국내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국내정치적으로 지지되어야 동반자 관계는 지속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역지사지의 태도다. 독일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프랑스는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볼 때 갈등도 줄어들 뿐 아니라 실제 변화를 유도하기가 훨씬 용이하다.

프랑스-독일 관계를 동북아시아에 적용하는 논의는 많다. 동북아시아 국가를 유럽 국가에 비유할 때 사람마다 주제마다 다르게 연결된다. 중국은 대륙 국가 독일에 비유되기도 하고, 또 주변국에게 함락되었다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결국 전승국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프랑스에 비유되기도 한다. 근대화 순서에 따라 일본-중국 관계를 프랑스-독일 관계에 비유하기도 한다. 해양국가라는 측면에서 일본을 영국에 비유하기도 한다. 일본 해군은 네덜란드와 교류하다 영국 방식으로 교체하여 러시아 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이 균형자(balancer)라는 측면에서 한국을 영국에 비유하기도 한다.

또 분단국이라는 맥락에서 한국을 독일에 비유하기도 한다. 강대국 사이의 슬픈 역사라는 점에서는 한국은 폴란드와 더 유사할 수도 있다. 폴란드는 제2차세계대전 때 독일과 소련의 담합에 의해 영토가 분할 통치되었고

영국에 망명정부를 수립하기도 했다. 폴란드의 현재 영토 일부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실질적 경제권역으로 지역통합을 추구하는 독일, 그리고 자국 영토로 확실하지도 않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이 비교되는 것이다.

전쟁도발국(가해자)이자 패전국이라는 측면에서 일본을 독일에 비유할 때가 많다. 일본은 보불전쟁 이전에 프랑스와 군사교류를 했다가, 보불전쟁에서 프로이센이 승리한 후에는 독일과 적극 교류하여 소총·포병의 분리운영과 사단·연대·대대의 군편제를 채택하였다. 한국-일본 관계나 중국-일본 관계를 프랑스-독일 관계로 설명하거나 해석하는 경향이 다수다.

독일의 행동과 일본의 행동은 자주 비교되고 있다. 하지만 행동뿐 아니라 여러 조건도 다름을 숙지해야 한다.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독일의 황제직은 사라졌다. 이와 달리 일본 천황직은 패전 후에도 존속되고 있다. 또 대륙국가로 주변국과 교류가 필수적인 독일과 달리, 일본은 해양국가의 관점에서 주변국 관계를 설정하는 경향도 있다.

유럽인들은 동북아시아의 과거사 갈등에 대해 대체로 일본을 비난하는 입장이다. 2005년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도 일본이 과거사 청산에서 독일과 프랑스를 본받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유럽이나 동북아시아의 현지 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유럽 사례를 동북아시아에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유럽 사례에서 쉽게 확인되는 너무 당연한 사실을 간과할 수도 있다.

독일-프랑스 동반자 관계에 직접 관련 있는 유럽연합은 순탄한 길로만 가고 있지는 않다. 당장 동유럽의 빈곤층 다수가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 유입됨에 따라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갈등도 화해도 영원하지 않다. 숙적관계와 동반자 관계도 영원하지 않다. 숙적관계는 오래된 적대관계일 뿐이지 영원한 적대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제관계에 '영원한 적'이라는 것은 없다. 동시에 '영원한 친구'도 없다. 이러한 법칙은 독일-프랑스 관계의 과거와 미래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과거와 미래에도 적용된다.

조선 정부의 영토관할정책 전환에 대한 고찰

: 이규원 검찰사의 『울릉도 검찰일기』를 중심으로

양태진 동아시아영토문제연구소 소장

I. 머리말

오늘날 한일 간의 독도 갈등이 깊어진 만큼 독도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해양영토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그런데 지금보다 교통 여건이 좋지 않았던 과거에는 본토와 멀리 떨어진 해양영토를 어떻게 인식하고 왕래하면서 이곳을 관리할 수 있었을까? 조선조의 영토관할정책은 오랜 기간 내륙에서는 청야작전(淸野作戰)¹을, 영해상의 낙도는 섬을 비워두는 공도정책(空島政策)을 펴 소극적인 해방관리정책(海防管理政策)²을 견지했다. 이러한 정책 아래 동해상에서 멀리 떨어진 울릉도에는 왜구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근세에 들어 열강이 해양영토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자 고종은 울릉도 검찰사로 이규원(李圭遠)을 임명하였다. 이 글에서는 조선의 해양영토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일기』³를 통해 울릉도의 역사와 조선 말

1 청야작전이란 외침시 군 작전상 일정지역을 空洞化하는 전략으로 인조 때 鄭忠信이 明末·清初 양 진영의 침략에 대비하여 청천강 이북지역을 비워두고 싸우자는 전략의 하나였다.

2 해방관리정책이란 일종의 해상방비관리책으로 수토정책이나 공도정책이라는 용어 대신에 필자는 해방관리정책이라는 용어를 이 글에서 쓰고자 한다.

3 李瑄根, 1963, 『近世鬱陵島問題와 檢察使 李奎遠의 探險成果』, 『大同文化研究』 1; 대한민국 외무부, 『독도관계자료집』

기의 영토관리 실상을 파악하고,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 활동과 『울릉도 검찰일기』의 의의를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II. 울릉도의 역사와 조선 정부의 영토관리 상황

울릉도는 동해상에 위치한 섬으로 중앙에 984m의 성인봉(聖人峰)이 솟아 있고, 901m의 미륵산(彌勒山), 608m의 추봉(錐峰), 713m의 형제봉(兄弟峰), 586m의 관모봉(冠帽峰) 등이 고지를 이루고 있다.⁴ 울릉도가 역사상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삼국지』 위지 동이전 옥저조에 옥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풍랑을 만나 수십 일 만에 이 섬에 닿았다고 한 기록이다. 이 기록을 통해 고대사회부터 울릉도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신라 지증왕(智證王) 13년(512)에 하슬라주(何瑟羅州) 군주(軍主) 이사부(異斯夫)가 우산국을 정벌하면서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는 신라 영역권에 들어왔다.⁵

고려 태조 왕건은 930년 울릉도에서 백길(白吉)과 토두(土豆)가 방물(方物)을 바치자 백길을 정위(正位)로, 토두를 정조(正朝)로 삼았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전해지고 있다. 고려 현종 9년(1018)에는 동여진(東女眞)의 침입을 받고 섬이 황폐해지자 고려 정부는 이원구(李元龜)로 하여금 농기구를 보내 개간에 힘썼으나 1022년 또다시 여진의 침입이 이어져 이후 섬은 무인지경화(無人之境化)되고 말았다. 그러나 덕종 원년인 1032년에 우릉성주(羽陵城主)의

토산물 진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섬이 근근이 개척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고려 말기부터 왜구의 노략질이 심해지는 가운데 부득이 섬을 비워두는 공도정책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울릉도에 먹을거리가 넉넉하다는 소문이 돌자 섬으로 잠입하는 백성들과

11, 410~427쪽; 양태진, 1994, 『우리나라 영토 이야기』, 대륙연구소 출판부, 194~201쪽

4 건설부 국립지리원, 1982, 『한국지명요람』, 韓國自然保存協會, 1981, 『鬱陵島 및 獨島綜合學術調査報告書』

5 『三國史記』, 新羅本紀, 智證王 三十三年 六月條

왜인의 노략질이 줄지 않았고, 이에 수시로 안무사(按撫使)와 경차관(敬差官)을 파견해 주민을 쇄환해오도록 하였다.

숙종조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왜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자 결국 안용복 사건⁶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숙종은 삼척첨사 장한상(張漢相)으로 하여금 울릉도를 조사·보고하게 하였고 당시 영의정 남구만(南九萬)⁷이 왜인의 왕래를 막고 백성의 잠입을 막기 위해 1~2년에 한두 번씩 섬을 수토(搜討)하도록 건의하였다.⁸ 이후 수토정책은 정례화되었지만, 본토에서 떨어진 섬에 대한 조선 정부의 소극적인 해방관리정책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한편 대마도가 일본에 영유화(領有化)되면서 울릉도에 대한 대마도주의 관심은 유달랐다. 대마도주 종의륜(宗義倫)은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조선 어민들의 '죽도' 출어를 금지해달라는 서계(書契)를 예조로 보내왔던 것이다. 죽도는 울릉도에 대한 일본의 호칭이었는데 조선 측은 이에 마찰을 피하고자 '죽도' 출어는 금지시키되, '울릉'은 조선 영토임을 밝히는 서계를 대마도로 보냈다. 그러나 대마도주는 죽도가 울릉도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죽도와 울릉도가 전혀 다른 섬인 것처럼 간계를 부려 서계에 '울릉(蔚陵)' 두 글자를 삭제하고 회서(回書)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⁹ 조선 말기에 이르면 울릉도와 독도에 왜인의 왕래가 더욱 잦아지고, 왜인들이 울릉도를 영유(領有)하려는 야욕 또한 커져가고 있었던 것이다.

6 안용복은 숙종 시기 민간 어부다. 울릉도와 독도에 기거하는 일본인들을 모두 쫓아내고, 1696년(숙종 22) 일본 막부로 가서 울릉도 '우도 감세관'이라 자칭하고 일본 정부에 불법 고기잡이와 벌목에 항의하였다. 울릉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승인한 문서를 받아 돌아오는 길에 대마도에서 왜인들에게 붙잡혀 우리나라 조정에 압송됨에 따라, 나라의 승인 없이 양국 관계를 어지럽혔다는 죄목으로 귀양을 보냈는데 일부 신료는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극언까지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7 남구만의 호는 藥泉이며, 숙종 3년(1687)에 영의정에 올랐다. 남구만의 『藥泉集』은 경종 3년(1723)에 간행되었는데 이 문집에 독도 관련 기록이 있어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밝혀주는 데 귀중한 사료가 되고 있다. 문집은 三十四卷 十七冊 印本이다.

8 『肅宗實錄』, 肅宗 二十年(1694) 八月己酉 十四日條, “九萬入 奏曰 不可使民入居 間 一二年 搜討爲宜 上從之.”

9 『朝鮮通交大紀』 卷八, “我書不言蔚陵島之事 今回簡有蔚陵島名 是所難曉 只冀除却蔚陵之名 惟幸”이라 하여 '울릉' 두 글자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III.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일기』

17세기 후반부터 정례적인 수토가 이루어지면서 해상 교통지리가 넓어지고, 울릉도의 토산물들이 많이 알려졌다. 이에 백성들의 울릉도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특히 왜인들이 울릉도 산림목인 향나무를 벌목하기 위해 섬에 무단으로 왕래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것은 당시 일본 정부가 태정관지령(1877)을 통해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가 일본 땅과 관계가 없음으로 정치적으로 인정하였음에도, 여전히 민간에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에 무단으로 왕래하고 있었던 상황을 보여준다.

이에 고종은 1881년 3월 23일자로 이규원(1833~?)을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하고 지시하기를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무단 왕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검찰하여 무단 벌목을 막고, 울릉도에 딸린 부속도서를 살펴 촌락을 형성할 만한 곳이 있는지 자세히 조사하도록 하여 지도와 별단(別單)을 작성해오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이규원은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받은 이듬해인 1882년에 총 102명의 수행원을 이끌고 강원도 평해군 구산포(邱山浦)에서 세 척의 배를 타고 울릉도로 출발했다. 이규원 일행은 음력 4월 30일, 울릉도의 서쪽 포구인 소황토구미(小黃土邱尾)에 무사히 도착하여 11일 동안 이곳에 체류하면서 섬 곳곳을 답사하고 기록을 남겼는데 이것이 바로 『울릉도 검찰일기』다.

『울릉도 검찰일기』는 일기 형식의 울릉도 탐사기록과 고종의 복명에 따른 계초본(啓草本)으로 구별되는데 여기에는 이규원이 한양을 출발해 울릉도에 이르게 된 과정과 울릉도의 지명, 거주인의 현황, 울릉도의 식생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규원은 울릉군 태하(台霞)로 알려진 대황토구미(大黃土邱尾)와 현포(玄浦)인 흑작지(黑斫之), 추봉(錐峯)인 송곳산, 성인봉, 나리동(羅里洞), 모시개인 저포(亭浦), 도방청포(道方廳浦)인 도동(道洞), 통구미(桶邱尾) 등 10여 곳을 걸어서 답사하면서 울릉도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을 만나 이곳에서 사람이 살 만한 곳을 알아보고 토산물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규원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울릉도에 있었던 본국인은 대략 140여 명이며, 이들의 신분은

거의 하호(下戶) 출신으로 포구 가까이에 움막을 치고 살고 있었다. 이들은 주로 봄철에 울릉도에 들어와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든 뒤, 미역을 따고 고기를 잡은 후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였다.

또 이규원은 답사 중 울릉도에서 무단으로 벌목하고 있는 일본인을 만나 필담을 나누었다. 이 일본인들은 고종 17년(1880)부터 울릉도를 오가면서 나무를 베어 실어날랐고 현재 섬 안에는 78명의 일본인이 남아 있으며, 도방청포(현재의 도동을 일컫음)에는 왜선 1척이 정박해 있다고 했다. 실제로 이규원 일행은 도방청포에서 장작지포(長斫之浦) 간에는 일본인 결막(結幕) 2개소가 있음도 확인했다. 또 이 필담 중에 이규원은 일본인으로 하여금 통구미 해변에는 일본인이 세운 표목이 있어서¹⁰ 일본인들은 울릉도를 송도(松島)라고 지칭하며 일본 땅으로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규원은 이 이야기를 듣고 한탄하며 울릉도는 신라 때부터 수천 년간 전해내려온 조선의 영토이며 일본에서 방금령(防禁令)을 내린 것을 듣지 못하였는지 꾸짖어 일본인에게 속히 철수해 돌아갈 것을 확인했다.¹¹

이것은 조선 정부에서 일본 외무성에 조회하여 일본인의 벌목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일본 정부는 인근 연해민에게 그러한 사실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고 미루고 있었던 당시 상황을 반증하는 것이며, 조선 정부의 소극적인 공도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

검찰사 이규원 일행은 10일간의 울릉도 검찰을 마치고 음력 5월 11일 울릉도를 떠나 하루 만에 강원도 평해군 구산포에 당도했고, 음력 5월 27일에 서울로 돌아와 하명대로 서계(書契)와 별단 그리고 섬 곳곳을 현지에 가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의 상세한 지도를 만들어 임금께 올렸다. 이 지도는 정황상 현재 전해지고 있는 울릉도내도(鬱陵島內島)와 울릉도외도(鬱陵島外島)로 추정되고 있다.¹²

10 『울릉도 검찰일기』에 따르면 이규원 일행은 통구미 해변에서 길이 6척, 너비 1척 가량의 표목을 발견하였는데, “大日本國 松島楸谷 明治 二年 二月 十三日 岩崎忠照 建之”라 쓰여 있었다. 이 표목은 메이지 2년인 1869년에 세워졌다.

11 양태진, 2012, 『우리 영토를 지켜온 위인들 이야기』, 164쪽 참고

12 그 근거로 앞서 고종 임금이 이규원 검찰사에게 별단을 작성 보고하라는 대목이 있었고 지도상에 명기된 산봉우리 마을과 분지 선착장 등이 검찰일기와 완전히 부합하고 있다.

이규원은 고종에게 복명하기를 울릉도에 촌락을 형성할 만한 곳은 나리동 분지이며, 들이 넓고 기름져 밭으로 개간한다면 일천 호(一千戶)를 수용할 수 있다고 전하였다. 이 밖에 이규원은 대항토구미, 현포인 흑작지, 천년포, 왜선



(그림 1) 나리분지로 가는 산길

창 대지포(大亭浦), 소지포(小亭浦), 도방청포인 도동, 장작지(長斫之) 등지도 논이나 밭으로 일궈낼 수 있으며 대략 100~300호는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보였다.¹³ 또 특산물로 산삼을 비롯하여 산속에 자생하는 수많은 약재류와 일명 물소(水牛)로 알려지고 있던 가지어(可支魚) 등 해산물이 풍부하여 도민이 족히 생활할 수 있는 곳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천연의 보고지를 왜인들이 침입해 벌목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자신들의 땅인 것처럼 표목까지 세워두고 있으니 일본 공사에 항의함은 물론 일본 외무성에 항의문을 발송할 것을 건의했다.

복명이 끝나자 고종은 “비록 작은 토지일망정 그 어떤 땅도 버릴 수 없다”고 하면서 울릉도 개척을 결심하고 총리대신과 관련부서 대신들에게 울릉도 개척을 서두르도록 명하였다. 동시에 일본인들이 무단 입도해 이 땅을 송도(松島)라고 지칭하면서 표목을 세우고 불법·부당하게 벌목해가는 것에 대해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도록 지시하였다.

IV. 이규원의 복명 후 조선 정부 해방관리정책의 변화

이규원의 복명이 있는 후, 대외적으로는 고종의 명에 따라 1882년 7월 하순경 조정에서 일본 외무성으로 조회하였다. 예조판서 이회정(李會正)의 명의로

13 李奎遠, 『鬱陵島 檢察日記』 啓本草

된 이 공함의 요지는 이전에 일본 정부가 울릉도 도항금지를 확약하였음에도 이규원 검찰사가 현지에 당도해 목격한 바로는 여전히 일본인들이 왕래하여 무단 벌채(伐採)를 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법적 제재와 앞으로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처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즉각적인 회답없이 미루다가 1882년 말에 벌목 금지를 약속했고 금령(禁令)을 내린 것은 고종 20년(1883) 3월 1일이었다.

이규원의 복명이 있은 후, 대내적으로는 임오군란 수습 후인 1882년 10월 1일 영의정 홍순목(洪淳穆)이 “백성을 모아 개간(開墾)하되 일정기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모여들어 촌락은 자연 형성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연해(沿海)의 영호남인(嶺湖南人)들로 하여금 조선건조(造船建造)를 허락한다면 이 일에 딸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고, 이렇게 모여든 주민을 통솔하고, 행정을 맡길 만한 인물로 하여금 도장(島長)을 맡기고 임명된 도장과 설진(設鎭)문제에 대해서는 강원도 관찰사에 지시하도록 하였으면 한다”고 고종에게 아뢰었다. 이 건의는 곧바로 고종의 윤허가 내려졌고 경상도 함양 출신의 전석규(全錫奎)가 울릉도 도장으로 지명되었다.

V. 맺음말

이렇듯 이규원의 성실한 검찰 활동을 통해 결과적으로 동해상의 외딴섬이었던 울릉도는 개척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고종은 이규원의 검찰 활동을 기초 자료로 기존의 소극적인 해양영토 관리정책을 전환해 울릉도에 백성을 거주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섬을 개척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해양영토 관리정책을 폈다. 그리고 열강의 해양영토 야욕이 달아오르고 있던 때에 대외적으로 울릉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공공연하게 함으로써 시의 적절한 대응할 수 있었다. 이것은 이규원의 검찰 활동과 『울릉도 검찰일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 울릉도는 신라시대 이후로 우리나라의 영역이었으며 그 부속도서와

주변 해역도 함께 관할되어 왔으므로 지질학상으로는 자연생태계상으로 보더라도 울릉도와 독도는 모자도(母子島)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모도(母島)인 울릉도가 자도(子島)인 독도를 영속화(領屬化)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¹⁴ 독도는 모도인 울릉도와 함께 인식되어나가야 한다. 이를 볼 때, 일본에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명확히 알리는 데 밑거름이 된 이규원의 검찰 활동과 『울릉도 검찰일기』는 현재 우리의 독도 영토 인식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14 李丙燾, 1976, 『韓國古代史研究-附三于山·竹島名稱考』, 博英社, 796~803쪽

1882년 고종의 밀지와 울릉도 잠행

: 이명우의 「鬱陵島記」에 대한 해제

유미림 한아문화연구소 소장

I. 사료 소개

1882년 고종이 밀지를 내려 울릉도를 몰래 조사시킨 일이 있었음을 밝혀주는 기록이 있다. 묵오(墨吾) 이명우가 남긴 「울릉도기(鬱陵島記)」가 그것이다. 널리 알려진 대로 1882년은 고종이 무신 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에 임명하여 울릉도와 주변 도서를 조사하게 한 해다. 조사 후 이규원은 「울릉도 검찰일기 계초본」¹을 작성하여 고종에게 복명했고, 일기도 따로 남겼다. 그런데 「울릉도기」에 따르면, 고종은 밀지를 내려 이명우로 하여금 울릉도에 잠행하여 도정(島情)을 살피게 했다는 것이다. 고종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장소를 두 사람에게 조사시킨 것이다. 밀지를 받은 사람은 이명우로서, 「울릉도기」는 개인 기록이지만 내용은 그의 울릉도 조사가 개인적인 탐사가 아니라 왕명에 따른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명우에게 왕명이 내려진 시기는 1882년 3월 중순이고, 그가 조사를 위해 길을 떠난 시기는 3월 16일이다. 동시대 이규원이 고종에게 하직인사를 한 시기는 4월 7일이고 그가 조사를 위해 길을 떠난 시기는 4월

¹ 본 해제는 이해은·이형근, 2006, 『만은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일기」』 (한국해양수산개발원)를 참고하여 이규원의 행적을 밝혔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으로 대신하며, 일일 이 각주를 달지 않는다.

10일이다. 따라서 두 사람이 울릉도를 향해 떠난 시간적 간격은 한 달이 채 안 된다. 고종은 왜 같은 장소인 울릉도에 두 사람을 따로 파견했을까? 고종은 왜 이규원에게는 공개 조사를 명하고 이명우에게는 비밀 조사를 명했을까? 이런 의문을 품으며 「울릉도기」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일기」는 많이 알려진 데 비해, 이명우의 「울릉도기」는 알려져 있지 않다. 우선 사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면, 「울릉도기」는 이명우의 문집 『묵오유고(墨吾遺稿)』² 안에 실려 있는 기문(記文) 중의 하나다. 모두 11장으로 되어 있다. 「울릉도기」에 대해서는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이 작성한 『묵오유고』 해제에 간단히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이 해제는 『묵오유고』 전체에 대한 해제이므로 그 안의 「울릉도기」에 대해서는 울릉도의 내력을 소개한 글이라고만 밝히고 있을 뿐³ 1882년 조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묵오유고』는 이명우의 아들 혁의(赫儀)가 1917년에 편집하여 목활자본으로 간행한 것으로 김윤식의 서문(1915), 조카 풍의와 아들 혁의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저자인 이명우(李明宇, 1836~1904)는 본관은 전주, 자(字)는 경덕(景德), 자호는 묵오다. 아버지는 도정(都正) 이회수(李會壽)며, 어머니 한산이씨는 이화재(李華載)의 딸이다. 어릴 적에 추사 김정희에게 수학했고, 박규수(朴圭壽)·김병학(金炳學)·신희석(申錫禧) 등과도 지적 교류가 있었다.

묘갈(墓碣)에 따르면, 이명우는 1865년 처음 벼슬길에 오른 이래 1869년에 울산 감목관에 제수되었으며 이후 하양과 음죽 현령을 거쳐 1871년 7월에는 흡곡 현령에 제수되었다. 1876년 우환이 있자 재직 중임을 비통해하다가 부친상을 마친 뒤에는 경조랑(京兆郎)이 되었다. 「울릉도기」는 1882년

5월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관직이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다. 『승정원일기』에 1882년 9월 전 별선 군관, 1885년 4월에 한성부 주부(主簿)에 임명된 기사가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1882년 당시 별선 군관이었거나 흡곡 현령이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1887년부터는 다른 임지 즉 안산, 덕산, 단양,

² 규장각(고 3428-207)과 국립중앙도서관(BC 古朝 46-가1991),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본 해제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을 저본으로 한다.

³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에 「묵오유고」에 대한 간단한 해제(오세현 작성)가 나와 있다.

청풍, 영월, 은진 등지로 부임했다. 1894년 동학란이 일어나자 이명우는 동생 시우(時宇)와 함께 벼슬을 그만두고 가야산에 들어가 귀래정(歸來亭)을 짓고 저술에 전념했다. 1904년 2월 69세로 졸했다. 저술로는 『목오유고』 외에 『경구수록(警懼收錄)』, 『역학제요(易學提要)』, 『임사편고(臨事便考)』 등이 있다.

II. 구성과 내용

1882년 조선 정부가 울릉도 조사를 명하게 되는 배경에는 이전부터 행해지고 있던 일본인의 무단 침입과 벌목때문이었다. 1881년 5월 강원감사 임한수는 울릉도에 일본인의 무단 침입을 상부에 보고했고, 이를 보고받은 조선 정부는 일본 외무성에 서계를 보내 항의했다. 한편 고종은 더 이상 울릉도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인식했고 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에 임명하여 울릉도로 보내 개척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이규원이 고종에게서 검찰 임무를 부여받은 시기는 1881년 5월 23일이지만 울릉도로 떠난 시기는 1882년 4월 초순이다. 이규원은 서울을 출발하여 원주목-평해를 거쳐 구산포에서 발선해 30일 오후 울릉도 서쪽 소항토구미에 도착했다. 이규원이 서울에 돌아와 고종에게 복명한 시기는 6월 5일이다. 따라서 그의 『울릉도 검찰일기』에는 약 두 달 간의 여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반면 이명우의 「울릉도기」는 이규원의 기록에 비하면 매우 소략하다. 파견된 인원, 노정, 비용, 기타 상황 등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 「울릉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울릉도의 연혁에 대해 기술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명우의 조사 내용을 담고 있다. 「울릉도기」는 “동해가에 나라가 하나 있으니 ……”로 시작하고, 이어 우산국 시대부터 숙종 연간의 수토관 파견까지를 다루고 있다. 울릉도를 다룬 다른 기록과 마찬가지로 『삼국사기』와 『동국여지승람』 등의 울릉도 관련 내용을 적고 있는데, 이사부를 ‘이사보(貳師輔)’로, 울진 만호 남호를 ‘박호(朴顥)’로 적고 있어 약간의 글자 출입이 있다. 이것은 전사(轉寫)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인

듯하다. 또한 “여지에서 말하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인데, 우산은 바로 일본이 말하는 송도다’라고 하였다(輿地云鬱陵于山皆于山國 而于山則日本所謂松島也)”는 내용도 실고 있다. 안용복이 일본에 가서 울릉도가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여정이요, 일본에서는 5일 여정이다”라고 한 사실을 소개하고, ‘울릉도 쟁계’에 대해서는 “죽도(竹島)·울릉(鬱陵)을 가지고 다툰 바가 많다(多以竹島鬱陵爭之)”고 적었다.

뒷부분은 그가 울릉도로 떠나게 된 배경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명우는 임오년 모춘(暮春) 중순인 1882년 늦봄에 왕명을 받았다고 한다. 3월 16일 이명우는 동영(東營)인 강원 감영에 이르러 “동백 임한수에게서 밀지를 받았다(祇授密旨于東伯林翰誅)”고 한다. 고종이 내린 밀지를 강원 감사를 통해 전달받은 것이다. 1882년 당시 강원도 관찰사는 임한수였으므로 그가 왕명을 받은 임오년은 1882년이 분명하다.

이명우는 감영에서 며칠 머물다가 제천과 단양을 거쳐 3월 27일 평해에 이르렀다. 그가 울릉도로 발선한 날은 4월 9일이다. (평해의) 구산 후풍소에서 발선했다. 일행이 울릉도에 도착한 날은 4월 15일이고 다음날부터 4월 22일까지 조사했다고 했으므로 실제로 울릉도를 조사한 기간은 대략 7일이다.

그가 발선한 이래 울릉도에 도착하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된 것은 치성을 드리는 일 때문이었다. 이명우는 울릉도가 영험한 섬인지라 정성을 드리지 않으면 무사히 갔다 올 수 없다는 말을 듣고 4월 9일 구산 후풍소를 떠나 여러 곳으로 가서 치성문(致誠文)과 성황문(城隍文)을 올렸다. 치성에 여러 날이 소요되었고 바람을 기다리느라 시간이 지체되었다. 그가 바람을 얻어 배에 오르는 날은 4월 14일이다. 파도가 크게 일어 구토를 하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지만 4월 15일 밤에 울릉도의 흑작지(黑作地, 현재의 현포)에 도착했다. 이명우는 추봉(錐峯, 현재의 추산)과 천년포(千年浦)를 거쳐 구선창(舊船倉)⁴에 이르렀고 그곳 초막에서 숙박했다. 다음날(16일)에는 황토구(黃土口, 현재의 태하)의 신당(神堂)에 치성을 드렸다. 「울릉도기」에는 신당이 생겨난 유래⁵도 소개되어

4 이규원의 기록에는 왜선창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의 천부다.

5 삼척영장이 수토 때 통인(通引)과 기생

있다.

이명우의 울릉도 조사는 4월 16일부터 집중적으로 이뤄진 듯하다. 이명우는 홍문령(紅門嶺)을 넘어 산으로 들어갔다. 그는 홍문령 고개에서 아래로 10리가 넘어 보이는 평지를 발견했고 이곳을 국동(國洞)이라고 칭했다. 나리동을 국동으로 이른 듯하다. 물길이 모두 이곳으로 모여드는데 물이 들어오는 흔적이나 입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이명우는 약상(藥商)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그 이유는 이곳이 사방이 막힌 고산지대라 밖으로 열린 입구가 없이 자연스레 천년포 쪽으로 물이 흘러내려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명우는 이곳이야말로 섬의 도원(桃源)격이니 개간하면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곳으로 보았다. 이명우는 이 외에도 황토구, 흑작지, 저포(亭浦, 현재의 저동), 장작지(長作地, 현재의 사동), 곡포(谷浦, 현재의 남양) 등지가 모두 밭농사나 논농사에 마땅한 비옥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명우는 울릉도에 거주할 만한 곳이 골짜기마다 있어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이명우의 임무가 울릉도를 개척할 경우 경작지와 주거지역으로 적당한 지역이 어디인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그는 울릉도의 지형적 특성에 대해서도 기술했다. 이 섬의 바깥쪽은 돌로 되어 있고 안쪽은 흙으로 되어 있으며, 밖으로 12포구가 있다고 했다. 밖에서 안으로 통하는 길을 4군데로 보고 각각 섬 안과 통로 간의 거리를 적어 놓았다. 천년포, 곡포, 황토구 세 길은 약상이 혼자 몸으로만 겨우 통행할 정도로 길이 매우 좁고 험하다고 했다. 이명우는 울릉도의 사방 거리를 포구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저포를 동쪽으로, 황토구를 서쪽으로 하여 50리라고 했으니, 동서 거리를 50리로 본 것이다. 구선창을 북쪽으로, 곡포를 남쪽으로 하여 50리라고 했으니, 남북 거리를 50리로 본 것이다. 섬의 둘레는 140~150리로 보았다. 과거 안용복 사건 이후 울릉도를 조사했던 장한상은 150~160리로 보았고, 동시대인 이규원은 약 140~150리로 보았다.

이명우는 울릉도의 수목, 약초, 조류와 짐승의 종류

(姦坐)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돌아올 때 배가 뜨기 전에 풍량이 크게 일어나 부둣이 이들을 울릉도에 두고 와 이 섬의 혼이 되었다. 그 후 수토관들이 공무로 섬에 들어갈 때마다 남녀 의상을 만들어 치성을 드린 후에야 무사했다는 고사다. 지금 울릉도에 전해지는 태하의 성하신당 유래와는 약간 다르다.

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울릉도에 학조(鶴鳥)⁶가 가장 많다는 사실도 적었는데 학조란 깎새를 말한다. 이 새는 낮에 나왔다가 밤에 동굴로 들어기는데 까마귀를 보면 날지 못하고 먹이가 되며, 빛을 보면 모여들기 때문에 뱀사람들이 밤에 횃불을 들고 잡아 먹기로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해산물로는 미역과 전복이 가장 많다고 했다. 가지어(可支魚)에 대해서는, 귀는 작고 눈은 빨간데, 큰 것은 소만하다고 적었다. 뱀사람들이 가지어를 만나면 죽여 고기는 먹고 가죽은 이용한다는 사실도 기록했다. 이명우가 보기에 울릉도는 모든 산물이 보배로우며 잘 보존되어 있는 섬이었다. 또한 섬 자체가 영명(靈明)하여 사람들이 한번 울릉도에 들어오면 악심이 없어지는 영험한 신선구역으로 보았다. 울릉도를 두루 살펴본 이명우는 다시 홍문령에서 구선창으로 와서 뱀사람들의 초막에서 묵었다.

다음날에는 저포 등지로 향했는데 파도 때문에 부둣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구선창에서 대풍구(待風口, 대풍구미, 대풍잡)에 이르는 동안 풍랑을 만나 일행이 혼이 나갈 지경이었으므로 향목동(향목구미)이라는 곳에 내렸다고 했다. 이명우와 그 일행은 석벽 위에서 쉬며 풍랑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소황토구(小黃土口, 현재의 학포)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투숙하면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

4월 20일 오후 이명우는 천대(天臺)에 기도하면서 소황토구의 남쪽 석벽 아래서 치성을 드렸다. 다음날(21일) 배가 곡포(谷浦)로 와서 통구미(通口尾)⁷ 해안에 이르렀는데 일본인이 목패(木牌)에 ‘大日本松島槻谷’⁸이라고 써놓

은 것을 보았다. 이명우는 방향을 바꿔 장작지로 향했는데 그곳 해변에서 큰 나무로 판목을 만들고 있는 일본인들을 목격했다. 이에 그들의 막(幕)으로 들어가 문답을 한 후 통구미로 돌아온 것으로 되어 있으나 문답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4월 22일 오후에 바람을 얻어 배에 올라 23일 사시(巳時)⁹에 삼척 장호포(莊湖浦)¹⁰에 도착했다. 이명우는 (4월) 29일 원주에 이르러 문서와 도본(圖本)을 수정했

6 이규원은 객조(鶴鳥)라고 기록했다.

7 이규원은 통구미(通口尾)라고 적었다.

8 이규원은 『검찰일기』에는 ‘大日本帝國松島槻谷’으로, 『계초본』에는 ‘大日本國松島槻谷 明治二年二月十三日 岩崎忠照建之’로 적었다.

9 오전 9~11시 사이를 말한다.

10 장한상의 기록에는 ‘삼척부 남면(南面) 장오리진(莊五里津)’으로 되어 있다.

다. 다시 5월 3일 길을 떠나, 5일에 성 밖에 이르렀고 고종에게는 5월 8일 복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고종에게 복명한 내용 역시 『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는 보이지 않는다. 몰래 조사하게 했으므로 공식적인 보고 기록을 남기지 않은 듯하지만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이명우는 울릉도에 축실(藥室)과 거민(居民)은 없고 관선(官船)과 약상(藥商)만 잠시 결막(結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배를 정박하기에 좋은 포구도 없는 지역으로 보았다. 다만 땅이 좁은 우리나라로서는 백성을 이롭게 하기 위해 한 조각 땅이라도 아껴야 하는데 울릉도처럼 물산이 풍부하고 비옥한 땅을 그대로 두는 것은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그는 울릉도가 수목이 뾰족하고 물길이 멀기 때문에 개척 방도는 조정의 심산(深算)에 달려 있는 것으로 가벼이 의논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명우의 이런 결론은 고종에게도 보고되었을 것이며, 고종은 이규원의 보고를 함께 참조하여 결국 울릉도 개척을 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III. 사료적 의의

서두에서 말한, 고종이 왜 동일한 지역에 두 사람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파견했는지에 대해 「울릉도기」만으로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고종이 이명우에게는 잠행하여 조사하라는 밀지를 내렸고, 이규원에게는 공개적으로 조사하는 임무를 맡겼으므로 이규원의 행적에 대해서는 『승정원일기』도 기록하고 있지만, 이명우의 행적에 대해서는 관찬 사료에 기술된 것이 없다. 또한 묘갈(墓碣)에도 나와 있지 않다. 이규원은 울릉도 검찰사라는 관명으로 100명이 넘는 대규모 조사단을 이끌고 들어갔으므로 가는 도중 관리들의 환대를 받았으나, 이명우는 비밀리에 파견되었고 관직도 낮았으므로 적은 수의 일행으로 갔다. 이명우가 접촉한 관리로 기록에 나오는 사람은 강원감사 임한수뿐이다. 따라서 이명우와 관련된 기록 혹은 1882년 울릉도 조사와 관련된 기록이 임한수의 기록에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파악된

것은 없다. 다만 고종이 두 사람을 울릉도에 따로 파견하고 파견방식도 달린 점으로 미루어보건대, 고종에게 울릉도 문제는 중대한 국가현안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두 사람을 각각 파견한 것은 허위보고서가 작성될 가능성을 염려하여 교차검토를 하고자 해서인 듯하다. 이명우의 조사가 이규원에 앞선 사전답사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은 듯하다. 보통 사전답사를 할 때는 상관이 일행 중의 일부를 답사자로 먼저 보내고 답사보고를 부하에게 직접 받는다. 장한상도 1694년에 울릉도를 조사할 때 자신의 부하 군관을 사전 답사자로 먼저 들여보냈다. 이규원의 기록에는 그런 흔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명우의 보고에 대한 언급도 없다. 또한 이명우가 복명할 시점에 이규원은 울릉도에 있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이명우는 이규원보다 한 달 앞서 울릉도에 들어갔고, 조사기간은 이규원의 기간보다 짧다. 이규원은 4월 7일 고종의 명을 받은 뒤 4월 29일 구산포를 발선하여 30일에 울릉도에 도착했다. 5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육로 검찰을 시작하여¹¹ 5월 13일까지 울릉도와 죽도 및 주변도서를 조사했다. 따라서 이규원의 조사 기간은 열흘이 넘는다. 이명우는 3월 16일 임한수에게서 고종의 밀지를 받은 뒤 4월 9일 후풍소에 있다가 발선하여 4월 15일에 울릉도에 도착했고 다음날부터 22일까지 울릉도를 조사했다. 이명우의 조사 기간이 짧은 만큼 기록도 이규원에 비해 소략하다.

그런데 두 사람의 기록에는 유사점이 많다. 우선 울릉도 안의 조사 장소가 비슷하다. 또한 두 사람 모두 울릉도에서 뱃사람과 약상을 목격한 일, 일본이 세운 표목, 나리동의 크기와 개간지 등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러하다. 다만 이규원은 일본인과 문답한 내용이나 이름, 울릉도에 머물고 있던 뱃사람과 약상의 출신지까지 자세히 기술했지만, 이명우의 기술은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이규원의 기록은 일기 형식인데, 이명우의 기록은 문집에

신는 기(記)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고종에게 명받은 내용이 다른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종은 이규원에게 송죽도, 죽도, 우산도 등을 언급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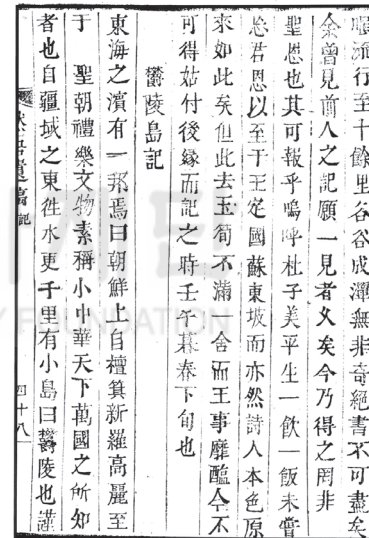
11 이규원은 5월 7일까지 육로를 검찰한 뒤 학포에서 하루 쉬고 9일과 10일에 해로로 섬을 돌았다.

서 주변 도서에 대해 자세히 파악해올 것을 주문했다. 그런데 이명우의 기록에는 고종이 지시한 내용이 없다. 다만 이명우가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고종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명우는 나리동을 중심으로 한 개간지와 거리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는데, 이는 고종이 이명우에게 울릉도의 개척 가능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도록 했음을 의미한다. 물론 고종은 이 규원에게도 울릉도의 개척 가능성 탐지라는 임무를 주었지만 주변 도서와 일본의 침탈 현황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명우 역시 울릉도에서 일본인을 목격하고 그들과 문답했다는 사실을 적었지만 자세하지는 않다. 또한 그는 독도에 관해서도 기술하지 않았다. 고종이 울릉도뿐만 아니라 주변 도서까지 조사를 지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명우의 기록은 '울릉도'에 치우쳐 있다. 따라서 이명우의 「울릉도기」만으로 고종의 의도를 전부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당시 조선 정부가 일본의 침탈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었으며 그중 하나가 울릉도 개척이었다는 것은 분명해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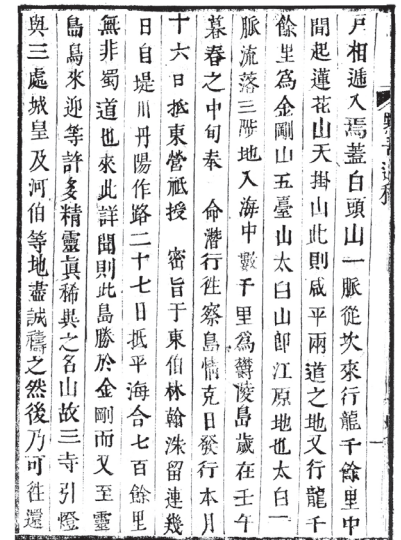
이명우와 이규원의 기록은 모두 일종의 울릉도 수토키다. 수토키는 18세기 후반이었던 1786년 김창윤의 수토키와 1794년 한창국의 수토키 이후 한 동안 기록이 부진했다. 실록에 간혹 수토키가 보이더라도 내용이 매우 소략하다. 19세기에도 수토키는 지속되었지만 실록에는 수토키 사실만 기록하고 있을 뿐 자세한 내용은 없다. 그러다 19세기 후반 이규원의 조사기록이 있다는 사실이 1960년대에 이선근¹²을 통해 알려졌고 2006년에 이규원의 후손 이해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번에 이명우의 「울릉도기」가 소개됨으로써 이규원과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장소를 조사하여 기록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규원의 기록과 함께 이명우의 기록은 울릉도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일조할 것이다. 이명우의 기록에는 울릉도의 지형과 산물, 섬의 정황뿐만 아니라 지명이 많이 나온다. 지명은 18세기 수토키에 보이며 이규원의 기록에도 보이지만 한자 표기가 다른 것이 많다. 그러므로 17~18세기의 수토키와 이규원, 이

12 이선근, 1963, 「근세 울릉도 문제와 검찰사 이규원의 탐험성과: 그의 검찰일기를 중심으로 약간의 고찰」, 『大東文化研究』 제 1집

명우의 기록에 보인 지명을 대조해보고 이를 현재의 지명과 연관시켜본다면 울릉도 지명의 유래와 추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명우도 고종에게 울릉도 도본(圖本)을 바친 것으로 나와 있지만 현재로서는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도형으로, 규장각에 소장된 울릉도 도형 중 연대와 제작자가 밝혀져 있지 않은 것을 이명우의 기록에 비춰 대입해본다면 연대와 제작자를 파악하는 데 단서가 되지 않을까 한다.



〈그림 1〉 울릉도기-1



〈그림 2〉 울릉도기-2

독도에 대한 일본의 '무주지 선점론'은 성립하는가

이케우치 사토시, 『독도문제란 무엇인가』

(原題: 池内 敏,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 名古屋大学出版会, 2012년 12월, 목차 및 색인 포함 392쪽)

이성환 계명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땅을 경계짓는 것은 인간 역사의 시원(始原)이다. 모든 민족과 국가의 역사의 시초에는 땅(영토)의 취득과정이 존재하고 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민족)은 그 땅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자에게 복종한다. 그렇기 때문에 땅과 민족은 불가분이며, 이를 우리는 '영토민족주의'라 한다. 한 치의 땅에 대해서도 국민과 민족 전체가 사활을 걸고 들고일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근대 이전 사람이 살지 않는 땅-주로 무인도-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모호했던 것도 땅과 사람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항해시대 이후 바다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사람이 살지 않는 섬에 대한 가치도 새로워졌다. 바다는 바다만으로는 소유권을 가질 수 없고 육지에 딸린 것이다. 즉 바다는 육지에 딸린 것으로 그 섬을 소유한 자가 바다를 지배할 수 있다. 근대 이전 관할권이 모호했던 섬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최근 동아시아가 격랑에 휩싸여 있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한다. 센카쿠제도(중국어: 다오위다오, 편위상 센카쿠라 합)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일촉즉발의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일본은 1895년 1월 14일 센카쿠를 오키나와현에 편입했다. 약 10년간 살펴보았으나 주인이 없어서 차지했다는 것이다. 청일전쟁에서 패하고 대

만을 떼줘야 할 정도로 노쇠한 제국이 되어버린 중국은 일본에 대항할 수 없었다. 대한제국이 몰락하는 시기 러일전쟁을 틈타 1905년 2월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상황도 이와 유사했다. 독도와 센카쿠 문제가 일본 제국 주의 침략의 마지막 남은 유산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생략한 채, 일본 정부는 무주지(無主地)였던 독도와 센카쿠를 합법적으로 선점하여 자국 영토화했다고 주장한다.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입장은 "독도/죽도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한국/일본의 고유영토다"라는 것이다. 양쪽이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한쪽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법적 판단 역시 역사적 권위를 기초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독도에 대한 양국의 역사적 연고성이다. 독도 문제에 대한 연구가 역사적 연구를 토대로 하고있는 이유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 교수가 『독도문제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펴냈다.¹ 저자는 이 책에서 한일 간에 논쟁이 되고 있는 역사적 부분에 대한 고증을 통해 독도 문제를 역사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한일 간의 독도 문제에 대해 역사분석에 초점을 맞춰 자기중심적인 논의를 극복하고 학문적으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이 책을 펴낸 의도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저자의 자신감은 그가 보기 드물게 한일 양국의 사료와 연구성과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본서는 지금까지 저자가 학술지 등에 발표한 개별 논문을 모아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장이나 사료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자가 지금까지의 독도 연구를 집대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리고 본서의 장점은 ① 사료를 많이 활용하면서도 비교적 읽기 쉽게 원문을 현대어로 고쳐서 제시하고 있으며(원문은 주에서 밝히고 있음), ② 한일 양국의 사료를 풍부하게 구사하여 치밀하게 논증하려 했다는 점이다.

저자는 이 책의 목적을 "독도 논쟁의 문제점은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의견대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견대립이 학문적 근거가 결여된

1 책은 다케시마(竹島)라는 일본 측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저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여기에서는 독도라는 한국 측 명칭을 사용한다.

채 쟁점화된 데 있다”(6쪽)고 지적하면서, “누가 분석을 해도 같은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는”(5쪽) 사실(史實)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그의 연구목적은 “독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서장)”라는 목표로 연결된다. 즉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객관적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에 저자의 이러한 목적이 달성된다면, 이 책은 독도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저자의 소박한 심정은 지금까지 한일 양국의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나, 그것이 언제나 상대의 논리에 의해서 ‘자국중심적’이라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책 역시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을 안고 있을지도 모른다.² 그럼에도 최근 한일 양국의 독도 문제 연구를 포괄하고 있는 이 책은 독도 연구에 커다란 자극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1. 책의 구성

이 책은 총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제1장~제7장까지인데 근대 이전인 에도시대를 중심으로 일본과 독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 부분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저자의 장점을 잘 드러낸 부분이다. 이 시기의 독도는 독도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울릉도와 관련성 속에서 의미를 가지고 역사의 현장에 등장한다. 이케우치 사토시는 이 과정을 엄밀히 분석하면서 근대 이전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였다는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제2부는 제8장~제10장까지인데 독도(죽도)가 한국령이라는 근거로 삼고 있는 안용복 사건과 우산도라는 섬의 명칭에 대한 논의를 재검토하고 한국 측의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제1부와 제2부에서 독도의 한국령과 일본령을 부정한 다음 그가 얻은 결론은 자연스럽게 독도는 어느 쪽의 영토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제3부를 구성하고 있는 제

2 이에 대해서는 이미 이 책을 중심으로 김수희가 지적을 하고 있다(『독도연구의 실증적 연구 방법과 그 문제점』, 『영토해양연구』 제5호,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2013).

11장~제13장까지는 독도 문제에 관련된 근대기의 상황을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케우치 사토시의 주장을 비판적 관점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물론 평가의 비판적 비평이 이 책의 평가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혀두며, ‘객관적 관점’에서 또 다른 시각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려는 것이다.

II. 고유영토론-일본

제1부의 관심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인가라는 점에 있다. 이 논쟁은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문제의 시발점인데 한일 양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세~근세에 걸쳐 한국과 일본 어느 쪽이 먼저 독도를 발견하고, 상륙하여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는가의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의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근대국이 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무인도인 이 섬에 대한 영토의식이 어느 정도 있었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단 한국 측은 『동국문헌비고』, 『증보문헌비고』, 『만기요람』 등에 인용된 『여지지(輿地志)』(1656) 등의 기록을 토대로 우산도를 독도의 존재 및 영토 인식의 근거로 하여 14세기경부터 독도는 한국 땅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일본은 우산도가 독도를 가리키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를 부정하고 있으며, 17세기 중엽부터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이케우치 사토시는 일본 산음지방의 향토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그의 결론은 명쾌하다. 1667년의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1667)의 분석을 통해 당시 일본의 영역인식을 “17세기 일본의 서북한계는 오키국(隱岐國)이며, 송도(獨島)·죽도(울릉도)는 일본의 판도 외다”라고 했다(12쪽). 이케우치 사토시는 『은주시청합기』에 나오는 주(州)와 도(島)의 용례를 전부 추출·분석하여 일본의 경계가 독도 또는 울릉도의 도(島)가 아니라

은주(隱州)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은주시청합기』의 66곳에 나오는 주(州)는 한 곳을 제외한 65곳의 주가 은주국을 가리키는 국(國)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고증했다. 그의 분석의 치밀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그는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등의 기존의 견해를 뒤집는 결론을 얻어내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사료를 분석해서 일본인의 울릉도 왕래가 잦았던 17세기에 “막부는 송도(독도) 도해(渡海)면허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로 “죽도(울릉도) 도해를 금지하면 송도(독도)로 도해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막부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36쪽). 이러한 일본의 영역인식은 일본의 지도와 지지(地誌)에도 반영되어 나타났다. “17세기 중엽~19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죽도(울릉도)에 대한 지리적 인지가 이루어지는 한편, 죽도(울릉도)·송도(독도) 양도는 일본의 관도 외라는 영역인식도 있으며, [...] 일본 지도상에 죽도(울릉도)·송도(독도)가 그려지지 않거나 그려지더라도 색깔이 칠해지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인식의 확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123쪽)고 지적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일본 고유영토론의 효시인 가와카미 겐조(川上建三)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가와카미 겐조는 1696년과 1836년에 막부가 발행한 ‘죽도도해금지령’은 죽도(울릉도)에 대해 도해를 금지한 것이며, 송도(독도)에 대한 도해를 금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송도(독도)는 여전히 일본인의 생활영역으로 남아 있었다며, 일본의 독도 영유론을 주장했었다.

물론 이케우치 사토시의 이러한 주장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일본 학계의 일부에서 뿌리 깊게 주장해왔던 일본 고유영토론을 치밀한 고증을 통해 부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일본 고유영토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지금은 일본 학계에서도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질 만큼 성숙되었다고 볼 수 있다.³ 독도 일본 영유론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제2기 최종보고서에서도 더 이상 일본의 고유영토론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3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다케우치 사토시[竹内孟](송휘영·김수희 역), 『죽도=독도문제 「고유영토론」의 역사적 검토』(『竹島=獨島問題「固有の領土」論の歴史的検討』, 서인, 2013)가 번역·소개되어 있다.

이러한 그의 분석은 제1부의 마지막 제7장에서 태정관지령의 분석을 통해 결론적으로 재확인되고 있다. 1877년 일본 중앙정부의 태정관은 공식적으로 “죽도외일도(竹島外一島)”는 “본방(일본-평자)과 관계가 없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시마네현에 하달한다. 이것은 “일본 정부 중앙은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는 일본의 관도 외라고 공식문서로 표명”한 것이다(149쪽). 라고 이케우치 사토시는 결론내리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섬 이름의 혼란이라는 외부적 요소를 가미하여 ‘외일도’를 울릉도로 해석하여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스기하라 다카시[杉原隆]와 쓰카모토 다카시[塚元孝]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149쪽).⁴

III. 고유영토론-한국

이 책의 제2부는 제8장~제10장까지로, 근세 조선과 독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있다. 제1부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면, 제2부는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애써 증명하려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 안용복 사건 그리고 우산도와 독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과 한국의 자료와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먼저 안용복 사건에 대해서다. 이케우치 사토시는 안용복 사건을 무라카미가[村上家]의 문서를 이용하여 한국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한국 측은 안용복 사건을 통해 1693년의 단계에서 일본에 대해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것을 알렸으며, 이것으로 당시 조선은 독도에 대한 영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케우치 사토시는 무라카미가의 문서를 이용해, 안용복에 대한 조선 측 기록(『속중실록』)의 신빙성을 의문시하면서 한국 측의 주장을 반박한다(167~170쪽). 그 가운데 특히 초점이 되는 것은 1696년 안용복이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之圖)>를 가지고 2차 도일(渡日)을 한 목

4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 10월 평자가 직접 서신으로 스기하라 다카시 씨에게 문의를 한 적이 있다. 그의 답변은 “일반적으로 죽도, 외 일도는 당연히 ‘죽도와 송도’로 해석해야만 한다”고 전제한 후 당시 “죽도, 송도가 같이 사용된 것(사카이 지리[境二郎]의 기록을 가리킴-필자)이 있는 이상 죽도나 송도로 불린 섬이라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소 애매한 답을 보냈다(서신은 필자 보관).

적에 관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이케우치 사토시는, 무라카미가 문서를 사용하여, 안용복이 1차 도일의 귀국 길에 쓰시마번에서 냉대를 받은 것을 돛도리번을 통해 호소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소박한 의문이 제기된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쓰시마번에서 받은 냉대를 호소하기 위해 3년 후에 다시 일본을 방문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지금처럼 항해술이 발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는 자기 나름의 강한 사명의식 내지는 신념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당시 개인이 구하기 어려운 <조선팔도지도>를 가지고 도일했다는 것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구나 이 지도를 가지고 일본 관리에게 설명을 한 사실이 무라카미가 문서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일본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져 있지 않았다”는 저자의 설명과(123쪽)도 합치한다. 즉 이케우치 사토시의 설명을 바탕으로 할 때, 안용복이 가지고 온 <조선팔도지도>에 독도와 울릉도가 그려져 있다는 것은 이 두 섬이 조선 땅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안용복의 도일 목적이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 땅이라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다음은 우산도와 관련한 분석이다. 우산도가 현재의 독도를 가리키는가를 입증하기 위해 이케우치 사토시는 한국 측이 제시하는 문헌과 지도를 면밀히 분석했다. 문헌에 나타난 우산과 우산도의 전거(典據)를 24개로 분류하고(217쪽의 표), 116종의 지도를 분석했다(230~234쪽의 표). 문헌분석에서는 안용복의 진술에 나타난 자산도(우산도, 독도)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한국 측이 중요한 논거로 하고 있는 『여지지(輿地誌)』에서 우산도를 송도(독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부정함으로써 한국 측 기록에 나오는 독도에 대한 영유 의식을 부인하고 있다. 그 근거로 “이 해역(울릉도와 독도 부근)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이 [처음으로] 조우하는 것은 안용복 사건이 발생하는 1690년대”이기(226쪽) 때문에, 조선 측은 일본인들이 독도를 송도라고 불렀던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이전에 기록된 우산=송도라는 조선의 자료를 믿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케우치 사토시는 『여지지』 그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서술을 하고

있으나, 『여지지』는 일본 기록 『죽도기사(竹嶋紀事)』(1726)의 마지막 부분에 실려있는 구상서(口上之書) 등에도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점이 간과되고 있다. 즉 이케우치 사토시의 결론은 1690년대 이전에 조선인과 일본인이 조우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여지지』에 우산=송도(독도)라는 기록이 있다는 점은 그 이전에 조선인과 일본인의 조우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직접적인 사료다. 또 안용복 사건은 그것이 사건으로 비화되었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았으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자연적 만남은 기록으로 남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그 이전에 조선인과 일본인의 조우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다. 한국 측의 연구에 따르면 공도정책 기간 중에도 조선인의 울릉도 출입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어 일본인과의 조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지도와 관련해서도 같은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이케우치 사토시는 18세기 후반이 되면 조선전도는 실측에 가까운 축척으로 그려지고 있으나, 울릉도·우산도의 위치관계의 축척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상의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라고 단정하고 있다(239쪽). 육지의 거리는 보행(步行) 등의 방법으로 어느 정도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나 섬의 경우(특히 독도나 울릉도와 같이 홀로 떨어져 있는 섬의 경우)는 삼각측량이나 천체관측 기술이 발견되기 전에는 정확한 거리나 방향측정이 어려웠다. 육지의 거리나 방향이 정확해도 섬의 위치나 거리가 정확하게 축척되지 않은 고지도가 많은 이유다. 일본의 고지도에도 홋카이도나 치시마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뚜렷이 보인다. 당시의 측량 기술과 섬의 작도가 어떠했느냐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V. 1905년의 무주지 선점론과 샌프란시스코조약

이상과 같이 이케우치 사토시는 제1부와 제2부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고유영토론을 면밀하게 부정하고 있다. 이를 전제로 제3부에서는

20세기에 들어와 한일 간에 독도가 어떻게 취급되었는가를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조치와 샌프란시스코조약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제3부의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조치에 관해 이케우치 사토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1905년 일본령 편입은 무주지 선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증한 것에 따르면 1905년 1월 시점에서 오늘날의 죽도가 한국령이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상 무주지 선점을 논거로 하는 일본령 편입은 유효하다. 그 공시가 시마네현 고시로 이루어진 것 또한 유효하다(311쪽).

또한 1900년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서 말하는 석도가 독도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논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1905년 일본령 편입 직전 단계에서 독도가 한국령이었다는 것을 이 칙령의 존재에서 곧바로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312쪽).

결국 이 섬에 대한 영유의 욕구는 1900년 전후부터 1905년까지라는 겨우 5년 내외의 기간에 일본인·조선인 쌍방에 썩어 근소한 차이로 일본 정부가 먼저 공식적인 영유를 성명(聲明)했다는 것이다(314쪽).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반박은 김수희 씨가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한다.⁵

그리고 이케우치 사토시는 샌프란시스코조약과 관련한 독도 문제는 “오늘날의 시점(時點)에서 보면 샌프란시스코조약을 둘러싼 [독도 영유권-쟁자] 논의는 결론이 났다고 생각한다”(291쪽)고 전제한 후, 그 근거로 러스크 서한을 방증으로 삼고있다. 1951년 8월 10일 러스크(Rusk) 국무차관보가 한국 대사관에 보낸 서한에는 “우리들(미국-쟁자)의 정보에 따르면”이라는 단서하에 독도가 한국령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케우치 사토시는 이 단서 여하에 따라 샌프란시스코조약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두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시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의 정당성을 따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짓는다(300쪽). 요약하면,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샌프

란시스코조약에 대한 해석을 1905년의 일본의 독도 5 김수희, 2013, 앞의 글, 268~276쪽

편입조치로 환원시켜, 결국은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무주지선점)이 유효하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령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V. 이케우치의 논리구조

이케우치는 이 책의 거의 반을 할애하여 일본의 고유영토론을 부정하고 있다(제1부). 거기에는 치밀한 사료 분석이 뒷받침되고 있어 매우 설득력이 있다. 이어서 이케우치 사토시는 같은 논리선상에서 한국의 고유영토론 역시 부정을 한다(제2부). 이를 통해 이케우치 사토시는 자연스럽게 독도가 일본과 한국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무주지라는 결론을 얻는다. 이러한 무주지 상태에서 20세기 초 한일 양국에서는 독도에 대한 영유의식이 싹트었으며, 그것은 1900년 대한제국의 칙령 제41호, 1905년 일본 시마네현 고시 40호의 독도 편입조치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칙령 제41호에는 석도가 독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⁶ 따라서 칙령 제41호를 배척하고 시마네현의 고시가 유효하게 남게 되면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이케우치 사토시의 논증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한국과 일본의 고유영토론을 부정하면서 얻은 독도 무주지론은 매우 객관적인 것 같으나, 결국 일본의 1905년 무주지 선점론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케우치 사토시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가늠하기는 어렵지

6 이케우치 사토시는 “한쪽에서는 경상도 방언으로 설명하고, 또 한쪽에서는 전라도 방언으로 설명하는” 돌섬=독도라는 한국 측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으며, 1900년 칙령에서의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을 뒤집어보면, 경상도 방언으로 설명해도 돌섬=독도이고, 전라도 방언으로 설명해도 돌섬=독도가 입증된다는 것이다. 즉 한국에서는 보편적으로 돌섬을 독섬으로 표기한다는 의미다.

만, 이 책이 결국은 일본의 독도 영유론의 가장 강력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1905년의 무주지 선점론의 합리화로 귀결되고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이라기보다는 다소 의도된 결과를 찾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부자연스런 것은 아닐 것이다.

이케우치 사토시의 논지전개의 과정은 매우 치밀하고 한일 양국에서 이루어진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대부분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의 전공이 근세라는 점이 반영된 탓인지, 근세를 배경으로 한 제1부의 서술은 매우 돋보이며 설득력도 있다. 그러나 주로 근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제2부와 제3부는 분량이나 분석과 서술 측면에서 제1부에 비해 다소 빈약하다는 아쉬움이 남지만 이로 인해 이 책의 전체적인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상술한 이케우치 사토시의 논지전개에는 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소박한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무주지에 대한 논증이 빈약하다는 점이다. 독도 무주지론에는 조선 정부의 공도정책이 큰 바탕이 되고 있으나, 안용복의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공도정책에도 불구하고 울릉도에는 이미 조선인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안용복이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한국 측의 연구에 따르면 1905년 이전 독도에는 이미 조선인들의 어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⁷

그리고 이케우치 사토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죽도일건(울릉도쟁계)과 태정관지령, 지도 등을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죽도일건에서 자세히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은 조선과의 교섭을 통해서다(주된 교섭의 대상은 울릉도였으나, 독도도 포함된 것이었다). 독도와 울릉도를 두고 조선과 교섭을 한 결과, 일본 스스로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여기에서 이케우치 사토시는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일본 정부(막부)의 결론이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 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다. 이 해석은 독도의 일본과 조선의 고유영토론을 부정하고 독도 무주지론을 형성하는 근간이다. 논리적으로 가능한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조선과의 관계 속에서 독도와 울릉도의 귀속을 따진 것은, 그 섬들이 일본 땅이냐 조선 땅이냐를 밝히기 위한 행위다. 그렇지 않으면 조선과의 관계 속에서 섬의 소유를 밝힐 필요가 없다. 이를 받아들인다면, 일본 땅이 아니라면 그것은 조선 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땅이 아니라는 막부의 결정이 조선 땅

7 예를 들어, 조선후기에 거문도인 등 동남해안의 연해민들은 울릉도와 독도로 건너가 어로활동을 하고 있었다. 김수희, 2011, 「개척령기 울릉도와 독도로 건너간 거문도 사람들」, 『한일관계사연구』 제38집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케우치 사토시의 주장은 논리적 모순이다.

이케우치 사토시의 논리구조를 더욱 단순화시켜 도식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와 B가 C를 두고 친자 확인을 하려 한다. 정황상으로 봤을 때, C가 제3자의 친자일 가능성은 없으며, 반드시 A 아니면 B의 친자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A 스스로 C는 자기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또는 친자 확인에서 B가 A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이 공식적(태정관지령 등)으로 확인되었다면), C는 자연스레 B의 친자라는 것이 분명해진다(비록 B가 C에 대해 친자라 주장하지 않아도). 여기에서 A는 일본, B는 조선(한국), C는 독도이며,⁸ 역사적으로나 문헌적으로나 독도 영유에 대해 제3국이 개입한 흔적이나 개입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이러한 논리구조에서 보면, 이케우치 사토시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 이상,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며, 따라서 무주지론은 성립하지 않는다. 나아가 무주지론에 입각한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무주지 선점론)은 성립 불가능한 것이 된다. 이 연장선상에서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면, 1905년 일본의 무주지 선점론에 입각한 러스크 서한은 부정될 수밖에 없고, 러스크 서한을 근거로 샌프란시스코조약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케우치 사토시의 주장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고유영토론과 무주지 선점론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일본의 고유영토론이 부정되는 순간 독도의 한국 영유권이 인정되면서 1905년 일본의 무주지 선점론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고유영토론을 주장하면 1905년의 영토편입론이 성립될 수 없다. 이미 일본의 영토였던 것을 다시 편입한다는 것은 논리가 모순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고 한 기록은 찾을 수 없으며, 1900년의 대한제국 칙

령도 영토 편입조치가 아니라 행정단위를 설립하고 관할구역을 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적어도 고유영토론과의 모순은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이케우치 사토시를 포함해 일본 측의 주장대로 대한제국 칙령에 적혀 있는 석도가 독도인가라는 의문

8 이케우치 사토시는 C 즉 독도가 아닌, 조선 측이 역사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또 다른 섬 D(랑코도)가 있을 개연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동해에는 독도 이외의 섬이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그가 말하는 D는 C 즉 독도일 수밖에 없다.

은 남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현재의 법률적 논리에 따른 것으로 무인도인 경우 사람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이름으로 애매하게 불려 왔다는 역사현상을 간과한 것이다. 독도가 리앙쿠르, 랑코도, 송도, 석도 등으로 불려온 것이 단적인 예다. 그리고 한자 지명의 경우, 음이나 훈을 빌려서 차자(借字)할 때 문자 기록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경우도 센카쿠리는 지명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일본이 센카쿠를 편입한 5년 후인 1900년부터였으며, 이른바 북방영토의 에도로후토(蝦荰島)도 ‘惠土呂府島’라 썼다(1798년 곤도 주조[近藤重藏]는 에도로후토[惠土呂府島]라 쓴 표석을 세웠다). 유사한 예는 많이 있다. 이러한 예를 따른다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울릉도와 죽도석도”에서 죽도가 울릉도에 인접한 죽서도(竹嶼島)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고 부근에 석도라 불릴 만한 섬이 없다면, 석도=독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덧붙이면, 석도(돌섬)가 독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이케우치 사토시는 두 가지의 논리를 사용한다. 하나는 안용복이 제1차 도일을 하는 도중에 “독도를 가까이서 본 것은 확실하다”(a)고 인정하면서 일본인이 “송도(독도)에서 솔을 걸어놓고 물고기를 삶고 있었다”고 했으나, “사람이 [물고기를-필재 삶고 굽고 할 수 있는 장소가] 돌 같은 섬(=석도-필자)일 리 없다”(b)고 지적하고 있다(244쪽). 즉 (a)와 (b)는 모순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케우치 사토시의 함의는 두 가지다. 하나는 안용복이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그의 행적을 기록한 한국 측의 문헌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한국 측에서 주장하는 돌섬=독도는 안용복이 본 섬과 다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안용복이 본 섬은 취사를 할 수 있는 섬이나, 돌섬은 취사를 할 수 없는 섬이기 때문에 안용복이 본 섬과 돌섬 독도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케우치 사토시의 추론은 돌섬에서는 취사가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명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잘못된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다. 인간의 경험칙에 따르면, 오늘날같이 현대화된 장비의 도움 없이도 장기간 거주는 어려워도 돌섬이나 돌산에서도 취사는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독도에 사람이 상륙할 수 있다는 것에서도 이를 증명할 수 있다. 또 일본인이 강치를 잡거나 전복을 따서 독도에 상륙해서 천막을 치고 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을 봐도 알 수 있다. 취사는 작업 반경보다도 좁은 범위에서도 가능한 인간 행동이며, 또 일본인이 강치나 전복을 손질하기 위해 상륙을 해 작업을 했다는 사실은 동시에 취사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⁹ 아마 이 부분을 이케우치 사토시가 놓쳤을 리 없을 것이다. 이러한 그의 논리는 다음과 같이 비약된다(이 부분에 대해서 그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독도가 취사가 가능한 섬으로 입증된 이상, 한국 측에서 주장하는 돌섬은 독도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한국 측의 문헌에서 산견되고 종래부터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는 섬은 독도가 아닌 제3의 가공의 섬일 수 있다(각주 8에서 제시한 가공의 섬 D에 해당).

이러한 그의 인식에서는 “한쪽에서는 경상도 방언으로 설명하고, 또 한쪽에서는 전라도 방언으로 설명하는” 돌섬=독도라는 한국 측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게 되며(243쪽), 1900년 칙령에서의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것을 뒤집어보면, 경상도 방언으로 설명해도 돌섬=독도이고, 전라도 방언으로 설명해도 돌섬=독도가 입증된다는 것이다. 즉 한국에서는 보편적으로 돌섬을 석도라고 하고, 그것을 한자로 차자(借字)하여 독도라 표기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VI. 맺음말

이상으로 이케우치 사토시의 저서를 간단히 평했다. 그러다 보니 비평을 위한 비평과 논리의 비약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한 평자의 입장에서 느낀 소회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그의 논리전개는 매우 신중하며 절제되어 있다. 그것을 통해 그가 균형과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앞으로 이 책을 두고 한일 간 독도 연구자 사이에 논쟁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 학문적 논쟁거리를 제공했다는 의미만으로도 이 책이 가지는 학술적 가치는 충분히 입증될 것으로 사료된다.

⁹ 이러한 명제의 참과 거짓은 사실과의 대응관계에서 나온다. 이를 논리학에서는 대응설(correspondence theory)이라고 한다.

영토·해양 일지

이원택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2013년	국내	국외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일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 독도에서 '청소년 명예 독도경비 수호대 발대식'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 일본 자민당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郎] 영토특명위원장, '북방영토 4도(쿠릴열도) 반환을 2도 반환으로 하는 기술론' 비판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인민해방군 치젠궈[戚建國] 부총참모장, 센카쿠[尖閣, 중국명: 釣魚島, 다오위다오]제도 문제에 대해 1970년대 중·일 간 합의한 '논의유보' 상태로 복귀 주장 - 일본 시마네[島根]현의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식 명칭]문제연구회', 2014년 2월 22일 이전에 '다케시마문제 100문 100답(가칭) 출간 계획 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상, 중국의 치젠궈 부총참모장의 센카쿠제도 '논의유보' 복귀 주장에 대해 중국 측과 '논의유보' 합의 사실 없다고 반박 - 일본의 노나가 히로무[野中廣務] 전 관방상, 중·일 국교정상화 당시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와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수상 '센카쿠제도 문제 논의유보 합의' 사실 인정 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해군분석센터 제임스 클래드(James Clad) 선임고문과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의 로버트 매닝(Robert Manning) 연구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 공동 기고문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수상에게 독도 포기를 조언 -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부대변인, 일본 노나가 히로무 전 관방상의 '센카쿠제도 문제 논의유보 합의' 발언에 대해 합의가 사실이라고 주장 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자민당,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에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중앙정부가 주최한다는 항목을

2013년	국내	국외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일 :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함하지 않기로 함 - 일본 공산당 이치다 다다요시[市田忠義] 서기국장, 중일 국교정상화 당시 '센카쿠 문제 논의유보 합의'는 사실 6일 : 중국 외교부 홍레이 대변인, 중국과 아세안의 '남중국해 각국 행위 선언' 실천 위한 실무회담에서 '남중국해 행위 준칙' 제정 추진에 합의 밝힘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미국에서 정상회담, 시진핑은 센카쿠제도에 대해 중국의 '핵심적 이익'이라고 표명 - 필리핀 군 당국, 중국이 황엔다오[黃岩島]에 건축물 축조 시작 주장 8일 : 일본의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 초·중·고교 사회과 교과서에 센카쿠제도 영유권 기술 등 영토 교육 강화 천명 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상,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 관련 문제에 '일본 입장을 근거로 대응' 지적 - 제23회 '유엔해양공약체결국회' 미국 뉴욕에서 개최 - 미국 상원 민주·공화 의원들, 센카쿠제도 문제 등과 관련 '아시아 태평양의 해양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외교위원회에 제출 1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방위성은 센카쿠제도 등 도서지역 방어를 위한 해상조직 신설 검토 - 센카쿠제도 접속수역에서 중국의 해양 감시선들이 3일 연속 항해 -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상,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이 센카쿠제도와 핵심적 이익을 직접 연결 짓는 발언은 없었다고 알고 있다'고 밝힘 - 미군과 자위대에 의한 낙도 방위·탈환을 위한 공동 훈련,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작, 센카쿠제도를 상징한 훈련으로 보는 중국은 중지 요청 - 자민당은 '센카쿠제도 12해리 경비 보전법' 정리 13일 :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회담, 미중 정상회담에서 센카쿠제도 관련 일본 입장을 고려해준 것에 감사

2013년	국내	국외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국무부 제임스 Zumwalt(James Zumwalt) 차관보 대행 방일 기자회견, 센카쿠제도 관련 미국 정부 방침에 변화 없음을 설명 - 일본의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 미국 상원외교위원회의 '아시아·태평양 해양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는 결의안' 제출을 환영 - 중국 국가해양국은 어정선 및 해감순시선을 '중국 해경 순시선'으로 개칭, 무기탑재 후 첫 출항 • 15일 :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도서 지역 방위와 탈환을 위해 육상 자위대의 해병대 기능 확대 의향을 표명 • 16일 : 중국은 센카쿠제도(중국어명: 다오위다오) 등 해상도서 분쟁 대응력 강화를 위해 세계 최대급 에어쿠션 상륙함정(공기부양정)을 도입 • 1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미디어 ZAKZAK(산케이신문)이 발행하는 석간 공식 사이트는 이어도(중국어명: 蘇岩礁, 쑤옌자오) 상공이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내에 있기 때문에, 한·중이 상공 통과시 사전 통보가 필요하다고 주장 -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베트남 국가주석 쩌엥 떤 상(Truong Tan Sang)과 회담, 남중국해 문제의 정치적 해결 강조 • 22일 : 일본의 '영토·주권을 둘러싼 내외 발신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는 보고서에서 영어 발신 강화와 조사기관 설치 요청 • 2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수상은 홍콩의 피닉스 TV와 인터뷰에서 센카쿠제도가 '계쟁지(係争地)'라는 인식 밝힘, 또 중일 정상회담 당시 센카쿠제도 문제 논의유보 합의가 사실임을 주장 - 일본 방위성은 2013 방위백서 개요를 정리, 자민당 국방부회·안정보장조사회 합동 회의에서 발표, 센카쿠제도에 대한 중국의 행동에 염려 표명 - 미국 상원외교위원회의 '아시아·태평양의 해양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본 회의에 승부 - 일본 자민당 교과서검정 특별부회는 아베 신조 수상에 교과서법 제정 방안을 뼈대로 하는 중간보고서 제출, 영토 문제 기술 내용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일 : 국회는 본회의에서 '일본의 독도왜곡 교과서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2013년	국내	국외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부속서, 이어도 포함 해상 경계확정 협상 조속 가동하기로 함 -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수상은 중국 칭화대학(淸華大學)의 세계평화포럼에서 센카쿠제도의 중국 반환 입장을 표명 • 28일 : 인도 국가안전고문 메이닝과 중국 양지츠[楊濟勳] 국무위원, 베이징에서 중국·인도 국경문제특별대표 제16차 회담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일 :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남경필 의원) 출범 • 4일 : 유엔지명회의의 지명전문가 실무회의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개최됨 • 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일본 정부가 2013년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데 대해 항의, 즉각 삭제와 재발 방지 촉구 -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국장, 구라이 다카시[倉井高志]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조치하여 항의, 국방부도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조치하여 항의, 시정 조치 요구 -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과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도 일본의 영토 욕심에 유감과 항의 표명 • 10일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일본의 독도 도발 비판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정부는 '영토·주권을 둘러싼 내외 발신에 관한 지식인 간담회'를 개최, 아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해양정책·영토문제 장관에게 보고서 전달 - 중국의 해양조사선이 센카쿠제도 주변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해양조사 본격화, 일본 해상보안청은 경계 강화 • 4일 :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공약집에 '영토·주권·역사 문제에 관한 연구기관의 신설' 및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개최 검토 포함됨 • 9일 : 일본이 올해 확정한 방위백서, '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베 신조 일본 수상, 센카쿠제도 인근 섬을 방문해 강력한 영토 수호 의지 밝힘

2013년	국내	국외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 아베 신조 수상 의 센카쿠제도 인근 섬 방문 비판 • 18일 :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解放軍報)』,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의 센카쿠제도 인근 섬 방문을 직접 비판 • 24일 : 미국 버지니아주(州) 의회 상·하원이 지역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팀 휴고 의원이 밝힘 • 29일 : 미국 상원은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중일 대립 및 남중국해 영유권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 채택, 센카쿠제도는 일본의 시정 하에 있으며,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근거하여 대처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차 명기 •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제8차 당중앙정치국 집체 학습 회의에서 해양 분쟁 대처 원칙으로 주권 및 공동 개발 제시 - 일본 방위상 오노데라 이쓰노리가 오스트리아에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사무총장실 주임 마르셀 페사체크와 만나 북한 핵문제와 센카쿠제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설적인 '아시아판' 안보협력 기구 창설 예정 밝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일 : 외교부, 일본의 독도 관련 설문 조사 공표에 대해 도발 행위 정지를 요구하며 공식 항의.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주한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를 조치 정부의 항의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내각부, 독도에 관한 첫 특별 여론조사 결과 발표(6월 전국 성인남녀 3,000명 대상 조사) - 일본 수상 아베 신조,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가스전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강경한 입장 취할 것 밝힘 - 필리핀 외무장관 앨버트 델 로사리오(Albert F. del Rosario)와 베트남 외무장관 팜 빙 밍(Pham Binh Minh)이 남중국해에서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마닐라에서 '필리핀·베트남 상호협력 연합위원회 제 7차 회의'를 가짐 • 2일 : 중국 외교부장 왕이[王毅], 방콕에서 거행된 중국과 아세안 고위급 포럼 개막식에 참석 '영토주권과 해양권의 분쟁'에 대해 '대화와 직접적인 담판을 통한 해결'이라는 중국의 입장 재천명

2013년	국내	국외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일 : 중국 외교부장 왕이, 「남중국해 행위준칙」 제정을 위한 로드맵을 확정하자고 제안 • 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카쿠제도 미나미코지마[南小島] 해역 내에 중국 해경국의 '해경(海警)' 4척이 머무르고 있음 - 일본 외무성의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아시아대양주 국장, 센카쿠제도 주변에 중국 해경선이 머무르는 것에 한츠창[韓志強] 중국 공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엄중 항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장관도 유감 표명 • 1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여당 국회의원이 독도 상륙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하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상륙 계획을 중단하도록 요구 - 일본 국회의원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공산당 중앙 대외연락부의 양연이[楊燕怡]와 중국 외교부 아주사(亞洲司) 책임자 등과 만나 센카쿠제도 문제 논의 • 13일 : 민주당 국회의원들, 일본 군국주의 부활에 경고하는 의미로 독도 방문 • 15일 : 국방부는 지난 6월 말 독도 방위 훈련 실시 사실을 밝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일 : 한국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과 관련, 일본 외무성의 시모카와 마키타[下川真樹] 아시아대양주국 참사관은 주일 한국 대사관의 김원진 공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하고 재발 방지 촉구 •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메릴랜드주 앤어런덜 카운티 교육청이 동해 병기를 지시하는 교사지침서를 작성해 관할 공립 초중고교에 전달 - 중국 정부대표단은 뉴욕에서 열린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에 출석, 작년 12월 동 위원회에 제출한 동중국해의 대륙붕 연장에 관하여 설명 • 18일 : 일본 우익단체인 '간바레(힘내라) 일본! 전국행동위원회' 회원들이 센카쿠제도 불법상륙 기도하였으나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의해 저지 • 1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일 양국 정부는 모스크바에서 북방영토문제에 관한 차관급 협의 시작. 일본에서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심의관, 러시아에서 모르굴로프 외교부 차관 등이 참석 - 일본 《아시히신문[朝日新聞]》,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뒤를 이어 베트남도 최근 일본 순찰선의 매입을 고려, 해상보안 방면에서 일본과 협력하기를 희망

2013년	국내	국외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7일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동해·독도 표기 일본·서양 고지도 묶은 '우리 바다와 영토' 발간 및 배포 계획 밝힘 28일 : 정부는 동중국해 200해리 밖 한국 대륙붕한계 정식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서 공식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척 헤이글(Chuck Hagel) 미국 국방장관,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창완취안[常萬全]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센카쿠제도의 평화적 해결 요청 • 21일 : 중국 외무성의 훙레이 부대변인, 미국 공화당의 존 맥케인(John McCain) 상원의원이 센카쿠제도가 일본 영토라고 한 것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 • 22일 : 미국 국무성 대변인 젠 사키(Jen Psaki), 미국은 센카쿠제도 문제에 있어 어떠한 입장도 견지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23일 : 이졸데 하우스너(Isolde Hausner) 오스트리아 학술원 교수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동해 지명과 바다 명칭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유럽의 지명 병기 원칙을 소개하면서 유엔도 이런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 25일 : 일본 《도쿄신문[東京新聞]》, 일본 정부가 2백개의 무인도에 대한 명명 작업을 시작 • 26일 : 중국 해경국의 공선 '해경(海警)' 4척, 센카쿠제도 접속수역(영해 외측 약 22km) 내에서 항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8일 - 《세계일보》, 미 메릴랜드주 하워드 카운티 교육청이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가르치라는 교사지침서를 관할 공립학교에 보냄 - 《산케이신문》, 일본 외무성은 내년도 독도와 센카쿠열도 등 영유권 홍보를 위한 '영토보전대책비' 예산 10억 엔 책정 • 29일 : 중국과 아세안의 외무장관들이 베이징에서 특별 외무장관 회담,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남중국해 분쟁이 중국과 아세안 사이에 존재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일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영문판 전자지도 제작 완료, 다음 달 1일부터 국내 서비스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 일본 시마네[島根]현은 독도 주변 해역에서의 조업을 인정한 공동 어업권 면허를 오키[隱岐] 섬 어업연합에 교부

2013년	국내	국외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일 :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독도에 불법 상륙했다는 입관난민법 위반죄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마쓰에[松江] 지검 불기소 처분 • 10일 - 중국의 해경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센카쿠제도 해역에서 추격전, 중국은 이 과정을 생방송, 또 중국은 인민해방군 4만 명 동원 군사훈련 돌입 -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상은 센카쿠제도에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방안 언급,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외무성 사무차관은 청융화[程永華] 주일 중국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 및 도발 자체 요구 • 11일 -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일본 도쿄도 전 지사, '센카쿠[尖閣]제도에 등대를 세워 중국의 반응을 시험해 보자'고 주장 - 중국 외교부 대변인 훙레이, 필리핀에 황엔다오[黃巖島] 관련 문제 야기 말라고 촉구 - 센카쿠제도의 국유화를 결정한 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전 수상, 국유화가 정치적 결단이었다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밝힘 • 13일 : 제14회 미중 연례국방방위협약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왕관중[王冠中] 부참모장, 미국에게 센카쿠제도와 남중국해 문제에 관여하지 말 것을 주장 • 14일 - 일본 시마네현 주최 '독도문제를 생각하는 강좌'가 마쓰에[松江]시에서 열림 - 중국 해경선 편대가 센카쿠제도 및 인근 제도 해역을 전면 순항 • 15일 - 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중국 쑤저우[蘇州]에서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을 피하기 위한 '행동 규범' 책정을 위한 공식 회담 개최 • 18일 : 미국 메릴랜드주 앤어런델 카운티가 공립학교의 지리과 수업에서 '일본해'와 '동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동해'를 사용하지 말 것 요구 • 20일 :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미국 워싱턴 강연에서 일본에게 센카쿠제도 영유권 분쟁의 존재 인정 요구

2013년	국내	국외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일 : 박근혜 대통령, 해양경찰 60주년 행사(인천) 참석하여 독도 수호는 '한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함 30일 : 박근혜 대통령은 방한 중인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 회담, '역사와 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의 인식으로 한일 간에 신뢰 형성이 어려움을 지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일 : 일본 외무성은 태평양과 인도양 연안 13개국 책임자들을 초청하여 해상교통안전화보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처음으로 개최 2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의 윤병세 외무장관은 미국 뉴욕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장관과 회담, 독도 및 중군위안부 문제 등에서 이견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은 미국에서 센카쿠제도 주권 강조 28일 : 일본 정부는 한국어판 구글 지도의 독도 표기 등을 문제 삼아 지방자치단체와 국립대학에 사실상 사용 금지령 29일 : 중국과 인도의 외교·국방 대표단, 베이징에서 중국·인도 국경업무 협의조정메커니즘 제4차 회의 개최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학 명예교수, 제8회 파주북시티 국제출판 포럼에 참석하여 '독도 문제는 일본이 한국 측 주장을 인정'할 것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국가해양국, 중국 해경편대의 센카쿠제도 해역 순항을 발표 일본 수상 아베 신조, 중국 해경선의 센카쿠제도 해역 순항에 대해 유감 표명하고 불타협 천명 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외무상 기시다 후미오와 방위상 오노데라 이쓰노리 그리고 미국 국무장관 존 케리(John Kerry)와 국방장관 척 헤이글은 도쿄에서 '2+2' 미일 안보협의 회담 개최, 방위협력 지침을 수정하여 센카쿠제도 문제에 공동대응 방침 확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로스앤젤레스카운티 미술관, 중국관 벽에 내건 대형지도에서 일본해 표기 삭제 4일 :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 오스트레일리아의 줄리 비숍(Julie Bishop) 외무장관 등은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회담을 갖고 센카쿠제도 문제와 해양의 안전보장에 대해 의견 교환하고 협력 강화에 합의

2013년	국내	국외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7일 :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내년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 예산은 올해와 같은 42억 3천 500만 원 8일 : 경북 울릉군은 울릉도에 안용복기념관 건립 개관 14일 : 외교부, 홈페이지에 독도 홍보 동영상 탑재 22일 : 올해 1~9월까지 총 22만 2천 722명 독도 방문 2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 일본 외무성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유포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 및 해당 동영상 즉각 삭제 요구 외교부 박준용 동북아시아 국장, 구라이 다카시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동영상 유포에 대한 항의와 삭제를 요구하는 구술서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외교부 부부장 류진민(劉振民)은 아세안과 중국의 '10+1' 회의를 통해 남중국해 문제에 관련된 의견 교환 주장 일본 총리 아베 신조와 베트남 국가주석 쩌응띠안, APEC 참석하여 회담을 갖고 해양안보 영역에서 협력 합의 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국무원 총리 리커창(李克強),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공동인식과 합의한 원칙 고수 강조 브루나이에서 열린 일본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정상 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수장과 ASEAN의 각국 정상들은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의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의 평화적 해결에 인식 일치 14일 :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리커창 중국 총리와 응웬 땐 중(Nguyen Tan Dung) 베트남 총리의 13일 회담에서 남중국해 공동탐사 합의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 마련한 것으로 평가 16일 :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竹島]에 관한 동영상'이라는 제목의 독도 영유권 주장 동영상을 유튜브에 탑재, 센카쿠제도에 관한 동영상도 유튜브에 탑재 22일 : 일본 자민당은 의원 및 정부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를 개최, 영토문제 논의 23일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외무성의 센카쿠제도 관련 동영상 홍보에 대해 비판

2013년	국내	국외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 일본의 독도에 대한 탐욕과 무례를 규탄하고 동영상 삭제 요구 -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 일본 외무성이 독도 관련 사실을 왜곡한 동영상 제작과 유포를 비판하고 삭제를 요구 - 경상북도는 일본 외무성의 동영상 제작과 유포를 규탄하고 폐기를 촉구 • 2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의회는 '독도의 날'을 하루 앞두고 독도 수호 결의문을 채택 • 2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 독도의 날을 맞아 육해공군 합동으로 사상 최대 독도 방어 훈련 실시 - 독도에서 고종황제 칙령 제41호 113주년 기념식 개최 - 경북지방경찰청, '우리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원입니다'라는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상, 한국의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 유감 표명 - 일본 외무성의 이하라 준이치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주일 한국 공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 • 2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외무성에서 개최된 '일본과 태평양 제도(諸島) 포럼 정상회의'의 장관급 회의, '유엔 해양법 공약과 국제법에 의거 분쟁 해결'이라는 내용의 의장성명 통과시킴 -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일본 수상은 베이징에서 중국의 왕이 외무장관과 회담, 센카쿠 문제 의견 교환 • 2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플은 모바일 운영체제 iOS7에서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 소속으로 표기했던 것을 우리 정부의 항의를 받고 수정 - 시마네현이 설치한 제3기 다케시마문제연구회가 마쓰에시에서 열림, '다케시마문제의 100문제 100답(가칭)'을 내년 '다케시마의 날' 발행 목표 • 2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공선 4척 센카쿠제도 해역 진입 - 외무성의 이하라 준이치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한즈

2013년	국내	국외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 주일 중국 공사에게 중국 공선의 센카쿠제도 진입에 대해 항의 -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상, 중국 무인항공기 영공 진입시 국제법과 자위대법에 따라 대응 의지 강조 - 경연성[耿雁生]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 항공기 격추시 전쟁행위로 간주한다고 일본에 경고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군용기의 동중국해 해역 훈련은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주장 • 29일 :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25일의 중국군 폭격기 비행에 대해 조기 경계 대응 방침 표명 •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외무성은 독도에서 오키[隠岐]도까지의 거리를 종래 157km를 158km로 수정, 독도에서 울릉도까지의 거리도 종래 92km에서 88km로 수정 -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중의원 국가안전보장특별위원회 출석, 센카쿠제도 해역을 중점 방어 지역 즉 '회색지대'에 포함시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직접 관할할 필요 표명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외무성,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어판 동영상을 제작 공개 - 미국 국방부는 일본 언론의 센카쿠제도 미일 공동 방위계획 보도를 부인하고, 센카쿠제도에 관한 기존 입장의 불변경을 밝힘 - 일본 자위대는 3만 명 이상 병력을 동원, 일본 최초의 '도사(島嶼) 탈환' 실전 훈련 시작 - 미국의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센카쿠 제도가 일본에 속해 있다고 주장 • 2일 :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 국방대 량팡 교수의 센카쿠 분쟁 대응 차원 '중국 방공식별구역' 설정 필요성 주장한 기고문 보도 • 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 《월스트리트》 사설과 관련 센카쿠제도에 대해 미국의 중립을 요청 - 일본 외무성은 '최근에 있었던 한국의 정보 발신'이라고 이름 붙인 문서를 정리해 위안부, 독도, 동해 명칭 문제 등에 관해 한국 측을 비난 • 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센카쿠제도 문제와 관련 재일 중국 대사관에 영토문제 전문 공사 1명을 파견

2013년	국내	국외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정부, 독도를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지 않고 독도로 표기한 구글맵의 디자인 상 수상을 저지 • 10일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재침략 기도 도발 행위'라고 비난 • 11일 : 일본 정부의 지식인 회의 '안보와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센카쿠제도를 비롯한 낙도 방위 방법을 포함한 새로운 방위대강에 대해 논의 착수 • 12일 :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 국가안보위원회(NSC) 설립 결정. 중국의 NSC가 센카쿠제도와 남중국해 문제도 대응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음 • 16일 :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 쓰시마[對馬島] 방문하여 한국인의 쓰시마 땅 매입 경계 표명 • 1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은 라오스 총리와 회담, 아세안 국가들이 「남중국해 행위준칙」을 제정하는 데 일본이 협력하기로 합의 - 중국 인민해방군이 발해와 서해에서 육해공 합동 대규모 상륙 훈련 실시. 일본은 자위대의 도서 탈환 훈련에 대한 대응 훈련으로 간주 • 20일 :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미국 워싱턴에서 외무 및 국방 장관 정례 회의, 동중국해의 현상 변경 행위에 반대 밝힘 • 2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일본 영토문제담당 장관은 독도와 센카쿠제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홍보 위해 동영상 홈페이지 개설과 센카쿠제도 및 독도 등에 관한 종합조정회의 설치 방침 밝힘 - 미국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교육청은 모든 교과서, 지도, 보충자료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병기하도록 규정 개정 • 2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국방부, 동중국해에 한국 관할 이어도 및 일본 관할 센카쿠제도가 포함된 방공식별구역(ADIZ)을 설정 - 일본 정부는 외무·방위성 등 관계 부처 국장급 회의를 열고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

2013년	국내	국외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동북아국 이상덕 심의관, 주한 중국 대사관의 천하이[陳海] 공사참사관을 불러 중국이 한국 측 방공식별구역 일부와 이어도 수역도 포함된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의 불인정 방침을 중국에 공식 통보 - 국방부 류제승 정책실장, 주한 중국 대사관의 쉬징밍[徐京明] 무관을 국방부로 불러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해 유감과 불인정 방침을 전달 • 26일 :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연장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 협의 의사를 밝힘 • 28일 :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중국 인민해방군 왕관중 부총참모장, 서울에서 한·중 국방전략대화 개최. 한국 측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해 유감과 불인정 방침을 중국 측에 통보하고,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장하는 방안을 중국 측에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우려를 표명 • 2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은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해 불인정 방침을 천명하고 철회 요구 -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대응 조치 의지를 표명 -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사무차관, 청운화 주일 중국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항의하고 철회 요구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이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부합됨을 주장 - 중국 외교부 친강 대변인,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관련 한국 측의 이해와 협조 희망 표명 - 재일 중국 대사관은 일본 내 중국인에게 긴급사태에 대비한 연락처 등록 요구 통지 • 2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전화 회담에서 미일이 협력하여 중국에 대응 방침을 확인 - 미군은 B52 폭격기 2대를 센카쿠제도 주변으로 보냄 - 오타 아키히로[太田昭宏] 일본 국토교통상, 항공사들에게 비행계획서를 중국 측에 제출하지 말 것을 요청 • 2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정부는 새로운 「방위계획 대강」 발표, 도서탈환 체계의 구축 등을 명확히 밝힘 - 미국 핵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는 오키나와 주변 해역에서 일본 자위대와 함께 대규모 합동훈련 • 2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도 불구하고, 일본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항공기가 중국에 통보 없이 비행 -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과 양위진[楊宇軍] 국방부 대변인, 일본과 미국의 중국 방공식별구역 선포 철회 주장에 대해 반박 브리핑

2013년	국내	국외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독도와 센카쿠제도 등에 대한 영유권 주장 강화 위해 외무성·국토교통성 등 관계 부처 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종합조정회의'를 처음으로 개최 - 일본 교토통신, 일본 정부는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문제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에 제기 - 청용화 주일 중국 대사는 《아사히신문[朝日新聞]》과의 인터뷰에서 센카쿠제도 상공을 포함한 구역을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철회할 생각은 '없다'라고 명언 •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36회 한일의원원맹 총회 미래위원회에서 다케시마 와타루[竹下] 자민당 중의원이 자신은 '다케시마가 속한 시마네현 국회의원'이라고 망언 - 미국의 3대 항공사는 미국 정부의 권고에 따라 중국 측에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내 비행계획 통보를 밝힘. 미국 국무부는 안전 고려라고 설명, 미국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 방공식별구역 문제와 관련 여야 공동대응을 촉구 -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동북아역사재단 산하 독도연구소에 의뢰해 '사회과 교과서(역사·지리·사회) 이어도 표기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군대와 민간 항공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미국의 태도는 일본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 •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외교부 홍레이 대변인,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방침에 대하여 한국과 연락을 유지할 계획 밝힘 - 중국 외교부 홍레이 대변인, 미국 정부가 자국항공사의 중국에 비행계획 사전 통지를 용인한 점을 환영 -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 영국 해군의 잠벨라스(Sir George M. Zambellas) 참모장과 방위성에서 회담, 센카쿠제도를 포함한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에 대해 영국 측의 이해와 협력을 요구, 잠벨라스 참모장은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겠다는 생각을 표명 - 아베 신조 일본 수상, 아일랜드의 케니(Enda Kenny) 총리와 수상 관저에서 회담, 동중국해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설정한 중국을 염두에 두고 '평화적 해결책 추구' 명기한 공동선언 발표

2013년	국내	국외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일 :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해 '일본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 • 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가 출범, 수상 관저에서 첫 회의 개최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문제 등 논의 -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부통령, 일본 방문 기간 동안 미국과 일본이 방공식별구역 문제에 대해 보조를 같이한다는 입장만을 표명했을 뿐 더 이상의 발언을 하지 않았음 -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하여 시진핑 국가주석 등과 회담.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원칙적 입장'을 강조하고, 조 바이든 부통령은 미국 측의 우려를 표명 - 필리핀 국방부, 4.8억 페소의 예산을 마련하여 난사[南沙] 군도의 분쟁 도서인 중야다오에 활주로와 해군 시설 확충을 발표 • 6일 : 박근혜 대통령,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을 만나 방공식별구역 확대 고려 방안을 밝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회담 이후 한미 양국이 이 문제를 계속해서 협상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힘 • 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에게 방공식별구역 확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과 소통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밝힘 - 일본 중의원은 센카쿠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항의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철회를 요구 - 중국의 왕이 외무장관, 베이징에서 호주의 줄리 비숍 외무장관과 회담, 중국의 동중국해의 방공식별구역에 호주가 반대하는 것에 대해 불만 표명 • 7일 :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가즈민(Voltaire Gazmin) 필리핀 국방장관과 회담, 중국의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이 동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데 견해를 같이함 • 8일 : 한국이 동중국해에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만 외교부는 식별구역이 중복되는 국가와 긴장 상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 표명 • 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국방부, 방공식별구역의 확대를 발표. 이는 15일부터 발효됨. 한중일 3개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공역이 생기는데, 국방부는 관련국에 충분한 사전 설명을 했다

2013년	국내	국외
12월	<p>고 강조, 향후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협의하겠다는 방침 밝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은 한국이 항공 관제하는 인천비행정보구역(FIR)에 맞춰 남쪽으로 확대. 한국 관할의 이어도 상공 포함. 이어도는 중국이 11월 23일에 발표한 방공식별구역뿐만 아니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도 포함되어 있음 - 국방부는 이번 확대에 대해 FIR선에 맞춘 것으로, 국제적인 항공 질서와 규범에 부합하며 민간 항공기 운항에도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주변국의 영공과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으며, 발표 전에 국방부와 외교부가 중·일 등에 설명하고 "국제 규범에 부합하고 과도한 조치는 없다는 점에서 공감을 얻었다"고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선포에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상, 한국 정부가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데 대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도 같은 입장을 표명 • 10일 :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 각종 통로를 통하여 중일 해상연락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노력 • 1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외무성은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영상(한국어판, 중국어판, 프랑스어판, 러시아어판, 스페인어판, 아라비아어판 등) 공개 - 일본 정부의 '중기방위력정비계획' 개요 발표, 센카쿠제도 등 난세이[南西]제도 방위 강화가 중심 • 12일 :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자국의 항공사들이 중국에 비행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항공사 자체의

2013년	국내	국외
12월	<p>항공사 자체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발표. 정부의 발표 이후 각 항공사들은 중국에 비행 계획을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일 : 한국 정부가 새롭게 확대한 방공식별구역이 발표됨 • 17일 :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전략에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기술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관련 내용을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 • 1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국장, 구라이 다카시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에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된 것에 대해 항의하고 구술서를 전달 - 유무봉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구로다 마사히코[黒田金彦] 주한 일본 대사관 무관을 불러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에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된 것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시정 조치 요구 	<p>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발표. 단 일본 정부는 여전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일본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정상들이 참가한 특별 정상회의가 도쿄에서 개최되어, 해상의 안전, 항해의 자유 및 국제법의 원칙에 근거한 분쟁 해결 등의 중요성을 선언한 공동성명을 채택 - 《아사히신문》, 한국 방공식별구역 발표에 대해 중국과 일본은 모두 한국의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문제 삼지 않는 자세 취함 • 1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정부, '국가안보전략'과 '방위대강' 의결, '국가안보전략'에 '독도 영유권 문제는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입각해 외교노력을 다한다'는 내용 포함 - 교도통신, 일본 자민당의 '영토 관련 특명위원회'는 일본 정부에게 언론 매체를 통하여 센카쿠제도, 독도, 쿠릴열도 등의 일기예보 공표 제한, 또 '학습지도요령' 속에 센카쿠제도와 독도 관련 내용 포함 시킬 것 요구 • 1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은 자민당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대의 활동을 중시해야 한다'고 발언 - 아베 신조 일본 수상,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 안에서 양국의 군사적 마찰 방지를 위해 양국 사이의 군사연락체계 구축 필요 강조 - 야마모토 이치타 일본 영토문제 장관, 경단련(經團聯) 회의에서 센카쿠제도를 염두에 두고 해외에 일본의 입장 적극 홍보 요청 • 19일 : 러시아의 초계기 2대가 일본영도를 주회 비행. 일본 항공자위대의 전투기가 긴급발진 경계 • 21일 : 일본 해상자위대와 인도 해군은 인도 남부의 첸나이 앞바다에서 공동훈련 시작 • 22일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중국 방공식별구역의 '강한 강제성' 비판 • 29일 : 중국 해경선 3척 센카쿠제도 주변 해역에 진입 항해

〔『영토해양연구』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영토해양연구』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연구노트(탄보 등),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독도와 관련된 주제
 - 2) 영토 및 해양과 관련된 주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영토해양연구』는 6월 30일, 12월 31일 매년 2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관련 전공자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영토해양연구』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 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영토해양연구』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논문 심사 내규 〕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A)
 - 2) 수정 후 게재 : 3인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A로,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B) (A, B, B) (B, B, B) (A, A, C)
 - 3) 수정 후 재심사 : 2인이 A와 B 이하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A나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B, C) (A, B, D) (B, B, C) (B, C, C) (A, C, C)
 - 4)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A, C, C와 B, C, C는 제외)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 (A, C, D) (A, D, D) (C, C, C) (B, B, D) (B, C, D) (C, C, D) (D, D, D)
 - 5)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영토해양연구』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의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영토해양연구』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투고 및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심사 결과와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 투고 요령 〕

1. 『영토해양연구』는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서평, 연구노트(단보 등), 회고와 전망, 영토·해양 관련 일지, 자료소개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3월 31일 또는 9월 30일까지 투고신청서와 함께 『영토해양연구』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영토해양연구』 실무총괄담당자 메일(tas@nahf.or.kr)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해상도 300dpi 이상) 및 기타 자료는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50장 이내로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원고분량에 포함하지 않으나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국문 및 영문초록, 국문 및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필요 시)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인용문헌은 가급적 각주로 표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7. 각주에서 현대문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

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김홍도, 2010a, 위의 글, 78쪽.
홍길동, 2002, 앞의 글, 29쪽.

8.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시)”, “서책”, “편목”, “인용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표기 없이 서술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鶴擁, 是人世”

9.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10.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필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필요시 인용 쪽수를 표기한다.

예) (동북인, 2006 : 24)



영토해양연구 Vol. 6

초판 1쇄 인쇄 2013년 12월 20일
초판 1쇄 발행 2013년 12월 31일

펴낸이 김학준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2234-3296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